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법무자료 제317집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860-01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

- 증거·수사·예심·기소편 -

2015

법무부

발 간 사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이 통일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공허한 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후의 통합은 법제의 통합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다른 어느 분야에 관한 연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독일의 통일 직후인 1992년 통일 준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통일법무과'를 창설하여 지난 23년 동안 남북 법제의 통합방안을 연구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산하에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북한 형사소송법 438개 조문들 중 수사·예심·기소·증거 분야에 관한 핵심적인 152개 조문들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정절차의 보장, 신속한 재판 등을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세운 체제의 수호를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님, 주석서 저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하태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백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서 발간을 총괄한 주상용 통일 법무과장과 김태헌 검사, 김홍율 법무관의 노고도 치하합니다.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서가 대한민국 법률전문가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법무부 법무실장 황 교 안

집필의 변

이 주석서는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 소위원회(이하에서 “형소법소위”라고 부른다)에서 실시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서 발간작업의 결실이다.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에서는 2015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개편하면서 분과위 산하 6개 소위원회 중 하나로서 형소법소위를 신설하였다. 집필자들은 이때부터 형소법소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대비하고 통일 이후 필요한 남북한 형사법제 통합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남북한 형사소송법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형소법소위는 2015. 4. 8.자 회의에서 북한 형사소송법(438조)이 북한 형법(290조)보다 조문수가 1.5배 많으므로 2년에 걸쳐 주석서Ⅰ(증거·수사·예심·기소편), 주석서Ⅱ(재판편)를 편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날부터 2015. 11. 17.까지 매월 1회 이상 총 8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각 위원들의 주석서 작성 부분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이 주석서를 집필하였다.

이 주석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부분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사법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개관설명을 두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 조문의 아래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및 러시아, 중국의 형사소송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배치하여 독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필진과 그 집필 분담 내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 지 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3장(수사), 제5장(기소)

○ 서 보 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장(일반규정) 중 제2절(증거)

○ 김 재 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4장(예심) 중 제7절(수색과 압수), 제8절(증인신문), 제9절(대질심문과 식별심문), 제10절(재산담보처분)

○ 하 태 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4장(예심) 중 제1절(예심의 임무와 기간), 제2절(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3절(피심자심문), 제11절(예심의 종결)

○ 이 백 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북한 형사소송법 개관, 제4장(예심) 중 제4절(체포와 구속처분), 제5절(검증과 심리실험), 제6절(감정)

독자 제현의 질정을 받아 더욱 알찬 주석서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2015년 12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형사소송법소위원회 위원장

전 지 연

목 차

증거·수사·예심·기소편

» 개관 : 북한 형사소송법의 연혁과 특징 ····· 23

제2장 일반규정 ····· 27

제2절 증 거 ····· 29

» 증거법 개관 ····· 29

제29조(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 32

제30조(증거의 종류) ····· 42

제31조(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 79

제32조(증거의 수집, 리용) ····· 84

제33조(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 91

제34조(증거의 고착) ····· 95

제35조(증거의 검토) ····· 100

제36조(증거의 평가) ····· 106

제37조(피심자, 피소자진술의 평가) ····· 114

제38조(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 124

제39조(증거물수집과 립회) ····· 131

제40조(증거물의 보관) ····· 133
제41조(증거물의 이관) ····· 139
제42조(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 146
제43조(증거물의 처리방법) ····· 150
제44조(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 ····· 153

제3장 수 사 ····· 157

수사 개관 ····· 159
제133조(수사의 임무) ····· 161
제134조(수사의 시작) ····· 164
제135조(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 171
제136조(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 175
제137조(수사의 방법) ····· 180
제138조(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 ····· 184
제139조(수사의 의뢰) ····· 186
제140조(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 ····· 189
제141조(수사사건의 이송) ····· 191
제142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 195
제143조(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 204
제144조(구금하지 않을 범죄자의 처리) ····· 212
제145조(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 214
제146조(수사에 대한 감시) ····· 217

제4장 예 심 ····· 223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 225

» 예심 개관 ····· 225

제9조 (형사소송관계자) ····· 256

제11조(예심의 담당자) ····· 262

제48조(예심관할) ····· 269

제147조(예심의 임무) ····· 281

제148조(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 289

제149조(반복조사금지) ····· 292

제150조(예심의 기간) ····· 294

제151조(예심기간의 연장) ····· 299

제152조(예심사건의 이송) ····· 303

제153조(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 ····· 306

제154조(예심의 의뢰) ····· 308

제155조(예심에 대한 감시) ····· 310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 318

»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개관 ····· 318

제156조(예심의 시작) ····· 320

제157조(형사책임추궁)) ····· 337

제158조(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 343

제159조(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 349

제160조(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 350

제3절 피심자심문 ····· 353

» 피심자심문 개관 ····· 353

제161조(피심자심문시기) ····· 356

제162조(피심자심문시간) ····· 365

제163조(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 367

제164조(피심자호송) ····· 374

제165조(피심자체포의뢰) ····· 376

제166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 380

제167조(피심자심문의 개별화) ····· 391

제168조(피심자의 권리통고) ····· 392

제169조(피심자의 권리) ····· 397

제170조(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 405

제171조(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참가) ····· 411

제172조(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 피심자심문) ····· 413

제173조(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 421

제174조(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 430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 435

» 체포와 구속처분 개관 ····· 435

제175조(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 438

제176조(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 443

제177조(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 448

제178조(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 451

제179조(체포의 담당자) ····· 456

제180조(체포령장 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 460
제181조(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 465
제182조(체포, 구속의 통지) ····· 471
제183조(구속처분의 종류) ····· 474
제184조(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 477
제185조(구속처분결정의 승인) ····· 480
제186조(구류의 기간) ····· 487
제187조(구류기간의 연장) ····· 493
제188조(자택구속처분) ····· 497
제189조(지역구속처분) ····· 503
제190조(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 508

제5절 검증과 심리실험 ····· 512

» 검증과 심리실험 개관 ····· 512
제191조(검증, 검진의 목적) ····· 514
제192조(검증의 종류) ····· 518
제193조(범죄현장에서 증거물검증) ····· 522
제194조(검증의 동의) ····· 524
제195조(검진결정서 및 검진맡김결정서의 작성) ····· 527
제196조(검증, 검진의 시간) ····· 531
제197조(검진결정서의 제시) ····· 533
제198조(검증, 검진의 립회) ····· 535
제199조(검증에 감정인의 참가) ····· 539
제200조(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 541
제201조(심리실험의 사유) ····· 547

제202조(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 551
제203조(심리실험의 금지사유) ····· 553
제204조(심리실험조서의 작성) ····· 555

제6절 감정 ····· 557

» 감정 개관 ····· 557
제205조(감정의 사유) ····· 560
제206조(감정의 종류) ····· 564
제207조(감정기관) ····· 566
제208조(감정의 의뢰) ····· 569
제209조(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 572
제210조(감정서의 작성과 회보) ····· 574
제211조(감정인의 권리) ····· 578
제212조(감정인의 통고) ····· 580
제213조(감정인심문) ····· 583
제214조(재감정) ····· 586

제7절 수색, 압수 ····· 588

» 수색, 압수 개관 ····· 588
제215조(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 589
제216조(수색, 압수의 승인) ····· 596
제217조(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 606
제218조(수색장소의 경비조직) ····· 611
제219조(수색, 압수의 시간) ····· 613
제220조(수색, 압수의 립회) ····· 616
제221조(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 622

제222조(압수대상과 방법) ····· 626
제223조(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 631

제8절 증인심문 ····· 640

» 증신심문 개관 ····· 640
제224조(증인으로 될수 있는 사유) ····· 641
제225조(증인의 권리) ····· 646
제226조(증인의 의무) ····· 651
제227조(증인심문장소) ····· 656
제228조(증인의 소환 및 구인) ····· 660
제229조(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벙어리, 귀머거리증인심문) ····· 666
제230조(증인심문의 개별화) ····· 670
제231조(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심문) ····· 673
제232조(증인심문절차) ····· 677
제233조(증인심문조서의 작성) ····· 682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 691

»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개관 ····· 691
제234조(대질심문의 사유) ····· 692
제235조(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 694
제236조(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 696
제237조(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 699
제238조(대질심문조서의 작성) ····· 701
제239조(식별심문의 목적과 요구) ····· 704
제240조(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와 식별정형확인) ····· 708

제241조(식별심문의 립회) ····· 711
제242조(식별심문조서의 작성) ····· 713

제10절 재산담보처분 ····· 718

» 재산담보처분 개관 ····· 718
제243조(재산담보처분의 목적) ····· 719
제244조(재산담보처분의 대상) ····· 722
제245조(재산담보처분의 시기) ····· 724
제246조(재산담보처분의 범위) ····· 726
제247조(재산담보처분결정) ····· 728
제248조(재산담보처분의 결정서제시와 립회) ····· 730
제249조(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 732
제250조(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 735
제251조(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 738
제252조(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 740

제11절 예심의 종결 ····· 742

» 예심의 종결 개관 ····· 742
제253조(예심의 종결사유) ····· 744
제254조(예심의 종결절차) ····· 755
제255조(검사의 예심종결참가) ····· 761
제256조(예심종결조서의 작성) ····· 763
제257조(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 767
제258조(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 770
제259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 773

제5장 기 소 ····· 775

기소 개관 ····· 777

제260조(기소의 임무) ····· 779

제261조(기소의 기간) ····· 780

제262조(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 782

제263조(사건기록검토내용) ····· 783

제264조(범죄사건기소) ····· 786

제265조(기소장의 작성) ····· 789

제266조(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 796

제267조(범죄사건을 예심에 돌려보내는 결정) ····· 799

제268조(반복기소의 금지) ····· 802

부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803

참고문헌

Ⅰ. 북한문헌

1. 단행본

김근식, 형법학1, 2판, 김일성종합대학, 198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제2판, 김일성종합대학, 1987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5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2. 논문

강희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증거로 되는 조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권영민, 언어증거와 실물증거에 대한 리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7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에서 재산담보처분에 대한 리해, 법학연구15, 김일성종합대학, 2006
리 황, 사건취급처리에서 간접증거의 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원창섭, 형사소송에서 감정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08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장철환, 범죄인정에서 증명의 요구에 대한 일반적 리해,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은주, 형사증거가 립증하는 사실관계,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Ⅱ. 남한문헌

1. 단행본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김인회, 형사소송법, 피엔씨미디어, 2015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2014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2011
백형구·박일환·김희옥(집필대표), 주석 형사소송법 I,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1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2015
이은모,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1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2
이창현, 형사소송법, 제2판, 입추출판사, 2015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8판, 법문사, 2012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 형사관계법, 1993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 : 북한법제, 201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2008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1996

2. 논문

권오걸,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예심절차, 법학논고 제25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김일수,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89
손영조, 북한 예심제도의 변화와 의미 - 실행 조직과 적용 실태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5권 제3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2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 제23호, 법무부, 2015
현송학, 중국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제도, 법학논총 제11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인용약어표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200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제2판, 김일성종합대학, 1987

총 론

개 관

북한 형사소송법의 연혁과 특징

북한에서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0. 3. 3.로서 우리보다 4년이 앞선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도 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모두 25장 281조로 구성된 제정 북한 형사소송법은 구 소련법의 영향을 받아 수사와 재판 사이에 예심제도를 두고,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1976. 1. 10. 및 1992. 1. 25. 각기 전면 개정되었다가 2004. 5.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다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것이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단축하고, 체포영장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강압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유도에 의한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항들을 다수 도입하였다.

최근 북한의 대중용 법전 제2판이 국내에 입수되었는데, 이 법전을 보면 북한 형사소송법은 2011. 10. 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3호, 2012. 5. 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각 수정보충되었고, 총 9장 438조로 되어 있다. 본 주석서의 해설대상은 바로 이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이다.

2004년 형사소송법과 비교해 보면 종전의 12장 439조에서 9장 438조로 3개 장이 줄어든 편제상의 차이가 발견되고, 특별재판소 및 특별수사기관으로 군수부문이 추가되었으며(제52조), 최고재판소가 특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관할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제53조). 또한 예심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이 종전 4개월에서 5개월로 늘었고(제186조, 제187조), 공판정에서 피소자의 좌석위치가 재판부의 정면에서 검사의 맞은편으로 바뀌어 변호인 옆에 앉게 된 점(제279조)도 눈에 띈다.

북한에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검사에 의한 기소, 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북한 형사소송 절차에서 특징적인 것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수사원 및 검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예심원이 피심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형사소송 절차의 수사에 해당한다. 오히려 그 전 단계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초기 단계에서 범죄자의 적발만을 목표로 하고 본격적인 증거조사는 하지 못하므로 우리 형사소송 절차의 내사에 유사해 보인다.

증거법 규정들은 우리 형사소송법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서류증거와 증거물 및 증인의 진술, 검증 및 감정결과 등이 증거가 되고,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백보강법칙도 규정하고 있다.

체포와 구속은 모두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법원의 영장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사의 승인만으로 피심자를 구금할 수 있는데, 수사단계에서의 구금기간은 매우 장기이다. 그리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의 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재판절차는 재판준비절차와 재판심리절차로 나뉘어지고, 일단 재판심리가 시작되면 연속하여 심리가 이루어져 바로 판결이 선고된다. 재판은 3급 2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확정된 판결은 재판소가 집행을 지휘한다.

북한에서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처벌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막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영도 아래 범죄의 형태를 띠는 적대계급들의 반항과 낡은 사상 잔재의 침해로부터 주체의 혁명위업을 보위하고 그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데에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1)]

특히 북한 형사소송법은 '적과 우리편 사이의 모순'과 '인민 내부의 모순'을 확실히 구별하고 '적과 우리편 사이의 모순'에 속하는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는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 분쇄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인민 내부의 모순'에 속하는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하는 계급노선을 관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2)]

따라서 북한 형사소송법의 본질은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진압하는 한편, 인민들의 사상을 교화, 개조하여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교시와 당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재판기관과 검찰기관, 인민보안기관들이 3위 1체가 되어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통일적인 보조를 취해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3)]

---

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48면.
2)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1996, 311면.
3)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7, 1996, 324면.

제2장 일반 규정

제2장 일반규정

제2절 증거

개 관

증거법

Ⅰ. 김정일 어록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과학성의 원칙 천명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법 규정들의 원천은 지도자인 김정일의 어록이다. 김정일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자면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똑똑히 밝혀내자면 과학적인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모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제7권 320면).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제7권, 320면)

≪증거는 그 정확성이 철저히 검토확인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립증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김정일선집 제7권, 321면)

≪재판기관들은 범죄사실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낱낱이 밝힌데 기초하

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수사, 예심기관들에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제10권, 125면)

이러한 김정일의 어록이 북한 형사소송법 증거법 규정들의 기본사상과 틀을 이루고 있음은 명백하며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4] 이에 따라 북한 형사소송법 제5조는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이라는 표제하에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증거에 대한 독립적인 장(제2장 제2절)을 규정해 놓고 있다.

II. 증거법의 주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증거재판주의'를 들 수 있다(제29조 제1항, 제31조). 증거재판주의라 함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1992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처음 도입된 원칙이다. 과거 북한의 구 형사소송법(19050년) 제45조는 "재판소는 형식적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 자유로 증거를 채택하며 증거의 제출을 제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완화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매우 진일보한 원칙도 찾아 볼 수 있다. 자백배제법칙(제37조 제1항) 및 자백보강법칙(동조 제2항)이 그것인데 이 조항들은 지난 2004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제98조 제1항 및 제2항). 반면 피심자·피소

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27면 참조.

자의 범죄를 부인하는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유죄입증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제37조 제3항)도 두고 있는데,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이 특이한 규정도 지난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 도입되었다(제98조 제3항).

증거편에서는 그 밖에 증거의 종류(제30조), 증명의 대상(제31조), 증거수집 기관(제32조), 진술서 및 조서의 작성 의무(제34조), 증거의 검토와 평가 방법(제35조, 제36조), 증거물 관련 조서의 작성 의무(제38조), 압수·수색시 립회 의무(제39조), 증거물의 보관과 이관(제40조, 제41조), 증거물의 처리(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제29조 (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되여야 사건해결의 기초로 쓸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7조 형사사건처리의 적법성

3. 법원/검사/예심관/수사기관/수사관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

제75조 허용되지 않는 증거

1. 본법의 규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될 수 없으며, 또한 본법 제73조에 규정된 어떠한 사항의 증명에도 사용될 수 없다.
2. 다음의 각호는 허용되지 않는 증거에 해당한다.
   1) 혐의자 및 피의자의 진술이 법원송치전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없이 (혐의자, 피의자가 변호인선임을 거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취득되었고, 그 진술이 법정에서 혐의자 및 피의자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 되

지 않을 경우.

2)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이 추측, 가정(추정), 소문을 근거로 할 경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견문(見聞)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3) 기타 본법의 규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

제89조 공작수사활동의 결과물을 증명에 이용

만약 기동수사활동의 결과물이 본법에서 요구하는 증거로서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증명의 과정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46조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은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연구를 중시하며, 자백을 가벼이 믿어서는 아니 된다. 단지 피고인의 자백만이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에 처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은 없으나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할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에 처할 수 있다.

제47조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법정에서 공소인, 피해자와 피고인, 변호인 쌍방의 신문, 질문을 거치고, 각방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여야 하며, 또한 사실조사를 거친 이후에 비로소 사건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정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은닉한 것을 조사, 판명한 때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53조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은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연구를 중시하며, 자백을 가벼이 믿어서는 아니 된다. 단지 피고인의 자백만이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에 처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은 없으나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할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에 처할 수 있다. 증거의 확실하고 충분함은 다음의 조건을 부합하여야 한다.

(1) 유죄인정과 양형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모두 있는 경우

(2) 사건을 확정하는 증거 모두 법정절차를 거쳐 조사하여 사실임이 증명된 경우

(3) 사건 전부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이 이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시킨 경우

제54조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자백과 폭력, 위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을 배제하여야 한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물증, 서증이 사법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하며, 보정이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에 대하여 배제하여야 한다.

수사, 기소심사, 재판 시에 배제하여야 할 증거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배제하고, 기소의견, 기소결정,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제55조 인민검찰원이 신고, 고소, 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인원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상황이 확실한 경우에 바로 잡아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6조 법정심리 과정 중에, 재판인원이 본법 제54조 규정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하여 법정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그의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법에 따라 배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단서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 증거수집의 합법성에 대하여는 법정조사 과정 중에 인민검찰원이 증거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한다.

인민법원은 관련 수사인원 또는 그 밖의 인원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관련 수사인원 또는 그 밖의 인원도 법정에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사인원 또는 그 밖의 인원은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58조 법정 심리를 거쳐 본 법 제54조 규정의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의 정황이 확인되거나 그러한 정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관련 증거는 배제하여야 한다.

Ⅰ. 개관

본조 제1항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을 취급하고 처리할데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제31조(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되여야 한다")와 더불어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92년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를 받아 제148조는 예심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5], 예심원은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6] 또한 검사는 기소결정을 위한 사건기록을 검토함에 있어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3

5) **북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예심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 논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힌다.

6) **북한 형사소송법 제157조 (형사책임추궁)**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한다.

조 제1호).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제318조), 필요한 경우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제320조), 새로운 증거도 수집할 수 있다(제321조).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8조). 모두 증거재판주의를 구체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은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증거의 자격(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 및 증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어록을 바탕으로 입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똑똑히 밝혀내자면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모든 사실을 립증하여야 합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사건취급처리에서 증거자료를 찾아내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리며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서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것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철저히 검토 확인하여야 합니다.≫(«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4권, 84면).

Ⅱ.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처리

1.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을 취급하고 처리할 데에 대한 기본원칙'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 확정하며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선입견, 편견과 같은 주관에 의하여

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7]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사건담당일군의 과학적 판단을 보장하는 객관적 자료로 되자면 그 자료가 밝히는 사실이 사회와 자연의 합법칙성과 일반적 리치에 부합되는 것이여야 하며 제기된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립증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는 지적[8]도 역시 형사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증거재판주의는 근대 형사절차의 대개혁 이후 마련되었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내용이다.[9] 이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도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동조 제2항)라고 하여 증거재판주의의 실제내용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북한 형사소송법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범죄사건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헌의 언급에서는 그 한계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형사소송이 자기 임무를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범죄사건을 다루는 사법일군들이 밝히고 지향하여야 할 사실들을 의문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끝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한 증명도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법일군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며 또한 이것은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놓쳐버리거나 면바로 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다치지 말아야 할 인민들을 다침으로써 엄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증명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계속 노력하여 끝

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4면.
8) 강희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증거로 되는 조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9) 김인회, 형사소송법, 2015, 460면.

까지 증명하는 것이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 충성하는 사법일군들의 태도이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만약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증명에 힘썼지만 끝내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집한 증거로써 증명할 수 있는 범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되, 이 경우에는 ‘계급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어느 것이 혁명에 리로운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범죄의 혐의자가 계급적 적대분자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각심을 더욱 높여 모든 자료를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0]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증거에 기초하여 충분한 심증을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계급적 입장에 기초하여 혁명에 이로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적 적대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죄로 결론지어야 한다는 암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운 것은 피소자의 리익에 돌린다! in dubio pro reo!≫는 원칙은 부르죠아형사소송에서 착취계급의 형사범죄를 비호하고 근로인민들과 혁명가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등의 전횡을 부릴 수 있는 여지를 부르죠아형사기관에 주기 위한 기만과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척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11]

또한 “이른바 ≪듣고 옮기는 증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증거의 수집과 리용에 각종 제한을 가하는 부르죠아적 리론은 진실의 확정을 도외시하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부르죠아소송

10)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2면; 장철환, 범죄인정에서 증명의 요구에 대한 일반적 리해,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2호.

1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4면; 장철환, 범죄인정에서 증명의 요구에 대한 일반적 리해,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2호.

의 립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당사자소송≫의 이름 밑에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가난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이도 징벌을 받을 의무만을 강요하는 부르죠아지의 반인민재판을 합리하는 수단의 하나로 쓰인다"[12]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 및 여타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in dubio pro reo 원칙'(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시민의 방어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절차의 포기할 수 없는 원칙으로 통한다. 또한 전문증거의 증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전문법칙도 형사소송절차에서 직접성의 원칙과 반대신문권의 강화를 통해 진실발견에 최선을 기하고자 하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 형사소송법의 문헌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부르죠아적 형사소송원칙이라고 비판하면서 배제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헌에서의 이러한 기술들을 근거로 북한 형사소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의 명확한 한계를 읽을 수 있다.

2. 증거의 자격 및 검증의 필요성

먼저 범죄사건 처리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란 법에 의해 증거수집의 권한이 부여된 기관에 의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종의 '적법수집 증거의 원칙' 또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규정한 증

12)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5면.

명수단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가 아니라면 그것은 증거로 리용할 수 없다. 형사증거는 또한 소송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 방법에 따라 얻어진 자료여야 한다"는 지적도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13] 이러한 원칙을 법에 규정한 것은 법령이 금지하는 위법적 방법과 절차,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증거는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그르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도 헌법이 천명한 적정절차의 원칙(제12조 제1항)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천명해 놓고 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2). 실체적 정의도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는 한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실제 이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문헌에서는 전문법칙을 비롯하여 증거의 수집과 이용에 각종 제한을 가하는 부르죠아적 이론은 진실의 확정을 도외시하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부르죠아소송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15] 나아가 "과학적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보장하자면 증거의 수집 및 리용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무엇보다 증거의 수집에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16]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실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그 수집절차의 적법여부를 떠나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본조에서 언급한 '과학적 증명을 위한 증거'란 사건을 정확하게

13) 강희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증거로 되는 조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14)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90면.
1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5면.
16)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4면.

취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들, 다시 말하면 범죄와 범죄자 기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밝히고 확정하여야 할 구체적 사실관계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실들, 구체적 현상들, 사정들과 조건들을 의미한다.[17]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자료만이 과학적증거로서 사건해결의 기초로 될 수 있다.

▷ 제기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료

▷ 이 법에 규정된 증명수단을 통하여 얻어낸 자료

▷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 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

▷ 정확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된 자료[18]

1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2면.

18) 이상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4면. 강희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증거로 되는 조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제30조 (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가 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68조(형사소송에서 증거가 되는 정황) 수사, 예심 혹은 형사재판의 증거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증거로 간주된다.

(1) 범죄의 발생(시간, 장소, 방식 기타 범죄를 저지른 정황)

(2)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행 동기에 있어서 피고의 유죄

(3)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28조, 제29조가 명시한 피고인의 책임 정도 및 종류에 영향을 끼치는 정황, 피고인의 인성을 보여주는 기타 정황

(4) 범죄에 의해 야기된 손실의 특징 및 정도

범죄를 야기한 정황도 확인의 대상이다

제69조(증거) 형사사건의 증거는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근거를 둔 사실적 자료,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의 유죄 및 기타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모든 정황들을 말한다.

그러한 자료는 증인,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의 증언 및 감정인 의견, 물적 증거, 수사 및 사법적 행위 기록 또는 기타 문서 등에 의해 성립된다.

제74조(증인의 증언)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징 및 증인과 그들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황에 대하여 증인은 신문받을 수 있다. 만약 증인이 진술 정보의 근원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증인이 받았다고 진술

하는 사실적 자료들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제75조(피해자의 증언) 피해자는 예심원 및 수사원, 검사,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모든 것과 질문에 답하여 성실한 증언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정황에 대하여 신문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진술 정보의 근원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증인이 진술하는 사실적 자료들은 증거가 될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원 및 예심원, 검사 혹은 법원은 강제로 증인을 출석시킬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가 증언을 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회피할 경우 증인은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182조에 명시된 책임을 진다. 거짓 증언을 한 경우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181조에 명시된 책임을 진다.

제76조(피의자의 증언) 피의자는 그의 구금 및 보호감금의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 및 그에게 알려진 모든 기타 정황과 관련하여 증언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77조(피고인의 증언) 피고인은 그에 대한 고소, 알려진 정황 및 사건의 기타 정황과 관련하여 증언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유죄인정은 사건에서 증거의 종합성에 근거하여 인정이 될 때만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78조(감정인 조사) 감정인 조사는 수사, 예심 혹은 사법적 조사 및 과학, 공학, 예술, 무역 등의 특별한 지식이 요구될 시에 행해진다. 감정인 조사는 적절한 기관의 감정인 및 조사,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 검사, 법원이 지정한 기타 감정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누구나 감정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조사, 수사원, 검사 혹은 법원의 요청을 받아 소환된 감정인은 그가 근무하는 기관, 기업 및 기구의 관리자로 구속력을 가진다. 감정인 혹은 그의 의견에 대한 질문은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79조(감정인 심리실행 의무) 감정인 심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 의무로 실행된다.

(1) 사망원인 및 신체적 손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나,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 시점에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 유무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3) 증인 또는 피해자가 사건에서 중요한 정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할 능력에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증인 또는 피해자의 정신 및 신체적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4)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연령이 사건에서 중요한데 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피고인 및 피의자의 연령을 특정하기 위해

제80조(감정인 의견) 감정인은 자신의 특별한 지식에 바탕을 두어 수행된 분석에 기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제공한 의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수의 감정인이 감정인 심리를 수행할 시 의견을 제시하기 전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만약 한 분야의 감정인들이 공통의 의견에 도달하면, 그 의견에 모든 감정인들이 서명한다. 감정인들 사이의 의견불일치 시, 각 감정인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감정인의 의견은 수사원 및 예심원, 검사 혹은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나,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81조(감정인 심리 반복 및 보충) 의견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불충분할 시, 보충적인 감정인심리가 수행되어야 하며 동일한 혹은 다른 감정인에게 맡겨져야 한다. 감정인 의견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정확성에 의심이 생길 시, 반복적인 감정인 심리가 수행되어야 하며 동일한 혹은 다른 감정인에게 맡겨져야 한다.

제82조(감정인의 의무 및 권리) 감정인은 심리 및 수사를 행하는 사람, 검사 또는 법원이 소환할 시 출두하여 그에게 주어진 질문에 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가진다. 주어진 질문이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그에게 주어진 자료가 의견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

우, 감정인은 자신에게 심리를 의뢰한 기관에게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감정인 심리에 대한 의견제시가 불가능한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감정인 심리의 대상에 관한 사건 자료에 대해 알 권리

(2) 의견제시를 위해 필요한 보충자료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권리

(3) 수사원 및 예심원, 검사, 법원의 허가와 함께 심문, 기타 수사 및 사법적 행위에 참여하고 감정인 심리의 주제와 관련한 자의 심문에서 질문을 할 권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인이 그의 의무 수행을 회피하거나 거절하거나, 거짓인 의견을 제시거나, 수사원 및 예심원, 검사 및 법원의 소환이 있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본법 제73조에 의거한 조치가 적용된다.

제83조(물적 증거) 범죄 수단 및 범죄 증거,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목적으로 여겨지는 정황, 범죄로 획득한 금품, 범죄를 밝히는 수단으로 사용된 기타 자료, 사건의 사실적 정황, 유죄여부를 증명하거나 고발을 반증하는 자료, 피고인의 유죄를 경감시키는 모든 자료는 물적 증거가 된다.

제87조(수사 및 사법적 조치의 기록)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근거하여 검증, 수사, 압수, 수색, 구금 및 범인식별절차, 수사행위 등을 통해 성립된 정황을 증명하는 기록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구성한다.

제88조(문서) 문서는 기관, 기업, 기구, 관료 혹은 시민이 제시하거나 인증한 정황과 사실이 형사 사건에서 중요성을 갖는 경우 증거를 구성한다. 문서가 본법 제83조 소정의 요소를 갖는 경우 물적 증거가 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74조 증거

1. 어떠한 자료든지 그에 근거하여 법원, 검사, 예심관, 수사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명해야 할 사항의 존재 또는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된다. 또한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그 외 사항도 증거가 될 수 있다.

2. 다음의 자료들은 증거로서 허용된다.

1) 혐의자 및 피의자의 진술

2)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

3) 감정인의 감정서 및 진술

3-1) 전문가의 결정서 및 진술

4) 물적증거

5) 수사기록 및 법원심리조서

6) 기타문서

제76조 혐의자의 진술

혐의자의 진술 - 공소제기전절차에서 본법 제187-190조의 규정에 의거 행하여진 신문(訊問)에서 혐의자로부터 청취한 사항

제77조 피의자의 진술

1. 피의자의 진술 - 공소제기전절차 또는 법정에서 본법 제173조, 제174조, 제187~190조, 제275조의 규정에 의거 행한 신문(訊問)에서 피의자로부터 청취한 사항

2. 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은 보유 중인 증거의 총체에 의해서 그의 유죄가 사실로서 확인될 때에만 유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역자주-자백보강법칙)

제78조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의 진술 - 공소제기전절차 또는 법정에서 본법 제187-191, 277조의 규정에 의거 행한 신문(訊問)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사항

2. 피해자는 혐의자 및 피의자와 자신의 관계를 포함하여 증명해야 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을 수 있다.

제79조 증인의 진술

1. 증인의진술 - 공소제기전절차 또는 법정에서 본법 제187-191, 278조의

규정에 의거 행한 신문(訊問)에서 증인으로부터 청취한 사항

2. 증인은 피의자 및 혐의자 개인에 대한 사항(인적사항, 외모, 인상착의 등), 피의자 및 혐의자와 자신의 관계, 다른 증인과 자신의 관계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을 수 있다.

제80조 감정인 및 전문가의 감정서(결정서) 및 진술

1. 감정인의 감정서 - 형사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 또는 당사자가 제기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감정인이 그 조사내용 및 결론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
2. 감정인의 진술 - 감정서를 접수한 이후에, 본법 제205조 및 제28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감정서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좀더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신문에서 감정인으로부터 청취한 사항
3. 전문가의 결정서 - 당사자가 전문가에게 제기한 의문사항에 대한 판단(의견)을 서면형식으로 제출한 것
4. 전문가의 진술 -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청취한 사항. 또는 본법 제53, 168, 27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의 견해표명

제81조 물적증거(증거물)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떠한 물건도 물적증거로 인정된다.
   1)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거나 범죄의 증적을 보유하고 있는 물건
   2)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물건
   2-1)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하였거나 범죄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 금전 및 기타 가치 있는 물건
   3) 기타 물건이나 문서로서 범죄의 발견과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건들은 증거물로서 조사되고 인정되고 또한 형사사건에 첨부되는 바, 이러한 사항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증거물

의 보관절차는 본조 및 본법 제82조에서 정하여진다.

3. 판결선고시 또는 형사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나 명령을 내릴때에는 증거물에 관한 문제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

1) 범죄의 도구가 피의자의 소유라면 몰수하거나 해당기관으로 송부하거나 폐기된다.

2) 유통이 금지된 물건은 해당기관으로 송부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3)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서 당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그 물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나 기관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교부할 수 있다.

4)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하였거나 범죄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 금전 및 기타 가치물은 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에 환수된다.

5) 물적증거인 문서는 최종 보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형사사건과 함께 존치되거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교부된다.

6) 그 외의 물건은 법적 소유자에게 교부되는 바, 그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소유로 이전된다. 증거물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4. 공소제기전절차에서 압수하였으나 증거물로 인정되지 않는 물건은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3조 수사처분 및 법원심리 조서

수사처분조서 및 공판조서는 본법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합할 경우에 증거로서 허용된다.

제84조 기타 서류

1. 기타 서류도 본법 제73조에 적시된 사항을 확인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허용된다.

2. 문서에 담긴 정보는 서술형식 이외에 다른 형태로도 기록될 수 있다. 본

법 제8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된, 요구된 또는 제출된 사진촬영 및 영화촬영, 오디오(음향) 및 비디오(영상)기록, 기타 다른 형태의 자료 저장장치 등도 문서에 해당한다.

3. 문서는 형사사건 서류에 첨부되고 그 보관기관동안 보관된다. 법적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압수된 또는 형사사건에 첨부된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소유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4. 본법 제81조 제1항에 적시된 성질(징표)를 가지고 있는 문서는 물적증거(증거물)로 본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42조 사건의 진실한 상황을 증명하는 일체의 사실은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에 열거된 7가지 종류가 있다.

(1) 물증, 서증

(2) 증인의 증언

(3) 피해자의 진술

(4)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자백과 변명

(5) 감정결과

(6) 검증 및 검사기록

(7) 시청각자료(1996. 3. 17. 본호 신설)

이상의 증거는 조사를 거쳐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어야 비로소 사건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47조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법정에서 공소인, 피해자와 피고인, 변호인 쌍방의 신문, 질문을 거치고, 각방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여야 하며, 또한 사실조사를 거친 이후에 비로소 사건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정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은닉한 것을 조사, 판명한 때에

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사건정황을 알고 있는 자는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생리상, 정신상의 결함이 있거나 또는 나이가 어려 시비를 변별할 수 없고,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48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물증

(2) 서증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의 진술

(5)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자백과 변명

(6) 감정의견

(7) 검증, 검사, 식별, 수사실험 기록

(8)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증거는 조사를 거쳐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어야 비로소 사건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59조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법정에서 공소인, 피해자와 피고인, 변호인 쌍방의 질문을 거치고, 또한 사실조사를 거친 이후에 비로소 사건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정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은닉한 것을 조사, 판명한 때에는 법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사건정황을 알고 있는 자는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생리상, 정신상의 결함이 있거나 또는 나이가 어려 시비를 변별할 수 없고,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Ⅰ. 개관

사실관계의 확정에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라 한다. 본조는 증거의 종류로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를 열거하고 있다. 소위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본원적 증거와 파생적인 증거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Ⅱ. 증거의 개념과 종류

1.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의 종류에 대한 일반이해

증거는 「증거방법 + 증거자료 + 증거결과」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물건이나 사람 자체(ex. 증거물, 증거서류, 증인 등)을 말하고,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ex. 증인의 증언내용, 증거물의 성질 등)을 의미하며, '증거결과'란 증거자료와 그 밖의 증거조사를 통해 얻어진 비언어적인 자료(ex. 증인신문시의 표정이나 태도 등)를 의미한다.

증거는 증명대상(요증사실)과 증거의 거리를 기준으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뉜다. '직접증거'란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ex. 피고인의 자백, 범행목격자, 위조통화), '간접증거'란 범죄사실을 간접으로 추측케 하는 근거가 되는 증거(ex.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 피해자의 옷에서 채취된 DNA,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등)를 의미한다. 한국 형사사소송법에 의하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다(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19];

2013. 0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존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08조). 단,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인정시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함은 물론이다(제308조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증거는 또한 '인적증거'와 '물적증거' 및 '증거서류'로 나뉘기도 한다. '인적증거'란 사람의 진술내용이 증거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증거 등이 그 예이다. '물적증거'란 감각적으로 경험가능한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장물 등이 그 예이다. '증거서류'란 서면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ex. 공판조서, 검증조서 등). 반면 '증거물인 서면'은 서면의 내용이 아닌 서면의 존재상태가 증거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ex. 부동산 사기계약의 매매계약서, 협박 편지 등).

증거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로도 구분된다. '진술증거'란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경우로서 구두에 의한 진술증거와 서면에 의한 진술증거가 있다. 진술증거는 다시 '원본증거'와 '전문증거'로 구분된다. 증인이

19)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원본증거·본래증거이고,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전문증거이다. 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전문법칙(제310조의2)이 적용되고 비진술증거는 요증사실과의 관련성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구별의 의미가 있다.

증거에는 '본증'과 '반증'이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본증'이 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증거)는 '반증'이 된다.

마지막으로 증거는 '실질증거'와 '보조증거'로 구분된다. '실질증거'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간접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이고, '보조증거'는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이다. 예컨대 범행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실질증거, 그 증인의 약한 기억력에 관해 증언하는 증인은 보조증거이다. 보조증거는 다시 '보강증거'와 '탄핵증거'로 나뉘는데, '보강증거'는 실질증거의 증거력을 뒷받침하고 증명력을 보강시키는 증거이고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거를 의미한다.

2.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의미와 종류

(1) 증거의 분류[20)]

(가) 본원적 증거와 파생적 증거

증거는 우선 그것을 얻어낸 원천에 따라 본원적 증거와 파생적으로 나뉜다. '본원적 증거'는 여러 손을 거치지 않고 첫 원천에서 얻은 증거이다. 예를 들면 범행을 직접 본 증인의 말이나 피소자의 자백, 문서의 원본 등에서 얻은 증거이다. '파생적 증거'는 여러 손을 거쳐 얻은 증거를 의미한

20) 이하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95~97면 참조.

다. 예를 들면 남의 말을 듣고 옮기는 증인의 진술, 문서의 사본 등에서 얻은 증거를 말한다. 본원적 증거는 원본증거, 파생적 증거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본원적 증거와 파생적 증거의 증거력(증거능력)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전문증거(파생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태도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다만 본원적 증거에 비하여 파생적 증거는 여러 손을 더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정확성이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파생적 증거를 검토하고 평가할 때에는 더욱 세심하고 신중해야 하며 힘을 더 들일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파생적 증거 특히 남의 말을 듣고 옮기는 말에서 얻은 증거는 그 증거로 되는 사실이나 현상을 처음 인식할 때의 과정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것은 직접 듣고 보고 느낀 사람이 아니라 남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들은 사람에게서 얻어낸 것이므로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어떤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에서 들었으며 또 보았는가를 전해들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문증거의 신용성을 신뢰할 수 없고 반대신문에 의해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생적 증거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그의 첫 원천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증거를 검토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예컨대 떠돌아다니는 말을 듣고 옮기는 말, 출처를 알지 못하는 뜬소문의 전달 등은 그 원천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비록 다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단서로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증거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는 될수록 본원적 증거에 의거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본원적 증거도 철저하게 검토 확인되지

않고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지만 복잡한 과정을 덜 거치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파생적 증거를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즉 본원적 증거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토·확인된 파생적 증거에 기초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파생적 증거의 증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덮어 놓고 무시해 버리는 것은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과학적 증명에 관한 당의 원칙과 근본적 배치된다고 한다.

(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증거는 확정하려는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분류할 수 있다. 확정하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직접증거'이다. 범행을 본 사람의 말이나 범행자 자신의 말에 기초하여 범죄행위를 확정하는 경우에 본 사람의 말이나 범행자의 자백에서 나오는 범죄행위와 부합되는 사실이 곧 직접증거이다.

반면 직접 범죄행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평소에 조직생활이 견실치 못하고 학습을 게을리하며 도덕적으로 부화하고 범행당시 까닭 없이 범죄현장 가까이에 드나들었으며 범죄가 범해진 후 난데없는 돈을 많이 쓴다는 등등의 사실들을 통하여 국가재산을 훔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범행을 증명해 주는 사실들은 곧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분은 증거의 가치를 구분하여 직접증거는 더 믿을 수 있고 간접증거는 그만 못하다는 것을 미리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충분히 검토 확인되는 한 양자 어느 것이나 다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되, 간접증거는 그 하나만으로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예컨대 범죄현장에 피소자의 발자국이 있었거나 피소자의

집에서 범죄행위에 쓴 흉기가 나왔다는 등의 사실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아직 피소자가 바로 범행자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발자국은 다른 기회에도 날 수 있고 흉기는 진범인이 수사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가져다 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다른 사실들과 연관시켜 보지 않고는 증거적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이로부터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은 직접증거에 의한 증명보다 훨씬 복잡하며 그만큼 더 신중하고 치밀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철처히 지켜야 한다고 한다.

① 간접증거로 되는 사실자체가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부터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그 사실이 있은 당시의 구체적 정형물까지도 밝히면서 철저히 검토 확인하지 않고는 어느 하나도 간접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② 확정하려고 하는 사실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실, 현상, 조건들은 간접증거로 될 수 있다. 확정하려는 사실과 같은 원인에서 생긴 사실, 현상 등이 그러한 예이다.

③ 간접증거로 될 수 있는 사실, 현상 기타를 남김없이 찾아내야 한다. 어떤 사실이든지 다른 모든 사실들과 종합적으로 연관시키는 경우에만 증거로서의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④ 간접증거들은 그 모두가 하나로 연관되어 서로 부합되어야 하며 확정하려는 사실과도 부합되어야 한다. 어느 한 고리라도 떨어져 나가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으면 전체가 증거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⑤ 모든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하나라야 하며 이와 다른 그 어떠한 가정도 남김없이 조사·해명되어야 한다.

간접증거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남김없이 수집되어 신중하고 치밀하게

조사·검토되고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춘 경우에라야 증거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가진다고 한다.[21]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가능하지만 그 증거평가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신중한 증거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22]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간접증거의 취급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도 유죄의 심증형성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서도 형성될 수 있다. 즉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단,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인정시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제308조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

21) 같은 지적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35면 : "살인사건의 혐의자가 박아무개라고 가정하자. 그 이유는 살인사건현장에 박아무개의 신분증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그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 평상시에 박아무개와 피해자간에도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에 박아무개는 결근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 모든 간접증거들은 그 모두가 하나로 연관되고 그것들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 살인자라는데로 떨어지게 된다. 만약 이 경우에 박아무개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 출장을 떠났다거나 여행중에 증명서를 분실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른 모든 증거들도 증거적 가치를 상실하며 박아무개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간접증거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그것을 철저히 검토확인한 조건에서 증거로 이용하여야 한다."

22) 비슷한 지적 리황, 사건취급처리에서 간접증거의 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4호, 39면.

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2) 증거를 얻어내는 수단들, 증명수단들

북한 형사소송법이 과학적 증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증명수단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증인의 진술, ② 감정의 결과, ③ 피소자의 진술, ④ 물적증거(증거물), ⑤ 검증조서 및 기타의 서면증거

(가) 증인의 진술

증인이란 범죄와 범죄사실에 대하여 듣고 보고 느낀바 있는 사람으로서 권한 있는 사법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할 의무와 책임을 지니면서 범죄와의 법적투쟁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 형사소송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 그 증거가치를 범죄투쟁에 대한 인민대중의 역할과 관련하여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증인의 진술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 “과학적증명을 위한 수단에서 가장 위력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증인의 진술이다. 그것은 그 어떤 교활하고 음흉한 범죄자도 군중의 눈을 속일 수 없으며 근로대중이 범죄와의 투쟁에서도 주인으로 더욱 각성되고 온갖 범죄자들, 반혁명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군중을 발동시키는 것은 그 어떤 현대적 무기나 기술기재보다 더 위력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지혜는 총명하며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꿰뚫어볼 수 있다. 각성된 군중의 눈과 귀는 그 어떤 교활한 원수들, 범죄자들의 음

흉한 책동도 남김없이 알아낼 수 있으며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은 범죄를 적발하는 귀중한 실마리로,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쓰이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된다. 증인의 진술은 바로 각성된 군중들이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범죄와의 투쟁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형식으로서 북한 형사소송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23]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전문진술 : 듣고 옮기는 말)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부르죠아 형사소송이론을 원칙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사실상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것이다.[24]

북한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과학적증명에 관한 원칙'에 따라 증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도 될수록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증인은 다른 사람들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특히 신중한 문제로 나선다는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화국법령(형사소송법 제22조 및 제17조)에 의해 증인으로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증인적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증인적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대신 공무상비밀과 증인거부(제147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제148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제149조), 선서무능력규정(제159조)을 두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

23)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99면 참조.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28면에서도 "제 아무리 교활하고 음흉한 범죄자도 군중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군중은 도처에 있으면 혁명적으로 각성된 군중은 범죄와의 투쟁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주인답게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2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29면.

①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통역, 감정인이 자기가 참가하여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들은 사건의 조사처리에 참가하여 이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 자료들을 많이 알게 된다. 만약 이들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면 새로 알게 된 사실들, 자료들에 기초하여 이전에 자기가 듣고 보아 알고 있던 것에 수정과 가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야 하는(그것이 실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증인의 법적의무와 모순된다. 결국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시에 증인의 임무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증명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 말하여야 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통역, 감정인으로 참가하지 말고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더 좋다. 만약 그들이 검사, 판사, 통역, 감정인 등으로 참가한다면 비록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하여 무엇인가 미리 알고 있는데서 오는 선입견 또는 편견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그들의 임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②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가 자기가 한 수사, 예심 행위에 대하여 재판에서 증언하려고 하는 경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는 수사·예심과정에서 한 일체의 수사 및 예심행위의 결과를 정확하게 법적 형식으로 문건화해야 한다. 재판소는 필요하다면 바로 이 문건들을 서면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사건의 수사, 예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일군들이 자기가 한 수사, 예심 행위와 관련하여 증언을 한다면 재판의 공정성, 그 판단의 정확성을 대중들에게 설득시키는데 부정적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심문건이 정확하고 명백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그 이상 취급한 일군들이 그 정확성을 증언할 필요는

제기되지 않는다.

③ 변호인이 자기가 맡아 참가하고 있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증언하려고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9조 2항 참조)

이것은 변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제된 변호인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변호권보장에 대한 피소자의 헌법적 권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0년 4월 9일 개정) 제164조[25]]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물론 당의 사법정책을 옹호하며 그것이 정확하게 관철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들에게는 있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길 권리가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 밖에서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특히 변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피소자 또는 그의 가족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까지도 다 증인으로서 말할 임무를 지닌다면 변호인의 기능과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변호인제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변호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여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부여(동법 제149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결함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이해 할 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자

당연하게도 판단능력 및 의사능력에 결함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증인적격을 부인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비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단능력 및 의사능력에 결함이 있는 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연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선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64조** :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나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로 인정하여 증인신문시 선서의무를 면하여 주고 있고, 선서하지 않은 자의 위증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인의 진술을 유무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한 상세한 기준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대목에서도 계급적 및 정치사상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 "증인의 말이 의식적으로 하는 거짓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서는 그가 말하는 사실들을 다른 확실한 사실들과 비교해보면서 그의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환경, 증인의 의식수준과 당성(黨性)의 정도, 사건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피소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으로 나오게 된 동기 등을 이와 결부시켜 잘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계급적 처지와 정치사상적 준비정도이다. 사람의 행동은 그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증인들도 일정한 계급적 처지와 사회정치적 환경속에서 살고 있고 그들의 정치사상적 준비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 의식적으로 거짓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도 근본에 있어서는 증인의 이러한 처지와 사상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좌우된다.

이와 함께 유의할 것은 문제를 피상적으로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을 단순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계급적 처지가 견실치 못하거나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써 곧 그의 말이 거짓일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증인의 말이 실제와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말이 실제와 맞지 않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점을 밝히고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인이 말하는 사실에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식과정에서 생겼거나 기억과정 혹은 상기하여 재현하는 과정에 생긴 것일 수 있다.

우선 증인이 말하는 사실의 정확성여부는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 다시 말하여 그것을 듣고 보고 느낄 때의 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듣고 볼 때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도 잘못 듣거나 잘못 볼 수 있으며 감각기관에 장애가 있어도 잘못 인식할 수 있다. 그밖에도 주·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여 정확한 인식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식한 사실을 기억하는 과정에도 정확하게 상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잘못이 생길 수 있다.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긴장해서 당황하면 알던 것도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는 연령, 성격, 교양정도 등도 관계될 수 있다.

이처럼 증인의 진술에는 본인의 주관적 성실성이 어떠한가에는 관계없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이 생길 수 있다.[26]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밝혀내고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충분히 검토·확인하는 것은 증인이 말하는 사실이 과학적 증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27]

(나) 감정의 결과[28]

감정은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내는 수단으로서 그 결과는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

26) 역시 같은 지적 강희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증거로 되는 조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 "증인의 말에도 자기의 신체적 결함이나 사건발생 당시의 주객관적 요인으로부터 무의식적인 허위가 인입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리해관계에 따르는 증인의 의도적인 거짓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권영민, 언어증거와 실물증거에 대한 리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 "증인은 사건과 리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증인의 사상적 준비상태와 범죄자의 보복과 압력, 매수 등으로 하여 실제와 어긋나게 진술할 수 있다."

27) 이상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01~102면 참조.

28) 이하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03~108면;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30~31면; 원창섭, 형사소송에서 감정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08년 제4호, 33~34면 참조.

"반간첩투쟁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는 것이 어디까지나 기본이고 가장 위력한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학기술적 방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반간첩투쟁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는 것과 함께 여기에 과학기술적 방법들을 옳게 배합하여야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고 강조한다.

범죄를 적발하며 범죄자의 죄상을 밝혀내는 과학기술적 방법에서 주되는 것은 감정이다. 감정을 하면 보통사람들이 도저히 찾아내지 못하며 그들의 눈에 뜨이지도 않는 증거들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 바로 감정의 위력과 범죄자와의 투쟁에서의 그의 커다란 역할이 있다.

범죄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는 그 사건을 밝히고 해결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사실의 과학, 기술, 예술, 기타 해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경우에 많은 부닥치게 된다. 이런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기관들은 그러한 문제의 해명을 해당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에게 의뢰한다.[29] 이러한 의뢰를 받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가 바로 감정인이다. 감정인이 의뢰받은 문제의 해명을 위하여 진행하는 조사, 실험, 분석 기타의 활동이 감정이며, 감정의 결과에 의하여 도달된 결론이 감정의 결과이다. 때로는 감정의 결과를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감정인의 전문지식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고(사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음식물에 유독물은 없는가 등) 이미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시체에서 관찰된 상처로 과연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그만한 분량의 유독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등). 감정인은 이처럼 전문지

29) 원창섭, 형사소송에서 감정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08년 제4호, 34면 : "감정인, 전문가들은 범죄와의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정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원, 예심원 등 사건담당자들로부터 받은 감정의뢰결정이 없이는 감정을 진행할 수 없으며 감정의뢰결정이 없이 진행한 감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식이 없이는 알 수 없고 확신을 못 가지며 또 확정할 수도 없는 사실들을 알아내고 확정하여 그것을 의뢰한 기관들에 알려준다.

감정의 결과는 우선 검증의 결과와 구별된다. 감정의 결과를 기록한 감정서에는 검증의 결과에서처럼 발견한 사실과 현상을 그대로 기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인의 견해, 과학자,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판단이 그 속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정의 결과는 또한 증인의 진술과도 구별된다. 감정인과 증인이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결과와 증인의 진술사이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감정인은 해당 사건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들과 관계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으로 하여 정해지는 증인과 달리 그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 감정인은 다른 사람들과 바꿀 수도 있다. 감정인은 증인처럼 자기가 이전에 보았거나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사실을 분석하며 설명한다.

감정은 해당 권한 있는 기관들의 결정 또는 피소자(피심자)나 소송참가자들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조사, 심리에 전문지식이 요구될 때에 실시된다.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의 범위는 고정불변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확정할 수 있던 문제도 그 전문지식이 보편화되어 누구나 다 아는 문제로 되면 따로 감정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 사법일군들이 특수하게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에는 그에 쓰이는 전문지식의 부문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법의감정'(죽음의 원인, 상해의 정도에 대한 감정 등), '법정신병감정'(피소자나 증인의 정신상태의 감정 등), '범죄수사학적감정'(문서, 무기, 지문의 감정 등), '부기감정'(부기계산, 결산, 부족액확정 등에 관한 감정),

'화학감정'(각종 물질, 반점 등의 화학성분감정 등), 각종의 기술감정 등이 있고 기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어떤 분야의 과학지식이든지 감정에 쓰일 수 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감정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감정이 의무적이다(형사소송법 제205조) : 즉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의 정도, 정신병증상이 있는 피소자나 증인의 정신상태는 반드시 감정하여야 한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예심 기관이나 재판일군들 가운데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정을 시켜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증인으로서 진술한 것이 있다고 해도 감정은 따로 시켜야 한다. 그것은 감정을 시켜야 그 결과를 집체적으로 검토하여 과학적증명의 요구에 맞게 정확한 판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의 결과는 그것이 해당 전문가의 과학지식에 기초한 권위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단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감정은 그것이 실제 권위가 있고 정확한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이 권위가 있고 정확한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전문감정기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 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감정인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수준의 자질과 경험이 없고 사건에 공정하게 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감정을 하여서는 과학적 증명의 목적에 맞는 정확하고 권위 있는 결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감정인의 자격문제와 함께 배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의 결과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선 감정인의 결론의 기초로 된 사실적 자료가 확실하며 완전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그 결론의 기초로 된 자료들이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도로 빈틈이 없고 완전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사실적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거나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알려진 경우에는 감정인의 결론에도 의문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감정의 결과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또한 그 과학 또는 기술 분야의 현재의 발전수준에 비추어 감정인에게 그러한 문제에 답변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감정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분야의 발전수준으로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확신성 있는 답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감정인의 결론에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감정의 결과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또한 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료를 조사하는 과학적 수법이나 조건이 옳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법일군들은 감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조사수법이나 조건이 과학적 판단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수법과 조건의 과학성에 의문이 있다면 감정의 결과에도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응당하다.

감정의 결과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또한 감정의 결과와 감정과정에 밝혀진 자료가 일치하는가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감정의 결과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 감정을 한 감정인의 자질을 잘 알아보는 것이다. 감정인의 자질이 불충분하다면 그의 감정도 과학성과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이밖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감정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나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체 사건과 관련시켜 한 면밀한 검토가 없이 또 그

러한 감정이 그 과학분야에서 가능한가 하는데 대한 조사확인도 없이 그저 그 부문의 구체적 조건들을 모르는데서 오는 단순한 불신에 기초하여 동의할 것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감정의 결과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 절차에 따라 그 사건의 다른 자료들과 대비하는 것이다. 감정의 결과가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이미 확정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확실치 못하거나 혹은 예심이 불완전 또는 불충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곧 감정의 결과를 의심할 근거는 없다.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모순되고 맞지 않는 것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를 충분히 밝힌 다음에라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검증의 결과[30]

검증결과도 형사사건을 밝히고 확정하는데 쓰이는 증명수단이다. 검증결과는 범죄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확인·고착시키는 방법으로 얻어내는 증거이다.

검증의 목적은 사건해결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찾아내어 고착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범죄수행당시의 정형, 범행의 동기 등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정들을 알아내려는데 있다.

검증은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보통 '범죄현장검증', '시체검증'(검시), '검진', '심리실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검증 역시 감정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예심방법의 한 형태이지만 감정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

30) 이하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30~31면 참조.

[표 1] 감정과 검증의 비교

차이점		내 용
수단	감정	보통사람의 눈으로는 찾아내거나 구분하기 힘들므로 언제나 과학기술적 수단을 요구한다.
	검증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찾아내거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가 기술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장소	감정	일정한 기계,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검증	임의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자격	감정	국가의 전문기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증이나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다.
	검증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감정인 등이 할 수 있다.
결과	감정	감정서에 감정인의 견해와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검증	검증조서에 검증한 일군의 견해와 의견을 첨부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고찰시킬 의무만이 있다.

(라) 피소자의 진술[31)]

피소자(피심자)가 자기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와 그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진술도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피소자의 진술에서 나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그 정확성이 확인되는 다른 확실한 사실과 맞는 경우에는 문제를 밝히고 확정하는데서 무엇보다도 힘 있는 증명력을 가진다. '피소자의 말'에는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의 말도 포함된다.[32)]

31) 이하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08~111면 참조.
3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5면.

부인하지 못할 자료 앞에 꼼짝 못하고 굴복한 피소자(피심자)의 진술 즉 이미 쥐고 있는 자료와 맞아 떨어지고 아무런 의문도 남가지 않는 피소자(피심자)의 진술보다 더 확실한 유죄의 증거는 없는 것이다.

물론 피소자(피심자)의 진술에서 얻은 증거들도 철저히 검토·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피소자는 형사소송에서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로부터 그가 말하는 사실들은 특히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피소자의 진술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귀중한 증거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다른 확실한 증거로써 철저하게 검토·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소자의 진술은 증명의 수단으로서 증거를 얻어내는 귀중한 원천으로 되는 반면에 그것은 피소자가 범죄에 대한 자기의 책임에 대하여 밝히고 해명하는 변호의 수단으로도 된다. 피소자는 사건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동시에 형사책임을 직접 추궁당하고 있는 자로서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피소자의 진술이 과학적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받을 때뿐 아니라 검토할 때에도 경각성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피소자의 진술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받을 때에 정확성을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피소자의 진술을 받을 때에 정확성을 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소자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미리 과학적인 증거를 쥐고 심문하면 그가 바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분간할 수 있고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학적인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피소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거절하더라도 그에는 관계없이 단호하고도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심문하면

진술을 강요하는 일도 없게 되고 언제나 피소자의 말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분간할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피소자의 진술을 받을 때에 정확성을 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강압적 방법으로 심문하여 진술을 강요하면 진짜와 가짜를 혼동하게 만들며 진술에서 얻은 증거를 믿을 수 없게 함으로써 사건해결에 엄중한 후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법령은 그 어떠한 형태로나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피소자로 하여금 본의 아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형사소송법 제37조는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피소자의 진술을 받을 때에 정확성을 기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피소자에게 충분히 밝히고 주장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형사책임을 묻는데 대하여 피소자에게 필요한 해명과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 측면에서 완전하게 얻어낼 수 있고 따라서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다. 또한 거짓진술의 동기를 찾으며 진실을 밝힐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고 피소자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의 뉘우치는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문제를 옳게 처리할 수도 있다.

피소자의 진술은 다음으로 그것을 검토할 때에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검토에 관한 일반절차에 따라 자세하게 검토하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부정하지 말고 의문이 풀릴 때까지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범행자 본인의 말이니까 틀림없을 것이라든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의 말이니까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덮어놓고 믿거나 부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기의 죄를 인

정하는 진술이든, 인정하지 않는 진술이든 다 같이 신중하게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한다면 기소장이나 판결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피소자의 진술에서 중요한 것은 피소자의 자백 즉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범행에 대하여 말하는 진술이다. 자백에서는 피소자의 죄행을 확정하며 그 사건의 진상, 범죄의 뿌리와 연루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귀중한 증거를 얻어낼 수 있다.

피소자가 자백을 하면 문건의 진상이 명백하여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백의 증거력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자가 자백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그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피소자는 때로 보다 엄중한 죄를 숨기기 위하여 가벼운 죄를 자백할 수도 있고 또 범행의 진짜 의도를 숨기거나 진범인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자백을 할 수도 있다(특히 우리 당의 관대정책을 악용하여 가짜자백을 하는 악질적인 반혁명분자도 있을 수 있다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가져야 한다).[33] 피소자가 주관적으로는 자기의 죄행을 성실하게 털어 내놓는 경우에조차도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피소자의 자백도 경각성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세심하게 검토·확인되어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자백도 평범한 한 개의 증거일 따름이다. 자백을 얻었다고 하여 곧 조사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증거수집을 더 하지 않는 것은 경각성 없는 태도이며 책임성 없는 태도이다. 악질적인 범행자들은 바로 그러한 무경각한 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자백을 가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3) 역시 같은 지적 강희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증거로 되는 조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 “피심자, 피소자의 말에는 자기의 범죄를 될수록 감추고 형벌을 가볍게 지려는 범죄자들의 일반적 심리로부터 거짓이 내포될 가능성이 크다.”

피소자가 자백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필요한 증거들은 미리 다 수집하여야 하며 피소자가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거들을 더 수집보충하면서 제때에 철저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피소자가 나중에 가서 자백을 뒤집어 엎는 경우에도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피소자의 진술에는 공동피소자 또는 제3자의 죄행을 폭로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기의 책임을 가볍게 하거나 남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에서 얻은 증거에 대하여서도 비판적으로 대하며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이 다른 증거들로써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을 비난하는 대상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진술의 증거적 의의를 전혀 부인하는 것도 부당하다.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정확성이 확인되면 증거적 의의를 가진다.

(마) 물적증거(증거물)[34]

물적증거(증거물)는 과학적증명의 수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물적증거란 범행의 도구로 쓰였거나 범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거나 피소자의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 기타 범죄를 밝히고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쓰일 수 있는 물체들과 문서들을 가리켜 말한다.[35]

---

34) 이하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11~113면 참조.

3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5면 : (1) 범죄를 저지르는데 쓴 물건이란 예컨대 범죄에 리용된 흉기나 도구, 시약, 위조문건 같은 것이다. (2)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이란 예컨대 범죄과정에 남긴 걸쇠괼 흔적이 있는 자물쇠, 파괴흔적이 있는 출입문 같은 것이다. (3) 범죄의 대상으로 된 물건이란 예컨대 범죄자가 훔친 문서, 돈, 의류들, 파손시킨 설비, 시설 같은 것이다. (4) 이외에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물건이란 예컨대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손흔적, 발흔적, 피, 머리칼, 담배꽁초 같은 것이다. 범죄자가 어느 기관의 금고에서 돈을 훔쳐 테레비존수상기를 구입하였다면 그 테레비존수상기는 돈의 소비처를 밝히는 증거물로 보아야 한다.

물적증거는 범죄수사학적 기술수법이 발전함에 따라 그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종래에는 찾을 수도 이용할 수도 없었던 미세한 물질이나 흔적까지도 스팩트로분석법, 재판사진, 재판화학 등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찾아내어 귀중한 과학적증거로 리용하고 있다.

오늘 범죄자들의 준동형태와 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은 더욱 음흉하고 교활하여졌다. 그들은 쉽게 꼬리가 잡힐 수 있는 그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애쓴다. 이처럼 간악한 계급적 원수들을 제때에 잡아내자면 군중의 힘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는 한편 현대적 과학기술수단들과 과학기술적 방법들을 더욱 연구·발전시켜 원수들, 범죄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불가피하게 남겨놓게 되는 눈에 뜨이지 않는 흔적들, 물체들, 현상들까지 남김없이 찾아내야 한다.

물적증거는 과학적 증명을 위한 귀중한 증거를 줄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을 검토·확인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물적증거가 검토확인 되면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과학적증명의 수단으로서의 물적증거의 역할이 이처럼 큰 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제때에 남김없이 수집하는 것과 함께 정확하게 등록, 고착하고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물적증거는 그것을 수집하면 우선 제때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그것을 어떻게 발견 또는 수집하였는가에 따라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조서',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 '증거물발견조서' 등을 작성하여 매개 물적증거를 어느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견 또는 수집하였는가를 밝혀두는 방법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8조 참조).

물적증거는 또한 제때에 정확하게 '고착'해두어야 한다. 고착방법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검증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검증은 입회인을

세우고 하며 조서에는 작성자와 함께 입회인이 도장을 찍는다. 검증조서에는 물적증거의 명칭, 크기, 상태, 특징 등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확인해둔다. 변하기 쉬운 것, 없어지기 쉬운 것은 사진을 찍어두고 조서에 그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사진을 붙인다(형사소송법 제38조).

물적증거를 그것이 발견된 상태 그대로 고착하기 위하여서는 흔적들의 모형을 작성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방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학적 증거고착방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땅에 생긴 흔적, 벽, 바위, 기타에 생긴 흔적 등 그 자체를 가져다 보관할 수 없는 물적증거들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수집된 것 가운데서 쓸모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적증거는 수사, 예심 기관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정으로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기록에 첨부하는 것은 반드시 사건에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야 하며 증거물첨부결정(판정)서에는 그것이 사건에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지적되어야 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물적증거는 또한 그 특성에 알맞게 잘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물적증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한다. 물적증거는 사건기록과 함께 그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수사, 예심 기관 또는 재판소가 이를 보관한다. 일반적으로 물적증거는 잘 포장하고 봉투에 넣어 기록에 첨부하거나 정해진 금고, 창고 기타에 보관한다. 그러나 용적 및 기타 성질에 따라서 기록에 붙이거나 수사, 예심 기관 또는 재판소가 보관할 수 없는 물적증거는 가능하면 봉인을 하여 수사, 예심 기관 또는 재판소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관계자들에게 보관하도록 맡긴다(형사소송법 제40조 참조). 이때에는 보관할 책임을 맡은 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이 사실을 증거물첨부결정서에 밝힌다.

증거들이 썩거나 깨지기 쉬운 것으로서 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

이라면 그것을 소비부문 기타 해당하는 기관들에 넘겨 처분하고 근거문건을 검증조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붙인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 예심원, 검사, 재판소에 넘겨줄 때에는 소송기록과 함께 증거물도 넘겨준다(형사소송법 제41조 참조). 즉 증거물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수사, 예심 기관 또는 재판소가 보관한다. 그러나 사건의 조사, 심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판정)으로 돌려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조).

물적증거에서 얻어지는 증거도 다른 모든 증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증명의 토대로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정확성이 철저히 검토확인되고 사건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평가되어야 한다. 간악한 범죄자들이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은 수사와 예심을 혼란시키며 범죄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짜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범죄와의 관련 없이 생긴 흔적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물적증거는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정확성이 철저하게 검토확인 되고 다른 모든 증거들과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바) 서면증거(증거문서)[36]

서면증거(증거문서)도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면증거란 검증조서를 비롯한 소송서류들 및 기타 그 내용이 증거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들, 예컨대 검열조서, 각종 인증서, 증명서 등을 가리켜 말한다. 운수기업소에서 작성한 운행일지, 자재창고의 입출고대장,

36) 이하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13~114면 참조.

진술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서면증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범죄현장 및 증거물의 '검증조서'들이다. 그것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사실들, 사건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의 표징들, 특성들, 거기에 있는 흔적들 즉 온갖 증거들이 이 조서들에 고착되어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증거물검증조서는 증거물이 후에 없어지거나 변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증거물이 변하거나 없어져도 조서에 있는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서는 오직 그 내용이 사건에 대하여 의의를 가질 때 즉 적혀있는 내용에 증거로 되는 사실 기타가 밝혀져 있을 때에만 서면증거로 된다. 만약에 문서가 범행의 수단으로 쓰이었거나(예컨대 위조증명서) 거기에 범죄의 흔적이 있는 경우 또는 훔쳐낸 기밀문건 등과 같이 범행의 목표로 된 경우 혹은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이 담긴 문서로서의 그 물체가 바로 사건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예컨대 사건현장에 떨어진 신분증명서) 다른 문서로 대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서면증거인 것이 아니라 물적증거로 된다. 다시 말해 문서의 내용과 함께 물건의 특징, 상태, 거기에 있는 흔적이 증거적 의의가 있는 것은 증거문서가 아니라 증거물에 해당한다. 예컨대 삐라, 위조한 회계장부, 범죄를 증명하는 편지 같은 것 등이다.[37]

서면증거는 오직 그 내용이 증거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문서로 바꿀 수도 있다. 예컨대 피소자의 군무정형에 대한 직장책임자의 확인서대신에 소속 근로단체의 확인서를 받는 등이다. 이것이 물적증거인 문서와 구별되는 점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서면증거'와 '증거물인 서면'에 대한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서면증거도 그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사건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를 평가하여야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공증문건과 같이 내용의 정확성이 공인

3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6면.

되는 것도 있고 문서의 성질상 검토할 여지없이 내용이 명확한 것도 있지만 작성자의 인식의 정도, 착각, 실수 기타로 하여 문서의 내용이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면증거의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내용도 그것이 사건에 어떤 의의를 가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성립의 진정(형식적 및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 또한 검토과정에서 확인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1조 (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73조 증명해야 할 사항

1. 형사사건의 처리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범죄사실(범죄를 행한 시간, 장소, 방법 및 기타 사항)
   2) 죄를 범한 자의 유책성, 유책성의 유형(고의 또는 과실), 동기
   3) 피의자의 신원을 특징 지우는 사항
   4)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의 성질과 정도
   5) 위법성을 배제하는 상황 및 행위의 가벌성
   6) 형벌을 감경 또는 가중하게 하는 사항
   7) 형사책임이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는 사항
2. 범죄를 조장하는 요인들도 규명되어야 한다.

제85조 증명

증명은 본법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 검사, 평가하는 데에 있다.

Ⅰ. 개관

본조는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사실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범죄의 표징을 이루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하였는가 같은 문제는 증거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즉 무겁게 보는 사유, 가볍게 보는 사유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로 밝혀야 한다.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은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증거로 입증되어야 할 대상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밝히고 확정하여야 할 사실들을 반드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증명하는 것은 '범죄사건을 과학적증거에 기초하여 조사처리할데 대한 원칙'의 본질적 요구이다.[38] 이 원칙을 실천에 구현하자면 우선 증거로써 증명하여야 할 대상, 다시 말하여 증거로써 확정하여야 할 사실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밝혀야 할 대상들은 꼭 같지는 않다. 그것은 범죄자체가 다종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밝히고 조사해야 할 대상에서 서로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러므로 북

38) 이하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6~88면;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36~40면 참조. 한은주, 형사증거가 립증하는 사실관계,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참조.

한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공통점을 증명의 대상으로 보고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히 입증하여야 할 대상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객관적·주관적 표징들이 그 대상이다.

① 형벌각칙조항들이 규정하는 범죄행위의 구체적 표현들, 다시 말하여 범죄의 환경, 시일, 장소, 방법 기타 범행의 정형들과 범죄로 되는 표징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② 범죄적 결과,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사회관계(법익)는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같은 범죄행위라도 구체적인 목적이나 지향점에 따라 침해되는 사회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국가재산을 횡령한 것이 개인적인 이기주의적 목적에서 행해졌다면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한 범죄로 되지만, 그것이 반혁명범죄행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려는 목적하에 행해졌다면 조국반역행위로서 국가의 안전을 침해한 범죄가 성립한다.[39]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와 그 결과와의 사이의 인과관계 즉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③ 행위의 위법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을 배제하는 사정의 유무가 문제로 될 때에는(북한 형법 제15조의 정당방위, 제16조의 긴급피난 등) 그것도 증거로써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기 때문에 몽둥이로 쳐서 중상을 입혔다면 외형상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범죄적 양상을 띠고 있지만 정당방위로서 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상기후현상으로 갑자기 무더기 비가 내려 제방뚝이 터질 위험에 처하였을 때 그로부터 입을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

3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37면.

하여 '물뽑기 탑'(갑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농작물에 일정한 피해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긴급피난으로서 범죄로 볼 수 없다.[40)]

④ 죄를 범한 자(범죄주체)가 누구인가를 증거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죄가 범해진 것이 확인되는 조건에서는 범죄자를 적발·확정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선결적인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것은 책임적이고 신중한 문제로서 역시 증거에 기초하여 의문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피소자(피심자)가 바로 죄를 범한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⑤ 피소자(피심자)가 법령이 규정한 형사책임년령 또는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년령에 이르렀는가를 증명하여야 한다. 북한 형법상으로 만 14살 미만의 소년이나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북한 형법 제11조, 제12조). 이 문제는 의문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문이 있고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⑥ 일정한 직책에 있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범죄로 되는 표징의 하나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직책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공무원범죄나 신분범의 경우에 문제된다.

⑦ 고의, 과실 등 범죄의 주관적 표징들이 확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범행자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증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⑧ 개별적사건에서 범행의 동기가 범죄의 필수적 표징으로 되거나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

40)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39면.

⑨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건과 가볍게 보는 조건이 범죄사실 자체로써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

⑩ 범행자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에 따르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의 범행자의 정치적환경과 경력 및 기타 개별적 특정, 정치·도덕생활의 정형, 혁명과업에 대한 태도 등 사건처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의 사실들이 다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구체적사건에 따라 증명하여야 할 구체적대상과 구체적 범위가 매개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⑪ 범죄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의 성격과 범위도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형사책임의 정도와 손해보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것이므로 역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

동시에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을 취급하고 처리할데 대한 원칙'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들을 밝히고 확정하는데 기초로 되는 증거자체가 철저하게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것이 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거로 되는 사실, 현상, 조건 기타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확실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그 의문을 밝혀야 하며 어느 것이 옳은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증거로 되는 사실, 현상, 조건 기타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로써 확정하여야 할 대상으로 된다.

반면 아무런 의문이 없는 사실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백한 사실들, 자연과 사회의 확증된 법칙 등은 물론 증명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32조 (증거의 수집, 리용)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리용할 수 있다.

해당 법기관은 군인, 종업원들이 사회에 나와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하기 위한 인민보안, 검찰기관의 수사, 예심과 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91조(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43조 재판인원, 검찰인원 및 수사인원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및 범죄사안의 경중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 협박, 유인, 기만 및 그 밖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반드시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사건의 정황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공민으로 하여금 증거를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마련하고,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또한 그들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제45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관련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 조사할 수 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증거에 대하여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증거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또는 증거를 훼손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반드시 법적 추궁을 받는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49조 공소사건의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인민검찰원에서 책임지고, 자소사건의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자소인이 책임진다.

제50조 재판인원, 검찰인원 및 수사인원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및 범죄사안의 경중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와 위협, 유인, 사기 등 그 밖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유죄 사실을 입증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 반드시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사건의 정황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공민으로 하여금 증거를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마련하고,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또한 그들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제5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관련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 조사할 수 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법률집행 및 사안조사과정 중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 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되는 증거에 대하여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증거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또는 증거를 훼손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반드시 법적 추궁을 받는다.

Ⅰ. 개관

본조는 증거수집기관, 증거수집절차의 법정주의, 해당 법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Ⅱ. 증거의 수집 및 이용

1. 증거수집기관

증거수집기관은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이다. 수사 및 재판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증거수집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헌에서는 "증거의 수집과 이용에서 제한을 받는다면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며 범죄와 투쟁을 정확하게 벌릴데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무엇보다 증거의 수집에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41],"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요구를 구현하여 해당 권한 있는 일군들은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제한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확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물을 충분히 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42] 또한 법문의 해석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문헌에서는 "수사원, 예심원은 증거수집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건조사를 맡은 수사원, 예심원이 증거의 제출 또는 진술이나 감정, 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를 하면 누구든지 그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43]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수사할 권한과 의

4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4면.
42)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94면.
4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7면.

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제46조), 범죄수사를 위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원칙적으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나(제140조 제1항), 이 경우에도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성이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를 직접 수집할 수도 있다(동조 제2항). 수사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승인을 받아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즉 현행범의 체포, 범죄자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부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의 승인 없이도 범죄자의 체포 및 증거물의 수색·압수가 가능하다(제142조).[44]

'예심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제191조). 예심원의 임무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데 있기 때문이다(제147, 제148조).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제157조),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제253조).

'재판소'는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제320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증거를 더 수집할 수도 있다(제321조).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증거이용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범죄자의 가족, 친척이나 어린이 또는 사건해결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4) **북한 형사소송법 제142조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였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자의 진술, 공모자의 진술도 그것이 충분히 검토·확인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45]

2. 증거수집절차의 법정주의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증거수집절차의 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설명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증거의 확보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함을 잘 말해준다 : "범죄와 투쟁하는 일군들이 범죄자를 잡아내며 그의 죄상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과학적증거들을 남김없이 찾아내자면 주관주의와 독단을 없애고 군중들에게 튼튼히 의거하는 한편 증거를 얻어내기 위한 심문, 감정, 검증, 수색, 압수 등을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법령이 금지하는 비법적 방법과 절차,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증거는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4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수사법정주의(제199조 제1항 단서[47])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48])과 유사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4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7면.

46)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9~90면.

4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48)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3. 해당 법기관의 협력의무

군인, 종업원들이 사회에 나와 일반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기관은 동 사건을 취급처리하기 위한 인민보안, 검찰기관의 수사, 예심과 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기관에 대해 수사·재판기관의 증거수집활동에 적극 협력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제33조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증거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43조 재판인원, 검찰인원 및 수사인원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및 범죄사안의 경중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 협박, 유인, 기만 및 그 밖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반드시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사건의 정황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공민으로 하여금 증거를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마련하고,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또한 그들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5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관련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증거

를 수집, 조사할 수 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법률집행 및 사안조사과정 중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 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되는 증거에 대하여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증거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또는 증거를 훼손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반드시 법적 추궁을 받는다.

Ⅰ. 개관

본조는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1)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의존할 것, (2)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것(과학수사원칙 천명) 그리고 (3) 인민대중과 기관의 수사협력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Ⅱ.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1.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증거를 수집함

본조는 수사기관 등이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적증명의 공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증거의 수집을 잘하는 것인데, 증거의 수집을 잘하자면 증거를 잘 찾아내어야 하고 증거를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각성된 군중들의 힘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특이한 규정이다.

범죄와의 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일성의 교시에 근거하여 군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기만 하면 아무리 교활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군중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야 만다. 그리고 실로 군중을 발동하고 군중에 의거하는 것은 증거수집의 가장 힘 있는 방법으로 된다. 그러면서 범죄와의 투쟁의 주인으로 각성된 군중의 힘과 지혜는 어떤 현대적 기술기재보다 더 위력하다고 한다.

그러나 군중은 저절로 그러한 힘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와의 투쟁에서도 군중의 힘과 지혜는 그 투쟁을 맡아 수행할 임무를 지닌 일군들의 책임적인 조직동원사업이 안받침 되어야 높이 발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49]

2.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것(과학수사원칙 천명)

본조는 증거를 찾아냄에 있어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적 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거를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주인으로 각성된 군중들의 힘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여기에 과학기술적 방법들을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50]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문이다.

현대적인 기술·기재들과 과학기술적 방법을 쓰면 아무리 알아내기 어렵고 분간하기 어려운 흔적과 물질도 찾아내고 분간할 수 있으며 전과는 물론 냄새나 소리까지도 잡아내고 가려낼 수 있다. 이로부터 범죄와 투쟁하는 일군들이 범죄자를 잡아내며 그의 죄상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과학적증거들을 남김없이 찾아내자면 주관주의와 독단을 없애고 군중들에게 튼튼

49) 이상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9면 참조.
5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8면.

히 의거하는 한편 증거를 얻어내기 위한 심문, 감정, 검증, 수색, 압수 등을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51]

3. 인민대중과 기관의 수사협력의무

북한 형사소송법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증거수집과 관련한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한 있는 기관들이 증거의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를 하면 누구든지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52] 제한 없는 증거수집 및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협력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199조 제2항)한 것,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272조)과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조회·송부요청을 받은 기관에게는 보고·송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수사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임의수사·임의요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53]

5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90면.
52)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84면.
53) 다수설임. 손동권, 형사소송법, 2010, 230면 참조.

제34조 (증거의 고착)

찾아낸 증거는 진술서, 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사진을 찍거나 략도를 그리거나 록음, 록화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진술서, 조서에 밝힌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84조(물적 증거 보존) 가능하다면 물적 증거는 수사원 및 예심원, 검사, 법원의 명령에 의거하여 시각적 기록으로 자세하게 설명되거나 가능하다면 사진으로 보존,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물적 증거는 형사소송 기록과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특정 자료의 크기나 양 또는 기타 사유로 형사 소송 기록과 함께 보존되지 못할 경우 사진을 찍거나, 가능하다면 수사원 및 예심원, 검사,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봉인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사건의 기록에 대한 적절한 인증이 필요하다.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관으로 혹은 한 기관에서 타 수사 및 조사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다른 검사 혹은 법원으로 회부되거나 한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될 때 물적 증거는 제2항 혹은 현 조항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사건의 기록과 함께 이송되어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증거고착'이란 찾아낸 증거사실이 달라지지 않게 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증거고착의 기본은 진술서, 심문조서, 수색, 압수조서, 검증, 검진조서, 심리실험조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도 증거고착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공판조서의 작성(제48조, 제51조), 압수·수색·검증조서의 작성(제49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244조), 참고인 및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2) 등이 그것이다.

Ⅱ. 증거의 고착 방법

진술서 또는 심문조서로 고착하여야 할 내용을 사람의 직위, 직종을 고려하면서 확증서, 확인서로 고착하거나 범죄혐의자, 범죄자로부터 비판서 같은 것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고착의 보조적 방법인 사진, 도면, 녹음, 녹화와 같은 것으로 찾아낸 증거를 고착한 경우에도 해당한 진술서와 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혀놓아야 한다. 예컨대 범죄현장검증이나 피심자심문과정을 녹화한 경우에도 범죄현장검증조서나 피심자심문조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 녹화한 사실과 녹화테프의 보관정형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손흔적, 발흔적 같은 것을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찾아내고 고착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54)]

참고로 북한 형사소송법 제5절은 '형사소송문건'(조서) 작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55)]

5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8면.

55) **북한 형사소송법 제5절 형사소송문건**

제74조 (형사소송문건작성의 목적)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고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문건을 작성한다. 형사소송행위와 결과는 문건에 고착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75조 (형사소송문건의 종류) 형사소송문건에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준비, 재판심리단계에서 작성하는 결정서, 진술서, 조서, 기소장, 판정서, 판결서 같은 것이 속한다.

제76조 (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형사소송문건에는 작성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소송행위의 법적근거와 진행과정, 결과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히고 관계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수정, 보충, 삭제한 곳에는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제77조 (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형사소송문건은 법에 따라 보게 되어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없다.

제35조 (증거의 검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자체를 분석하거나 확인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하는것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291조(동전)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87조 증거의 검사

증거의 검사는 수사관/예심관/검사/법원이 이미 수집된 다른 증거와의 비교, 출처의 확인, 검사 중인 증거를 보강하거나 반박하는 다른 증거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Ⅰ. 개관

본조는 수집된 증거의 검토에 대한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Ⅱ. 증거검토의 방법

증거의 검토란 수집된 증거의 정확성여부를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56] 과학적증명을 위하여 거치는 공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수집한 증거를 잘 검토·확인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증거의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 ≪증거는 그 정확성이 철저히 검토확인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립증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범죄자가 자백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그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4권, 484면).

증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관련기관이 수집한 증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과 원인으로 실제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선 간첩을 비롯한 반혁명적대분자의 진술에는 물론

56) 이하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91~92면.

이고 일반범죄를 범한자들의 진술에도 그들의 계급적 처지 또는 조직생활이나 사상생활의 낙후성에서 오는 불건전한 사상의식상태로부터 의식적인 거짓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확인도 없이 범행자의 진술에 환상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한다면 교활한 범행자들에게 농락당할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로 전해주는 사실이나 감정과 검증의 결과 또는 증거물, 증거문서까지도 이러저러한 원인과 조건으로 실재와 맞지 않는 부정확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증거로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확한가 여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저하게 검토·확인하는 것이 범죄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증거를 검토·확인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그 증거를 확인 또는 부인하는 새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② 이미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확인한 다른 증거와 대조·확인하는 것이다. 대조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점, 부정확한 점을 찾아내고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정한다.

③ 증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증거물, 증거문서 기타 각종 물적 증거들을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검토·확인하며 증인의 말, 감정결론 기타를 그 자체에 있는 논리적 일관성, 정확성이 어떠한가 하는 견지에서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의 확실성이 충분히 확인된 증거라야 그것을 기초로 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증거의 평가)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확인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련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71조(증거 평가) 법원, 검사, 수사원, 예심원은 법과 사회주의 사법정신에 입각하여 종합적인 정황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통해 내적 신념에 따라 증거를 평가한다.

어떠한 증거도 법원, 검사, 수사원, 예심원에 대해 사전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87조 증거의 검사

증거의 검사는 수사관/예심관/검사/법원이 이미 수집된 다른 증거와의 비교, 출처의 확인, 검사 중인 증거를 보강하거나 반박하는 다른 증거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제88조 증거평가의 원칙

1. 각각의 증거는 관련성, 허용성, 신빙성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수집된 모든 증거는 전체로서 형사사건을 해결하는데 충분성 여부로 평가한다.
2. 본법 제7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검사/예심관/수사관은 그 증거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3. 검사/예심관/수사관은 혐의자나 피의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자신의 발의로 특정한 증거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본법 제234조 및 제23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정한 증거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자유심증주의(증거평가자유원칙)

1. 법관/배심원/검사/예심관/수사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사건에 현재하는 총체적 증거에 근거해서 자신의 내부적 확신에 따라 증거를 평가한다.
2. 어떠한 증거도 사전에 정해진 힘을 갖지 않는다.

Ⅰ. 개관

과학적증명을 위한 공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옳게 평가하는 것이다. 증거가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밝히고 확정하는 기초로 쓰이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평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의 매개 단계에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결국 수집된 증거를 평가한데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증거의 평가는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한 다음에 따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검토하는 과정자체가 곧 증거의 평가와 결부되어 진행된다.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증명력)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57]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도 증명력의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Ⅱ. 증거의 평가

증거의 평가에는 개별적 평가 및 종합적 평가가 있다. 즉 형사사건에서 증거들은 개별적 증거들에 대한 분석적 평가뿐만 아니라 종합적 평가를 거쳐 비로소 사건을 해결하는 기초로 쓰인다.[58]

---

57) 북한 형사소송법 및 교과서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증거가 어떤 사실의 증명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 자격)과 '증명력'(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제29조 제2항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되어야 사건해결의 기초로 쓸 수 있다"는 규정도 증거의 자격과 가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증거를 언급한 법문이나 서술문장의 맥락에 따라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58) 이하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92~95면.

1. 증거의 개별적 평가

증거의 개별적 평가란 그 증거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증거의 정확성과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피소자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증거가 정확하고 실제와 맞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이나 행동이 피소자의 범죄적 의도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

범죄적 의도에서 한 행동이나 발언이라고 평가되면 그 증거가 피소자의 범행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범죄적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되면 반대로 피소자의 무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증거공통의 원칙[59]). 이처럼 매개 증거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증거의 개별적 평가이다. 물론 증거의 개별적 평가는 다른 증거와 유리되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에 다른 증거들과의 연관속에서(특히 간접증거물) 진행된다.

2. 증거의 종합적 평가

'증거의 종합적 평가'란 수집된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서로 연결시켜본 결과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으며 범행자는 누구이고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며 범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 곧 증거의 종합적 평가이다.

증거의 개별적 평가와 종합적 평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선 매개 증거를 분석하고 그것이 범죄사실과 어느 정도 어떻게 관련을 가지고

59)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법관의 증명력 판단은 신청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로 다 사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있는가, 다른 증거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결정하며 또한 매개 증거가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서 가지는 의의를 확정한데 기초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고 사건에 대한 총적인 결론, 즉 증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3. 자유심증주의의 천명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명력의 판단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일임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특히 이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법률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자유심증주의)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증거평가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도 본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헌법 제140조에 규정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할 데 대한 원칙'에는 바로 재판사건을 담당·처리하는 매개 일군들이 재판정에서 조사·검토하는 모든 증거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법령대로만 평가·처리할 데 대한 요구가 구현되어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증거의 평가는 범죄사건을 조사·처리하는 매개 일군들이 국가의 법을 잣대로 삼아 자신의 책임 밑에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일군들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문제를 평가하며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맡겨진 혁명임무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요구이다. 특히 범죄사건의 올바른 처리를 위하여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증거의 평가를 그 사건을 직접 다루는 매개 일군들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사건의 처리를 비롯한 형사소송의 모든 활동이 고도의 정치성과 신중성을 요구하는 책임적인 사업이라는데서 오는 응당한 요구이다. 증거

의 평가를 사건을 직접 맡아하는 일군들이 책임지고 하게 하는 것은 또한 사건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자신이 증거를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증거평가에서의 정확성을 최대한으로 담보할 수 있게 한다.

범죄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 부닥치게 되는 사물과 현상은 사건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복잡하며 다양하다. 증거로 되는 사실과 현상들도 그 원인과 조건이 각이하며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실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그 어떤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에 따라 증거를 평가하도록 한다면 과학적이며 사실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요구를 구현하여 해당 권한 있는 일군들은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제한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확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매개 일군들이 당정책과 국가의 법을 자로 하여 자기의 책임 밑에 증거의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매개 증거의 증거력을 그의 형식적 표징에 따라 미리 정하는 중세기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현실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증거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튼튼히 보장한다.

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당 및 노동계급의 노선 중시”

증거평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으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명백한 한계를 함께 주고 있다. 즉 증거를 평가하는 일군들의 확신은 반드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심증형성이 반드시 증거에만 기초한 것은 아니고 당 및 노동계급의 노선·이해관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교시한바 있다 : ≪법을 집행하는데는 반드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과 사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법이 바로 집행

될 수도 있고 잘못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2권, 222면). 이러한 교시를 받아 북한 형법도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르면 법집행기관이 법을 정확하게 집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일군들의 입장과 사상의식상태에 달려있고, 일군들의 확신은 언제나 그의 세계관과 법의식, 사상관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군들의 정치사상적, 이론실천적인 준비정도에 따라 그들의 확신도 서로 다르게 되며 증거에 대한 평가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증거를 옳게 평가하여 범죄사건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의 요구대로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확신이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것이 되어야 하며 주체의 세계관과 로동계급의 혁명적 법의식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증거를 평가하는 일군들의 판단과 확신은 각자가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그를 구현한 당정책과 법령의 요구에 확고히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법관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과학적 평가’ ‘경험상·논리상의 일반원칙’을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로 내세우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이해와 차이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의 가치판단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하나 자의적인 재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증거가치의 판단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4. 05. 29. 선고 84도55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자백보강법칙(제310조) 및 공판조서의 증명력(제56조) 규정도 자유심증에 의한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하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일반적인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다른 한편 일군들의 확신은 또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로 수집하고 조사·검토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검토·확인되지도 않은 증거들에 기초하거나 추측과 억측이 섞인 확신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일군들의 확신은 주관주의와 독단을 범하지 않도록 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다 수집한데 기초하여야 하며 그 모든 증거를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얻은 것이라야 하며 절대로 주관주의적으로 선택한 어떤 부분적인 증거에 기초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형사소송에서 확정하는 사실들은 사람의 운명과 관련되고 혁명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실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정도가 어떻든지간에 애매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명확하고 확정적인 사실만이 판단의 토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은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증된 과학적 증거자료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며(형사소송법 제338조 참조), 예심 또는 재판에서 판결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정도로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을 취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75조 참조).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정하는 과정, 다시 말하여 증명의 공정을 이루는 증거의 수집, 검토 및 평가의 과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된다. 증거를 수집하면서 검토도 하고 평가도 하며 증거를 평가하면서 또한 수집도 하고 검토도 한다. 그리하여 형사소송의 전과정이 증명을 위한 활동의 통일적인 체계를 이룬다. 그리고 매개 소송단계에서의 증명을 위한 활동은 그 단계가 형사소송의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의 임무에 따라 특정을 가지며 도달하는 결론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제37조 (피심자, 피소자진술의 평가)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수, 자백한 자료도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77조(피고인의 증언) 피고인은 그에 대한 고소, 알려진 정황 및 사건의 기타 정황과 관련하여 증언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유죄인정은 사건에서 증거의 종합성에 근거하여 인정이 될 때만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43조 재판인원, 검찰인원 및 수사인원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및 범죄사안의 경중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 협박, 유인, 기만 및 그 밖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반드시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사건의 정황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공민으로 하여금 증거를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마련하고,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또한 그들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제46조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은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연구를 중시하며, 자백을 가벼이 믿어서는 아니 된다. 단지 피고인의 자백만이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에 처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은 없으나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할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에 처할 수 있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53조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은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연구를 중시하며, 자백을 가벼이 믿어서는 아니 된다. 단지 피고인의 자백만이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에 처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은 없으나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할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에 처할 수 있다. 증거의 확실하고 충분함은 다음의 조건을 부합하여야 한다.

(1) 유죄인정과 양형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모두 있는 경우

(2) 사건을 확정하는 증거 모두 법정절차를 거쳐 조사하여 사실임이 증명된 경우

(3) 사건 전부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이 이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시킨 경우

제54조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피의자, 피

고인의 자백과 폭력, 위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을 배제하여야 한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물증, 서증이 사법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하며, 보정이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에 대하여 배제하여야 한다.

수사, 기소심사, 재판 시에 배제하여야 할 증거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배제하고, 기소의견, 기소결정,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Ⅰ. 개관

본조는 피심자·피소자진술의 증거사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1) 제1항은 '자백배제법칙', (2) 제2항은 '자백보강법칙', (3) 제3항은 '범행부인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범죄증명을 의제하는 원칙'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지난 2004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제98조 제1항 및 제2항),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특이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3항 역시 지난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제1항의 자백배체법칙과 제2항의 자백보강법칙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나, 제3항의 '부인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증명을 의제하는 원칙'은 국가의 증명책임을 면제시키고 피심자·피소자에게 사실상 유죄자백을 강요하는 규정으로서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II. 피심자·피소자 진술의 평가 - 특히 자백진술

1. 자백배제법칙

피심자·피소자가 자기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와 그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진술도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피심자·피소자의 진술에서 나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그 정확성이 확인되는 다른 확실한 사실과 맞는 경우에는 문제를 밝히고 확정하는데서 무엇보다도 힘 있는 증명력을 가진다.[60]

피심자·피소자의 진술에서 중요한 것은 '자백진술' 즉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범행에 대하여 말하는 진술이다. 자백진술에서는 피심자·피소자의 죄행을 확정하며 그 사건의 진상, 범죄의 뿌리와 연루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귀중한 증거를 얻어낼 수 있다. 피심자·피소자가 자백을 하면 문건의 진상이 명백하여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백진술의 증거력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자가 자백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그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61] 따라서 피심자·피소자의 진술을 받을 때에 신뢰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진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강압적 방법으로 심문하여 진술을 강요하면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게 만들며 진술에서 얻은 증거를 믿을 수 없게 함으로써 사건해결에 엄중한 후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법령은 그 어떠한 형태로나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피소자로 하여금 본의 아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6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5면.

61) 한국 대법원도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내용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여러 점 등을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02. 26. 선고 82도241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은 강압 또는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62] 강압 또는 유도의 방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심자·피소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거짓자백에 의한 오판의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형사소송법이 자백배제법칙을 두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를 받을 만 하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도 당연히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해 놓고 있다.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대법원도 여러 판결들을 통해 자백배제법칙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63]; 1985. 12. 10. 선고 85도2182 판결[64] 등)

62)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09면.

6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당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참조), 원심판시에 의하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 그 날 작성된 것으로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한 것으로서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6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 판결 :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37조에 비해 배제사유를 더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임의성이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문언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입법취지나 내용에 있어서는 양 자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37조는 자백을 얻는데 강압 또는 유도의 방법이 사용되면 임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배제될 수 있는 자백진술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임의성 없는 자백과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제사유들도 큰 틀에서 보면 '강압' 또는 '유도의 방법'이라는 두 개의 사유 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압에 의한 자백'이란 고문, 폭행, 협박 등에 의해 받아낸 자백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도 강압에 의한 자백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유도의 방법에 의한 자백'에는 기망, 약속, 거래에 의한 자백이 포함될 것이다. 자백을 얻는 과정에서 강압 또는 유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있을 경우 강압 또는 유도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자백진술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진다. 한국 대법원도 자백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01. 21. 선고 99도4940 판결[65]).

65) 대법원 2000. 01. 21. 선고 99도4940 판결 :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그리고 본조에 위반되어 얻은 피심자·피소자의 자백진술을 근거로 획득한 제2차 증거(파생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한국의 대법원도 압수된 망치, 국방색 작업복과 야전잠바 등 증거물은 피고인의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7. 04. 26. 선고 77도210 판결).

2. 자백보강법칙

본조 제2항에 의하면 피심자·피소자의 자백진술 하나만 가지고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다. 즉 피심자·피소자가 자기 스스로 말하였건 법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말하였건 관계없이 그의 자백진술 하나만 가지고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자수, 자백한 자료도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66] 본조 제2항은 소위 자백보강법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자백보강법칙이란 피심자·피소인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어서 증거로 채택될 뿐만 아니라 신용성이 있어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원칙으로서 앞서 본 자유심증주의의 중요한 예외에 해당한다.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허위자백(예컨대 대리처벌을 받기 위한 허위자백, 영웅심리에 의한 허위자백,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한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나아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한 고문·가혹행위·협박 등 인권침해가 자행될 수

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6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0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도 자백보강법칙을 규정해 놓고 있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은 피심자·피소인의 자백이고 여기에는 범죄혐의자로서 한 자백도 포함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뿐만 아니라 사법절차 외의 자백, 예컨대 사인에게 한 자백도 포함되고, 구술에 한하지 않고 서면에 기재된 것도 포함된다.[67] 피심자·피소자가 공판정에서 한 자백도 강요나 유도에 의한 허위자백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강증거가 필요하다(통설, 대법원 1978. 06. 27. 선고 78도743 판결).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한지 여부, 즉 공범자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 공범자의 자백만으로는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필요설(공범자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있어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 불요설(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는 견해), 절충설(공범자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 없지만 법정 외 자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나뉘고 있는데, 판례는 불요설의 입장에 서 있다(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도917 판결[68]).

3. 범행부인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범죄증명을 의제하는 원칙

본조 제3항은 피심자·피소자가 자기의 범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것

67) 손동권, 형사소송법, 2010, 562면 참조.

68)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도91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지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범죄를 부인하는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피심자·피소자의 유죄가 증명된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묵비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도 피심자·피소자의 유죄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국가(재판소 및 검사)에게 있고(제260조[69], 제263조[70], 제268조[71], 제320조[72], 제321조[73], 제338조[74]),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과 단순히 피심자·피소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도 불구하고(피심자·피소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가 유죄일 수 있다는 하나의 정황에 불과한 것

69) **북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다.

70) **북한 형사소송법 제263조 (사건기록검토내용)**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수사,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71) **북한 형사소송법 제268조 (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 수 없다는 리유로 제1심 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

72) **북한 형사소송법 제320조 (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소는 범죄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앞항의 검증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하며 그것은 사실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73) **북한 형사소송법 제321조 (새 증거의 수집)** 증거를 더 수집하려는 재판소는 사실심리를 정지하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74) **북한 형사소송법 제338조 (판결의 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임), 피심자·피소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만 밝히면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게 국가의 증명책임을 면제시키고 피심자·피소자를 지나치게 큰 불이익에 빠뜨리는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심자·피소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유죄자백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조항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조 제1항은 강압에 의해 획득한 자백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3항에서는 사실상 자백진술을 강요하고 있어서 입법적으로도 서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보장을 위해 그들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조 제3항은 입법론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제38조 (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에 등록한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을 따로 고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84조(물적 증거 보존) 가능하다면 물적 증거는 수사원 및 예심원, 검사, 법원의 명령에 의거하여 시각적 기록으로 자세하게 설명되거나 가능하다면 사진으로 보존,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물적 증거는 형사소송 기록

과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특정 자료의 크기나 양 또는 기타 사유로 형사 소송 기록과 함께 보존되지 못할 경우 사진을 찍거나, 가능하다면 수사원 및 예심원, 검사,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봉인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사건의 기록에 대한 적절한 인증이 필요하다.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관으로 혹은 한 기관에서 타 수사 및 조사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다른 검사 혹은 법원으로 회부되거나 한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될 때 물적 증거는 제2항 혹은 현 조항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사건의 기록과 함께 이송되어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본조는 증거물의 등록 및 고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증거물의 등록'이란 증거물의 출처를 밝혀놓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증거물을 찾았는가를 밝혀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증거물의 고착'이란 증거물의 특징, 상태와 거기에 남아있는 흔적을 그대로 밝혀놓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증거물의 고착이란 찾아낸 증거물이 달라지지 않게 기록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증거물고착의 기본은 수색, 압수조서, 검증, 검진조서, 심리실험조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것이다.[75]

7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68면,

II. 증거물의 등록·고착을 위한 조서의 종류 및 내용

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도 대물적 강제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거물을 등록·고착시키기 위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즉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76]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각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서 주로 범행직후에 범죄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기재한 조서인 실황조사서는 실황조사의 실질이 (긴급)검증과 동일하므로 검증조서에 준하여 취급된다.[77]

---

76) 법원 또는 법관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검증 또는 압수는 공판조서에 기재되므로 따로 압수조서나 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조는 법원 또는 법관이 공판정 외에서 행하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적용된다. 다만 본조가 수사기관이 행하는 압수·수색·검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으나, 본조에서 조서 작성권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같은 뜻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주석형사소송법 Ⅰ, 2009, 303면).

77) 대법원 1989. 03. 14. 선고 88도1399 판결 :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조서들이 있다.[78)]

(1)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발견조서는 수사원, 예심원 자신이 증거물을 직접 발견한 경우 그를 등록하는 조서이다. 예컨대 나무하러 산에 올라간 수사원이 이미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있지 않겠는가 하여 찾아보다가 쌓아놓은 돌무지 속에서 증거들을 발견한 경우 그것을 등록하는 조서이다.

증거물발견조서에는 날짜, 장소, 증거물을 발견한 일군의 직장과 이름, 형사소송법 조항, 어떤 상태에 있는 어떤 증거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하였는가를 밝혀야 한다. 증거물을 발견한 경우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증거물발견조서 대신에 현장검증조서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조서의 서두에 날짜, 장소, 증거물을 발견한 일군의 직장과 이름, 어떤 상태에 있는 어떤 증거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하였는가를 밝혀야 한다.

(2) 증거물제출조서

증거물제출조서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에 그것을 스스로 내놓을 경우 등록하는 조서이다. 임의제출의 경우이다. 수색, 압수결정서, 판정서 없이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의 요구에 응하여 증거물을 스스로 내놓았을 경우에는 증거물제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8) 이하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0~73면.

증거물제출조서에는 날짜, 증거물을 제출받은 일군의 직장과 이름, 장소, 형사소송법 조항, 누가 어떤 증거물을 제출하였는가를 밝혀야 한다.

(3) 수색, 압수조서

수색, 압수조서는 수색과정에 찾아낸 증거물을 압수하여 등록하는 조서이다. 수색, 압수결정서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증거물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수색,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색, 압수조서에 밝혀야 한다. 수색, 압수조서에 밝혀야 할 내용은 이 법 제223조[79] 해석에 따른다.

수색, 압수조서는 이 법 제142조의 사유(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 체포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고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작성한다.

(4) 수색조서

수색조서는 이 법 제142조의 사유에 의하여 체포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였으나 증거물을 찾지 못하였거나 공민의 헌법상 권리와 관계없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여 찾아낸 증거물을 등록하는 조서이다. 공민의 헌법상 권리와 관계없는 장소에 대한 수색은 해당 수사부서 책임자(도, 중앙기관)나 단체책임자의 비준이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수사원이 자의로 진행한 수색과정에 찾아낸 증거물

79) **북한 형사소송법 제223조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은 수색조서가 아니라 증거물발견조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색조서에 밝혀야할 내용은 이 법 제223조 해석에 따른다. 수색조서는 공민의 헌법상 권리와 관계없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여 증거물을 찾지 못하였거나 범죄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한 경우에도 작성한다.

수색과정에 증거물을 찾아낸 경우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수색조서 대신에 현장검증조서를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조서의 서두에 증거물을 찾아낸 경위와 위치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5) 압수조서

압수조서는 수색은 하지 않고 압수한 증거물을 등록하는 조서이다. 예컨대 수사원이 위탁수매상점에 있는 텔레비존수상기가 ○○사건해결에 의미있는 증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내놓을 데 대하여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압수결정에 따라 압수한 경우의 등록조서이다. 압수조서에 밝혀야 할 내용은 이 법 제223조 해석에 따른다.

(6) 현장검증조서

현장검증조서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와 증거물이 놓여있던 장소를 검증하고 찾아낸 증거물을 등록, 고착하는 조서이다. 현장검증을 하였다면 증거물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에도 현장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검증조서에 밝혀야 할 내용은 이 법 제200조[80]의 해석에 따른다.

---

80) **북한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붙일 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든다.

(7) 증거물검증조서

증거물검증조서는 증거물을 검증하고 그의 특징, 상태와 흔적을 고착하는 조서이다. 증거물검증조서는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에 등록된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을 구체적으로 고착할 목적으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증조서에 등록된 증거물에 대하여 따로 증거물검증을 하고 증거물검증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란 현장검증조서에는 찾아낸 증거물의 위치, 상태 같은 것을 등록하고 그의 구체적인 특징 같은 것은 따로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증거물검증조서에 밝혀야 할 내용은 이 법 제38조[81]의 해석에 따른다.

81) **북한 형사소송법 제38조 (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에 등록한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을 따로 고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한다.

제39조 (증거물수집과 립회)

증거물을 찾아내고 고착시킬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증거물을 등록, 고착시킬 경우에는 해당한 소송행위의 진행과정, 그리고 증거물의 출처와 고착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목적 밑에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입회인을 세우지 않았거나 1명만 세웠을 경우에는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여기서 입회인은 '법기관성원이 아닌 자'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야만 집행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입회인이 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증거물의 출처 그리고 고착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만, 증거물을 발견하였거나 제출받은 경우에는 입회인을 세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세우지 않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란 증거물을 발견, 제출 받은 장소나 시간 같은 조건으로 인하여 입회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8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도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고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여자가 집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21, 제122, 제123조). 다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원칙이나 북한 형사소송법의 의하면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82) 이상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3~74면.

제40조 (증거물의 보관)

증거물의 보관은 사건기록과 함께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한다.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은 봉인하여 해당 기관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수집한 귀금속은 은행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으며 현금은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림시입금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

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85조(물적 증거 보존기간) 물적 증거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거나 소송을 종료시키는 명령 및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만일 물권에 관한 분쟁이 민사소송의 방식에 의해 해결 중이라면 법원의 민사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물적 증거는 보존되어야 한다.

개별 사례에서 물적 증거의 조기 반환이 소송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물적 증거는 본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만료 전에도 소유주에게 반환될 수 있다.

소유주에게 반환되지 못할 경우, 급속히 훼손되기 쉬운 물적 증거는 그 목적과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에 이송되어야 한다. 필요시 소유주에게 동일한 종류 및 품질의 물건으로 보상해 주거나 소유주에게 가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82조 증거물의 보관

1. 증거물은 판결이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또는 형사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나 명령의 불복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에 부수(附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증거물이 된 재물의 권리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하여야 하고 그 증거물은 법원의 판결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보관된다.

2. 증거물은 그 종류에 따라,

   1) 부피가 너무 크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부수하여 보관할 수 없는 물건, 또한 많은 수량의 상품이어서 그 보관이 곤란하거나 특수한 보관조건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물건의 가액에 비견되는 물건은,

а)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나 영화필름으로 촬영하고, 가능한한 수사관/예심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봉인하여 보관한다. 형사사건의 기록에는 그 증거물의 소재지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고, 또한 (원본과) 비교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물의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б) 증명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법적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в)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현금화하도록 넘겨준다. 현금화해서 취득한 자금은 본조에 의거 해당 증거물의 압수결정을 내린 기관의 예금계좌에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입금한다. 형사사건의 기록에는 비교조사하는데 충분한 증거물의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2)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나 제품, 또는 교체주기가 빨라서 금방 구식이 되는 상품이어서 그 보관이 곤란하거나 특수한 보관조건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물건은,

а)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б)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현금화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현금화해서 수령한 자금은 해당 증거물의 압수결정을 내린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계좌에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입금한다. 형사사건의 기록에는 비교조사하는데 충분한 증거물의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в)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나 제품이(품질이) 쓸모없게 되었다면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법 제166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불법적인 유통으로부터 압수한 에틸알콜, 알코올 및 알코올함유제품 그리고 장기간 보관하면 인간과 주변환경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한 물건은 필요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그 물건을 기술적으로 가공(개조)하도록 넘겨주거나 폐기한다. 이러한 사실은 본법 제166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3-1)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하였거나 범죄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로서 수사처분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본법 제1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압수하여야 한다. 압수처분 되는 재물의 목록은 형사사건에 첨부된다.

4) 수사처분과정에서 압수된 금전 및 기타 가치물은 조사 및 필요한 수사처분을 행한 이후에,

а) 본항 제2호 ≪б≫목에 규정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보관을 맡겨야 한다.

б) 만약 화폐의 개별적인 속성이 증명에 있어서 의미를 가진다면 그 화폐를 형사사건에 부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기타 개별적인 범주에 속하는 증거물의 보관, 등록 및 교부의 조건은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정한다.

4. 본조 제2항 제1호 ≪б≫, ≪в≫ 및 제2호 ≪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예심관/검사/법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수사기관에서 예심관으로, 한 수사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한 예심관에서 다른 예심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때, 그리고 사건을 검사에게 또는 법원으로 송부하거나, 한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때에, 본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거물은 형사사건과 함께 이송, 송부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198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압수, 동결한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재물과 그 과실을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실조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를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금제품 또는 장기보존이 부적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증거로 사용하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과 장물 및 그 과실은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사법공무원이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과 장물 및 그 과실에 대하여 부패행위, 유용 또는 사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234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봉인, 압수, 동결한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재물과 그 과실을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실조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더불어 목록을 제작하고, 사건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를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금제품 또는 장기보존이 부적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증거로 사용하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에는 봉인, 압류, 동결된 범죄수익금 및 그 과실의 처리가 기재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유관기관은 판결에 따라 봉인,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 및 그 과실을 처리해야 한다. 봉인,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 및 그 과실을 본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사법공무원이 봉인,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과 장물 및 그 과실에 대하여 부패행위, 유용 또는 사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다.

압수한 증거물은 사건기록과 함께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위탁보관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이란 부피가 크거나 운반도중 손상될 수 있는 증거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선박, 자동차, 대형 공작기계, 부피가 크고 수량이 많은 도박기계(슬롯머신), 살아 있는 동물 등은 운반 또는 보관하기 불편한 증거물에 해당하여 위탁보관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관계자에게 위탁보관시키는 경우에는 보관자와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일군이 함께 봉인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하며 증거물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물보관자가 증거물을 제 마음대로 처분하면 형법에 규정된 봉인손상죄(제231조[83])로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증거물보관증에는 증거물명, 수량, 형태와 특징, 보관장소, 보관자의 주소(직장직위)와 이름, 보관날짜를 밝히며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제3항에서의 귀금속은 금, 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 현금은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림시입금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이도록 되어 있으나 현금에 범죄와 범죄자를 조사, 확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징과 흔적이 있다면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의 필적이 있거나 그만이 알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현금이다.[84] 한국에서는 현금은 일단 압수한 수사기관이 압수물로 보관한다.

---

83) **북한 형사소송법 제231조 (봉인손상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한 봉인을 손상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84) 이상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4면.

제41조 (증거물의 이관)

형사사건을 다른 기관의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에 보낼 경우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준다.

임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미 돌려주었거나 넘겨준 증거물과 이관이 적합하지 못한 증거물은 근거문건을 검증조서와 함께 넘겨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1조(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82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 서류에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 송치 전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매겨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사건 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 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 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 공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형사소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병합,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에 의한 병합·이송사건관련서류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 및 증거물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198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압수, 동결한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재물과 그 과실을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실조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를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금제품 또는 장기보존이 부적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증거로 사용하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과 장물 및 그 과실은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사법공무원이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과 장물 및 그 과실에 대하여 부패행위, 유용 또는 사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234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봉인, 압수, 동결한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재물과 그 과실을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실조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더불어 목록을 제작하고, 사건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를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금제품 또는 장기보존이 부적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증거로 사용하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에는 봉인, 압류, 동결된 범죄수익금 및 그 과실의 처리가 기재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유관기관은 판결에 따라 봉인,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 및 그 과실을 처리해야 한다. 봉인,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 및 그 과실을 본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모두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사법공무원이 봉인,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과 장물 및 그 과실에 대하여 부패행위, 유용 또는 사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다.

형사사건을 다른 기관의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에 보낼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증거물을 넘겨주어야 한다. 당연한 규정이다.

반면 증거물을 원래의 임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미 돌려주었거나 넘겨준 경우 그리고 증거물이 이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거문건을 검증조서와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이때 이관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증거물이란 해당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의미한다.

근거문건이란 증거를 돌려주는 결정서, 증거를 넘겨주는 결정서와 확인서, 입금증, 증거물보관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검증조서란 증거물검증조서, 현장검증조서나 록화, 사진, 도면 같은 것을 의미한다.

예심종결전에 증거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첨부결정서를 따로 쓰지 않는다.[85)]

85) 이상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5면.

제42조 (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형사사건 종결전 압수된 증거물의 반환을 규정한 것이다. 본조의 대상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증거물이다. 추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은 환부·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유사석유제품, 지적재산권 침

해사범의 압수물,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검사 또는 동식물검역소의 검역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농수축산물 등이 압수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몰수의 대상이므로 환부·가환부될 수 없다.

몰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 가운데서 소유자, 점유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지장이 없다면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임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돌려받은 증거물을 형사사건종결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형시키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못쓰게 될 수 있는 증거물이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구입용도에 맞게 쓰지 못하게 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용기간이 규정된 약품과 결혼과 같은 대사에 쓰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이다.

소유자, 점유자가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란 피해자인 소유자나 점유자가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물건으로서 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을 의미한다.

증거물을 형사사건종결 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형시키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은 구두로 하면 족하다.[8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도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판심리 중에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33조), 수사기관도 수사 중에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환부·가환부할 수 있다(제219조).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는 사유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33조 제1항)란 압수물이 피고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증거

86) 이상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5~76면.

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 증거물의 가치에 비하여 피압수자의 재산적 불이익이 심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87] 가환부의 경우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압수물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압수물을 매각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88]

87)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주석형사소송법 Ⅰ, 2009, 554면.
88)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주석형사소송법 Ⅰ, 2009, 559면.

제43조 (증거물의 처리방법)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려는 수사원, 예심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으며 판사는 판정서를 작성한다.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에는 임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처리한 증거물은 특징, 상태, 흔적을 검증조서, 사진같은 것으로 고착하여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증거물을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는 해당한 결정, 판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 판정은 증거물을 돌려주는 결정서, 판정서 또는 증거물을 넘겨주는 결정서, 판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는 결정서, 판정서에는 날짜, 결정, 판정한 일군의 직장과 이름, 사건명, 제기된 사유, 형사소송법의 조항, 결정, 판정내용, 단위(중앙기관에서는 부서)책임자의 비준정형(판정서 제외)을 밝혀야 하며 공인, 명관을 찍어야 한다. 수사원, 예심원이 작성자인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정형을 밝혀야 한다. 검사의 승인은 해당 검찰소의 공인, 명관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결정, 판정내용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거물을 얼마나 넘겨주거나 돌려준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수사원, 예심원이 작성한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는 결정서를 받은 검사는 그것을 제때에 승인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검사는 수사원, 예심원이 만든 '증거물 돌려주는 결정서' 및 '증거물 넘겨주는 결정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결정서'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증거물을 돌려주는 결정, 증거물을 넘겨주는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 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어긋나는 사유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증거물 돌려주는 것을 취소하는 결정서', '증거물 넘겨주는 것을 취소하는 결정서'에는 날짜, 검사의 직장과 이름, 사건명,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줄데 대하여 결정한 수사원,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결정사유, 취소결정내용, 소송법의 조항을 밝히고 검찰소의 공인, 명관을 찍어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확인서에는 증거물을 넘겨받은 기관이 그에 해당한 내용을 은행에 입금시켰다는 것을 확인하는 입금증도 포함한다.

제2항은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이관하기 전에 증거물의 증거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한 것이다. 여기서 근거문건이란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줄데 대한 결정서, 판정서, 확인서, 입금증을 의미한다.[89)]

89) 이상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6~77면.

제44조 (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종결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증거물은 몰수하거나 폐기하며 그밖의 증거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사실을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서, 판정서, 판결서에 밝힌다. 이 경우 증거물을 돌려받았거나 넘겨받은 피해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86조(형사사건 해결 시 물적 증거와 관련해 행해지는 조치)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 결정 및 명령 시 물적 증거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1) 피고인과 관련된 범죄 물품은 압수되거나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 혹은 파기된다.

(2) 유통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파기된다.

(3) 가치가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 파기되기만,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이나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양도된다.

(4) 범죄를 통해 획득한 금품이나 귀중품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국고로 환원된다. 잔류 물품은 합법적 소유주에게 전해지지만, 후자의 경우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 재산이 된다. 그러한 물품에 대한 분쟁발생 시 민사소송에 따라 해결된다.

(5) 물적 증거를 구성하는 문서는 후자의 전체 보존기간 동안 사건 기록과 함께 보관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 이송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198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압수, 동결한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재물과 그 과실을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실조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를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금제품 또는 장기보존이 부적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증거로 사용하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과 장물 및 그 과실은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사법공무원이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과 장물 및 그 과실에 대하여 부패행위, 유용 또는 사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234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봉인, 압수, 동결한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재물과 그 과실을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실조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더불어 목록을 제작하고, 사건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를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금제품 또는 장기보존이 부적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증거로 사용하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사건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에는 봉인, 압류, 동결된 범죄수익금 및 그 과실의 처리가 기재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유관기관은 판결에 따라 봉인,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 및 그 과실을 처리해야 한다. 봉인,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 및 그 과실을 본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사법공무원이 봉인, 압수, 동결된 범죄수익금과 장물 및 그 과실에 대하여 부패행위, 유용 또는 사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다.

형사사건이 종결되면 압수된 증거물은 국가에 의해 몰수되지 않는 한 '피압수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41조 및 제42조에서는 반환의 대상을 '임자'라고 규정한데 반해 본 조에서는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임자'는 통상 피압수자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는 개념일 것이나 '피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를 넘어 '범죄피해자'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증거물인 압수물이 범죄의 '장물'인 경우에는 피압수자이자 피고인인 범인에게 장물이 반환될 것이 아니라 해당 장물의 소유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90] 그렇지 않다면 범죄피해자는 추후 민사소송에 의해 장물의 인도를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도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333조).

증거물을 몰수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압수, 몰수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그를 확인하는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의 확인서와 근거문건에 대한 이해는 이 법 제43조의 해석에 따른다.[91]

90)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주석형사소송법 Ⅰ, 2009, 541면 참조.
91) 이상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7면.

제3장 수 사

제3장 수 사

개 관

수 사

수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수사라 함은 보통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92]을 말한다. 형사절차는 이와 같은 수사에 의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수사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93]

이에 반하여 북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사구조와는 다른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의 개념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수사를 예심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수사는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의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예심 및 검사의 처분 등은 모두 수사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수사의 개념을 예심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수사는 제기된 형사사건의 범죄자를 찾아내며 사건해결의 기초로 될 증거로서 그 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을 제때에 수집·보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하고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행자의 여죄도 밝혀내는 것이다.[94]

---

92) 대법원 1999.12.07. 선고 98도3329 판결.

93)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 2015, 홍문사, 39면;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2009, 화산미디어, 65면.

북한에서 수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좁은 의미의 수사를 의미하며, 독립적인 소송단계의 하나이다. 범죄자를 제때에 적발하여 체포하는 것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철저히 막으며 사회의 혁명적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수사는 다른 소송활동과 구별되는 형사소송에서 가장 긴급한 소송분야를 맡아서 수행하며, 여기에서 수사의 특성이 있다고 파악한다.[95)]

수사는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사권한을 가진 일군도 수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조). 여기의 수사원에는 인민보안, 안전보위기관 수사부서(감찰부서, 인민보안소 포함)의 수사원, 검찰기관 수사부서의 검사(수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검찰기관의 다른 부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부서가 따로 없는 검찰소, 특별검찰소의 검사,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군 부대안의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군 그리고 단위책임자의 위임에 따라 전문수사원이 아닌 일군도 수사를 할 수 있다.[96)]

수사의 방법은 바로 사건을 밝히고 처리하는 토대로 쓰일 증명수단들을 수집하거나 기록해 두며 혹은 고착·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수사원은 범죄사건을 밝히는 데 주되는 방법들인 심문과 같은 소송행위를 하지는 않는다.[97)]

94)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1면.
95)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52면.
9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면.
9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2면.

제133조 (수사의 임무)

수사의 임무는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이다.

구 형사소송법

제134조 수사의 임무

수사의 임무는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이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18조(수사기관의 의무) 수사기관은 필요한 수사 조치와 기타 형사절차법에 따라 범죄 및 범죄를 저지른 자를 밝혀내기 위한 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의무가 있다.

수사기관은 예심 의무 여부에 따라 그 활동이 달라진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21조 형사소추를 수행할 의무

1. 국가소추 및 절충형 소추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형사소추는 검사 또는 예심관/수사관이 수행한다.
2. 검사/예심관/수사기관/수사관이 범죄의 징표를 발견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확인하고, 범죄자를 입증하는 등 본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3. 검사는 본법 제2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의 소추를 수행할 수 있다.
4. 검사/예심관/수사기관/수사관이 본법으로 규정된 그들의 권한 범위내에서 제출한 요구/의뢰/조회사항은 모든 공공기관/기업/조직/공무원/ 개인들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9장 기타 규정

제106조 본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원어: 偵査)"라 함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전문적인 조사활동 및 그와 관련된 강제적 조치를 말한다.

Ⅰ. 의의

본조는 형사소송에서 수사의 임무를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을 수사의 임무로 규정하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규정은 수사의 임무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는 수사 중에 범죄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제141조)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예심에 넘기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수사의 임무는 여전히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범죄와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Ⅱ. 내용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여 사건해결의 기초로 될 긴급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을 수사의 임무로 한다.[98] 수사는 예심활동의

98)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17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재빨리 움직여 장래의 소송활동의 진행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갖추며 자료들을 적시에 수집·보전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99] 그리고 이러한 수사의 임무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수사의 임무인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은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시초행위로서 책임적인 소송활동이 되는 것이다.

수사의 임무로서 범죄자를 적발한다는 것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사건의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밝힌다는 것을 의미한다.[100] 즉 범죄자를 적발한다는 것은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범죄를 저지른 자인가 하는 것을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99)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1면.
10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0면.

제134조 (수사의 시작)

수사할 범죄자료를 얻은 수사원은 곧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135조 수사의 시작

수사할 범죄자료를 얻은 수사원은 곧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12조(형사소송 개시절차) 형사소송을 개시할 사유 및 근거가 존재한다면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는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을 개시할 의무를 가진다.

검사, 예심원, 수사원, 판사는 형사소송 개시하기 위한 명령을 내린다. 명령에는 시간, 장소, 소송을 개시하는 사유 및 근거, 작성자, 형사소송 개시의 원인이 된 표지를 담은 형법 조항뿐만 아니라 소송의 향방 등을 특정해야 한다.

형사소송을 개시하는 명령 사본은 수사원 혹은 예심원에 의해 작성되며 검사에게 즉시 송부된다.

형사소송개시와 동시에 범죄를 예방하고 중지하고 범죄 흔적을 보존하는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제115조(개시 후 사건 회부) 형사사건을 개시하는 명령을 내린 뒤에는

(1) 검사는 예심원 및 수사원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2) 수사원은 예심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3) 판사는 예심 혹은 수사를 위해 사건을 회부하거나 재판소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제119조(예심이 의무인 경우 수사기관의 활동) 예심이 의무인 범죄구성요건의 사건이 있을 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을 개시하고 범죄 흔적 보존 및 성립을 위해 압수, 수색, 검증, 피의자 구금 및 신문, 피해자 및 증인 신문 등의 긴급 수사행위를 관장한다.

수사기관은 즉시 검사에게 범죄 발각 및 수사 개시에 대해 통지한다.

긴급수사 실행 시 수사기관은 검사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거나 본법 제121

조 제1항에 언급된 기간 말까지 사건을 수사원에게 송치한다.

수사원에게 사건 송치 후 수사기관은 수사원의 지휘 하에 검색 및 수사행위를 진행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알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수사원에게 사건이 송치되었을 시, 수사기관은 범죄자 확인을 위한 수사행위를 계속하며 수사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20조(예심이 의무가 아닌 경우의 수사기관 활동) 예심이 의무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고 형사사건임이 입증된 정황을 성립하는 형사절차법에 의거한 모든 조치를 실행한다.

예심이 의무가 아닌 경우에 수사 시, 예심과 관련한 본법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예심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1) 수사에 변호인은 참여하지 않는다.

(2) 피해자, 민사소송의 원고, 민사소송의 피고 및 그 대리인은 수사완료 및 검사에게 사건 회부에 대한 통지를 받으나, 사건의 자료는 심사를 위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3) 본법 제127조 제2항은 수사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와 불일치 시, 수사기관은 그러한 수사행위의 집행을 중지할 필요 없이 상급 검사에게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예심이 의무가 아닌 경우 수사 자료는 법원에서 사건 심리의 기본이 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46조 국가소추 형사사건의 제기

1. 본법 제140조에 규정된 동기와 근거가 있을 때 검사의 동의를 얻은 수사기관/수사관/예심관, 그리고 검사는 본법으로 규정된 소관 권한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제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2. 형사사건 제기의 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결정을 내린 날짜, 시간 및 장소

   2) 결정을 내린 자

3) 형사사건 제기의 동기 및 근거

4) 형사사건 제기의 근거가 된 러시아연방 형법전의 해당 조, 항, 호

3. 형사사건의 수사관할을 정하기 위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형사사건 제기의 결정서에 명시한다.

4. 예심관/수사관의 형사사건 제기결정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결정서에는 범죄의 제보를 검토한 기록을 첨부한다. 범죄의 증적을 확보하고, 죄를 범한 자를 확인하는 등의 개별적인 수사처분(범죄현장 검증, 신체검사, 사법감정 지정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서와 결정서를 첨부한다. 위 결정서를 접수한 검사는 지체없이 형사사건 제기를 동의하는 결정, 형사사건 제기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결정, 또는 보충조사를 위해서 기록을 반송하는 결정(이때에는 5일 이내에 보충조사를 마쳐야 함) 등을 내린다. 검사의 결정 내용을 예심관/수사관은 그 결정이 내려진 날에 범죄의 제보자 그리고 피제보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원양 항해중인 해양/하천 선박의 선장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질조사 탐험대나 월동부대의 책임자의 의해서, 또는 러시아연방의 외교대표부나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에 의해서 형사사건이 제기된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수사의 개시에 대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형사사건 제기의 결정서와 사건기록의 송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송달한다.

제156조 예비조사의 개시

1. 예비조사는 형사사건이 제기된 순간부터 개시되고, 이에 대해서는 예심관/수사관/수사기관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은 검사의 의견과 일치되어야 한다. 예심관/수사관은 그 결정서에 형사사건을 자신의 담당하에 취급함을 명시한다.

2. 예심관 또는 수사관에게 기 제기된 형사사건을 처리토록 위임된 경우에는 예심관/수사관은 그 사건을 자신의 담당으로 접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의 사본을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한다.

Ⅰ. 수사시작의 의의

수사원이 범죄자료를 얻었을 경우에는 곧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Ⅱ. 수사시작의 요건

1. 범죄자료의 획득

범죄자료를 얻은 수사원은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범죄자료란 범죄가 있었다는 자료를 의미하며, 수사를 하여야 할 범죄란 형법조문에 규정된 범죄를 의미한다. 수사를 시작하여야 할 '범죄자료'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신고나 수사원이 직접 획득한 범죄자료이다.

2. 수사시작결정

(1) 수사시작결정과 수사

수사는 반드시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시작결정을 하지 않고 수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시작결정은 제기된 형사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을 알리는 소송행위이다. 수사시작결정이 법적으로 사건수사에 착수한다는 결정인 것만큼 범죄자가 누구이며 범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나타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투쟁을 행해야 할 행위이면 된다.[101)]

(2) 수사시작결정방법

수사시작결정은 수사시작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사시작결정서에는 결정날짜, 결정한 일군의 직업과 이름, 결정의 사유와 근거(신고 또는 직접 얻은 범죄자료), 소송법적 조항, 일정한 사실에 적용하는 형법 조항과 결정내용, 수사시작결정을 비준한 단위·부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102)]

수사에 넘기는 결정이나 판정을 한 범죄사건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넘겨받았을 경우에도 그 사건을 맡은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수사의 시작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사를 하여야 할 범죄가 있다는 자료를 얻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를 시작하는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 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 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한다(제46조).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사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수부문 법기관의

10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1면.
10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1면.

수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의 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 밖의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한다(제47조).

제135조 (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결정서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

제136조 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결정서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16조(형사소송개시 적법성에 대한 검사의 감독) 검사는 형사소송 개시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을 실행한다.

합법적인 사유 및 근거 없이 예심원 및 수사원에 의해 소송이 개시되면 검사는 자신의 명령으로 예심원 및 수사원의 명령을 취소하며 형사소송 개시를 거부하거나 수사행위가 실행되었을 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소송개시 거부에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검사는 명령으로 수사원 혹은 예심원의 결정한 그러한 결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46조 국가소추 형사사건의 제기

1. 본법 제140조에 규정된 동기와 근거가 있을 때 검사의 동의를 얻은 수

사기관/수사관/예심관, 그리고 검사는 본법으로 규정된 소관 권한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제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2. 형사사건 제기의 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결정을 내린 날짜, 시간 및 장소

   2) 결정을 내린 자

   3) 형사사건 제기의 동기 및 근거

   4) 형사사건 제기의 근거가 된 러시아연방 형법전의 해당 조, 항, 호

3. 형사사건의 수사관할을 정하기 위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형사사건 제기의 결정서에 명시한다.

4. 예심관/수사관의 형사사건 제기결정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결정서에는 범죄의 제보를 검토한 기록을 첨부한다. 범죄의 증적을 확보하고, 죄를 범한 자를 확인하는 등의 개별적인 수사처분(범죄현장 검증, 신체검사, 사법감정 지정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서와 결정서를 첨부한다. 위 결정서를 접수한 검사는 지체없이 형사사건 제기를 동의하는 결정, 형사사건 제기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결정, 또는 보충조사를 위해서 기록을 반송하는 결정(이때에는 5일 이내에 보충조사를 마쳐야 함) 등을 내린다. 검사의 결정 내용을 예심관/수사관은 그 결정이 내려진 날에 범죄의 제보자 그리고 피제보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원양 항해중인 해양/하천 선박의 선장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질조사 탐험대나 월동부대의 책임자의 의해서, 또는 러시아연방의 외교대표부나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에 의해서 형사사건이 제기된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수사의 개시에 대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형사사건 제기의 결정서와 사건기록의 송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송달한다.

제156조 예비조사의 개시

1. 예비조사는 형사사건이 제기된 순간부터 개시되고, 이에 대해서는 예심관/수사관/수사기관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은 검사의 의견

과 일치되어야 한다. 예심관/수사관은 그 결정서에 형사사건을 자신의 담당하에 취급함을 명시한다.

2. 예심관 또는 수사관에게 이미 제기된 형사사건을 처리토록 위임된 경우에는 예심관/수사관은 그 사건을 자신의 담당으로 접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의 사본을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한다.

Ⅰ. 수사시작결정서의 검사에게 송부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사시작을 결정한 때부터 24시간 안으로 수사시작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즉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서를 2통 만들어 1통은 사건기록에 붙이고, 1통은 24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시작결정의 기초자료는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시작결정의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103)]

Ⅱ. 검사의 처리

수사시작결정서 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수사근거가 없어 수사시작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06조[104)]에 규정되어 있는 것

10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2면.

104) **형사소송법 제106조 (형사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

과 같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유나 형사사건을 기각해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검사가 수사시작결정을 취소시키려 할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수사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수사취소결정서에는 날짜, 검사의 직장과 이름, 수사시작결정을 한 일군의 이름과 직장, 사건명, 소송법조항, 취소사유와 결정내용을 밝혀야 하며 해당 검찰소의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검사의 수사취소결정이 없는 한 수사원은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105)]

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의 행위인 경우
2.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3.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특사로 형벌적용이 면제되었을 경우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은 행위일 경우
6. 이 법에 규정된 예심기일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7.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8.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을 경우

10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2면.

제136조 (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구 형사소송법

제137조 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5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범죄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Ⅰ. 의의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술을 받을 때 진술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수사원이 범죄자를 발견하는 데에 필요하면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106]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시도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9조).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 그러나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형법적 처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이에 반하여 북한 형법은 거짓 신고를 하거나 수사과정 등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 '거짓신고, 진술죄'[107]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106)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1~122면.
107) **북한 형법 제224조 (거짓신고, 진술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II. 내용

1. 범죄자료의 요구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증거물이나 증거문서와 같은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보여주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원이 이와 같은 범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사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여야한다.[108)]

수사원의 요구에 응하여 증거물을 스스로 내놓았을 경우에는 증거물제출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09)] 이에 반하여 만약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110)]에 따라 수색,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0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3면.

109) **형사소송법 제38조 (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에 등록한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을 따로 고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한다.

110) **형사소송법 제215조 (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2. 진술의 요구

수사원이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증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자 적발에 필요한 사실을 말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들이 말한 내용을 진술서에 고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11)]

진술서는 수사원이 쓰고 진술자의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 진술자가 자필로 직접 쓸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진술서는 원진술자가 스스로 자기의 의사나 사상, 관념 및 사실관계 등을 직접 기재한 서면을 말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제3자가 기재한 서류를 진술기재서라고 말하며, 진술기재서 가운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경우를 진술조서라고 부른다. 그러나 진술서이던 진술기재서이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112)]

진술서에는 날짜, 수사원의 직장과 이름, 장소, 소송법의 조항, 진술자의 이름과 신분관계(성별, 출생일, 출생지, 주소, 직장직위), 진술내용, 수사원의 질문과 답변내용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진술서를 받을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법 제224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실을 진술서에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범죄혐의자나 범죄자에게서 진술을 받을 경우에는 거짓진술에 대한 형사처벌문제를 알리지 않는다. 또한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 또는 수사시작결정을 하기 전에 진술을 받는 경우에도 거짓진술에 대한 형사책임문제를 고지하지 않는다.[113)] 더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 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 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다.

11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3면.

112)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 644~646면.

11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3면.

나아가 진술서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장(예심) 제8절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다.

3. 범죄자료의 재조사

수사시작결정전에 인민보안단속법이나 검찰감시법과 해당 법규에 따라 만든 현장검증조서, 감정서, 진술서 같은 조사자료는 정확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수사에서 재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수사에서 재조사하지 않은 자료는 감정, 현장검증 같이 소송행위를 다시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심에서 피심자심문, 증인신문과 같은 예심행위를 통하여 수집·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자로부터 받은 진술이 신고서의 내용과 같을 경우에는 진술서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114)]

11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3~104면.

제137조 (수사의 방법)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수 있다.

앞항의 행위는 이 법 제4장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구 형사소송법

제138조 수사의 방법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수 있다.

앞항의 행위는 이 법 제7장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19조(예심이 의무인 경우 수사기관의 활동) 예심이 의무인 범죄구성요건이 있을 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을 개시하고 범죄 흔적 보존 및 성립을 위해 압수, 수색, 검증, 피의자 구금 및 신문, 피해자 및 증인 신문 등의 긴급 수사행위를 관장한다.

수사기관은 즉시 검사에게 범죄 발각 및 수사 개시에 대해 통지한다.

긴급수사 실행 시 수사기관은 검사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거나 본법 제121조 제1항에 언급된 기간 말까지 사건을 수사원에게 송치한다.

수사원에게 사건 송치 후 수사기관은 수사원의 지휘 하에 검색 및 수사행위를 진행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알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수사원에게 사건이 송치되었을 시, 수사기관은 범죄자 확인을 위한 수사행위를 계속하며 수사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20조(예심이 의무가 아닌 경우의 수사기관 활동) 예심이 의무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고 형사사건임이 입증된 정황을 성립하는 형사절차법에 의거한 모든 조치를 실행한다.

예심이 의무가 아닌 경우에 수사 시, 예심과 관련한 본법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예심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1) 수사에 변호인은 참여하지 않는다.

(2) 피해자, 민사소송의 원고, 민사소송의 피고 및 그 대리인은 수사완료 및 검사에게 사건 회부에 대한 통지를 받으나, 사건의 자료는 심사를 위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3) 본법 제127조 제2항은 수사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와 불일치 시, 수사기관은 그러한 수사행위의 집행을 중지할 필요 없이 상급 검사에게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예심이 의무가 아닌 경우 수사 자료는 법원에서 사건 심리의 기본이 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13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범죄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 죄의 경중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한 범죄피의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우선 구류할 수 있고, 구속요건에 부합하는 범죄피의자는 법에 따라 체포하여야 한다.

제134조 수사인원은 범죄증거수집, 범죄자 신병확보를 위하여 범죄피의자 및 범죄자 또는 범죄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신체·물품·주거지·기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하여 수색을 할 수 있다.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이 법 제4장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따라서 수사원은 형사소송법 제4장의 예심부분의 제5절 검증과 심리실험(제191조~제204조), 제6절 감정(제205조~제214조), 제7절 수색과 압수(제215조~제223조),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제234조~제242조)에 규정된 바의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에서 말하는 검증은 범죄와 관련을 가지는 장소, 물건 또는 문서의 상태와 특징을 확인·고착하며, 범죄의 흔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발견하며 또 그를 통하여 범행당시의 정형, 범행의 동기 및 기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것을 찾아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다.[115)]

수색과 압수는 범죄자가 숨어 있거나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이나 문서를 스스로 내놓지 않을 때에 진행하는 강제수단이다. 여기서 수색은 소송상 강제수단의 하나로서 국가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찾아내며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장소나 물건 또는 문서를 찾아내어 이를 수집·고착하기 위한 소송행위이다. 그리고 압수도 소송상 강제수단의 하나로서 국가적 강제를 동원하여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증거물을 가져가서 고착시키기 위한 소송행위이다.[116)]

다음은 수색결정서와 수색조서의 예이다.[117)]

수색결정서(1)

1983년 10월 24일 량강도 ㅅ군 안전부 지도원 리명천은 형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한 범죄혐의자가 광산리 5반 정택준의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반 인민반장 리화숙의 신고에 의하여 확증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51조 3항, 제7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광산리 5반 정태준의 집을 수색한다.

수사과 지도원 리명천
수사과장 김남춘
안전부장 신동호

이것을 승인한다.

ㅅ군 검찰소 소장 박광수

11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4면.
116)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18면.
117) 해당 서식은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54~55면 참조.

수색조서

1983년 10월 27일 량강도 ㅅ군 안전부 지도원 리명천은 형사소송법 제106~제108조, 제112조, 제113조의 절차를 지키면서 상수리 7반 인민반장 민정애와 신순선을 립회시키고 박성천의 집을 수색하였다.

수색에는 집주인인 박성천이 참가하였다.

수색에서는 감추어 두었던 텔레비전수상기(소나무 650원분 1대)를 발견하고 그것을 증거물로 첨부하기 위하여 압수하였다.

수색에 대한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 조서를 읽어 본 바 옳게 씌여졌다.

수색당한 사람 박성천
립회인 민정애
립회인 신순선
수사과 지도원 리명천

심리실험은 형태를 바꾼 검증으로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나 물체의 상태, 특징을 그 장소나 물체와 관련하여 과거에 있은 행위나 현상을 실험의 방법으로 되풀이함으로써 확인하는 소송행위이다.[118)]

감정은 범죄사건을 조사·해명하는 과정에 과학기술적 지식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에 부닥칠 때 해당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일군들에게 맡겨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그것을 해명해냄으로써 보통 사람의 눈으로써는 해명할 수 없는 문제를 해명해 내는 증명수단의 하나이다.[119)]

118)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7면.
11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30면.

제138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밖에서도 수사를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할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

제139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

수사원은 수사시작 결정을 한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수사를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52조 예비조사를 수행하는 장소

1. 예비조사는 범죄의 징표가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수행된다. 단, 본조에서 따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타 관할에서 수사 및 수색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사관/예심관은 직접 또는 해당 예심관 또는 수사기관에게 그 처분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촉탁을 받은 예심관 또는 수사기관은 늦어도 10일 이내에 촉탁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일 범죄가 한 장소에서 개시된 이후 다른 장소에서 종결되었다면, 형사사건은 범죄의 종결지에서 진행된다.
3. 만일 범죄가 여러 장소에서 행해졌다면, 형사사건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 다수의 범죄가 행해진 장소 또는 그중 가장 중한 범죄가 행해진 장소에서 진행된다.
4. 예비조사는 조사의 완전성, 객관성 및 소송기간의 준수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소재지 또는 다수 증인의 소재지에서 수행될 수 있다.

5. 형사사건이 자신의 수사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예심관/수사관은 긴급수사처분을 수행한 이후, 사건을 수사관할에 따라 이송토록 검사에게 송부한다.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수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120]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수사에 대한 감시를 관할지역의 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체포, 구속, 수색, 압수와 같은 소송상 강제행위에 대한 결정을 승인·취소하거나 그 소송행위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원이 자기 관할지역밖에 나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상 강제행위에 대한 검사의 승인은 자기의 관할지역 검사에게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가 제기되고, 거리상 문제로 관할지역의 검사에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밖의 검사에게서 소송상 강제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사원과 소속이 같은 관할지역 밖의 법기관 단위책임자의 비준(공인, 명판)을 받은 결정서를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121]

120) 수사관할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6조 참고.
12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4~105면.

제139조 (수사의 의뢰)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140조 수사의 의뢰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52조 예비조사를 수행하는 장소

1. 예비조사는 범죄의 징표가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수행된다. 단, 본조에서 따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타 관할에서 수사 및 수색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사관/예심관은 직접 또는 해당 예심관 또는 수사기관에게 그 처분의 집행을 촉탁할(의뢰할) 수 있다. 촉탁을 받은 예심관 또는 수사기관은 늦어도 10일 이내에 촉탁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일 범죄가 한 장소에서 개시된 이후 다른 장소에서 종결되었다면, 형사사건은 범죄의 종결지에서 진행된다.
3. 만일 범죄가 여러 장소에서 행해졌다면, 형사사건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 다수의 범죄가 행해진 장소 또는 그중 가장 중한 범죄가 행해진 장소에서 진행된다.
4. 예비조사는 조사의 완전성, 객관성 및 소송기간의 준수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소재지 또는 다수 증인의 소재지에서 수행될 수 있다.

5. 형사사건이 자신의 수사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예심관/수사관은 긴급수사처분을 수행한 이후, 사건을 수사관할에 따라 이송토록 검사에게 송부한다.

Ⅰ. 의의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란 제한지역 또는 위수구역 안에서 수사를 하여야 할 경우와 거리상 직접 갔다 올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히 대책을 취해야 할 경우 같은 해당 관할 수사기관과 수사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의미한다.

Ⅱ. 내용

1. 수사의뢰결정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수사의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의뢰결정서에는 결정날짜, 수사원의 직장과 이름, 소송법의 조항, 사건의 내용과 알려야 할 구체적 사실, 수사를 맡아할 수사기관명,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밝혀야 하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수색·압수를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 법적 근거문건인 수색·압수결정서 같은 해당 문건을 함께 보내야 한다.[122)]

12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5면.

2. 수사 후 회보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타당한 소송행위를 제때에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하면 그것도 수집하여야 한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수사를 끝내는 즉시로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수집한 증거가 있다면 함께 회보하여야 한다. 수사결과를 회보할 경우에는 <수사의뢰에 대한 결과를 회보함에 대하여>를 만들어 단위책임자의 비준(공인, 명판)을 받은 다음 수집된 수사자료와 의뢰받았던 모든 문건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의뢰하였던 의뢰문건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123)]

12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5~106면.

제140조 (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수 없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수 없게 되는 것 같은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수 없을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

제141조 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수 없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수 없게 되는것 같은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집할수 있다.

Ⅰ. 의의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 수 없다. 수사에서의 증거수집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 즉 발생된 사건의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증거만을 수집하는 것이다.[124] 왜냐하면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하여 범죄사건을 조사하고 해명하는 소송활동으로서의 예심활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예심의 범위에까지 들어가지 말고 수사단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긴급한 증거들을 찾아내서 고착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125] 따라서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예컨대 범죄의 여죄와 연루관계와 관련한 증거와 같은 예심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수집은 하지 말아야 한다.

12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6면.
125)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18면.

II. 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의 예외

원칙적으로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을 경우에는 수사원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즉 수사원이 범죄자를 적발한 다음, 그대로 놓아두면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고착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을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서 범죄자를 적발하였다고 하여 응당 수집할 수 있는 증거도 수집하지 않는다면 때를 놓치게 되어 예심에서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조 후단은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고착시킬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긴급한 경우 수사에서 범죄자를 적발한 다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예를 들면 증거물이 부패멸실 될 수 있는 경우나 증인이 장기간 외국에 출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126)]

12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6면.

제141조 (수사사건의 이송)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수사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알리고 해당 수사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구금되여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한다.

수사과정에 알게 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준다.

구 형사소송법

제142조 수사사건의 이송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구금되여 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하여야 한다.

수사과정에 알게 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14조(기타 다른 예심 및 수사기관으로 성명 및 체신 회부) 검사, 예심원, 수사원, 판사는 형사소송을 개시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할 구역으로 수신 받은 공표 및 서신을 회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범죄를 예방하거나 중지 또는 범죄 흔적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Ⅰ. 의의

수사원은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여기서 수사관할은 형사소송법 제45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즉 관할은 사건이 어느 한 법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취급처리 될 수 있도록 법기관의 사명과 임무, 범죄발생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설정한다(제45조 관할설정기준).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수사하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 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 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한다(제46조).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사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하며,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수부문 법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리고 철도운수부문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의 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 밖의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한다(제47조).

수사과정에 자기의 관할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에 넘기는 결정을 한 다음 해당 수사기관과 합의하고 이송하여야 한다.[127)]

12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7면.

II. 수사사건이송결정

1. 수사사건이송결정서

수사사건이송결정은 '수사사건이송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사사건이송결정서에는 날짜, 수사원의 직장과 이름, 사건명, 넘기는 이유, 소송법의 조항, 넘길 수사기관명과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의 비준정형을 밝혀야 하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범죄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에는 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검사에게 알리는 방법은 작성한 수사사건이송결정서 등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2. 관련증거와 범죄자의 이송

범죄사건을 해당 관할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에는 수집한 증거를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혐의자나 범죄자가 구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결정서를 작성한다.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서는 수사사건이송결정서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다만 결정내용에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구금시킨 이유, 날짜와 어느 기관으로 이감한다는 것을 더 밝힌다.

3. 사건과 무관한 범죄자료

수사과정에 알게 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는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범죄자료를 넘김에 대하여>를 만들어 수집한 자료를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범죄자료를 넘김에 대하여>에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를 알게 된 경위와 넘기는 자료, 단위책임자(중앙기관에서는 부서책임자)의 비준정형을 밝히고 공인, 명판을 찍는다.

한 부서안의 수사원에게 진행중 수사와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를 넘기는 경우의 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다른 부서 수사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부서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범죄자료에 넘기는 부서와 넘겨주는 부서, 날짜만을 밝힌다.

그리고 범죄자료를 넘겨받은 수사원은 신고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수사시작결정을 하여야 한다.[128)]

12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8면.

제142조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 되였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 쫓기 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143조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 되였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 쫓기 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22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구류)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할 때만 자유를 박탈하는 형식의 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구류할 권리를 가진다.

(1) 그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거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직후

(2) 피해자를 포함한 목격자가 직접 그를 범죄를 저지른 자로 지목할 경우

(3) 피의자 및 그의 의복 또는 거주지 등에서 명백한 범죄 흔적 적발 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보여주는 기타 자료가 있다면, 그가 도주를 시도하려 할 때, 영구적인 거주지 부재 시, 신원이 확실치 않을 시 구류된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구류할 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의무를 가지며 24시간 내에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검사는 구류에 대한 공지를 받은 지 48시간 내에 보호 감금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구류된 자를 석방할 의무를 가진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91조 혐의자 체포의 근거

1. 수사기관/수사관/예심관/검사는 다음의 근거중 하나의 해당할 경우, 자유형에 처할 수 있는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발각된 때
   2)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죄를 범한 자로 가리킬 때
   3) 얼굴이나 옷 또는 수중이나 거주지에서 현저한 범죄의 증적이 발견된 때
2.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는 기타 자료가 있을 때에는, 혐의자가 숨으려고 시도하거나(도주우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주거부정), 신원이 명확하지 않거나(신원불명), 혐의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사의 동의를 얻은 예심관/수사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에,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80조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범죄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정황이 있으면 우선 체포할 수 있다.

(1) 현재 범죄를 예비·실행 중에 있거나 또는 범죄 직후 발각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현장 목격자가 그 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
(3) 신변 또는 주거에서 범죄증거가 발견된 경우
(4) 범죄 후 자살, 도주를 기도하거나 도주 중인 경우
(5)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통모하여 거짓 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진실한 성명이나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7) 떠돌아다니면서 죄를 범하거나, 수차에 걸쳐 죄를 범하거나, 무리를 지어 죄를 범한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제82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즉시 붙잡아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현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범죄 후 즉시 발각된 경우

(2) 지명수배 중인 경우

(3) 탈옥하여 도주한 경우

(4) 현재 추적을 받고 있는 경우

Ⅰ. 의의

체포는 수사원과 예심원이 하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제180조).[129] 그리고 수사원이나 예심원이 범죄혐의자나 피심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영장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승인은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제181조). 따라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본 규정은 영장 없이 행하는 체포와 같은 강제처분의 예외규정이다. 즉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행위자 및 범죄자를 체포하고 수색·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80조~제182조, 제217조~제218조에 규정된 체포, 수색, 압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의 예외적인 소송상 강제행위이다.

여기서 체포, 수색, 압수의 일반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란

129) 체포는 무기, 수갑, 포승 같은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0면).

검사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본조는 수사시작결정의 전후를 불문하며 그리고 침해된 사회관계가 무엇인가에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이 조문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수색, 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130]

II.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경우이다.[131]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이 경우는 수사원이 범죄의 미수나 기수단계에 있는 범죄자를 범죄현장에서 발견한 경우나 범죄 직후에 범죄자를 발견한 경우를 말하며, 보통 수사원의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범죄 직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132]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1) 범죄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은 경우나 가린

13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9면.

131)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5가지 경우 이외에 '범죄혐의자의 신분이 분명하지 못한 때'에도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제정 형사소송법 제82조).

132) 대법원 2013.8.23. 선고 2011도4763 판결.

킨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피해자나 목격자는 범행현장에서 범행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며, 이 경우는 직접경험자의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

(2) '붙잡은 경우'는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범죄현장이나 일정한 장소에 붙잡아 놓고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끌고 온 경우이다.

(3) '가리킨 경우'는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발견한 그 자리에서 가리킨 경우이다.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범죄자라고 지적된 자를 체포하지 않으면 놓치게 될 수 있는 때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1) 이 경우의 '범죄혐의자'에는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미 파악된 범죄혐의자와 함께 정상적인 검찰단속이나 법집행활동과정에 범죄자로 의심이 가는 자도 포함된다.

(2) 범죄혐의자의 '몸'은 그의 몸과 함께 현재 그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이나 배낭과 같은 손짐까지 포함된 의미이며, 범죄혐의자의 '거처'라 함은 범죄혐의자의 살림집 또는 일하는 곳, 머무르고 있는 곳과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

(3) '범죄를 저지른 흔적'에는 증거물과 함께 냄새 같은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군견의 추적이나 식별에 의하여 범죄혐의자로 지적된 자도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견추적조서나 군견식별조서는 수사원이 작성한다. 군견추적조서, 식별조서에는 날짜, 수사원의 직장과 이름, 사건명, 군견소속기관과 군견이름, 소송법 조항, 군견추적, 식별과정과 결과, 군견수의 직장, 이름을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 범죄혐의자나 범죄자가 증거물을 소각·매몰하거나 다른 자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없애거나 은폐시키며, 은폐시켰던 증거물을 꺼내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한 경우도 몸이나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이 나타난 때이므로 본조 제3호에 따라 체포하여야 한다.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1) 범죄혐의자나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할 때의 경우는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즉 수사원의 단순한 추측이나 주관에 의한 판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범죄혐의자나 범죄자가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란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로서 수사원을 피해다니거나 체포가 선포된 경우이다. 수사원이 범죄자로 의심이 가는 자를 단속하는데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도 본조 제4호에 따라 체포하여야 한다.

5.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수사원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분명하거나,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도 범죄혐의자나 범죄자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민보안단속법을 비롯한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민보안단속법을 비롯한 행정법규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라는 것이 인정되고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 검사의 승인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133)]

13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0면.

Ⅲ. 영장 없는 수색·압수

본조에 따라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없이 그의 몸과 거처를 수색하고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체포와 수색·압수가 동반되는 때이다. 그리고 이 조문에 따라 수색·압수하는 경우에는 수색, 압수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색, 압수조서나 수색조서 또는 압수조서만 작성한다. 수색·압수할 경우의 절차와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221조, 제223조, 제224조에 따른다.

체포와 수색·압수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134)]

13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0~111면.

제143조 (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142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였을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는다.

구금된 자에게 이 법 제96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구금을 중지하며 이 법 제10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금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구 형사소송법

제144조 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143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아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22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구류)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할 때만 자유를 박탈하는 형식의 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구류할 권리를 가진다.

(1) 그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거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직후

(2) 피해자를 포함한 목격자가 직접 그를 범죄를 저지른 자로 지목할 경우

(3) 피의자 및 그의 의복 또는 거주지 등에서 명백한 범죄 흔적 적발 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보여주는 기타 자료가 있다면, 그가 도주를 시도하려 할 때, 영구적인 거주지 부재 시, 신원이 확실치 않을 시 구류된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구류할 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의무를 가지며 24시간 내에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검사는 구류에 대한 공지를 받은 지 48시간 내에 보호 감금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구류된 자를 석방할 의무를 가진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92조 혐의자 체포의 절차

1. 혐의자를 수사기관/예심관/검사에게 유치한 이후 3시간 이내에 체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조서에는 본법 제46조에 규정된 권리를 혐의자에게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조서에는 조서의 작성 일자와 시간, 혐의자를 체포한 날짜·시간·장소·근거 및 이유, 혐의자의 신체를 수색 결과 그리고 체포의 상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조서는 작성자 및 혐의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3. 혐의자 체포에 대해서 수사기관/수사관/예심관은 체포한 순간부터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본법 제46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 규정에 의거 혐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 개시전 혐의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변호인과의 접견이 보장된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단독으로(제3자의 입회없이) 비밀이 보장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혐의자가 참여하는 소송행위를 수행할 필요가 경우에는 2시간을 초과하는 접견은 수사관, 예심관, 검사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혐의자와 변호인에게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없다.

제94조 혐의자 석방의 근거

1. 혐의자는 다음의 경우 수사관/예심관/검사의 결정으로 석방된다.
   1) 범죄의 혐의가 (다른 증거에 의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때.
   2) 혐의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근거가 없을 때.
   3) 혐의자의 체포가 본법 제91조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위반하여 행해졌을 때.
2.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을 경우 혐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이내에 본법 제108조 제7항 제3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포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면 혐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3. 만약 법원의 혐의자에 대한 구속 결정이나 체포기간 연장 결정이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내려지지 않으면, 혐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이러한 석방 사실에 대하여 혐의자를 유치하고 있는 기관의 책임자가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수사기관 또는 예심관 그리고 검사에게 통보한다.
4. 만약 혐의자에 대한 수사관/예심관/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법원의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을 경우, 혐의자를 석방할 때에 이러한 결의 또는 결정의 사본을 그에게 발부한다.
5. 혐의자를 석방할 때에 혐의의 내용, 체포의 날짜·시간·장소 및 그 근거, 석방의 날짜·시간 및 그 근거를 명기한 증명서를 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2012년 중국 형사소송법**

제84조 공안사기관은 피체포자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신문을 하여야 한다. 체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Ⅰ. 의의

본조는 수사원이 앞의 제142조에 따라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금하였을 경우 이후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검사의 승인 없이 수사원이 체포하여 구금한 경우, 이후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사원에 대한 검사의 감시를 분명히 함으로써[135]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Ⅱ. 내용

1. 구금과 검사의 승인

수사원은 검사의 승인 없이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였을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36]

(1) 48시간 안으로

여기에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이란 구금결정서를 적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검사가 승인하여 주는 시간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검사의 구금승인은 구금자체에 대한 승인일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43조에 의한 체포, 수색·압수에 대한 승인까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본다.[137]

13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6면.
136)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6면.
13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1~112면.

(2) 구금결정서

수사원이 작성하는 구금결정서에는 구금날짜, 구금한 일군의 직장, 이름, 구금한 대상자의 신분관계(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는 곳, 직장직위), 구금사유, 소송법조항,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밝혀야 하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3) 검사의 승인

구금결정서를 송부받은 검사는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검사의 승인은 검찰소의 공인, 명판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4) 검사의 불승인

검사의 구금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검사가 구금결정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금은 물론 체포, 수색, 압수 자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 체포된 자를 즉시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압수하였던 증거물처리는 본법 제42조(사건종결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제43조(증거물의 처리방법), 제44조(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에 따른다.

여기서 검사가 구금결정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란 이 법 제143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이다. 이와 같이 검사가 구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구금취소결정서를 만들어 구금결정서와 함께 수사일군에게 보낸다. 여기의 구금취소결정서에는 날짜, 검사의 직장과 이름,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의 직장과 이름, 형법조항, 구금사유, 취소사유와 결정내용, 소송법 조항을 밝혀야 하며 해당 검찰소의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138)]

13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2면.

2. 구금기간

구금한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는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금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오랫동안 구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일단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로 인정되어 체포된 자를 조사하지 않고 내놓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금기간을 체포한 날부터 10일까지로 규정하였다.

수사시작결정이 없이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범죄혐의자나 범죄자의 진술이나 증인진술 같은 범죄가 있다는 자료에 근거하여 곧 수사시작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곧 수사시작결정을 하라는 것은 체포된 자를 취급하는 과정에 범죄가 있다는 자료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수사시작결정을 하라는 의미이지 구금을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139)]

3. 범죄혐의자나 범죄자에 대한 처리

(1) 예심이송

먼저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예심에 넘길 수 있는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2) 구금취소결정

예심에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범죄자라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수사는 계속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금취소결정을 하고 구금된

13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2면.

자를 석방한 다음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구금취소결정은 구금취소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구금취소결정서에는 날짜, 구금을 취소하는 일군의 직장, 이름, 구금을 취소할 대상자의 신분관계(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는 곳, 직장직위), 구금취소사유, 소송법조항,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밝혀야 하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수사원은 구금취소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구금취소결정서등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4. 구금중지와 구금중지해제

구금된 자에게 본법 제96조[140]의 사유(형사소송의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금을 중지하며, 제105조[141]의 사유(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구금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다.

구금중지결정은 구금중지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구금중지해제 및 취소결정은 구금중지해제 및 취소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금중지와 구금중지의 해제나 취소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알리며, 이 경우 검사에게 해당 결정서등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142]

---

140) **형사소송법 제96조 (형사소송의 중지사유)**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해당 기관이 한다.

141) **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
형사소송중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 제100조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하고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14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2면.

제144조 (구금하지 않을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 체포날자, 사유 같은 것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구 형사소송법

제145조 구금하지 않은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 체포날자, 사유 같은 것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구금된 자에게 이 법 제43조의 사유나 나타날 경우에는 구금을 중지하여 제5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금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22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구류)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할 때만 자유를 박탈하는 형식의 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구류할 권리를 가진다.

(1) 그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거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직후

(2) 피해자를 포함한 목격자가 직접 그를 범죄를 저지른 자로 지목할 경우

(3) 피의자 및 그의 의복 또는 거주지 등에서 명백한 범죄 흔적 적발 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보여주는 기타 자료가 있다면, 그가 도주를 시도하려 할 때, 영구적인 거주지 부재 시, 신원이 확실치 않을 시 구류된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구류할 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의무를 가지며 24시간 내에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검사는 구류에 대한 공지를 받은 지 48시간 내에 보호 감금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구류된 자를 석방할 의무를 가진다.

Ⅰ. 의의

본조는 수사원이 제142조에 따라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체포한 다음, 해당 체포된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를 규정한 것이다.

Ⅱ. 내용

1.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

체포한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날짜, 사유 같은 것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즉 범죄혐의자나 범죄자에 대한 체포지속시간은 48시간이다. 이 시간동안 체포한 자를 구금실에 억류하고 조사할 수 있다. 조사결과 구금대상이 안된다는 것이 엄밀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날짜, 사유 같은 것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체포통지서

검사에게 알리는 경우 수사원은 체포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구금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린다. 체포통지서에는 날짜, 체포한 일군의 직장이름, 체포된 자의 신분관계(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는 곳, 직장직위), 체포날짜, 체포사유와 구금대상이 안되는 근거, 소송법조항, 단위책임자의 비준정형을 밝혀야 한다.[143)]

14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3면.

제145조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곧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을 예심에 넘긴다.

이 경우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범죄자는 체포하여 예심에 넘긴다.

구 형사소송법

제146조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곧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넘겨야 한다. 이 경우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범죄자를 체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24조(수사의 완료 및 중지) 예심이 의무인 경우 수사는 예심원에게 회부하는 명령과 함께 종료된다.

예심이 의무가 아닌 경우 수사는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명령 혹은 기소와 함께 종료된다. 만약 본법 제208조에 의한 사유 중 하나가 존재할 때, 수사기관은 이유를 붙인 명령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고 사본은 검사에게 24시간 안에 전달하여야 한다. 나머지 경우 기소결정은 모든 수사자료들과 함께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법 제195조에 명시된 사유들 중 하나가 존재할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진행을 중지할 의무를 가지며 그러한 경우 예심은 의무가 아니다. 수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그 사본은 24시간 안에 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Ⅰ. 의의

수사시작결정을 하여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범죄사건은 바로 예심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범죄사건의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이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면 수사의 업무는 끝난다. 즉 수사의 결과 그 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증거들이 수집되고 범죄의 혐의자가 확정되면 곧 자료와 함께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것이다.[144)]

Ⅱ. 내용

1. 예심에 넘기는 결정(결정서)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길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은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서에는 날짜, 수사원의 직장과 이름, 조사 확인된 범죄내용, 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 넘길 예심기관명, 단위, 부서책임자의 비준정형을 밝혀야 한다.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길 경우 중앙급 기관에서는 해당 부서책임자, 도(직할시)급 기관에서는 기관책임자, 시(구역)와 군급 기관에서는 기관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군급 아래기관 책임자는 비준할 수 없다.

---

144) 이에 반하여 수사과정에서 얻은 자료에 의하여 범죄가 범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범죄적 행위를 한 자가 확정되었으나 그가 사망하였거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8조에 따라 수사원은 수사취소결정을 하고, 이를 검사에게 알린다(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5면).

2. 예심에 넘김

(1) 범죄사건을 곧 예심에 넘기라는 것은 범죄자가 적발되면 더 조사하지 말고 제때에 넘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길 경우에는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물과 기타 증거자료를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야 한다.

(2) 예심에 넘길 때 범죄자가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즉 수사원은 범죄자가 거주지나 거처지에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심에 사건기록만 넘기면 된다. 그러나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도주한 경우 그리고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예심에 넘겨야 한다.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도주한 경우 그리고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석은 앞의 제142조 제4호와 제5호의 해석에 따른다.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본법 제165조[145]의 해석에 따른다. 따라서 수사원은 범죄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하고,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해당 범죄자를 찾는 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영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낸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체포하고 회보한다.[146]

---

145) **형사소송법 제165조 (피심자체포의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낸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한다.

14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4~115면.

제146조 (수사에 대한 감시)

수사감시를 맡은 검사는 감시결정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소송문건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147조 수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211조(수사 및 예심 과정에서의 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감독권한) 검사는 검찰의 감독에 관한 소련법(USSR Statute on Procuratorial Supervision)에 따라 수사 및 예심절차에서의 법 집행을 감독한다.

(1) 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a) 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를 개시하고, 여죄나 책임을 면하는 범죄자가 없도록 조치한다.

(b) 불법적이거나 근거 없는 형사소송절차 또는 기타 불법적 권리 제한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엄격한 주의를 기울인다.

(c) 수사 및 예심 시행을 위하여 본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위반되지 않고 준수되도록 한다.

(d)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의 승인이 없이 체포되는 사람이 없도록 감독한다. 체포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는 체포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숙지하고 필요 시 피의자나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다.

(2) 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다.

(a) 수사 및 예심, 피의자나 피의자에 대한 제재조치(measure of restraint)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피의자 기소, 범죄 및 기소 범위 분류, 사건 회부, 특정 수사행위, 은신 중인 범인 수색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린다.

(b)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에게 범죄서류, 문서, 자료와 그 밖에 범행과 수사 및 예심절차, 범인 수색에 관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요구한다.

(c) 수사 및 예심에 참여하고 필요 시 직접 사건에 대한 예심이나 특정 수사행위를 취한다.

(d) 보충수사에 관한 서면지시서와 함께 형사사건을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에게 환송한다.

(e)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의 불법적이며 근거 없는 명령을 무효화한다.

(f) 수사원이나 예심원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이 위반되는 것을 용인하였다면 그 수사원이나 예심원을 향후 수사나 예심에서 배제시킨다.

(g) 사건 수사의 완전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담당 수사기관에서 다른 예심원에게, 또는 담당 예심원에서 다른 예심원에게 이양한다.

(h) 검찰청 산하 기관의 예심원이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특정 수사행위나 수색조치의 이행을 수사기관에 위임한다.

(i) 본법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형사사건을 종결시킨다.

Ⅰ. 의의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이를 행한다. 그리고 수사감시는 형사소송법 준수정형에 대한 법적 감시이고, 수사원의 책임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감시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Ⅱ. 내용

1. 수사에 대한 감시 방법

수사감시를 맡은 검사는 감시결정서를 작성하며,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수사의 전과정을 정상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검사는 수사에 참가하는 방법이나 소송문건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수사가 법적 요구에 맞게 정확히 진행되는가를 감시한다.

(1) 수사참가 방법의 수사감시

검사는 수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검사가 수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현장검증, 수색·압수, 식별 같은 수사에 참가하여 해당된 소송행위가 소송법에 규제된 원칙과 방법, 절차대로 진행되는가를 살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검사가 수사에 대한 감시를 하는 중요한 방법은 소송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원은 현장검증, 수색·압수 같은 중요한 소송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소송문건검토 방법의 수사감시

검사는 사건기록과 같은 소송문건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검사

가 소송문건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사건기록을 보는 과정을 통하여 수사원이 법적 요구와 절차대로 소송행위를 하였는가, 수사에서 밝혀야 할 사실을 다 밝혔는가, 증거는 충분히 수집하였는가와 같은 것을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검사가 검토하는 소송문건이나 사건기록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결정서와 진술서 같은 일체의 소송자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관 내부의 사업문건, 행정적인 조사문건(수사시작결정의 근거로서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문건은 제외)은 볼 수 없다. 예컨대 정식 소송문건으로 기록에 붙이지 않고 수사기관들이 다만 사업상 참고로 하고 있는 정보자료 기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직접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볼 필요도 없다. 만약 수사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알려주면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47] 또한 수사에 대한 감시를 증인이나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와 같은 소송관계자들을 별도로 만나는 방법으로 수사감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48]

2. 검사의 지시

검사는 감시과정에 알게 된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 잡거나 필요한 수사를 할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수사원이 입회인이 없이 현장검증을 하거나 근거 없는 수색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를 바로 잡으며 감정이나 식별 같은 소송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지시할 수 있다.

---

14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7면.

148)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와 제259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에 의한 사유로 신청이나 의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관계자들을 따로 만날 수 있다고 한다(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6면).

검사의 지시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도 있으나, 수사원이 만든 결정서를 취소하거나 구금 또는 구류된 자를 석방하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명백히 밝힌 해당 취소결정서나 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가 만든 해당 소송행위 취소결정서나 지시서에는 검찰기관의 공인, 명판이 있어야 한다. 취소결정서를 비롯한 서면지시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3. 지시에 대한 수사원의 의견제기

(1)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즉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먼저 검사의 지시내용을 집행하고 나중에 상급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149)]

(2) 검사의 지시에 대한 의견제기는 말 또는 서면으로 한다. 상급검찰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한다. 의견서에는 날짜, 수사원의 직장, 이름, 사건명, 지시내용과 의견내용, 소송법의 조항,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밝혀야 하며 공인과 명판을 찍는다.

(3) 의견을 받은 상급검찰소는 그에 대하여 3일안으로 해결한다. 서면으로 의견을 받은 경우의 해결은 문건화(단위 책임자의 비준과 공인 및 명판이 있어야 한다)되어야 하며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150)]

149) 그러나 이 법 제177조, 제178조 2항, 제179조, 제216조와 그 해석에 어긋나는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집행하지 않고 상급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7면).

15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6~117면.

제4장 예 심

제4장 예 심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개 관

예 심

Ⅰ. 예심 제도

북한 형사소송법 제1조는 형사소송법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 하는데 이바지 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는 수사절차, 재판절차, 집행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51] 북한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용어조차 없는 독특한 예심원 제도를 갖고 있다.[152]

---

151)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228면: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대략 8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① 형사소송절차의 개시, ② 수사, ③ 예심, ④ 재판소(법원)에의 (사건) 송치, ⑤ 공판전 수속, ⑥ 공판, ⑦ 상소심, ⑧ 판결의 집행 등이 바로 그것이다."

152)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243면: "오늘날 북한에 있어서의 예심의 실제는 명백히 그 기본에 있어서 소련의 그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예심원은 예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에 관한 범죄의 유무 및 그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줄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1950.3.3. 법령 제90조)."; 강구진, 북한법의

북한에서 모든 형사사건은 예심을 거쳐 재판에 넘어간다. 형사소송에서 예심은 사실상 재판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153)]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설명한 예심의 개념을 정리하면, "예심원이 수사일군에게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과 강제처분을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데, 피심자에 대한 범죄의 유무 및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 또는 사건기각의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154)]

북한의 형사소송법학자에 따르면 북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예심은 '사실상 재판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155)]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체포와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재산담보처분 등과 같은 기소전 강제처분이 집행되는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한다.

사실상 북한 형사소송에서 예심원 제도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156)]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 228면: "예심이 개시되는 경우, 예심원은 피심자와 증인을 심문하고, 피심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증거를 상세히 기재하는 서류인 기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증거를 조사한다."

153)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7면.

15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7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7면.

15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7면.

156) 북한의 예심제도에 관한 국내 문헌으로 (최근 발표순):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 제23호, 법무부, 2015, 32~94면(71~73면) 참조. 각주 50면 재인용: "원래 예심제도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북한은 프랑스 예심제도의 영향을 받은 구소련 형사소송법을 계수하여 예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예심제도가 판결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신분을 가지는 예심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활동과 체포·구금,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한 후 소추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예심제도는 수사원에 가까운 예심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강제처분, 증거수집 등의 실질적인 수사활동만 수행할 뿐 소추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북한의 예심기관은 결국 수사기관에 다름 아니다고 할 수 있다."; 손영조, 북한 예심제도의 변화와 의미 -실행 조직과 적용 실태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5권 제3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2, 59～99

이하에서는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의 임무와 조건(Ⅱ), 예심의 절차와 형식(Ⅲ), 예심의 종결(Ⅳ), 예심사건의 병합과 분리(Ⅴ), 북한 형사소송법의 예심원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Ⅵ).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비교하여 기본적으로 몇 가지 다른 점들을 설명하고자 한다(Ⅶ).

Ⅱ. 예심의 임무와 조건

북한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는 예심의 임무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예심의 임무

"북한 형사소송체계에서 예심은 중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북한 형사소송에서는 어떤 사건을 막론하고 예심을 거쳐서만 재판에 넘어간다. 북한 형사소송에서 예심은 검사의 기소와 소추를 준비하며 재판의 성과를 보장하는 책임적인 임무를 수행한다."[157]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예심은 북한법에 따라 과학적인 증거를 찾

면(60면): 이 논문은 "북한 형사소송법의 변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심 실행 조직의 변화, 즉 일반 범죄에 대하여 검찰소 예심원이 전담하던 예심을 사회안전기관과 군사기관에도 예심원을 두고 각각 별도로 예심을 담당하게 된 변화를 고찰하고, 법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새터민들의 증언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당 안전위원회'의 등장과 임무, 변화 등에 대하여 해당 시기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견주어 연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권오걸,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예심절차, 법학논고 제25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61～92면: 이 논문은 주로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3(자체교재), 김일성종합대학, 1985'의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법무부, 「북한사법제도개관」, 334~335면.

157)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7면.

아내고 검토하며 피심자를 심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확정하고 연루자들을 모조리 적발하는 등으로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8] 예심이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건을 밝히고 확정하는 예심원의 소송법상 행위를 말한다. 이로부터 예심의 임무는 사건의 전모와 여죄연루관계를 남김없이 밝혀내고 확정하는데 있다.

북한 형사소송에서 예심의 임무는 무엇보다 먼저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무결하게 밝혀내는데 있다.

"예심원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행동과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자가 범한 죄의 성격,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목적, 범죄와 수단과 방법, 범죄행위의 정도와 결과, 범죄자가 범죄수행에서 저지른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자의 사회정치생활 경위 등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을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159]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서 기본은 범죄사실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다. 범죄사실을 정확히 밝혀내지 않고서는 예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범죄의 성격도, 범죄에 대한 책임정도도 범죄사실을 밝혀냄이 없이는 규정할 수 없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하여 첫째, 사건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둘째, 과학적인 증거를 정확히 수집하고 고착하여야 하며 셋째, 사건 해명을 위하여 세울 수 있는 가정을 다 세워 놓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제아무리 교활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범죄사건의 조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160]

---

158)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7면.
15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7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27면.
160)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7면.

북한 형사소송에서 예심의 임무는 다음으로 범죄자의 여죄연루관계를 모조리 밝혀내는데 있다.

여죄란 범죄자에게 제기된 범죄사건이외의 다른 범죄를 말하며, 연루자란 범죄수행의 공모관계자를 말한다. 예심에서는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과 함께 여죄연루관계까지도 다 밝혀내야 한다.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예심의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공모하여 범죄를 수행하는 한편 또 여러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죄의 여죄연루관계를 다 밝혀내지 않고서는 범죄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정확히 지울 수 없다."[161]

"범죄자의 여죄연루관계를 정확히 밝혀내기 위하여 예심원은 첫째, 사건해명에서 의심스러운 자그마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162]

범죄의 뿌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뽑아버리며 범죄를 미리 막는 것은 범죄와의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원칙의 하나이다. 범죄의 뿌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뽑아버리기 위한 적극적으로 주동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사실상 범죄사건의 전모를 들춰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범죄의 발생도 막지 못한다.[163]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은 창조적이며 창발적인 사업이다"고 설명한다. 예심은 제기된 형사사건을 넘겨받아 순수 범죄사실이나 고착시키는 수동적인 역할에 불과한 소송활동이 아니다.[164]

---

161)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8면.
162)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8면.
163)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8면.
16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8면.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을 의문의 여지없이 모조리 밝혀내고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활동을 통하여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심원의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다.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을 비롯하여 반혁명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감시하고 그 준동을 제때에 적발하여 철저히 진압하며 인민대중 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준법의식을 높이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은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165]

예심원은 언제나 범죄사건을 예심하는 과정에 그 범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야 하며 범죄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버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면서 동시에 그 범죄가 범해지도록 자극하는 조건들과 사정들을 밝혀내어 해당 기관, 기업소 또는 단체에 알려주며 앞으로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예심원은 군중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사리정연하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166]

2. 예심의 조건

예심원이 예심을 하기 위하여서는 예심에 들어갈 수 있는 일정한 조건

165)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8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8면; "재판에서는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만큼 직접 범죄자와 범죄자에 대한 완전한 증명을 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 여기서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 재판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증거를 수집하려고 해서는 이미 때가 늦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짧은 시간안에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없다. 이로부터 예심은 재판과 함께 형사소송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166)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9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8면.

이 있어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예심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예심원은 범죄사건 또는 범죄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곧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예심원이 예심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보다 먼저 예심이 자기에게 맡겨졌을 때이다.[167]

수사기관, 재판소 등은 형사사건을 제기할 권한은 있으나 예심 할 권한은 없다. 예심은 오직 예심원만이 전문으로 한다(예외적으로 검사는 예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검사, 재판소 등이 형사사건을 제기하고 예심을 위임해왔을 때 예심원은 예심에 착수할 수 있다.[168]

또한 예심원은 사건관할에 따라서, 범죄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또는 다른 검찰소로부터 예심이 의뢰되어왔을 때 위임에 의하여 사건을 맡아 예심할 수 있다.[169]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예심원이 예심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으로 예심원 자신이 범죄사건을 적발하고 형사사건을 제기하였을 때이다. 이처럼 예심을 하기 위하여서는 예심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170]

북한 학습참고서에 따르면 "부르죠아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심》은 당사자 일방이 소추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소송활동이므로 그것은 형사소송에서 부차적인 단계이며 형사소송에서 중심적이며 사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 단계는 재판단계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도 예심에 관심이 없으며 또 예심이 사건해결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데 있다. 이로부터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는 예심의 임무를 사건을 재판소에 넘길 것인가 넘기지 않을 것인가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167)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9면.
168)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9면.
16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9면.
170)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9면.

최소한의 증거만을 수집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71]

그러나 "실천적으로 볼 때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는 재판전단계인 《예심》 단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여기에서 착취계급의 이익에 맞게 《사건》과 《증거》를 날조하여 재판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한다."[172]

또한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는 《예심》에서 규문주의적 본질을 가리우기 위하여 《예심》에서도 피소자에게 《변호인》을 붙이며, 그는 《예심》 중 언제든지 피소자를 위하여 《예심원》에게 필요한 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예심원》의 승인을 받아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등 변론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듯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법전》의 다른 규정들에서는 《변호인》이 피소자와 만나며 편지를 주고받는 등을 《예심판사》가 금지시킬 수 있으며 피소자의 신문에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심》에서 수색, 압수, 검증 등을 할 때에는 《변호인》을 입회시키게 되어 있으나 《급하면》 《변호인》의 입회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 규문주의적 《예심제도》를 부활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173]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 《예심》은 다만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며 《예심원》 자신이 사건을 주동적으로 맡아 예심하는 경우란 없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는 《예심원》이 예심의 범위를 자의대로 선정할 수 없고 검사가 《예심》을 요구한 범위내에서만 예심을 하며 예심과정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검사의 승인밑에서만 그에 대하여 예심할 수 있다."[174]

---

171)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59면.
172)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0면.
173)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0면.
17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0면.

"이것은 결국 예심에서 기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주장과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방향에서 예심이 진행될 것을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175]

Ⅲ. 예심의 절차와 형식

북한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는 예심의 절차와 형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예심의 절차

"재판전단계에서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소송구성부분의 하나는 예심행위이다. 그것은 예심에서 사건의 전모와 여죄련루관계가 밝혀지고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소송구성부분의 하나인 예심이 자기 앞에 나선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소송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예심의 절차와 형식은 하나의 실무적인 형식이 아니라 예심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보장하며 예심의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예심에서는 예심원들의 높은 책임성을 전제로 하면서 법에 규정한 예심의 절차와 형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에서 예심의 절차와 형식은 예심의 시작, 형사책임추궁결정, 보전처분, 심문, 예심종결 및 기소장 작성 등으로 되어 있다."[176]

175)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0면.

176)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1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9면: "예심의 첫 행위는 예심의 착수결정이다. 다음에 피심자를 심문하고 보전처분적용문제를 결정한다.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새 증거의 수집이나 문제의 해명이 사건을 제기한 해당 수사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에 맡긴다. 예심을 끝낸

2. 예심의 시작

예심절차에서 첫 소송행위는 예심시작결정이다(일명 예심수리결정 또는 예심착수결정이라 한다).[177]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예심원은 범죄사건 또는 범죄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거나 자기가 직접 발견하였을 때에는 곧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이 예심을 시작하는 법률적 근거는 예심시작결정이다. 예심은 책임적이면서도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활동이다. 이로부터 누가 어느 때부터 어떤 사건을 맡아서 예심을 한다는 법적 근거문건을 만들어 놓고 예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심활동에 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하는 소송문건이 바로 예심시작결정이다. 이처럼 예심시작결정서는 예심의 결과에 대하여 예심원이 법 앞에 책임지겠다는 보증문건인 동시에 예심을 시작할 권리를 발생시키는 소송문건으로 된다."[178]

예심시작결정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예심원 자신이 직접 범죄 및 범죄자를 적발, 확인하였거나 신고, 통보 등에 의하여 형사사건을 제기하고 예심을 맡아할 때에는 예심시작결정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형사사건제기결정서와 함께 만든다. 그러나 소송문건의 법적 효력은 하나는 형사사건제기결정서로 또 하나는 예심시작결정서로 나타난다. 이때 소송문건의 형식은 《형식사건제기 및 예심시작결정서》로 표현되며 그 내용에는 《형사사건을 제기하고 예심을 시작한다.》라고 쓴다.[179]

다음에는 예심을 총화한 기소장을 써서 검사에게 보낸다. 필요한 예심행위를 다하였으나 기소할 정도로 범행자 또는 그의 범행이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177)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1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9면.

178)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1면.

둘째, 형사사건제기결정서와 예심시작결정서를 하나의 소송문건으로 만드는 이유는 예심원 자신이 사건을 제기하고 동시에 예심까지 맡아하는 조건에서 소송문건을 몇 개로 만들던 상관함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 예심원 한사람이 진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또한 소송문건의 간편화, 편리화를 보장하는데 있다.[180)]

3. 형사책임추궁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이란 범죄혐의자를 정식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심자로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를 확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 형사소송에서 피심자란 형사책임을 추궁 받아야 할 범죄자를 말한다. 피심자를 확정한다는 것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심원은 피심자를 확정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자를 확정한다는 것은 사람의 운명과 관련되는 신중한 문제이다. 그것은 피심자로 확정되면 그는 곧 범죄자로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국가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된다. 그러므로 피심자 확정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히 하여야 한다. 즉 범죄가 범해진 것이 틀림없고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바로 그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며, 따라서 그에게 마땅히 형사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 피심자로 확정하여야 한다.[181)]

형사책임추궁결정은 형사소송을 추진시켜 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17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1면.
180)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1면.
181)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3면.

그것은 첫째,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물을 대상, 다시 말하여 재판에 넘겨야 할 범죄자가 결정된다.[182)]

형사책임추궁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범죄사건과 범죄혐의자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범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범죄자를 알게 되며 따라서 재판받아야 할 자가 확정된다.

둘째,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함으로써 피심자에게 소송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확고해진다.[183)]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일련의 소송상 강제행위들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피심자가 누군인가를 모르는 조건에서 그것은 매우 불안전하며 또 보전처분과 같은 기본적인 강제처분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피심자가 확정되면 보전처분이나 재산담보처분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소송상 강제행위를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

셋째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피심자에게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발생한다.[184)]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면 피심자는 소추의 내용을 알게 되며 따라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물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피심자가 소추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소추란 좁은 의미에서는 피심자에게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미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이와 함께 사건에 범죄자를 피심자로 인입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있다). 그것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피심자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피심

182)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3면.
183)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3면.
18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3면.

자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형사책임을 추궁 당하는가를 모르게 되며 따라서 자기에게 범죄적 책임을 추궁하는데 대하여 변호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잃게 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후과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48시간 내로 그것(소추사실)을 피심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피심자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며 그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할 일련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185]

이처럼 형사책임추궁결정은 중요한 예심활동의 한 분야이며 형사소송을 진척시켜나가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피심자 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선 피심자 확정은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가 다 수집된 조건에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에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심자로 결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그것은 한번 확정한 피심자를 그 사건의 절대적인 피심자로 인정한다면 예심과정에 새롭게 알게 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소홀히 스쳐지내 보낼 수 있으며 또한 확정한 피심자를 예심하는 과정에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것을 무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186] 특히 범죄사건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범죄자로 되는가, 안되는가를 가르는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범죄자를 확정한다는 것은 사람 문제를 심중하게 다룰데 대한 당의 정책과 어긋나기 때문이다(범죄자가 명백한 사건은 제외).[187]

다음으로 한 사건에 여러 명의 범죄자가 공모하여있는 경우에는 비록

185)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4면.
186)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4면.
187)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4면.

그들의 범죄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추궁결정서는 피심자별로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매 개인별로 형사책임을 묻는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예심을 계획화하여 빨리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심자에 따라 형사책임을 정확히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188)]

다음으로 피심자를 확정한 다음에 그에게 묻는 책임이 달라지거나 범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그것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을 정확히 지우기 위해서이다.[189)]

피심자 확정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에 주의를 돌리면서 그에 맞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형사책임추궁결정서와 형사사건제기결정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실무실천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소송문건에 담겨지는 내용과 그 작성시기가 일치하거나 유사하게 하는 현상이 적지 않다. 이로부터 두 소송문건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두 소송문건은 첫째, 문건에 담겨지는 내용과 문건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

형사사건제기결정서는 범죄와의 법적 투쟁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하는 법적 근거문건이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제기결정서는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서도 작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제기결정서에 밝히는 범죄내용은 형사사건제기의 사유와 근거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을 그대로 명확하게 써야 한다.[190)]

188)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4면.
18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4면.

형사책임추궁결정서는 범죄자를 피심자로 확정한다는 것을 공포하는 법적 근거문건이다. 그러므로 형사책임추궁결정서는 특정된 범죄자를 모르고서는 만들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일반적으로 범죄적 내용을 쓰면서 그 범위와 한계를 찍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피심자에게 예심의 범위를 찍어준다면 한편으로는 범죄의 여죄 연루 관계를 밝혀내기가 힘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유도심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191]

둘째, 두 소송문건의 작성조건이 서로 다르다.

형사사건제기결정서는 형사소송의 시초를 이루는 첫 소송단계의 문건으로서 범죄가 있다는 사유와 근거가 있으면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범죄와의 법적 투쟁을 제때에 단호하게 벌릴 수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추궁결정서는 언제나 형사사건제기결정을 한 다음 피심자를 확정할만한 근거가 뚜렷할 때에 작성한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제기결정서보다 시간적으로 뒤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192]

다음으로 형사책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형사책임이라는 말은 형사소송법에서나 형법에서 다 쓰는 법률용어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

형법에서 형사책임이라 할 때에는 범죄자의 고의, 과실로 하여 발생한 범죄 행위와 결과의 죄책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에서 쓰는 형사책임은 언제나 범죄자의 죄책이 재판소의 판결로서 증명되고 확정되어 범죄자에게 실지 형벌이 적용될 때 나타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서의 형사책임은 죄를 범한 자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으로 인입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소송법상 의미에서의

190)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5면.
191)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5면.
192)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5면.

형사책임은 사람을 피심자로 인입할 때부터 시작되어 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면 끝난다.[193]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학습참고서에 따르면 "부르죠아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체계에 예심단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심자를 확정하는 것은 소추자로서의 검사나 경찰이 특정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추궁을 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재판소가 그것을 접수한 때로부터 그 사람은 형사 책임을 추궁 받아야 할 피심자로 지목된다. 이것은 검사나 경찰이 예심전단계에서 조사 확정한 자료를 재판소가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혐의자로 되면 그는 곧 피심자로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194]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헌법정신과 공판중심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Ⅳ. 예심의 종결

북한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는 예심의 절차와 형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심종결이란 예심원이 예심을 끝내는 소송활동을 말한다. 예심종결은 첫째, 예심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을 때에 한다. 다시 말하면 사건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검토 확인한데 기초하여 사건을 원만히 밝혀냈을 때에 종결한다. 둘째, 예심종결은 사건을 기각할 사정이 있을 때에

193)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6면.
19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6면.

한다. 사건을 기각하여야 할 법률적 및 사실적 조건이 있을 때에는 예심을 종결한다. 이때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형식으로 예심을 끝낸다.[195)]

북한 형사소송에서 예심종결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소송상제도의 하나이다. 그것은 예심을 종결할 때에 비로소 피심자는 예심사건기록전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대한 새로운 의견과 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피심자에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기할 의견이 없는가를 물어보고 그 의견의 정당성여부에 따라 예심원이 공정하게 처리해 주도록 규정한 것은 사건을 이유 없이 재판에 넘기는 일이 없게 하며 앞으로 있게 될 재판의 심리의 완벽과 판결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할 때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196)]

① 피심자에게 예심을 끝낸다는 것과 사건을 재판소에 넘기면서 기록을 함께 보낸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심자에게 예심기록을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이나 신청을 할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피심자에게 예심기록을 보여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예심원은 그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 피심자가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접수하고 그 의견의 정당성여부를 따져보고 용인 또는 거부하는 결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피심자로부터 정당한 의견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예심종결을 하지 못한다. 피심자의 새로운 신청에 따라 예심원이 다시 사건을 조사하였다면 사건기록전체를 피심자에게 다시 보이거나 읽어주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95)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73면.
196)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74면.

이러한 법적 수속절차를 지키면서 예심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심자가 인입되어 있을 때에는 매개 피심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의 기록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심기록 전체를 열람시키거나 읽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예심사건에는 한 개 또는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범죄를 함께 수행한 여러 범죄자를 병합하여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심기록에는 본질적으로 호상 연관된 범죄내용을 밝히게 된다. 따라서 매개 피심자는 직접 자기와 관련되는 범죄내용 뿐 아니라 다른 피심자와 관계되는 범죄내용 전체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197]

Ⅴ. 예심사건의 병합과 분리

북한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는 예심사건의 병합과 분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사건의 병합과 분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병합과 분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하였거나 혼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사건으로서 그것이 서로 연관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한 사건이라도 따로 갈라서 심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심사건의 병합은 무엇보다 먼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 한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하나의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 대인관할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예심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건을 병합한다. 예를 들면 협동농장원, 철도종업원,

197)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74면.

군대기관에서 일하는 종업원 등이 서로 공모하여 국가제산을 훔치는 범죄를 수행하였다면 예심관할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어느 한 예심기관이 맡아 예심을 진행한다. 이 경우에 특별검찰소 예심원이 맡아 예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대상을 관할하는 예심기관이 맡아서 예심할 수도 있다. 예심사건의 병합은 다음으로 혼자서 관할이 다른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나 그 모두를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 한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국가양곡과 수송도중의 철도화물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물을 파괴하는(반혁명적 고의가 없이)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대상은 각이하며 따라서 예심관할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범죄자의 이러한 행위가 그의 적발체포와 함께 동시에 알고 있었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제기하고 예심을 진행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 사건병합이 제기되는 것은 매개 범죄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형사사건을 제기하였다가 후에 범죄자를 체포하여 예심하는 과정에 그가 이 모든 범죄를 감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세 개의 별개 사건을 제기하였던 형사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사건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별검찰소 예심원이 맡아 예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혼자서 관할이 같은 여러 범죄를 감행하였을 때의 그 수속절차도 위와 같다. 형사사건 취급에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사건을 서로 연관시켜 밝힘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의 전모와 여죄 연루 관계 그리고 범죄의 뿌리 등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절약하고 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198]

198)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79~80면.

Ⅵ. 북한 형사소송법의 예심원에 관한 법규정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원 규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심원은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반복조사는 금지된다(형사소송법 제149조 반복조사금지).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기간의 2차 연장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다시 2개월로 환원되었다. 또한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기간은 총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었으나,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다시 5개월로 환원되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예심기간연장, 제187조 구류기간의 연장).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은 이 만큼 중요한 제도이다.

또한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은 10일 이내에서 예심을 끝내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나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을 7일안으로 끝내도록 개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150조 예심의 기간).

그리고 피심자의 심문은 8시에서 20시 사이에만 하도록 하였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검사의 참가 밑에 하도록 규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162조 피의자심문시간).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통고하도록 하였고(형사소송법 제168조 피심자의 권리통고), 필요에 따라 피심자 심문에 2명의 입회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172조 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참가).

또한 예심원이 피심자를 체포할 경우 체포의뢰결정서를 작성하였고 체포영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165조 피심자체포의뢰). 한편 체포·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 이전이라도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가능하도록 인정하되, 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지 못

하면 구류처분을 해제하도록 제한하였다(형사소송법 제177조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구류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가능하며, 노동단련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178조 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특히 체포영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심원이 체포영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승인하며,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형사소송법 제179조 체포의 담당자, 제180조 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검증의 종류와 검진결정서의 작성(형사소송법 제192조, 제195조), 검증, 검진의 시간제한(형사소송법 제196조), 심리실험의 사유와 절차(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2조), 감정의 종류와 의뢰절차(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08조), 증인에 대한 구인시간 제한(형사소송법 제228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와 범위의 제한(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대질심문과 식별심문의 사유와 절차(형사소송법 제234조 내지 제242조)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Ⅶ.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북한 형사소송법 비교

1. 범죄혐의자·피심자·범죄자의 개념

대한민국과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수사대상자의 용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 범죄인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북한 형사소송법은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로 구별하여 사

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피의자에 대해 북한 형사소송법은 피심자라고 부르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피고인에 대해 북한 형사소송법은 피소자라고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혐의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통해 피심자가 된다. 피심자란 형사책임추궁을 받아야 할 범죄자를 말한다. 피심자로 확정되면 그는 곧 범죄자로 확정된다. 피심자는 일반적으로 국가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된다. 피심자 확정은 범죄가 범해진 것이 틀림없고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바로 그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며, 마땅히 형사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 피심자로 확정한다."[199] 피심자 확정이란 재판받아야 할 자가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48시간 내로 그것을 (소추사실) 피심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자신을 변호할 일련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200]

북한 형사소송법학습참고서에 따르면 "부르죠아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체계에 예심단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심자를 확정하는 것은 소추자로서의 검사나 경찰이 특정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추궁을 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재판소가 그것을 접수한 때로부터 그 사람은 형사 책임을 추궁 받아야 할 피심자로 지목된다."[201]고 설명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被疑者)라고 부르며,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被告人)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이 되면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다.[202] 무죄추정의 원칙을

19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3면.
200)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4면.
201)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6면.
202) 이창현, 형사소송법, 제2판, 입추출판사, 2015, 87~88면: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사건

두고 있는 헌법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이를 절차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소송구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지위를 모두 합한 것을 북한 형사소송법은 피심자(被審者)라고 부르며 공판중심보다는 수사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변호인조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확정판결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는 용의자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용의자, 혐의자,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어 사용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① 용의자: 범죄의 의심을 받고는 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② 혐의자: 범죄의 의심을 받고는 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③ 피내사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아직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내사의 대상이 되어 내사를 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사란 보도·풍설·진정·익명의 신고 등 범죄와 관계있는 수사의 단서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수사의 개시 여부를 판단·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수사 그 자체와는 구별되며 수사의 전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④ 피의자(被疑者): 실제 범인인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인 자를 말한다. ⑤ 피고인(被告人):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간주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공소가 제기된 자로 간주되어 있는 자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에 의하여 심판회부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3조). 공동피고인(수인의 피고인), 상피고인. ⑥ 수형자(受刑者): 유죄확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58조). 이것은 예심 시작과 함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62조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인선정시기)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3. 피의자보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있는 기소전피의자보석제도는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기소전피의자보석제도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

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같은 사회주의 형사소송법인 1960년 러시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에는 예심원도 검사의 동의를 받아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203)]

---

203)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9조(피고인 보석석방으로 인한 형사사건 종결)** 검사의 동의를 얻은 법원, 검사, 예심원 혹은 수사원은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52조에 의거한 사유에 따라 형사소송을 종결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교화 및 교정을 위해 항소를 제출한 기관이나 교정노동기관으로 보석 석방할 수 있다.

고의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미 보석석방을 받은 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형사소송을 종결하거나 보석석방을 할 수 없다.

형사사건이 개시된 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떠한 사유로 법원의 심리를 주장하는 경우사건의 종결 혹은 보석석방은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종결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5일 내에 법원의 판결 혹은 수사원, 검사 명령에 따라 상급 법원 혹은 검사에 항소할 수 있다.

보석석방을 받은 자가 1년 동안 노동자집단의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교정 서약을 위반한 경우, 사회주의 사회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에서 이탈한 경우, 그의 보석석방을 신청한 사회단체 혹은 교정노동기관은 보석포기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결정을 법원 혹은 검찰에 회부하여 피고인의 범죄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형사소송은 법원의 예비공판회의 혹은 검사의 명령을 통해 재개될 수 있다.

4. 피심자심문과 피의자신문의 개념

북한 형사소송법 피심자심문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과 일부 유사 조항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피심자심문이라는 용어가 다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이라고 말한다. 수사기관이 하는 피의자신문과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피의자심문은 한자(漢字)가 다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204)]

그리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심문(被疑者審問)이란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205)]

---

204)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8판, 2012, 168면.

205)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194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을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표 2] 북한 형사소송법의 예심제도 요약 도표[206)]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예심관련 일반규정	○ 대응규정 없음 * 예심제도 없음	○ 예심의 임무(제147조) - 피심자 확정 및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 ○ 예심사건 - 모든 범죄사건 (제124조, 제157조) ○ 예심원의 의무(제148조) - 범죄의 성격,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수행상 피심자의 역할과 책임정도 등 사건해결에 의의 있는 모든 사정 해명 ○ 예심원의 권한(제157조 등) - 피심자 심문·체포와 구속·검증·감정·증인심문·수색·압수 등 ○ 예심기간(제150조, 제151조) - 예심시작 후 2개월(노동단련형은 10일) - 반송받은 사건은 20일(노동단련형은 7일) - 특별히 복잡한 사건은 4개월 연장(노동단련형은 1개월 연장) ○ 예심의 관할(제48조, 제49조) - 관할지역 검사 승인 하에 관할예심원에 고지 후 범죄자의 거주지

206) 통일법무 기본자료 (북한법제),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308-312면. 2012년 5월 14일 개정안으로 조문을 수정함.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예심관련 일반규정	○ 대응규정 없음	또는 사건적발지의 관할예심원이 예심가능 ○ 예심의뢰(제153조) - 관할 밖 예심행위 필요시 관할지역 예심원에 의뢰 가능 - 의뢰받은 예심원은 결과 회보의무 부담 ○ 반복조사의 금지(제149조) -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그대로 이용 가능 - 노동단련형 범죄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예심 종결 ○ 검사의 예심감시(제155조) - 예심참가, 예심기록 검토, 위법예심행위 교정, 예심원에게 서면지시 등 - 검사의 지시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 - 상급검찰소는 3일 이내에 해결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 추궁결정	○ 대응규정 없음	○ 예심의 시작(제156조) - 사건송치 후 48시간 내 예심시작결정하고 예심 시작 - 사건과 무관한 범죄에 대한 자료수집 적발시 검사에 고지 후 수사에 넘기는 결정 및 사건이송 ○ 형사책임추궁결정(제157조 내지 제160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예 심 의 시 작 과 형사책임 추궁결정	○ 대응규정 없음	- 결정시기 : 증거조사를 통해 피심자 확정에 충분한 자료 수집시 - 형사책임추궁결정서 기재 사항 : 예심원 이름, 결정날짜, 피심자 이름, 적용법조, 소추 이유 - 결정사실 고지의무 : 결정 후 48시간 내 피심자에 고지·변호인선임권 고지 - 결정서등본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 송부 - 결정 후 적용법조 변경·취소,추가 필요시 그에 대한 결정, 결정서등본 검사에게 송부
예심종결	○ 대응규정 없음	○ 예심 종결사유(제253조) -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질 경우 -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예심종결 절차(제254조) - 예심종결을 피심자에게 알리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질문 -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고,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 - 피심자의 신청에 따라 예심을 더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어야 함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예심종결	○ 대응규정 없음	○ 검사의 예심종결 참가(제255조) - 예심의 종결수속은 검사의 참가하에 진행 ○ 예심종결조서의 작성(제256조) -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날짜와 시간, 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등을 기재 ○ 검사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제257조) -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날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증거물첨부결정서와 함께 송부 ○ 예심원의 사건기각결정(제55조) - 형소법 제53조에 규정된 소추요건 결여시 - 검사의 승인을 받아 기각 결정 ○ 권리침해시 검사에게 의견제기(제258조 내지 제259조)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 피해자, 피심자, 피심자의 보증인이 피침해사실 인지 후 7일 내 제기 - 예심원은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통지 - 의견을 제기 받은 검사는 3일 이내에 처리 및 결과 통보

제9조 (형사소송관계자)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형사소송관여자가 속한다.

형사소송담당자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이다.

형사소송관여자로는 변호인,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보증인, 피소자 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 자가 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21조 형사소추를 수행할 의무

1. 국가소추 및 절충형 소추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형사소추는 검사 또는 예심관, 수사관이 수행한다.
2. 검사, 예심관, 수사기관, 수사관이 범죄의 징표를 발견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확인하고, 범죄자를 입증하는 등 본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3. 검사는 본법 제2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의 소추를 수행할 수 있다.
4. 검사, 예심관, 수사기관, 수사관이 본법으로 규정된 그들의 권한 범위내에서 제출한 요구, 의뢰, 조회사항은 모든 공공기관, 기업, 조직, 공무원, 개인들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3조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체포[207], 구속[208]의 집행, 예심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검찰, 구속의 비준,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는 인민검찰원이 담당한다. 재판[209]은 인민법원이 담당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도 위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 **1996년 형사소송법**

제3조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체포, 구속의 집행, 예심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검찰, 구속의 비준,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는 인민검찰원이 담당한다. 재판은 인민법원이 담당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도 위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3조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체포, 구속의 집행, 예심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검찰, 구속의 비준,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는 인민검찰원이 담당한다. 재판은 인민법원이 담당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도 위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9조는 형사소송관계자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형사소송관여자가 속한다. 형사소송담당자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이다. 형사소송관여자로는 변호인,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207) 원문은 拘留이다.
208) 원문은 逮捕이다.
209) 원문은 審判이다.

입회인, 보증인, 피소자 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 자가 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9조 형사소송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변호인,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 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 자가 속한다. 형사소송담당자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이다.”

2012년 5월 14일 북한 형사소송법 제9조는 두 개의 항에서 세 개의 항으로 확대되어 법문 체계를 보다 세련되게 정비하였다. 또한 기록수와 피소자를 형사소송관여자로 추가하였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21조(형사소추를 수행할 의무)는 국가소추 및 절충형 소추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형사소추는 검사 또는 예심관, 수사관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국 형사소송법 제3조는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체포, 구속의 집행, 예심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검찰, 구속의 비준,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는 인민검찰원이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예심원, 수사관은 형사소송담당자이고,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담당자이다.

II. 형사소송담당자와 형사소송관여자

북한 형사소송법 제9조 형사소송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형사사건취급처리를 맡아 하거나 그에 관여한다.

1. 형사소송담당자

형사소송담당자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을 말한다.

2. 형사소송관여자

형사소송관여자는 변호인,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 보증인, 피소자 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Ⅲ. 비교법 연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북한 형사소송법은 개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소송주체, 소송관계인, 소송관여자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송구조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주체, 형사소송의 관계인, 형사소송의 관여자를 구별한다. 반면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관계인, 형사소송담당자, 형사소송관여자로 구별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대한민민국 형사소송법 보다 소송구조에서 직권주의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소송주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그리고 피고인

이다. 이를 형사소송의 3대 주체라고 한다. 이것은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소송담당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북한의 수사원과 예심원을 두고 있고, 이들을 검사와 함께 형사소송의 주체로 격상시켜 형사소송담당자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형사소송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검사와 수사원 그리고 예심원의 지위는 북한은 각각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2) 소송관계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소송관계인은 변호인과 보조인, 그리고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 보조인 그리고 대리인은 단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보조자이며, 사법경찰관도 단지 검사의 보조자이며, 법원서기 또한 법원의 보조자이다. 소송관계인은 소송의 보조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담당자(소송주체)와 형사소송관여자(소송객체와 소송참여자)를 모두 포괄하여 형사소송관계인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당사자주의 요소가 많이 도입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전반에 흐르는 직권주의 요소가 대한민국보다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설명이다.

(3) 소송관여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소송관여자는 증인, 감정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증인, 감정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형사소송의

주체가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관계인도 아니다. 단지 형사소송의 관여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형사소송에서 대한 적극적인 형성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관계인을 형사소송보조인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 보증인, 피소자 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 자를 모두 하나로 묶어 형사소송관여자라고 말한다.

2. 러시아 형사소송법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21조는 형사소추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추 및 절충형 소추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형사소추는 검사 또는 예심관, 수사관이 수행한다. 검사, 예심관, 수사기관, 수사관이 범죄의 징표를 발견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확인하고, 범죄자를 입증하는 등 본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검사 또는 예심관, 수사관, 그리고 법원은 형사소송담당자이다.

3. 중국 형사소송법

중국 2012년 형사소송법 제3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체포, 구속의 집행, 예심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검찰, 구속의 비준,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는 인민검찰원이 담당한다. 재판은 인민법원이 담당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도 위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담당자이다.

제11조 (예심의 담당자)

예심은 해당 법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25조(예심 기관)

형사소송의 예심은 검찰 예심원 및 수사기관 및 국가안보기관 예심원에 의해 행해진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21조 형사소추를 수행할 의무

1. 국가소추 및 절충형 소추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형사소추는 검사 또는 예심관, 수사관이 수행한다.
2. 검사, 예심관, 수사기관, 수사관이 범죄의 징표를 발견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확인하고, 범죄자를 입증하는 등 본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3. 검사는 본법 제2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의 소추를 수행할 수 있다.
4. 검사, 예심관, 수사기관, 수사관이 본법으로 규정된 그들의 권한 범위내에서 제출한 요구, 의뢰, 조회사항은 모든 공공기관, 기업, 조직, 공무원, 개인들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38조 예심관

1. 예심관은 본법으로 규정된 소관 범위내에서 형사사건의 예심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이다.

2. 예심관은 다음의 권한이 있다.

1)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제기한다.

2) 형사사건을 자신의 담당으로 접수하거나, 관할에 따라 배당하도록 사건을 검사에게 인계한다.

3) 본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 및(또는) 검사의 재가(동의/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독자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독자적으로 수사처분 및 기타 소송행위의 집행에 관하여 결정한다.

4) 본법으로 규정된 경우에 그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작수사처분의 실시를, 개별적인 수사처분의 집행을, 체포/강제소환/구금/기타 소송행위에 대한 결정의 집행을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의뢰는 그 이행이 의무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처분/결정을 집행할 때 수사기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5) 그 밖에 본법으로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3. 예심관이 검사의 처분(부작위) 및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반론를 서면으로 기술하여 상급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할 수 있다. 예심관의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검사의) 처분/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단, 예심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의 결정 또는 지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상급검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감독검사의 결정/지시는 그 집행이 정지된다 - 역자 註).

1) 피의자로 인정하는 결정

2) 범죄의 법적 평가에 대한 지시(역자 註 -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

3) (기소할) 범죄사실의 범위에 대한 지시

4)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의 채택에 대한, 채택된 강제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사항

5) 강제처분의 채택에 대하여, 또는 본법 제29조 제2항 제2-11호에 해당

하는 소송행위의 집행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청구를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 (역자 註 - 예컨데, 법원에 제기하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

6) 형사사건을 법원으로 송부하는, 또는 형사사건의 종결에 대한 사항 (역자 註 -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항)

7) 예심관의 기피에 대한 사항, 향후의 예비심리 수행으로부터 예심관을 배제하는 사항

8) 형사사건을 다른 예심관에게 배당하는 사항

4. 본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는 하급검사의 지시를 취소하거나 또는 해당 사건의 예심을 다른 예심관에게 맡긴다.

제39조 예심부서의 책임자

1. 예심부서의 책임자는 다음의 권한이 있다.

1) 예심의 수행을 예심관 1인 또는 수인의 예심관에게 위임한다. 한 예심관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회수하여 이를 다른 예심관에게 배당한다. 이때 그 이전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수사팀을 만들고, 그 구성원을 교체한다.

2) 예심의 중지에 대한 예심관의 부당한 결정을 취소한다.

3) 기타 위법한 또는 부당한 예심관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검사에게 요청한다.

2. 예심부서의 책임자는 본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사건을 자신의 담당으로 접수하여 예심을 전부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예심부서의 책임자는 본법 제38조 및 제163조에 각각 규정된 예심관 그리고(또는) 수사팀장의 권한을 가지다.

3. 본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때 예심부서의 책임자는 다음의 권한이 있다.

1) 형사사건의 기록을 검토한다.

2) 수사의 방향, 개별적인 수사처분의 집행, 피의자 자격으로 인정, 혐의자/피의자에 대한 강제조치의 채택,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기소할) 범죄사실의 범위 등에 대하여 예심관에게 지시한다.

4. 예심부서 책임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지시는 서면으로 행하여 지고, 예심관은 그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심관은 이 지시에 대하여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지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는 그 지시의 이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단, 위 지시가 특정 형사사건을 회수하여 다른 예심관에게 배당, 피의자 자격으로 인정,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기소할) 범죄사실의 범위, 강제조치의 채택,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수사처분의 집행 등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위 지시의 이행이 정지될 수 있다). 이때 예심관은 형사사건의 기록 및 예심부서 책임자의 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제67조 예심관 또는 수사관에 대한 기피

1. 예심관 또는 수사관에 대한 기피 결정은 검사가 행한다.
2. 예심관 또는 수사관이 당해 형사사건의 예비조사에 종전에 참여한 것은 그들을 기피하는 근거로 되지 아니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3조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체포[210], 구속[211]의 집행, 예심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검찰, 구속의 비준,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는 인민검찰원이 담당한다. 재판[212]은 인민법원이 담당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도 위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 1996년 형사소송법

제3조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체포, 구속의 집행, 예심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검찰, 구속의 비준,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의 제기는 인민검찰원이 담당한다. 재판은 인민법원이 담당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도 위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3조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체포, 구속의 집행, 예심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검찰, 구속의 비준,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는 인민검찰원이 담당한다. 재판은 인민법원이 담당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도 위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1조 예심의 담당자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이란 예심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일군이다. 전문일군이란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 인민무력기관에서 예심을 전문으로 하는 일군을 말한다.[213)]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1조 예심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은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2012년 5월 14일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은 해당 법기관의 예심원이 한다.”로 개정하였다. 열거방식에서 포괄방식으로 바뀌었다. 해당 법기관의 예심원이라면 누구든 예심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예심의 담당자가 예심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210) 원문은 拘留이다.
211) 원문은 逮捕이다.
212) 원문은 審判이다.
21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면.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조사에서의 객관성이다. 예심에서 객관성의 기본요구는 모든 문제에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대하는 것이다. 둘째, 조사에서의 전면성과 완전성이다. 셋째, 조사에서의 신속성이다. 이 원칙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예심은 시작한 날로부터 반혁명사건은 3개월, 일반범죄사건은 2개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넷째, 필요 없이 예심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심에서 수집된 자료가 불필요하게 공개됨으로써 예심진행에 저애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나서는 요구이다.”[21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215]

---

214)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30～133면.

21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II. 예심의 담당자

예심은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적발된 범죄자와 범죄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예심원의 소송활동을 말한다.

예심원이 결원이거나 예심원에 비하여 사건이 많거나 복잡하여 예심기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북한 형사소송법 제166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216]의 요구를 어기여 반송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예심을 맡아할 다른 예심원이 없다고 하여 예심원이 아닌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 인민무력기관 일군이 예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의 예심부서 책임자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예심을 다음과 같은 예심원에게 맡겨야 한다.[217] ① 예심관할이 같은 급이 다른 예심원, ② 해당 상급기관의 다른 예심원이다.

로동교화소, 로동단련형집행기관안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은 해당 로동교화소, 로동단련형집행기관안의 예심권한을 가진 일군이 한다.[218]

216) **북한 형사소송법 제166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다.

21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면.

21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면.

제48조 (예심관할)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할 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들의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하며 그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26조(예심의 요건 및 관할구역)

예심은 모든 사건에서 의무사항이지만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96조 1항, 제97조, 제112조, 제130조 제1항, 제131조, 제154조의2, 제158조, 제162조 1항, 제163조, 제166조, 제168조, 제169조, 제197조, 제198조-제201조, 제206조 1항 및 2항, 제209조의 경우 예외이다. 예심은 법원 혹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만 진행 가능하다.

미성년자 또는 기타 심신 결함으로 인해 자기 비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지른 모든 범죄사건에 있어서 예심은 의무이다.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71조,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1, 제80조-제82조, 제85조, 제99조의1, 제104조-제107조, 제116조-제120조, 제124조, 제124조의1, 제126조-제129조, 제130조 제2항과 3항, 제132조-제143조, 제151조-제152조의1, 제160조, 제161조, 제164조, 제170조-제180조, 제190조의1,

제190조의2, 제190조의3, 제191조-제193조, 제197조의1, 제202조-제205조의1, 제210조, 제214조-제216조, 제221조-제223조, 제227조, 제231조-제235조, 제238조-제258조, 제259조 d, e관, 제260조-제269조에 명시된 사건의 경우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에 의해 실행되거나 제64조-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3조, 제84조, 제259조의 a, b, c관에 명시된 사건은 국가안보기관의 예심원에 의해 예심이 실행된다.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86조, 제87조, 제89조 예심원, 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2항과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8조-제111조, 제113조-제115조의1, 제121조-제123조, 제125조, 제144조-제150조, 제153조-제154조의1, 제155조-제157조, 제159조, 제162조 2항, 제165조, 제167조, 제186조-제188조, 제194조-제196조, 제206조 3항, 제207조, 제208조, 제211조-제213조의1, 제217조-제220조, 제224조-제226조, 제228조-제230조에 명시된 범죄의 경우에도 예심은 내부수사기관에 의해 실행된다.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의1에 명시된 범죄의 경우 예심은 형사소송을 개시한 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한 경우 공식범죄의 예심과정은 예심이 개시된 범죄와 연관 시 성립되며, 예심을 개시한 기관에 의해 예심이 진행된다(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170조-제175조).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88조의1, 제88조의2, 제181조-제185조, 제189조, 제190조에 명시된 범죄의 경우, 예심이 개시된 범죄가 속하는 관할구역의 기관에 의해 예심이 진행된다.

제2장 관할권

제35조(시·구 인민법원 관할권내의 형사소송)

상급 법원 혹은 군사 재판소의 관할 범위 내 사건들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시·구 인민법원에 관할이 있다.

제36조(준주, 지방, 시 법원, 자치구역 법원, 민족지방법원 관할구역내의 형사

소송) 준주, 지방, 시 법원, 자치구역 법원, 민족지방법원은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64조, 제66조-제77조의1, 제79조, 제81조 2항, 제84조, 제85조 1항, 제86조, 제87조, 제88조 2항, 제88조의1 (특히 제64조, 제66조-제69조, 제72조에 의거한 범죄 보고 실패와 관련), 제88조의2 (특히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제64조, 제66조-제69조, 제72조에 의거한 범죄 은닉과 관련), 제93조의1, 제102조, 제117조 3항, 제152조, 제173조 2항, 제176조-제179조, 제190조의1, 제190조의2, 제190조의3, 제191조의2에 의거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37조(자치 공화국 대법원 관할권 내의 형사소송)

자치공화국 대법원은 본법 제 36조에 명시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제38조(러시아 공화국 대법원 관할내의 형사소송)

러시아 공화국(RSFSR) 대법원은 특별히 복잡하거나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대법원의 직접적인 소송 개시 및 러시아 공화국(RSFSR) 검사의 개시에 의거한 재판을 수용할 수 있다.

제39조(군사재판소 관할권 내의 형사소송)

형사소송시 군사재판 관할 유무는 군사 재판소의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40조(하급심 관할 사건을 받아 공판절차를 진행할 상급심의 권한)

상급심은 하급심 관할 내 모든 1심 사건을 받아 공판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41조(형사사건에 관한 토지 관할)

사건의 심사는 범죄가 발생한 구역 내의 법원에서 행해진다. 관할구역을 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소송은 사건의 예심 혹은 수사를 마친 구역의 법원 관할구역에서 행해진다.

제42조(형사사건 병합 관할구역 결정)

한 사람 혹은 다수의 인원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경우, 사건은 다른 종류의 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고려되며, 모든 범죄의 병합 사

건은 가장 상급 법원에서 심사된다.

만약 한 사람 혹은 하나의 범죄와 관련하여 군사재판소 관할 내에서 한 사람 혹은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경우, 그 사람들과 범죄에 대한 병합사건은 군사재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군사법원에서 심사받는다.

이러한 사유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사건이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의 관할구역에서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예심 혹은 수사를 마무리한 구역의 법원에서 심사한다.

제43조(다른 관할구역으로의 형사소송 이송)

예비공판회의에서 판사 혹은 법원이 당해 사건이 해당 법원의 관할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다른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사건이 다른 비슷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사법 재판에서 이미 시작된 경우에만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만약 사건이 상급 법원 혹은 군사재판소 관할구역에서 발생했을 시 그러한 상급 법원 혹은 군사재판소의 관할구역으로 회부될 수 있다.

상급법원의 사법 재판이 시작 되고 나면 하급법원으로의 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4조(관할이 있는 법원의 다른 법원으로의 형사사건 이송)

개별 사건에서 가장 신속, 완전, 객관적인 사건 심리와 사건의 사법심사의 교육적 역할을 최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 법원에서 다른 비슷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사유로 사건 이송 시 사법 재판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허용되어야 한다.

한 구(시)의 인민 재판소에서 다른 자치 공화국, 준주, 지방, 시, 자치구역, 민족지방으로 이송되는 문제는 각각 자치 공화국, 준주 혹은 시 재판소, 자치구역법원 혹은 민족지방법원의 대법원이 해결해야 한다.

그러한 사유로 한 법원에서 다른 자치 공화국, 준주, 지방, 시, 자치구역,

민족지방의 법원으로 사건 이송 시 러시아 공화국(RSFSR) 대법원장 혹은 부원장이 해결해야 한다.

다른 법원으로 이송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심판의 명령이 있다면 적절한 상급 법원의 총장은 사법적 감독의 방식을 통해 그러한 명령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분쟁의 불허용)

법원간의 관할구역에 대한 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법 제43, 제44조에 의거하여 한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회부되는 사건의 경우 회부되는 법원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2장 관 할

제18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한다.

공무원의 부패뇌물[219]범죄, 국가공무원의 독직범죄,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불법구금,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 보복모함, 불법수사로 공민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및 공민의 민주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 수사한다. 국가기관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그 밖의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거쳐 인민검찰원이 입건, 수사할 수 있다.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다.

제19조 기층인민법원은 일반형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다만 본법에 의하여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0조 중급인민법원은 아래 열거된 상황의 1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1) 반혁명 사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사건

(2)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일반형사사건

(3)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

제21조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형사사건은 전성(자치구, 직할시)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

제22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제23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의 관할하는 제1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으며, 하급인민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996. 3. 17. 본조 개정)

제24조 형사사건은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 거주지의 인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경우에는 피고인 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제25조 수개의 동급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이를 최초 수리한 인민법원이 이를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에 주요 범죄지의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제26조 상급인민법원은 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이 재판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 또한 하급인민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제27조 전문인민법원의 사건관할은 이를 따로 규정한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2장 관 할

제18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한다.

공무원의 부패뇌물[220]범죄, 국가공무원의 독직범죄,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

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불법구금,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 보복모함, 불법 수사로 공민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및 공민의 민주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 수사한다. 국가기관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그 밖의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거쳐 인민검찰원이 입건, 수사할 수 있다.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다.

제19조 기층인민법원은 일반형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다만 본법에 의하여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0조 중급인민법원은 아래 열거된 상황의 1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1)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사건, 테러행위

(2) 무기징역, 사형의 사안

제21조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형사사건은 전성(자치구, 직할시)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

제22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제23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의 관할하는 제1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으며, 하급인민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996. 3. 17. 본조 개정)

제24조 형사사건은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 거주지의 인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경우에는 피고인 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제25조 수개의 동급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이를 최초 수리한 인민법원이 이를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에 주요 범죄지의 인민

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제26조 상급인민법원은 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이 재판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 또한 하급인민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제27조 전문인민법원의 사건관할은 이를 따로 규정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48조 예심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 할 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들의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하며 그 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24조 예심관할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밑에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 할 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

219) 원문은 貪汚賄賂이다. (역자 주)
220) 원문은 貪汚賄賂이다. (역자 주)

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2012년 5월 14일 북한 형사소송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를 삭제하였다. 해당 법기관이라면 범죄유형에 구분 없이 어느 법기관에서도 예심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직무관할구역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수사규정에 명문화하였다.[221] 검찰청법 제5조에 따르면 구역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그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과 지원의 관할 구역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르면 관할은 소송조건이므로 사건이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한편 수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는 그러나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222], 제212조[223], 제214조[224],

221)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119면.

제216조[225]와 제217조[226]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2012년 형사소송법은 제2장 관할 제18조에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한다. 공무원의 부패뇌물(貪汚賄賂)범죄, 국가공무원의 독직범죄,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불법구금,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 보복모함, 불법수사로 공민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및 공민의 민주권리를 침해

---

22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2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2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2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226) **대한민국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하는 범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 수사한다. 국가기관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그 밖의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거쳐 인민검찰원이 입건, 수사할 수 있다.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예심관할

1.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관할

중앙기관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 예심원의 예심관할은 각급 해당 재판소의 재판관할에 따른다. 예심은 범죄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에서 예심관할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자가 적발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 할 수 있다.[227] 이 경우 검사와 관할지역 예심원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주는 것은 말로 한다. 이 조문에서 규정한 필요한 경우란 국가적 및 군사적 비밀을 보장하여 사건의 전모를 신속 정확히 밝혀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의 범죄자들이 군인들이나 군부대를 비롯한 특수기관 종업원들과 공모결탁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해당 관할지역 무력기관, 특수기관 법기관일군들과 사회법기관 예심일군을 망라하는 지휘부를 조직하고 공동으로 예심한다.[228]

22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90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33면.

3.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에 대한 예심관할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4.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들의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에 대한 예심관할

도, (직할시)재판소의 제1심 재판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은 도, (직할시)급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 중앙기관 및 도(직할시)급 수사기관이 직접 적발한 형사사건은 관할에 관계없이 중앙기관 및 도(직할시)급 기관 예심원이 예심한다. 중앙기관 및 도(직할시)급 기관의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하위 예심기관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을 직접 예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심이 종결되면 예심감시를 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긴다.

중앙 및 (직할시)급 검찰소의 검사는 자기가 예심감시를 한 그 사건이 하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중앙기관예심원이 예심한 사건은 중앙재판소에, 도(직할시)급 기관 예심원이 예심한 사건은 도(직할시)급 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다.[229]

※ 중앙기관 예심원이 예심한 형사사건은 도(직할시)급 재판소에서 기소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당, 국가, 군사기밀보장과 관련한 사건 같은 것으로서 특별히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중앙재판소에 기소하여야 한다.[230]

22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90면.
22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91면.
23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91면.

제147조 (예심의 임무)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3조(형사사건 개시 및 범죄적발에 관한 의무)

법원, 검사, 예심원, 수사기관 등은 각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범죄 징후 적발 시 사건을 개시하고 범죄 발생 및 유죄 규명, 처벌 등을 위해 법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상황변화에 따른 형사사건 종결)

법원이나 검사, 예심원 혹은 수사원은 수사, 예심 혹은 법원이 소송을 고려할 때 상황 변화 발생,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이 사회적 위해성을 상실했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중지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동의를 얻어 형사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9조(피고인 보석석방으로 인한 형사사건 종결)

검사의 동의를 얻은 법원, 검사, 예심원 혹은 수사원은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52조에 의거한 사유에 따라 형사소송을 종결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교화 및 교정을 위해 항소를 제출한 기관이나 교정노동기관으로 보석 석방할 수 있다.

고의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미 보석석방을 받은 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형사소송을 종결하거나 보석석방을 할 수 없다.

형사사건이 개시된 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떠한 사유로 법원의 심리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의 종결 혹은 보석석방은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종결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5일 내에 법원의 판결 혹은 수사원, 검사 명령에 따라 상급 법원 혹은 검사에 항소할 수 있다.

보석석방을 받은 자가 1년 동안 노동자집단의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교정서약을 위반한 경우, 사회주의 사회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에서 이탈한 경우, 그의 보석석방을 신청한 사회단체 혹은 교정노동기관은 보석포기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결정을 법원 혹은 검찰에 회부하여 피고인의 범죄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형사소송은 법원의 예비공판회의 혹은 검사의 명령을 통해 재개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 압력 조치의 적용을 위해 형사소송을 개시하지 않는 증거회부)

경미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적인 압력 조치로 교정될 수 있다면 법원 또는 검사, 검사의 동의를 얻은 수사원 혹은 예심원은 형사소송을 개시하지 않고 동지재판소 혹은 미성년자 소송위원회의 심리를 위해 증거를 이송할 수 있거나 피고인을 노동집단, 교정과 교화를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 보석석방 시킬 수 있다. [Ved. (1970), no. 22, item 442, Edict May 21, 1970]

제127조(예심원의 권한)

예심에서 예심 및 예심과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법률 규정에서 검사의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심원이 독립적으로 내리며, 예심원은 그러한 결정의 합법적이고 즉각적인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예심원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 범죄의 성질 결정과 기소범위,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이송, 송치, 사건종결에 관한 검사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심원은 그의 반대 의견을 담은 서면으로 작성된 성명서를 상급 검찰기관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경우 검사는 하급 검사의 지

시를 철회하거나 예심진행을 다른 예심원에게 맡길 수 있다.

예심이 의무인 경우 본법 제119조에 의거한 예심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예심원은 언제든지 예심을 개시할 권한을 가진다.

예심원에 의해 예심이 이루어 질 때에 예심원은 수사기관에게 특정 예심행위 실행과 관련된 협력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행위와 예심원의 지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모든 기관, 기업, 단체, 관리인 및 시민은 예심원이 진행하는 범죄사건과 관련한 예심원의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

예심원은 본법 제122조, 제123조에 명시된 사유 및 절차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구류하거나 심문할 권리를 가진다.

제127조의1(예심기관장의 권한)

예심기관장은 범죄 적발 및 예방과 관련한 예심행위의 기한을 통제하며, 형사사건의 완전하고 철저하며 객관적인 예심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심기관장은 형사사건을 관장할 권리가 있다. 즉, 예심원에게 예심진행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을 기소하며 범죄 및 기소 범위 분류, 사건 회부, 개별 예심활동 지시, 사건을 다른 예심원에게 송치, 다수의 예심원에게 예심 위임, 예심 진행과정 참여 등 예심원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예심기관장의 지시는 서면을 통해 예심원에게 전달되거나 집행을 위한 구속력을 가진다.

이미 받은 지시에 대해 검사에 항소할 경우 본법 제127조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 중지될 수 없다.

본법 규정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지시는 예심기관장에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한 지시로부터 상급검사에 대한 항소로도 집행 중지될 수 없다.

제128조(범죄적발에 대한 대중의 참여)

예심진행 시 예심원은 범죄 적발 및 범죄를 행하는 자를 색출하고 범죄를 사회적으로 공개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환경 및 조건들을 제거하기 위해 광

범위한 대중의 도움을 활용해야 한다.

제139조(예심자료 유출 금지)

예심자료는 예심원, 검사의 허락을 받아 예심원,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가 허용된다.

필요한 경우 예심원은 증인, 피해자, 민사소송의 원고, 민사소송의 피고, 변호인, 감정인, 전문인, 통역인, 예심활동의 증인 그리고 기타 사람들에게 그의 허가 없이는 예심자료 공개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경고해야 한다. 위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184조에 의거하여 책임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그들로부터 그들이 서명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40조(범죄를 조장하는 조건 및 원인제거조치)

예심을 통해 범죄 행위를 조장한 원인과 조건이 밝혀진 경우, 예심원은 적절한 기업, 기관 및 사회단체에 그러한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적절한 기업, 기구 및 사회단체는 한 달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예심원의 제안을 심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며 예심원에게 그 사실에 대해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89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범죄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 죄의 경중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한 범죄피의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우선 체포할 수 있고, 구속요건에 부합하는 범죄피의자는 법에 따라 구속하여야 한다.

제90조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심하여야 하고, 수집하고 조사하여 취득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13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범죄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 죄의 경중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한 범죄피의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우선 체포할 수 있고, 구속요건에 부합하는 범죄피의자는 법에 따라 구속하여야 한다.

제114조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심하여야 하고, 수집하고 조사하여 취득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5조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인이 사법기관 및 사법공무원이 아래의 행위의 1로 인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다고 여길 경우, 사법기관에 신소 및 고발을 할 권리가 있다.

(1) 강제조치의 법정기간이 초과하였으나 법에 의하여 석방하거나 이를 해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2) 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부 불구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 위법적으로 수색, 봉인, 압류, 동결 등의 조사조치를 취한 경우

(4) 법에 의하여 해제하여야 하는 봉인, 압류, 동결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5) 부패행위, 유용, 사적으로 처리, 교체, 규정을 위반하여 재물을 봉인, 압류, 동결한 경우 신소 및 고발을 수리한 기관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동급 인민검찰원에 신소를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급 인민검찰원에 신소를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신소에 대하여 즉시 심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 교정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예심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48조 예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2012년 5월 14일 북한 형사소송법은 2004년 법문을 개정 없이 유지하되 조문만 변경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며 범죄자를 확정하여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정확하게 해명확정하고 연루자를 모조리 적발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설명한다.[23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혐의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다.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준비, 사안의 진상해명을 위한 자료의 수집·보전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지만,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의 유지 및 수행을 위한 준비활동, 공소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된다.[232)]

중국 형사소송법은 제113조와 제114조에 공안기관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범죄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 죄의 경중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한 범죄피의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우

23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7면.
232)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117면.

선 체포할 수 있고, 구속요건에 부합하는 범죄피의자는 법에 따라 구속하여야 한다(중국 형사소송법 제113조, 1996. 3. 17. 본조 신설).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심하여야 하고, 수집하고 조사하여 취득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중국 형사소송법 제114조, 1996. 3. 17. 본조 신설).

II. 예심의 임무

1. 피심자 확정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는 것이다. 피심자를 확정한다는 것은 예심에서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 법적 책임을 치를 대상으로 확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심원은 수사에서 수집 고착(固着)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증거물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새 증거들을 수집하여 적발된 범죄자를 피심자로 확정하여야 한다.[233)]

2. 범죄사건의 전모 밝힘

예심의 임무는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것은 수사에서 적발한 범죄와 이외 연루관계를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234)]

23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8면.
23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8면.

3. 연루자 모조리 적발

예심의 임무는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는 것이다. 예심원은 의뢰를 포함하여 소추된 범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연루자들을 모조리 적발확정하는 것이다.

제148조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예심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 논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힌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20조(사건 정황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객관적인 분석)

법원, 검사, 수사원, 예심원은 법에 근거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 정황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하고 객관적인 분석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입증하거나 석방하고 피고인의 혐의를 경감 혹은 가중시키기 위하여 정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법원, 검사, 수사원, 예심원은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무력, 협박 혹은 기타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 논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힌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49조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원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 논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2012년 5월 14일 북한 형사소송법은 ‘밝혀야 한다’를 ‘밝힌다’로 개정하였다.

II.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예심은 형사소송체계에서 독립적인 단계이면서도 검사의 기소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1. 범죄의 진상파악

예심원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 논 역할과 책임의 정도 같은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

2. 형벌양정과 범죄사건 관련성

이밖에도 형벌양정에 영향을 주거나 의의가 있는 사실사정을 비롯하여

제기된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관계들을 남김없이 밝힘으로서 예심에서 견련성과 관련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235)]

3. 공소유지

그리하여 재판에서 검사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자신 있게 주장하고 근거 있게 증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3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9면.

제149조 (반복조사금지)

예심에서는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가 검토 확인된 경우 그대로 쓸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시작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 피심자심문, 예심종결과 같은 중요한 예심행위만을 진행하고 예심을 종결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반복조사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에서는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가 검토 확인된 경우 그대로 쓸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시작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 피심자심문, 예심종결과 같은 중요한 예심행위만을 진행하고 예심을 종결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0조 반복조사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원은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검토 확인하는 경우 그대로 쓸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히 조사확증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을 종결한다.”

2012년 5월 14일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2항에서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히 조사확증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을 종결한다.’를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

심시작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 피심자심문, 예심종결과 같은 중요한 예심행위만을 진행하고 예심을 종결한다.'로 개정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사건심리에서 반복심문이나 불필요한 조사를 없앰으로서 그의 신속성을 보장하며 예심기록의 조잡성을 없애고 사건의 사정을 체계정연하게 요해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예심의 신속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은 있으나,'정확하다'는 전제가 없는 한 신속성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Ⅱ. 반복조사금지

예심원은 수사에서 수집, 고착한 증거가 정확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반복조사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사에서 받은 증언의 진술이 정확하다는 것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옳다고 인정된다면 그를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자료가 정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예심에서 더 밝힐 범죄사실과 여죄 연루 관계가 없고 이미 수정된 증거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예심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예심시작결정과 형사책임추궁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의 통고, 피심자심문 같은 예심절차는 지키고 그에 따르는 소송문건은 작성하여야 한다.[236)]

23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0면.

제150조 (예심의 기간)

예심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낸다. 검사, 판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안으로 끝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33조(예심기간)

범죄사건의 예심은 2달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 기간은 사건 개시일부터 검사에게 회부되어 기소결정을 내리거나 의학적 성격을 가진 의무조치를 적용하는 문제 혹은 사건의 중지 및 종결을 심리하도록 할 때까지이다.

본조 제1항에 성립된 예심기간은 자치공화국, 준주, 지방, 자치구역, 민족지방 혹은 군 사령부 및 부대의 군검찰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나 2달을 초과할 수 없다. 향후 예심 기간 연장은 러시아 공화국(RSFSR)의 검사, 군 검찰사령관 혹은 소련(USSR) 검찰총장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원이 보충예심을 위해 사건을 환부하거나 중지 혹은 종결된 사건이 재개되었을 시, 보충예심기간은 예심 감독을 실행하는 감독에 의해 성립되며 사건을 수락한 순간부터 한 달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향후 기간의 연장은 일반적 사유에 따라 실행된다.

예심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의 경우 예심원은 그러한 결과를 위한 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예심 시한 소멸 전까지 적절한 검사에게 전달한다.

제417조(예심 실시)

예심은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206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와 본법 제126조 제2항에 규정된 사례에 대해 실시한다.

예심은 형사사건이 개시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62조 예심의 기간

1. 형사사건에 대한 예심은 그 사건이 제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예심의 기간은 형사사건을 제기한 날로부터 기소결정서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날까지, 또는 치료 성격의 강제처분에 관한 문제를 심사토록 사건을 법원에 송부하는 결정서를 검찰에 송부하는 날까지, 또는 형사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리는 날까지의 시간을 포함한다.
3. 본법에서 규정된 근거에 의거 예심이 중지된 시간은 예심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예심의 기간은 지방 또는 시 단위의 검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軍의 검사나 그들의 대리자에 의해서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5. 형사사건이 매우 복잡한 경우에 예심의 기간은 러시아 연방주체 검찰청의 검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軍 검찰기관의 검사나 그들의 대리자에 의해서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 이상의 예심 기간 연장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러시아연방 검찰총장 또는 그의 대리자에 의해서 가능하다.
6. 검사가 보충조사토록 형사사건을 반송한 경우, 그리고 중지된 또는 종결된 형사사건을 재개하는 경우에, 검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추가조사의 기간은 해당 사건이 예심관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이상의 예심 기간 연장은 본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일반적 근

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7. 예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예심관은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예심 기간이 만료되기 5일 전까지 그 결정서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8. 예심관은 서면으로 피의자 및 그의 변호인, 피해자 및 그의 대리인에게 예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50조는 예심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낸다. 검사, 판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안으로 끝낸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예심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안으로 끝내야 한다. 예심을 더 하기 위하여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안으로 끝내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안으로 끝내야 한다.’ 문구는 삭제되었고, ‘끝내야 한다’가 ‘끝낸다’로 개정되었다.

II. 예심의 기간

1. 예심기간의 기산시점

첫째, 예심기간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날부터 계산된다. 이 경우의 예심시작결정은 범죄사건을 수사에서 넘겨받은 다음에 하는 첫 예심시작결정을 의미한다.[237] 그러므로 관할에 따라 범죄사건을 이송 받았거나 예심원이 바뀐 경우에 하는 예심시작결정은 예심기간의 시작으로 되지 않는다.[238]

2.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기간

둘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은 2개월안으로 끝내야 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은 10일안으로 끝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3.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과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기간

셋째, 예심불비로 돌려받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은 20일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은 7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

검사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판소에서 범죄사건을 돌려받으면 항의조건이 없는 한 48시간 안으로 예심원에게 넘겨야 한다.

---

23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0면.
23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0면.

4. 반송 받은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기일

반송 받은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기일은 예심원이 범죄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계산한다. 반송 받은 범죄사건을 예심하는 경우에는 예심시작결정을 한다. 예심시작결정은 예심시작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예심시작결정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157조(형사책임추궁) 해석에 따라 범죄사건을 접수한 그날로 작성한다.[239)]

5. 예심 및 구류기간연장수속

예심 및 구류기간연장수속은 북한 형사소송법 제152조(예심사건의 이송)[240)], 제187조(구류기간의 연장)[241)]에 규정된 예심 및 구류기간 안에서는 따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송 받은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 및 구류기간이 남지 않았다면 해당 검찰소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 및 구류기간연장수속을 따로 한다.[242)]

예심 및 구류기간연장결정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152조(예심사건의 이송), 제187조(구류기간의 연장) 해석에 따라 작성한다.[243)]

---

23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1면.

240) **북한 형사소송법 제152조(예심사건의 이송)**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행위를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법기관의 예심원에게 보낸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여 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한다.

241) **북한 형사소송법 제187조(구류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0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최고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여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최고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2개월 늘일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5일간 늘일 수 있다.

24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1면.

24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1면.

제151조 (예심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0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7조 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까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63조 수사팀에 의한 예심의 수행

1. 형사사건이 복잡하거나 그 분량이 방대한 경우에 예심의 수행은 수사팀에게 맡길 수 있다. 이러한 의뢰는 별도의 결정으로 또는 형사사건 제기 결정서에 명기하여 할 수 있다.
2. 수사팀에 의한 예심의 수행에 관한 결심, 그 구성원의 변경에 관한 결심은 검사 또는 예심부서의 책임자가 내린다. 결정서에는 예심의 수행을 의뢰받은 모든 예심관이 열거되어야 하고, 어떤 예심관을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하는지도 명시되어야 한다. 수사팀의 활동에는 공작수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수사팀의 구성원은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게 공개된다.
3. 수사팀의 팀장은 형사사건을 자신의 담당으로 접수하고, 수사팀의 업무를 조직하고, 다른 예심관의 활동을 지휘하고,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기소결정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치료 성격의 강제조치 적용 문제를 심사토록 사건을 법원에 송부하는 결정을 내린 다음, 이 결정서를 형사사건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4. 수사팀의 팀장은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본법 제153-15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을 별도 처리토록 분리하는 결정
   2) 형사사건을 전부 또는 일부 종결하는 결정
   3) 형사사건을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결정
   4) 피의자로 인정하는 결정 및 공소제기의 범위에 대한 결정
   5) 피의자에 대한 법의학적 또는 법정신심리학적 감정을 위해 의료원 및 정신과 병원으로 보내는 결정. 단, 본법 제2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예심기간의 연장에 관한 청원을 검사에게 제기하는 결정
   7) 강제처분의 채택에 관한 청구, 그리고 본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사처분 또는 기타 소송적 처분의 집행에 관한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는 결정
5. 수사팀의 팀장 및 팀원은 다른 예심관이 수행하는 수사처분에 참가할 수 있고, 직접 수사처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예심기간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50조 제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7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까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50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검

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2조 예심의 연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 법 제151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8조 1, 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4개월까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51조 2항에 지적된 기간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기간의 연장기간이 개정된 것이다. 이 법 제150조 제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7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되었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50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1개월에서 5일로 단축되었다.

II. 예심기간의 연장

1. 북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

북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북한 형사소송법 제187조(구류기간의 연장)의 해석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복잡한 범죄사건이란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증거를 수집할 지역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북한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규정된 예심기일 안에 예심을 끝내지 못할 사건을 의미한다.[244)]

2. 북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북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여죄관계, 공모관계에 있어 10일안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245)]

3. 예심기일연장신청서 작성방법

예심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예심기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심기일연장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형법조항, 예심을 시작한 날짜와 연장하려는 이유, 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의 비준(중앙기관은 부서책임자), 검찰소장의 승인정형을 밝히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246)] 다만 피심자를 구류한 날짜와 예심을 시작한 날이 일치한 경우에는 예심기간을 늘이는 수속을 따로 하지 않고 구류기간을 늘이는 수속만 한다. 피심자를 구류하지 않고 예심을 하는 경우에는 예심기간을 늘이는 수속만 한다.[247)]

24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1면.
24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2면.
24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2면.
24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2면.

제152조 (예심사건의 이송)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행위를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법기관의 예심원에게 보낸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여 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예심사건의 이송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행위를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법기관의 예심원에게 보낸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여 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3조 예심의 이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을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예심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여 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보내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보낸다. 한다’로 변경된 것이다. 강행규정이 일반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II. 예심사건의 이송

1.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해 긴급히 예심이 필요한 경우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을 긴급히 필요한 예심을 하고 해당 관할 예심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긴급히 필요한 예심행위란 범죄자들이 없애 버릴 수 있는 증거물, 증거문서를 수색, 압수하거나 도주하려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류하거나 또는 자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예심행위를 의미한다.[248)]

2. 사건을 넘길 경우 사건이송결정서 작성

사건을 넘길 경우에는 사건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건이송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형법조항, 사건이송이유, 형사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의 비준(중앙기관에서는 부서책임자)을 밝히고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249)]

3. 피심자가 구류되어 있을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된 날짜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범죄사건을 해당 관할 예심원에 넘길 경우에는 수사, 예심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한다.[250)]

---

24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2면.
24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2면.
25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3면.

검사에게 알리는 것은 사건이송결정서 또는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서등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해당 결정서등본은 범죄사건을 이송한 그날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251)]

25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3면.

제153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행위를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53조는 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행위를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 할 수 있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4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을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감시한다.’는 문구가 ‘감시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것이다.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II. 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

1. 관할지역밖에 직접 나가서 예심을 하는 경우

예심원이 관할지역밖에 직접 나가서 예심을 하는 경우 북한 형사소송법 제139조 해석에 따른다.[252] 북한 형사소송법 제139조는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한다. 자기 관할지역밖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예심에 대한 감시를 관할지역의 검사가 한다는 것은, 체포, 구속, 수색, 압수 같은 소송상 강제행위에 대한 결정을 승인, 취소하거나 그 소송행위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53]

2. 자기 관할지역의 검사의 승인

예심원이 자기 관할지역밖에 직접 나가 예심을 하는 경우에 소송상 강제행위에 대한 검사의 승인은 자기 관할지역 검사에게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가 제기되고 거리상 문제로 관할지역 검사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밖의 검사에게서 소송상 강제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심원과 소속이 같은 관할지역밖의 법기관 단위책임자의 비준(공인, 명판)을 받은 결정서를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254]

---

25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3면.
25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4면.
25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4면.

제154조 (예심의 의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곧 회보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54조는 예심의 의뢰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곧 회보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5조에서 예심의 의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곧 회보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회보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회보한다.’로 변경된 것이다. 강행규정이 일반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II. 예심의 의뢰

1.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관할지역 밖에서 개별적 예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란 제한지역이나 군사구역 안에서 예심을 하여야 하거나 관할 예심원의 방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의미한다.[255]

2. 예심의뢰결정서 작성

예심을 의뢰할 경우 예심의뢰결정서를 작성한다. 예심의뢰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소송법조항, 사건내용과 밝혀야할 구체적인 사실, 예심행위를 맡아 수행할 예심기관명, 단위책임자(중앙기관에서는 부서책임자)의 비준을 밝히고 공인, 명판을 찍는다. 필요한 경우 수행을 할 예심행위와 관련된 소송문건(수색 및 압수결정서문)을 함께 보낸다.[256]

3.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의 회보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곧 회보한다. 곧 회보한다는 것은 예심을 끝낸 그날로 회보한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예심을 하는 과정에 새로운 증거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것도 수집하여 회보하면서 의뢰받았던 모든 소송문건들을 함께 보낸다. 예심원은 의뢰하였던 의뢰문건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257]

---

25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3면.
25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4면.
25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4면.

제155조 (예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211조(수사 및 예심 과정에서의 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감독권한)

검사는 검찰의 감독에 관한 소련법(USSR Statute on Procuratorial Supervision)에 따라 수사 및 예심절차에서의 법 집행을 감독한다.

(1) 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a) 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를 개시하고, 여죄나 책임을 면하는 범죄자가 없도록 조치한다.

(b) 불법적이거나 근거 없는 형사소송절차 또는 기타 불법적 권리 제한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엄격한 주의를 기울인다.

(c) 수사 및 예심 시행을 위하여 본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위반되지 않고 준수되도록 한다.

(d)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의 승인이 없이 체포되는 사람이 없도록 감독한다. 체포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는 체포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숙지하고 필요 시 피의자나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다.

(2) 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다.

(a) 수사 및 예심, 피의자나 피의자에 대한 제재조치(measure of restraint)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피의자 기소, 범죄 및 기소 범위 분류, 사건 회부, 특정 수사행위, 은신 중인 범인 수색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린다.

(b)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에게 범죄서류, 문서, 자료와 그 밖에 범행과 수사 및 예심절차, 범인 수색에 관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요구한다.

(c) 수사 및 예심에 참여하고 필요 시 직접 사건에 대한 예심이나 특정 수사행위를 취한다.

(d) 보충수사에 관한 서면지시서와 함께 형사사건을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에게 환송한다.

(e)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의 불법적이며 근거 없는 명령을 무효화한다.

(f) 수사원이나 예심원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이 위반되는 것을 용인하였다면 그 수사원이나 예심원을 향후 수사나 예심에서 배제시킨다.

(g) 사건 수사의 완전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담당 수사기관에서 다른 예심원에게, 또는 담당 예심원에서 다른 예심원에게 이양한다.

(h) 검찰청 산하 기관의 예심원이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특정 수사행위나 수색조치의 이행을 수사기관에 위임한다.

(i) 본법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형사사건을 종결시킨다.

제212조(검사 지시의 구속력)

검사의 지시는 서면으로 하며, 그 지시는 예심원과 수사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본법 제127조 제2항에 규정된 사례가 아니면 상급 검사에게 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지시의 집행이 연기되지 않는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37조 검사

1. 검사는 본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형사사법절차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형사소추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및 예심기관의 소송활동을 감독하는 관리이다.

2. 기소전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검사는 다음의 권한이 있다.

   1) 범죄제보를 접수, 등록 및 해결시에 준수되어야 할 연방법률에 규정된 규칙의 이행을 점검한다.

   2)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제기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수사관/예심관/하급검사에게 위임하거나 자신의 담당 사건으로 접수한다.

   3) 예비조사의 수행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방향, 수사처분 및 기타 소송행위의 방향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를 하거나 직접 개별적인 수사처분 및 기타 소송행위를 수행한다.

   4) 본법 제146조에 따른 수사관/예심관의 형사사건 제기에 동의한다.

   5) 수사관/예심관이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의 채택/취소/변경에 대하여, 또는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기타 소송행위의 집행에 대하여 동의한다.

   6) 하급검사/예심관/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 및 그들의 회피신청(자진사퇴)을 해결한다.

   7) 수사관/예심관이 예심조사 수행시 본법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그 이후의 예비조사에서 그를 배제시킨다.

   8)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회수하여 이를 예심관에게 배당하고, 한 검찰예심관으로부터 다른 검찰예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다. 이때 그 사건이전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9) 본법 제151조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한 예비조사 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예비조사 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회수

하여 이를 검찰예심관에게 배당한다. 이때 그 사건이전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하급검사/예심관/수사관의 위법한 또는 부당한 결정을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취소한다.

11) 수사처분의 집행을 수사기관에 위임하고, 공작수사처분의 집행을 수사기관에 지시한다.

12) 예비조사의 기간을 연장한다.

13) 사건종결에 대한 수사관/예심관의 결정을 승인한다.

14) 기소결정서 또는 기소장를 승인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송부한다.

15) 보완조사의 지시를 첨부하여 사건을 수사관/예심관에게 반송한다.

16) 사건을 중지 또는 종결한다.

17) 그밖에 본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3.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수사기관/수사관/예심관에 대한 검사의 서면 지시는 구속적이다(역자 註 - 이행할 이무가 있다). 접수받은 검사의 지시를 상급 검사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은 그 지시의 이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역자 註 - 상급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원 지시는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단, 본법 제3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형사사건의 법원심리 과정에서 검사는 기소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 기소유지를 수행한다. 예비조사가 수사의 형식으로 수행된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예심관에게 공소유지를 위임할 수 있다.

5. 검사는 본법으로 규정된 절차와 그 근거에 따라 형사소추의 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

6. 본조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은 지방/시 단위의 검사와 그의 대리인, 이에 상응하는 검사(역자 註 - 지방/시 검찰청에 필적하는 보통군검찰청 등), 상급검사들이 행사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55조는 예심에 대한 감시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 안으로 해결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6조는 예심에 대한 감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을 바로 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을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5조는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해결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해결한다.’로 변경된 것이다. 강행규정이 일반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2012년 개정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37조는 예심에 대한 검사의 감시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본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형사사법절차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형사소추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및 예심기관의 소송활동을 감독하는 관리이다. 수사관/예심관이 예심조사 수행시 본법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그 이후의 예비조사에서 그를 배제시킨다. 수사처분의 집행을 수사기관에 위임하고, 공작수사처분의 집행을 수사기관에 지시한다.”

II. 예심에 대한 감시

예심에 대한 검사의 감시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146조 해석에 준한다.[258][259]

1. 형사소송법 준수정형에 대한 법적 감시

첫째, 예심에 대한 감시는 형사소송법 준수정형에 대한 법적 감시이며 어디까지나 예심원의 책임성과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수사의 전 과정을 정상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260]

① 검사는 예심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예심이 법적 요구에 맞게 정확히 진행되는가를 감시한다. 검사는 수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검사가 예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현장검증, 수색압수, 식별 같은 예심에 참가하여 해당한 소송행위가 소송법에 규제된 원칙과 방법, 절차대로 진행되는가를 살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심에 대한 감시의 주되는 방법은 소송행위에 참가하는 것이다. 예심원은 현장검증, 수색, 압수 같은 중요한 소송행위를 하기 전에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사건기록을 보는 과정을 통하여 예심원이 법적 요구와 절차대로 소송행위를 하였는가, 밝혀야 할 사실을 다 밝

25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4면.

259) **북한 형사소송법 제146조 (수사에 대한 감시)** 수사감시를 맡은 검사는 감시결정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소송문건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한다.

26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5면.

혔는가, 증거는 충분히 수집되었는가 같은 것을 따져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가 검토하는 사건기록이란 예심을 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결정서, 진술서 같은 일체 소송자료들을 의미한다.

2. 위법수사에 대한 서면 지시

둘째, 검사는 예심기관 내부사업문건, 행정적인 조사문건(예심시작결정의 근거로서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문건은 제외)은 볼 수 없다. 특히 검사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24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제259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검사의 처리)의 사유로 신청이나 의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관계자들을 따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예심에 대한 감시를 증인, 범죄혐의자, 범죄자 같은 소송관계자들을 따로 만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심에 검사가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서에 그 정형을 밝혀야 한다.[261)]

검사는 감시과정에 알게 된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 잡거나 필요한 예심을 함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이 입회인이 없이 현장검증을 하거나 근거 없는 수색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를 바로 잡으며 감정, 식별 같은 소송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지시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도 있으나 예심원이 만든 결정서를 취소하거나 구금, 구류된 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명백히 밝힌 해당 취소결정서나 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가 만든 해당 소송행위취소결정서나 지시서에는 검찰기관의 공인, 명판이 있어야 한다. 취소결정서를 비롯한 서면지시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262)]

---

26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6면.
26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6면.

3. 선집행 후 검사의 지시에 대한 의견제기

셋째,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 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먼저 집행하고 상급 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 제176조(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제177조 제2항(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제178조(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제215조(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와 그 해석에 어긋나는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집행하지 않고 상급 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지시에 대한 의견제기는 말 또는 서면으로 한다. 상급 검찰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한다. 의견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 이름, 사건명, 지시내용과 의견내용, 소송법의 조항,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밝혀야 하며 공인, 명판을 찍는다.[263]

4. 3일안으로 문건으로 해결 후 기록첨부

의견을 받은 상급 검찰소는 그에 대하여 3일안으로 해결한다. 서면으로 의견을 받은 경우의 해결은 문건화(단위 책임자의 비준과 공인, 명판이 있어야 한다.)되어야 하며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264]

26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7면.
26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17면.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개 관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북한 형사소송에서 예심의 절차와 형식은 예심의 시작, 형사책임추궁결정, 보전처분, 심문, 예심종결 등으로 되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4장 예심 중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에는 다섯 개의 조문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56조(예심의 시작), 형사소송법 제157조(형사책임추궁), 형사소송법 제158조(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 선정권리의 통고), 형사소송법 제159조(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형사소송법 제160조(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등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예심의 절차와 형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재판전단계에서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소송구성부분의 하나가 예심행위이다. 그것은 예심에서 사건의 전모와 여죄연루관계가 밝혀지고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소송구성부분의 하나인 예심이 자기 앞에 나선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소송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예심의 절차와 형식은 하나의 실무적인 형식이 아니라 예심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보장하며 예심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예심에서는 예심원들의 높은 책임성을 전제로 하면서 법에 규정한 예심의 절차와 형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265]

265) 형사소송법학, 1985, 60~61면.

예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 강제처분, 책임에 영향을 주는 범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심과정을 거쳐 예심이 종결되면 검사가 기소하거나 또는 사건기각결정을 한다. 검사에 의한 기소와 사건기각결정을 제외하고 모두 예심원들이 담당한다. 예심에 대해 검사는 감시한다. 예심원이 체포한 신병을 계속 유지할 경우 2개월의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면 예심을 종료하고 예심종결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는 이 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기소한다. 수사원이 체포하지 못한 공범자에 대해서는 예심원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 발급은 검사가 한다. 재판소의 통제방법이 없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북한 형사소송법의 예심제도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들과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제156조 (예심의 시작)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한다.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29조(예심 개시)

예심은 형사소송 개시 후에 본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한다.

예심원은 그가 개시했거나 그에게 송치된 사건의 예심을 즉각 개시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 형사사건이 예심원에 의해 개시되었거나 그의 수락을 받았을 시, 형사 소송을 개시하고 수락하는 단일 명령이 필요하다. 검사 혹은 법원이 개시한 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예심원은 사건을 수락하는 별도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예심원은 그러한 명령의 사본을 24시간 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복잡한 혹은 광범위한 사건의 경우 예심은 다수의 예심기관에 맡겨진다. 이는 소송을 개시하는 명령에 지시되거나 별도의 명령이 행해진다. 예심원 중 하나는 사건을 수락하거나 다른 예심원들의 행위를 관장한다. 그러한 경우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민사소송의 원고, 민사소송의 피고에게 불복할 권리를 설명할 때 예심을 맡은 예심원들이 누구인지 전부 공지된다.

제130조(예심원 참여배제에 대한 결정 절차)

예심원 참여배제 신청을 받은 후, 예심원은 24시간 내에 검사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본법 제64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다면 예심원은 검사에게 그 자신이 해당 사건에 대한 예심 진행으로부터 스스로 배제한다는 내

용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신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일 내에 검사는 그에 관한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 예심행위는 검사가 결정을 내리는 동안 중단되지 않는다.

제131조(사건의 의의에 대한 신청을 인정하기 위한 자격요건)

예심원은 피의자,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 피해자, 민사 청구인, 민사 피고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그들의 청원이 사건에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인 심리를 하거나 기타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예심행위를 거절할 수 없다. 본법 제20조, 21조, 68조에 의거한 정황이 사건의 예심을 바로잡기 위한 의의를 가진 경우 사건 의의의 정황이 될 수 있다.

신청 심리에 대한 결과는 신청을 제출한자에게 통지된다. 만약 예심원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는 거부사유를 명시한 명령을 발부할 의무가 있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46조 국가소추(公訴追) 형사사건의 제기

1. 본법 제140조에 규정된 동기와 근거가 있을 때 검사의 동의를 얻은 수사기관/수사관/예심관, 그리고 검사는 본법으로 규정된 소관 권한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제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2. 형사사건 제기의 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결정을 내린 날짜, 시간 및 장소
   2) 결정을 내린 자(者)
   3) 형사사건 제기의 동기 및 근거
   4) 형사사건 제기의 근거가 된 러시아연방 형법전의 해당 조(條), 항(項), 호(號)
3. 형사사건의 수사관할을 정하기 위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형사사건 제기의 결정서에 명시한다.

4. 예심관/수사관의 형사사건 제기결정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결정서에는 범죄의 제보를 검토한 기록을 첨부한다. 범죄의 증적을 확보하고 죄를 범한 자를 확인하는 등의 개별적인 수사처분(범죄현장 검증, 신체검사, 사법감정 지정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서와 결정서를 첨부한다. 위 결정서를 접수한 검사는 지체없이 형사사건 제기를 동의하는 결정, 형사사건 제기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결정, 또는 보충조사를 위해서 기록을 반송하는 결정(이때에는 5일 이내에 보충조사를 마쳐야 함) 등을 내린다. 검사의 결정 내용을 예심관/수사관은 그 결정이 내려진 날에 범죄의 제보자 그리고 피제보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원양 항해중인 해양/하천 선박의 선장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질조사 탐험대나 월동부대의 책임자의 의해서, 또는 러시아연방의 외교대표부나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에 의해서 형사사건이 제기된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수사의 개시에 대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형사사건 제기의 결정서와 사건기록의 송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송달한다.

제148조 형사사건 제기의 거부

1. 형사사건을 제기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 검사/예심관/수사기관/수사관은 형사사건 제기를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범죄의 구성요건 부재) 형사사건의 제기 거부는 구체적인(특정한) 사람에 관해서만) 허용된다.

2. 구체적인(특정한) 사람(들)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검토한 결과, 형사사건의 제기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때, 검사/예심관/수사기관은 (범죄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제출하거나 전파한 자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무고한 데 대하여 형사사건을 제기할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파된 범죄에 대한 제보를 검토한 결과, 형사사건의 제기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 사실은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

4. 형사사건의 제기를 거부하는 결정의 사본은 그 결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자 및 검사에게 송부된다. 이때 신고자에게는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와 불복절차를 설명한다.

5. 형사사건의 제기를 거부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은 검사에게 제기될 수 있고, 또는 본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기될 수도 있다.

6. 형사사건의 제기 거부가 위법한 또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검사는 형사사건 제기 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본 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제기하거나 또는 보충조사를 위해 사건기록을 반송한다.

7. 형사사건의 제기 거부가 위법한 또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판사는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토록 결정서를 검사에게 송부하며 신고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제149조 형사사건의 진행

본법 제146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형사사건을 제기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1) 검사는 예비조사를 진행토록 형사사건을 송부하고,

2) 예심관은 예심을 개시하며,

3) 수사기관은 긴급수사처분을 수행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본법 제150조 제3항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제8장 예비조사

제21절 예비조사의 일반조건

제150조 예비조사의 형식

1. 예비조사는 예심 또는 수사의 형식으로 수행된다.

2. 예심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필요적이다. 단, 본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은 예외로 한다.

3. 수사는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 수행된다.

1) 러시아연방 형법전에 규정된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 제112조(약간 중한 상해), 제115조(경한 상해), 제116조(폭행), 제117조 제1항(일반 학대), 제118조(과실 중상해), 제119조(협박), 제121조(성병 감염), 제122조 제1,2항(일반 에이즈감염), 제123조 제1,2항(불법낙태), 제125조(위험방치-구호의무위반, 제127조 제1항(일반 감금), 제129조 (명예훼손), 제130조(모욕), 제150조 제1항(미성년자 범죄유인-誘引, 끌어들임), 제151조 제1항(미성년자 반사회적행위 유인), 제153(영아바꿔치기), 제154조(불법으로 양자삼기, 養子), 제155조(양자라는 비밀누설), 제156조(미성년자 양육의무 불이행), 제157조(자녀 또는 노동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부양비 지불을 악의적으로 회피), 제158조 제1,2항(단순절도-주거침입절도 제외), 제159조 제1항(단순사기), 제160조 제1항(단순 횡령), 제167조 제1항(단순 재물손괴), 제168조(과실 재물손괴), 제170조(불법토지거래 등기), 제171조 제1항(단순 불법영업행위 - 무등록, 무허가 영업 등), 제171-1조 제1항(수입인지 등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 및 제품의 생산, 취득, 보관, 운송 또는 판매), 제175조 제1,2항(단순 장물 취득 및 거래), 제177조(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변제를 악의적으로 기피), 180조 제1,2항(단순 불법 상표사용), 제181조 제1항(국가검인의 불법 제조·거래 및 위조-檢印), 제188조 제1항(일반 밀수), 제194조(관세지불 기피), 제203조(사설경비 또는 사설탐정 종사자의 권한 남용), 제207조(테러행위 허위신고), 제213조 제1,2항(난동, 훌리건, 사회질서 파괴행위), 제214조(문화파괴행위 - 반달리즘, 공공건물,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을 훼손, 오손하는 행위), 제218조(폭발·발화 물질, 폭죽의 등록, 보관, 운송 및 이용 규칙 위반), 제219조 제1항(경미한 화재 안전규칙 위반), 제220조 제1항(경미한 핵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 불법취급), 제221조 제1항(핵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의 절취 또는 강요-일반), 제222조 제1,4항(무기, 탄약, 폭발물의 불법 취득, 인도, 거래, 보관, 운송, 소지-일반), 제223조 제1,4항(불법 무기제조-일반), 제224조(화기 관리소홀-火器), 제228조 제1,5항(마약 또는 환각물질을 불법으로 제조, 취득, 보관, 운송, 운반, 거래하는 행

위 중 판매의 목적 없이 단순 취득,보관하는 행위(제1항)와 이러한 물질을 생산, 제조, 관리하는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제5항)), 제230조 제1항(마약 또는 환각물질을 소비토록 유인하는 행위), 제231조 제1항(재배가 금지된 마약물질 함유 식물을 불법 재배), 제232조 제1항(마약 또는 환각물질을 소비할 장소을 조직 또는 경영), 제233조(마약 또는 환각물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처방전 기타 문서를 불법 발급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제234조 제1,4조(거래목적으로 극약이나 독성 물질을 불법유통, 이러한 물질의 생산,제조, 관리 등 규칙위반), 제240조 제1항(매춘에 종사토록 유인, 끌어들임), 제241조(매춘영업의 조직, 경영, 장소제공), 제242조(포르노그라프를 불법 전파), 제242-1조(미성년자의 포르로그라프를 제조, 유통), 제243조(역사 및 문화적 기념물을 파괴 도는 훼손), 제244조(사체 및 분묘를 모욕하는 행위), 제245조(동물학대), 제250조 제1항(수질오염-동,식물계에 해를 끼친 경우), 제251조 제1항(대기오염-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끼친 경우 제외), 제252조 제1항(해양오염-인간의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제253조(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위반), 제254조 제1항(토양오염), 제256조(불법 어로행위), 제257조(어장 보호규칙 위반), 제258조(불법수렵), 제260조 제1항(불법벌목), 제261조 제1항(숲을 파괴 또는 훼손), 제262조(특별 자연 보호지역 및 보호대상에 관한 규칙위반), 제264조 제1항(도로교통 및 차량운행에 관한 규칙 위반-중상해 야기), 제266조 제1항(차량의 수리 불량 및 기술적으로 하자 있는 차량을 운행토록 출고한 행위-중상해 야기), 제268조 제1항(교통안전규칙 위반:운전자 이외의 승객,보행자 등에 의한-중상해 야기), 제294조 제1항(재판 및 예심조사를 방해\-법원의 활동에 대해), 제297조(법원에 대한 不敬), 제311조 제1항(법관 및 형사절차의 참여자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비밀 누설), 제312조(압류목록 재산 또는 몰수될 재산에 관한 불법행위), 제313조 제1항(체포, 구속 장소 또는 형무소에서 도주), 제314조(受刑 기피), 제315조(법원의 판결, 결정 기타 사법처분의 미집행), 제319조(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모욕), 제322조 제1항(러시아연방의 국경을 불법), 제323조 제

1항(러시아연방 국경을 불법 변경), 제324조(공문서 및 국가훈·포장을 불법 취득 또는 거래), 제325조(공문서, 직인, 인장을 절취, 훼손하거나, 소비세 수입인지 기타 특별한 인지나 표의 절취), 제326조(차량 식별번호의 위조 또는 소멸), 제327조 제1,3항(공문서, 국가훈·포상, 직인, 인장, 서식을 위조, 제조, 거래하거나, 이러한 위조문서를 행사), 제327-1조 제1항(위조된 소비세 수입인지 및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인지나 증표를 제조,거래 또는 행사), 제329조(러시아연방의 紋章 또는 國旗 모독), 제330조 제1항(자의적인 권리행사)

2) 경죄 또는 약간 중한 죄에 관한 형사사건 - 검사의 서면지시에 따라

※ 제3항 제1호에 기재되지 아니한 범죄라도 경죄 또는 약간 중한 죄에 대한 사건은 검사의 서면지시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할 수 있다.

4. 검사의 서면지휘에 따라 본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예비심리를 행하도록 이송될 수 있다.

제151조 사건의 수사관할

1. 예비조사는 예심관 및 수사관에 의해서 수행된다.

2. 예심은 다음의 예심관에 의해서 수행된다.

1) 검찰청 소속 예심관은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

à) 러시아연방 형법전에 규정된 다음의 범죄
제105-110조, 제111조 제4항, 제120조, 제126조, 제127조 제2,3항, 제128조, 제131-133조, 제136-149조, 제205조, 제208-212조, 제215조, 제215-1조, 제216조, 제217조, 제227조, 제237-239조, 제246-249조, 제250조 제2,3항, 제251조 제2,3항, 제252조 제2,3항, 제254조 제2,3항, 제255조, 제263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9조, 제282조, 제282-1조, 제282-2조, 제285-293조, 제294조 제2,3항, 제295조, 제296조, 제298-305조, 제317조, 제318조, 제320조, 제321조, 제328조, 제332-354조, 제356-360조

b) 본법 제447조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 및 그들의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범한 죄에 관한 형사사건. 단, 본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연방보안국, 대외정찰국, 연방경호국, 내무행정기관, 법무성의 형집행기관, 마약 및 환각물질 감독기관, 세관 소속 공무원, 군무원 및 군사소집중인 민간인, 국방부 기타 군부대 소속 민간공무원 등이 범한 죄, 그리고 그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범한 죄에 대한형사사건. 단 본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방보안국 소속 기관의 예심관은 다음의 러시아연방 형법전에 규정된 다음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제188조 제2,3,4항, 제189조, 제205조, 제205-1조, 제208조, 제211조, 제275-281조, 제283조, 제284조, 제322조 제2항, 제323조 제2항, 제355조, 제359조

3) 러시아연방 내무행정기관의 예심관은 러시아연방 형법전에 규정된 다음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제111조 제1,2,3항,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 제2,3항, 제122조 제3,4항, 제123조 제3항, 제124조, 제134조, 제135조, 제150조 제2,3항, 제151조 제2,3항, 제152조, 제158조 제3,4항, 제159조 제2,3항, 제160조 제2,3항, 제161조 제2,3항, 제162조, 제163조 제2,3항, 제164조, 제165조 제3항, 제166조 제2,3,4항, 제167조 제2항, 제169조, 제171조 제2항, 제171-1조 제2항,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4-1조, 제175조 제3항,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3항, 제181조 제2항, 제183-187조, 제188조 제2,3,4항,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1조,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3조 제3항, 제215-2조, 제219조 제2항, 제220조 제2항, 제221조 제2,3항, 제222조 제2,3항, 제223조 제2,3항,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8조 제2,3,4항, 제234조 제2,3항, 제235조, 제236조, 제240조 제2항, 제259조, 제260조

제2,3항, 제261조 제2항, 제264조 제2,3항, 제265조, 제266조 제2,3항, 제267조 제268조 제2,3항,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제304조, 제313조 제2항, 제327조 제2항, 제327-1조 제2항, 제330조 제2항

4) 본호 2003.07.01.부터 효력상실, 연방법률 제86호, 2003.06.30.

5) 마약 및 환각물질 감독기관의 예심관은 러시아연방 형법전에 규정된 다음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제188조 제2,3,4항(마약 및 환각물질의 밀수와 관련된 부분만), 제228조 제2,3,4항, 제229조, 제230조 제2,3항, 제231조 제2항, 제232조 제2항, 제234조 제2,3항

3. 수사는 다음의 수사관에 의해서 수행된다.

1) 러시아연방 내부행정기관의 수사관(예심관)은 본법 제15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만 본항 제3,4,5,6항에 규정된 형사사건은 제외한다.

2) 본호 2003.07.01.부터 효력상실, 연방법률 제86호, 2003.06.30.

3) 연방보안국의 국경수비대 소속 수사관은 러시아연방 형법전에 규정된 다음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제253조 및 제256조(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발각된 수상 동식물의 불법채취에 관한 부분), 제322조 제1항 및 제323조 제1항, 제188조 제1항(러시아연방 세관기관의 부재중에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저지된 밀수에 관한 부분)

4) 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적시된 러시아연방 법무성 사법집행기관 소속 수사관은 러시아연방 형법전 제294조 제1항, 제297조, 제311조 제1항, 제312조, 제31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5) 러시아연방 세관 소속 수사관은 러시아연방 형법전 제188조 및 제194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6) 국립소방청 소속 수사관은/러시아연방 형법전 제168조 제2항, 제219조

제1항, 제2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7) 검찰청 소속 예심관은/본조 제2항 제1호 <á> 및 <â>에 규정된 공무원이 범한, 본법 제15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8) 마약 및 환각물질 감독기관 소속 수사관(예심관)은 러시아연방 형법전 제228조 제1,5항, 제230조 제1항, 제231조 제1항, 제232조 제1항, 제233조, 제234조 제1,4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

4. 러시아연방 형법전 제275조, 제276조, 제283조 및 제284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으로서/본조 제2항 제1호 <â>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범한 사건에 대한 예심은/연방보안국 소속의 예심관이 수행한다.

5. 러시아연방 형법전에 규정된 다음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예심은 그 범죄를 밝혀낸 기관의 예심관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제158조 제3,4항, 제159조 제2,3항, 제160조 제2,3항, 제161조 제2,3항, 제162조, 제171조 제2항, 제171-1조 제2항,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4-1조, 제176조, 제183조,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2항, 제192조, 제193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201조, 제202조, 제204조, 제206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22조 제2,3항, 제226조 제2,3,4항, 제228조 제3,4항,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282-1조, 제282-2조, 제308조, 제310조, 제327조 제2항, 제327-1조 제2항.

6. 러시아연방 형법전에 규정된 다음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예심은 그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제기되어 있는 수사관할 소속 기관의 예심관에 의해서 수행된다.

제150조, 제285조, 제286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제306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2항, 제316조, 제320조.

7. 다수 기관의 수사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을 병합할 시에/그 수사관할은 본조에서 정한 수사관할의 원칙을 준수하여 검사가 정한다.

8. 형사사건의 수사관할에 관한 다툼은 검사가 해결한다.

Ⅰ. 개관

예심절차에서 첫 소송행위는 예심시작결정이다. 다른 표현으로 예심수리결정 또는 예심착수결정이라 한다. 예심원이 예심을 시작하는 법률적 근거가 예심시작결정이다.[266] 예심착수결정은 수사기관 또는 다른 예심기관 혹은 검사나 재판소가 형사사건을 제기하여 예심을 위임해 왔을 때, 다른 예심일군이 이미 진행하고 있던 예심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자기가 형사사건을 제기하여 직접 예심을 할 때 한다. 자기가 형사사건을 제기하여 직접 예심을 할 때에는 예심착수결정을 따로 만들지 않고 형사사건제기결정서와 합쳐서 쓸 수 있다.[267]

북한 형사소송법 제156조는 예심의 시작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한다.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7조는 예심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다른 범죄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56조 제2문의 내용을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로 개정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공화국형사소송에서 예심은 창조적이며 창발적인 사업이다. 예심은 제기된 형사사건을 넘겨받아 순수 범죄사실이나

266)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1면.
26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36면.

고착시키는 수동적인 역할에 불과한 소송활동이 아니다.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을 의문의 여지없이 모조리 밝혀내고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활동을 통하여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심원의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다.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을 비롯하여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감시하고 그 준동을 제때에 적발하여 철저히 진압하여 인민대중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준법의식을 높이며 국가사회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은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예심원은 언제나 범죄사건을 예심하는 과정에 그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하며 범죄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버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면서 동시에 그 범죄가 범해지도록 자극하는 조건들과 사정들을 밝혀 내여 해당 기관, 기업소 또는 단체에 알려주면 앞으로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예심원은 군중의 힘에 철저히 의지하면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사리정연하게,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268] 따라서 예심착수결정을 하고 예심에 착수하면서 우선해야 할 일은 사건에 대한 요해를 더욱 깊이 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예심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사건심리에서 반복심문이나 불필요한 조사를 없앰으로서 그의 신속성을 보장하며 예심기록의 조잡성을 없애고 사건의 사정을 체계정연하게 요해할 수 있게 한다. 예심계획화의 일반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 특성에 맞게 예심계획을 세울 것, 둘째 반드시 제 때에 세울 것, 셋째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되도록 할 것 등이다. 예심착수결정은 수사기관 또는 다른 예심기관 혹은 검사나 재판소가 형사사건을 제기하여 예심을 위임해 왔을 때, 다른 예심

268)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3(자체교재), 58면.

일군이 이미 진행하고 있던 예심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자기가 형사사건을 제기하여 직접 예심을 할 때 한다.[269]

II. 예심의 시작

1. 예심시작결정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으면 의무적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여야 한다. 범죄사건을 넘겨받으면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원이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부서책임자나 단위책임자로부터 배당된 사건을 예심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그 사건기록을 넘겨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70]

수사원으로부터 또는 관할에 따라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예심기관 단위책임자나 부서책임자는 48시간 안으로 예심분담을 하여야 한다.

예심시작결정이란 누가 어느 때부터 어떤 범죄사건을 맡아서 예심을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소송행위이다.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그 사건을 예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그 사건의 예심활동에 대하여 법 앞에 책임지게 된다.

예심기간은 첫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계산한다.

---

269)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36-137면.
27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5면.

2. 예심시작결정서

예심시작결정은 예심시작결정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한다. 예심시작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제기된 자료, 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거나 혼자서 저지른 사건이라도 복잡하여 여러 예심원이 예심하려고 할 경우에는 하나의 예심시작결정서에 어느 날 범죄자 누구누구에 대한 범죄사건예심을 예심원 누구누구가 맡아서 처리하였음을 적어야 한다. ② 예심과정에 예심원이 바뀌거나 다른 예심원으로부터 범죄사건이 이송되어 왔을 경우 그 사건의 예심을 맡은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건취급시작을 알리는 소송행위인 범죄사건을 예심을 넘기는 결정(형사사건취급시작),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판정에 의하여 예심을 맡은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71]

형사사건제기 및 예심시작결정서[272]

1983년 7월 4일 자강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한만배는 군식료공장노동자 오옥희 신고조서 3매, 이 공장 부기장 민철남의 진술서 4매, 위조장부 1권을 보고 형사소송법 제42조, 제47조 제1항 제2호,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민철남은 군식료공장 부기장으로 일하면서 1979년 2월부터 1983년 6월까지의 기간에 문건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재산 4,500여원을 략취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70조 제2항, 제145조에 해당한 사건을 제기하고 예심을 시작한다.

예심원 한만배

27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5～126면.
272)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1~62면.

예심시작결정서[273]

1983년 10월 2일 강원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홍창룡은 이 해 9월 30일 ㅅ군 검찰소 소장 남창림이 제기한 신구학의 형법 제99조 제2항사건의 예심이 나에게 맡겨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6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신구학의 형법 제99조 제2항 사건을 넘겨받아 예심을 시작한다.

② 이 결정등본을 ㅅ군 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예심원 홍창룡

예심시작결정서[274]

1983년 10월 25일 강원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최윤찬은 신구학의 형법 제99조 제2항 사건을 맡아 예심하던 홍창룡이 소환된 것과 관련하여 ㅅ군 검찰소 소장으로부터 이 사건의 예심이 나에게 맡겨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신구학의 형법 제99조 제2항 사건을 넘겨받아 예심을 시작한다.

② 이 결정등본을 ㅅ군 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예심원 최윤찬

273)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2면.
27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2면.

예심시작결정서[275]

1983년 11월 1일 강원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최윤찬은 ㅅ군 검찰소로부터 정동만의 형법 제100조 제1항 사건이 예심관할에 따라 넘어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정동만의 형법 제100조 제1항 사건을 넘겨받아 예심을 시작한다.

② 이 결정등본을 ㅅ군 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예심원 최윤찬

3. 예심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자료 처리

예심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얻은 경우 한 소속단위관할(중앙기관, 도급, 군급)이라면 그 사건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을 하여 넘겨야 한다. 범죄사건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은 사건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범죄사건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 이름, 결정의 사유와 근거, 소송법의 조항, 인정한 사실에 적용할 형법조문과 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단위, 부서 책임자의 비준정형은 북한 형사소송법 제82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과 담당자)[276] 해석에 따라 밝힌다.

275)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2면.

276) **북한 형사소송법 제82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과 담당자)**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시작된다.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예심원, 검사의 결정, 예심에 넘기는 검사의 결정, 검사에게 넘기는 재판소의 판정이 있은 때부터 형사사건의 취급이 시작된다.

4. 검사에게 고지의무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검사에게 알리는 것은 범죄사건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서등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예심과정에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얻은 경우 한 소속단위관할(중앙기관, 도급, 군급)이 아니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범죄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범죄자료를 넘겨주는 절차와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87조(범죄신고의 의무적 접수와 이송)[277] 해석에 따른다.

277) **북한 형사소송법 제87조(범죄신고의 의무적 접수와 이송)**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한 신고자료는 곧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제157조 (형사책임추궁)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41조(수사활동기록)

수사활동기록은 수사활동과정 중이나 완료 즉시 예심원이 작성해야 한다.

기록에는 수사활동의 장소 및 일시, 개시 및 종료일시, 기록한 사람의 사무실과 수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성(姓), 부칭, 필요시 주소, 예심활동 내용 및 예심활동에 공개되는 사건의 물적 정황 등에 대해 명시되어야 한다. 예심활동이 사진, 동영상 및 소리 등으로 기록되었거나 범죄 흔적 금형 및 각인이 준비되었다면 특정 예심활동 수행 시 기계 매체 사용에 대한 기록 및 상태, 절차, 종류 등이 설명되어야 하며 결과도 기록되어야 한다. 기계 매체사용이 공지되기 전 예심활동에 참여하는 인물들도 이에 대해 공지를 받아야 한다.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록을 낭독하고, 그들에게 기록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기록은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예심원, 심문을 받는 자, 통역인, 감정인, 수사활동의 증인 및 기타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사활동을 진행할 때 심문, 계획, 도표, 금형 및 범죄흔적 각인, 사진자료, 네거티브, 동영상, 슬라이드 및 녹음자료 등은 기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141조의1(심문과정 녹취)

예심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피의자, 증인 및 피해자을 심문할 때 음성을 녹취한다. 녹취는 피고인, 피의자, 증인 및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심원은 녹취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신문을 받는 자에게 심문 전 녹취에 대한 통지를 한다.

녹취는 본법 제141조 제2항에 명시된 정보 및 심문 전체과정을 반영한다. 심문 일부에 대한 녹취나 녹취를 위한 진술의 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문이 종료되면 심문을 받은 자를 위하여 녹취를 끝까지 재생한다. 재생 후 심문을 받은 자가 덧붙인 사항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녹취의 말미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그 정확성을 인증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취가 이루어지는 심문과정 중 증언은 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기록으로 보존된다. 심문기록은 녹취 사용과 관련한 공지를 포함하며 심문받는 자, 기계 매체 사용, 녹취 환경, 녹취 사용에 관한 심문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심문을 받는 자의 인증, 기록 및 녹취의 정확성에 대한 예심원의 인증 등을 포함한다.

사진자료는 사건기록으로 보존되며 예심이 완료되면 봉인된다.

증언 녹취는 다른 예심활동 과정에서 재생되는 경우, 예심원은 당해 예심활동 기록에 그러한 취지를 기록해야 한다.

제142조(서명거부 사실인증 및 예심활동 기록 서명 불능)

피고인, 피의자, 증인 혹은 기타 인물이 예심활동 기록에 대한 서명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취지가 기록되며 예심활동을 진행하는 자의 서명으로 이를 확인한다.

거부 사유를 설명할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하고, 그 내용은 기록에 남겨야 한다.

본조 1항에 명시된 사람들 중 신체적 장애 이유로 예심활동기록에 서명을 할 능력이 없을 경우 그러한 결과에 대한 공지는 기록으로 남으며 예심원

의 서명 및 예심활동 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같은 사유로 피고인, 피의자, 증인 혹은 피해자가 심문기록에 서명을 하지 못하면 예심원은 심문을 받는 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를 소환해 그의 증언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 심문을 진행한 예심원은 이 기록에도 서명한다.

Ⅰ. 개관

형사책임추궁결정이란 범죄혐의자를 정식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심자로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를 확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피심자란 형사책임을 추궁 받아야 할 범죄자를 말한다. 피심자를 확정하는 것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피심자로 확정되면 국가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된다. 따라서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피심자 확정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바로 그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며 따라서 그에게 마땅히 형사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 피심자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278)]

278)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2～63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51～152면: "피심자는 범죄를 범한 자라고 믿을만한 자료들을 확인한데 근거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피심자로 결정되는 첫 순간부터 그는 국가권력의 적용대상으로 된다. 법령이 규정한 피심자를 확정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수속절차는 이러한 요구들을 지킬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① 피심자를 확정하는 것은 범죄가 범해진 것이 틀림없고 수집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범죄자가 명백하게 증명되며 그에게 응당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② 피심자의 확정은 이유를 명확히 밝힌 결정서로 밝혀야 한다. ③ 피심자로 확정하는 결정은 곧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피심자에게 책임추궁결정서를 통하여 책임을 알리는 것은 피심자로 하여금 필요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 해명할 기회는 그를 심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장된다. 피심자심문은 형사책임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한다. ④ 피심자심문의 방법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하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57조는 형사책임추궁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형사책임추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예심원의 이름, 결정날짜, 피심자의 이름, 적용할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 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2항의 내용을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한다."로 개정하였다.

Ⅱ. 형사책임추궁

1.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수집

피심자의 확정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고 범죄자가 명확히 증명되어 그에게 응당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아직 범죄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필요한 증거가 다 수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심에서 피심자로 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될 수는 없으며 앞으로 밝혀지는데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이 신중하고 책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의 범위 안에서 그가 범죄자가 틀림없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279)]

27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7면.

증거가 뒷받침된 확신이 없이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밝혀진 다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면 범죄와의 투쟁을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없다. 따라서 형사책임추궁결정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다음 범죄자라는 것이 인정되면 제때에 하여야 한다.[280]

2. 형사책임추궁결정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형사책임추궁결정서 작성방법

예심원은 피심자를 확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추궁결정서는 매 범죄자별로 따로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결정하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범죄자의 이름,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이유, 소송법의 조항, 적용할 형법 조항과 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281]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이유는 간명하게 쓰되 피심자가 알면 예심의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쓰지 말아야 한다.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피심자에게 알려준 정형과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정형을 밝혀야 한다.[282]

---

28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7면.

28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7면.

28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7면. (새터민 전문가 좌담회: 2015년 9월 24(목) 10:00~12:00) “북한에서 변호사는 인기 없는 직업이다. 재판소 직원이다. 조선변호사협회가 있지만, 이 협회는 대한민국의 대한변호사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시(市)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 선정권을 알려준 정형은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마지막 부분에 쓰고 피심자의 지장을 받아야 한다.[283)]

형사책임추궁결정서[284)]

1983년 10월 8일 황해북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주복현은 수집된 증거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조남길은 군피복공장 노동자로서 1977년 3월부터 1983년 5월까지의 기간에 국가재산 4,000여원분을 훔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조남길을 형법 제67조 제2항 사건의 피심자로 확정하고 그에게 이 결정을 알려준다.

② 이 결정서 등본을 ㅅ군 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예심원 주복현

1983년 10월 9일에 이 결정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피심자 조남길

재판소에 1명의 변호사가 있고, 도(道)재판소에 3명의 변호사가 있다. 이들이 발생한 사건에 전담변호사가 된다. 대한민국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도(道)재판소에 20명의 판사가 있고, 100명의 검사가 있다. 국선변호인이 전부다. 여성변호사는 보지 못했다.”

28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7면.

28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66면.

제158조 (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준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힌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 규정 없음

※ 유사 규정(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규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9조(피고인의 변론할 권리 확보)

피고인은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법원, 검사, 수사원, 예심원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법에 근거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피고인이 변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준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힌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형사추궁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58조 제2항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가 ‘변호인을 선임하여’로, 그리고 ‘밝혀야 한다’가 ‘밝힌다’로 법문을 일부 개정하였다.

II. 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1. 형사책임추궁결정의 통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리는 방법은 결정서를 주는 방법으로 한다.[285)]

2.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피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가 안하는가, 누구를 선임하는가 하는 것은 피심자의 권리이다.[286)]

3.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변경, 취소, 추가의 통고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변경, 취소, 추가한 경우에도 그것을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87)]

III.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4절에 변호를 규정하고 있다. 전체 16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

28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8면.
28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8면.
28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8면.

제58조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보장)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59조 (변호인의 임무)

변호인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 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다.

제60조 (변호인의 선정권)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대표자도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61조 (변호인선정권의 포기)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62조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인선정시기)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제63조 (판사의 변호인선임의뢰시기)

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가 기소되였을 경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선임을 의뢰한다.

제64조 (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으로는 각급 변호사회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변호사자격을 갖춘 자도 변호인으로 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판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65조 (변호인선정신청 및 선임의뢰)

피심자, 피소자, 그의 가족, 친척 또는 소속단체대표자는 예심원, 판사에게 변호인선정신청을 한다.

변호인선정신청을 접수한 예심원, 판사는 선정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3일 안으로 신청내용을 알려준다.

이 법 제63조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려는 판사는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선임의뢰를 한다.

제66조 (변호인선정 및 선임통지)

변호인의 선정신청이나 선임의뢰를 받은 자 또는 변호사회는 3일 안으로 그 동의여부를 해당 예심원, 판사에게 알려준다.

변호인의 선정동의에 대하여 통지받은 예심원, 판사는 곧 변호인의 선정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제67조 (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

변호사, 변호사자격을 갖춘 자가 변호인의 선정신청, 선임의뢰를 거부하거나 검사 또는 판사가 변호인의 선정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다시 선정 또는 선임한다.

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은 이 법 제65조에 따른다.

제68조 (사선변호인의 우선권)

공선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였을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으로 된다.

제69조 (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담화)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

제70조 (변호인의 사건기록열람)

변호인은 범죄사건이 기소된 다음에는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71조 (변호인의 증거수집과 검토확인)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토확인할 수 있다.

제72조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에 대한 변호)

변호인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 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수 있다.

제73조 (변호인의 의견제기)

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판사,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사 또는 판사, 재판소는 제기 받은 의견을 3일 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 준다.

제159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결정서등본을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59조 제2항에서 문장의 순서와 ‘보내야 한다’가 ‘보낸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Ⅱ.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사건기록에 붙이고, 1통은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288)]

28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8면.

제160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조항을 추가하여 적용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조항을 추가하여 적용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조항을 추가하여 적용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하고 곧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제160조 제2항의 문장 순서가 바뀌고, 문구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이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로, ‘보내야 한다’가 ‘보낸다’로 개정되었다.

II. 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1. 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 예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거나 소추된 사실이 떨어져나갈 때 이미 적용하였던 형법조항을 고쳐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변경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89)]

2. 형사책임추궁변경결정서

형사책임추궁변경결정서에는 어떤 이유로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고치려하는가 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 예심과정에 이미 적용한 일부 형법조항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하여 형사책임추궁분리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분리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90)]

형사책임추궁분리취소결정서에는 책임을 묻던 범죄사실을 쓰고 그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근거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한 범죄의 내용을 이루는 일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형사책임추궁분리취소결정을 하지 않는다.[291)]

3. 형사책임추궁추가결정서 작성방법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 예심과정에 새로운 범죄가 밝혀

28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9면.
29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9면.
29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9면.

져 그에 대한 책임을 추가하여 묻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추궁추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추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추궁추가결정서에는 새로 형사책임추궁을 추가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292)]

형사책임추궁 변경, 취소, 추가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은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만드는 방법과 같다. 다만 변경, 취소, 추가이유와 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4. 검사에게 고지의무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변경, 취소, 추가한 경우 해당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293)]

29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9면.
29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29면.

제3절 피심자심문

개 관

피심자심문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4장 예심에서 제3절 피심자신문과 관련하여 14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61조(피심자심문시기), 형사소송법 제162조(피심자심문시간), 형사소송법 제163조(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형사소송법 제164조(피심자호송), 형사소송법 제165조(피심자체포의뢰), 형사소송법 제166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형사소송법 제167조(피심자심문의 개별화), 형사소송법 제168조(피심자의 권리통고), 형사소송법 제169조(피심자의 권리), 형사소송법 제170조(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형사소송법 제171조(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참가), 형사소송법 제172조(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심문), 형사소송법 제173(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형사소송법 제174조(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등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피심자심문(被審者審問)이란 예심의 기본형식이다. 심문은 소송상 강제활동의 하나로써 심문에서 얻은 증거를 통하여 밝혀내려는 범죄사실을 조사 해명한다. 피심자심문은 피심자가 범한 죄행을 밝혀내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얻어내는 원천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피심자심문은 그로부터 자기에게 추궁당하는 형사책임을 인정 또는 변명하고 주장할 기회를 주는 한편 범죄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예심일군들의 주관주의를 막고 피심자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지울 수 있게 하는 소송행위의 하나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피심자심문은 또한 피심자 자신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이다. 피심자는 자기에게 제시된 소추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심원들의 주관주의와 편견을 막고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을 정확히 지울 수 있게 한다. 피심자심문에서 성과를 이룩하려면 그 준비를 면밀히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한다.[294)]

북한 형사소송법 피심자심문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과 일부 유사 조항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피심자심문이라는 용어가 다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이라고 말한다. 수사기관이 하는 피의자신문과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피의자심문은 한자(漢字)가 다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295)]

그리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심문(被疑者審問)이란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29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

29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71면.

295)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8판, 2012, 168면.

296)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194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

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외의 피의자(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을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야 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161조 (피심자심문시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심문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2절 범죄피의자 신문

제91조 범죄피의자 신문은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수사인원이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 신문을 할 때 수사인원은 2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제92조 구속, 체포할 필요가 없는 범죄피의자에 대하여는 범죄피의자가 있는 시, 현 내의 지정된 장소에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주거지에서 신문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소환, 구인은 계속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하여 소환, 구인하는 방법으로써 변칙적으로 범죄피의자를 구금하여서는 안 된다.

제93조 수사인원이 범죄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범죄피의자의 범죄행위의 유무를 신문하고, 범죄피의자로 하여금 유죄의 내용과 정상 또는 무죄에 대한 변명과 해명을 진술하게 한 후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는 수사인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94조 농자 또는 아자인 범죄피의자를 신문할 경우에는 수화에 능통한 자가 참가하고, 아울러 그 상황을 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 신문조서는 범죄피의자에게 교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읽을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낭독하여 주어야 한다. 기재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는 보충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에 잘못이 없음을 인정한 후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사인원도 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인원도 범죄피의자에게 자필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제1차 신문 후 또는 강제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위해 법률자문의 제공, 신소와 고소의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선임된 변호사는 그를 위하여 보증부 불구속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비밀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범죄피의자의 변호사 선임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피의자의 혐의죄명을 알아볼 권리가 있고, 구금중인 범죄피의자를 접견하여 범죄피의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알아 볼 수 있다.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를 접견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사건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 국가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접견할 때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996. 3. 17. 본조 신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2절 범죄피의자 신문

제116조 범죄피의자 신문은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수사인원이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 신문을 할 때 수사인원은 2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범죄피의자가 간수소에 구금된 후, 수사인원이 신문할 때 반드시 간수소내에서 신문하여야 한다. (2013. 1. 1. 본조 개정)

제117조 구속, 체포할 필요가 없는 범죄피의자에 대하여는 범죄피의자가 있는 시, 현 내의 지정된 장소에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주거지에서 신문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범죄피의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며, 다만 신문기록 중에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소환, 구인은 계속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 복잡하여 구속, 체포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 소환, 구인은 계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하여 소환, 구인하는 방법으로써

변칙적으로 범죄피의자를 구금하여서는 안 된다. 범죄피의자를 소환, 구인할 시, 범죄피의자에게 필요한 음식, 휴식시간을 보증하여야 한다. (2013. 1. 1. 본조 개정)

제118조 수사인원이 범죄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범죄피의자의 범죄행위의 유무를 신문하고, 범죄피의자로 하여금 유죄의 내용과 정상 또는 무죄에 대한 변명과 해명을 진술하게 한 후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야 한다. 범죄 피의자는 수사인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수사인원이 범죄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범죄피의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정상참작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2013. 1. 1. 본조 개정)

제119조 농자 또는 아자인 범죄피의자를 신문할 경우에는 수화에 능통한 자가 참가하고, 아울러 그 상황을 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20조 신문조서는 범죄피의자에게 교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읽을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낭독하여 주어야 한다. 기재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는 보충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에 잘못이 없음을 인정한 후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사인원도 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인원도 범죄피의자에게 자필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1조 수사인원이 범죄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신문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 혹은 기타 중대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신문과정을 반드시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녹음 또는 녹화는 반드시 전과정에 대하여 진행하여 완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013. 1. 1. 본조 개정)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피심자심문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심문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피의자심문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62조에서 ‘심문하여야 한다’를 ‘심문한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예심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처리에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당 정책, 국가의 법령 등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예심원은 피심자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예심원은 피의자심문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설명한다.[297]

II. 피심자심문시기

1. 형사책임추궁결정과 고지 후 48시간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그를 심문하여야 한다.

2.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변경, 추가한 경우와 고지 후 48시간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변경, 추가한 경우에도 그 결정을 피심자에게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심문을 하여야 한다.[298]

297)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1985, 72면.
29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0면.

3. '필요에 따른' 특별 심문시기

'필요에 따라'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도 피심자심문을 할 수 있다. 피심자 심문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2조~167조, 제170조~제174조에 따라 한다.[299)]

29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0면.

제162조 (피심자심문시간)

피심자심문은 8~20시 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규정된 시간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 밑에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피심자심문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피심자심문은 8~20시 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규정된 시간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 밑에 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피심자의 심문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피심자의 심문은 8시~20시 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규정된 시간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조문 내용은 그대로 하고, 제162조로 조문번호만 개정하였다.

II. 피심자심문시간

1. 일반적 신문시간

피심자심문은 8~20시 사이에 한다.

2.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규정된 시간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 밑에 한다.

여기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피심자가 도주할 위험성이 있는 공모자의 이름, 소재지와 같은 자료 또는 지금 당장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될 증거에 대한 자료를 진술하는 도중이나 피심자심문을 다음 날로 미룬다면 예심의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300]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피심자심문은 22시를 넘어 할 수 없다.[301]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설명을 보면, 22시 이후의 피심자신문은 이론상으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새터민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안에 따라 22시 이후 피심자신문도 가능하다고 한다.[302]

30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1면.
30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1면.
302) 새터민 전문가 좌담회: 2015년 9월 24(목) 10:00～12:00

제163조 (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예심장소에서 심문하려는 예심원은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유사규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

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32조(예심장소)

예심은 범죄가 행해진 지역에서 실행된다. 가장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완벽한 예심 확보를 목적으로 예심은 범죄가 발각된 장소나 피의자, 피고인, 증인의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실행된다.

해당 사건이 예심원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심원은 모든 긴급 예심행위를 진행하고 적절한 예심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사건을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사건에 관한 예심 관할구역 문제는 예심이 진행되는 장소의 검사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관할구역에서 예심 및 수색행위를 실행이 필요할 시, 예심원은 개인적으로 예심을 실행하거나 적절한 수사 및 예심기관에 의뢰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10일의 기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을 규정하고 있다.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예심장소에서 심문하려는 예심원은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64조는 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심문하려는 예심원은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조문 내용은 그대로 하고, 제163조로 조문번호만 개정하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심자 소환과 관련하여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체포영장을 받아야 한다. 체포영장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발부로 이루어진다. 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

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II. 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1. 피심자의 소환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심문하려는 예심원은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소환장에는 피심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는 곳, 직장직위, 소송법의 조항, 소환이유, 피심자가 도착해야 할 날짜와 시간 및 장소, 소환하는 예심기관의 예심원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303)]

2. 피심자의 구인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이란 법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자를 심문할 장소까지 강제로 데려오는 소송행위이다.[304)]

피심자가 오지 않은 이유의 정당성 여부는 예심원이 구체적 사실을 따져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구인결정서는 예심원이 작성한다. 구인결정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는 곳, 직장직위, 구인하는 이유, 소송법의 조항, 구인할 날짜와 시간 및 장소, 구인결정을 한 기관과 일군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구인은 예심원이 하거나 수사원에게 구인결정서를 보내어 집행하게 할 수 있다.[305)]

---

30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1면.
30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1면.
30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1면.

3. 피심자의 구인집행방법

구인은 수사원, 예심원이 동행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피심자가 구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142조 해석(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에 따른다.[306]

피심자를 구인한 경우 북한 형사소송법 제180조(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의 절차에 따라 체포, 구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구금실에 억류할 수 있다.[307]

Ⅲ. 비교법 연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체포, 구속, 구금, 구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체포(逮捕, arrest, Festnahme, arrestation)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48시간) 동안 수사관서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단계 처분(대인적 강제처분)이다. 체포기간이 단기간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체포제도는 1995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다. 체포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한 통상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와 사전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 3), 현행범인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로 구분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

30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2면.
30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2면.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의 제5항), 체포·긴급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 체포 또는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케 함으로써(형사소송법 제203조의 2) 구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2. 구속(拘束, Untersuchung, enquete)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구인 또는 구금이 포함)이다.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이다.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1조의2 제2항). 피고인의 구속이란 공소제기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제164조 (피심자호송)

구류한 피심자심문은 예심장소에 호송하여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4조는 피심자호송을 규정하고 있다. 구류한 피심자심문은 예심장소에 호송하여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피심자호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구류한 피심자의 심문은 예심장소에 호송하여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조문 내용은 그대로 하고, 제164조로 조문번호만 개정하였다.

Ⅱ. 피심자호송

1. 구류된 피심자의 예심장소

북한 형사소송법 제164조에서 예심장소란 예심을 하는 장소일반을 말하

는 것이 아니라 구금장에 붙여 설치한 예심실을 의미한다.[308]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심문은 이 예심실에서만 할 수 있다.[309]

2. 구류되지 않은 피심자의 예심장소

구류되어 있지 않은 피심자는 임의의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310]

30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2면.
30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2면.
31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2면.

제165조 (피심자체포의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낸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피심자체포의뢰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낸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66조는 피심자체포의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65조에서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보내야 한다’를 ‘보낸다’로, 그리고 ‘회보하여한 한다’를 ‘회보한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체포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기간이 단기간인 점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 비교적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제도는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를 인치하여 구금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관행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인신구속의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체포제도가 구체화된 것이다.[311]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Ⅱ. 피심자체포의뢰

1. 피심자체포의뢰결정서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뢰를 하여야 한다.[312] 예심과정에서 피심자가 도주하

311)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175～176면.
31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3면.

였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였으나 그 행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체포하기 위한 체포의뢰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포의뢰결정을 할 경우에는 피심자체포의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13] 피심자체포의뢰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체포의뢰이유, 소송법의 조항, 피심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는 곳, 직장직위, 인상복장, 가족 및 친척관계 같은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피심자의 사진이 있으면 붙여야 한다.[314]

2. 피심자체포의뢰결정서, 체포영장과 구류, 구속처분결정서의 수사기관 송부

예심원은 피심자체포의뢰결정서를 검사의 승인을 받은 체포영장과 구류나 구속처분결정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315] 예심원은 피심자체포의뢰를 한 다음에도 증인심문을 비롯한 증거수집의 예심을 계속하여야 한다.[316] 예심원은 피심자체포를 의뢰한 다음 피심자가 죽었거나 다른 기관에서 피심자를 체포한 것을 알았을 경우 곧 체포를 의뢰한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말로 한다.[317]

3. 범죄자체포의뢰결정과 피심자 체포 및 회보

예심시작결정을 한 다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자가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범죄자체포의뢰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318]

31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3면.
31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3면.
31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3면.
31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3면.
31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3면.
31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3면.

제166조 (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12.13.]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6조는 강제적인 심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67조에는 강제적인 심문의 금지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의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66조에서 ‘강제의 방법으로’를 ‘강제적인 방법으로’로,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를 ‘유도할 수 없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강압적인 방법, 고문과 악형은 부르죠아경찰의 수법으로서 진실을 가려낼 수 없게 하는 유해로운 심문방법이다. 그 어떤 잔인한 고문도 가리지 않으며 허위와 날조로써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버릇된 부르죠아경찰과는 달리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밝혀 범죄자, 인민의 원쑤들을 철저히 치고 인민들을 튼튼히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우리의 예심일군들은 고문과 악형은 물론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를 주는 강압적인 방법도 쓰지 말아야 한다. 덧걸이를 쳐서 유도하면 심문자의 요구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본의 아닌 거짓말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심원은 피심자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정숙한 분위기에서 심문하여야 하며 말과 행동에서 원칙성이 있고 절도가 있어야 한다. 피심자가 자기의 죄행을 감추려고 교활하게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에도 흥분하거나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냉정하게 증거를 하나하나 들이대면서 그를 굴복시켜야 하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주의하여 듣고 경각성 있게 다루어 증거로써 검토, 분석하면서 그 속에서 진실을 밝힐 실마리를 찾는 침착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319]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실제 북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7항이 반영된 것이다.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320]

---

319)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55면.

320)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도11788 판결[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II. 강제적인 신문의 금지

1. 강제적인 신문금지

강제적인 심문이란 피심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같은 정신육체적 고통을 주면서 하는 심문을 말한다. 구금, 구류기일이 지나도록 내보내지 않고 심문하는 것도 강제의 심문에 해당한다.[321]

2. 진술유도 신문금지

진술을 유도한다는 것은 예심원의 의도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진술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도3029 판결[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603 판결[강간치사·살인] [3]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으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검찰 자백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2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4면.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심자심문에서는 고문, 덧걸이, 유도, 유출 같은 비법적인 심문방법이 이에 해당한다.[322]

3. 반인민적인 심문금지

강제의 방법, 진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심문하는 것은 부르조아경찰식 심문방법이다. 이는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없게 하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 가려낼 수 없게 할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 반인민적인 심문방법이다.[323]

4.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의한 신문

예심원은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그것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심문하여야 한다.[324] 북한 형사소송법 제29조(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되여야 사건해결의 기초로 쓸 수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 제33조(증거를 찾아내는 방법)에 따르면 증거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낸다.

5. 피심자 진술의 증거능력

강제의 방법, 진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받아낸 피심자의 진술은 증거로 쓰지 못한다.[325] 북한 형사소송법 제37조(피심자, 피소자진술의 평가)도 이

32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4면.
32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4면.
32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4면.
32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4면.

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수, 자백한 자료도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

Ⅲ. 비교법 연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고문, 폭행, 협박을 통한 강제적인 심문금지 뿐만 아니라 기망 및 약속에 의한 심문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소개된 사례이다.

1. 기망에 의한 자백

피고인 甲과 乙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검사는 甲에게 “乙이 이미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옷에 甲의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甲을 추궁하였다. 그 결과 甲은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에 사용한 칼을 숨겨놓은 장소도 진술하였다. 검사는 甲의 자백과 압수한 칼을 기초로 乙의 자백도 받아 甲과 乙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된 칼은 증거능력이 있는가?[326]

326)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488면.

[해 설]

Ⅰ. 사안의 쟁점은 기망에 의한 자백이다.

기망에 의한 자백이란 위계, 거짓말, 술책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행해진 자백을 말한다. 기망은 진술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327]

Ⅱ. 형사소송법 제309조[328], 제312조 제1항[329]의 의미와 판례의 입장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330]

Ⅲ. 사안의 해결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위계를 사용하여 피의자를 착오에 빠

327)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14, 463면.

328)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29)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30)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2182,85감도313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뜨리고 자백을 획득하는 신문방법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 甲이 위계에 의하여 심리적 강제를 받아 그 결과 자백을 하였다면 그 자백은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甲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기초하여 압수한 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압수물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331)]

2. 약속에 의한 자백

공무원 甲은 건축업자 을로부터 금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다. 검사는 甲에게 "자백만 하면 뇌물수수액을 줄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아닌 형법상의 『수뢰죄』로 기소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자백을 유도하였다. 甲은 검사의 제의에 동의하여 乙로부터 금 5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甲은 수뢰죄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의 자백이 허위임을 주장하였다. 甲의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가?[332)]

[해 설]

Ⅰ. 사안의 쟁점은 약속에 의한 자백이다.

약속에 의한 자백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얻은 자백을 말한다. 약속은 자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이어야 한다.[333)]

---

331)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14, 464면.
332)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490면.

Ⅱ.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1항의 의미와 판례의 입장

자백은 약속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Ⅲ. 사안의 해결

약속에 의한 자백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얻은 자백을 말한다. 甲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사로부터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약속을 받고 자백을 하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가는 자백이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334)]

3. 철야신문과 자백의 증거능력

공무원 甲은 뇌물수수의 혐의로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사법경찰관 2명은 교대로 甲을 30시간 동안 계속 신문하면서 자백할 것을 추궁하였다. 甲은 신문에 지친 상태에서 결국 혐의사실을 자백하였고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었다. 甲은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자 체념을 한 상태에서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는 생각으로 혐의사실을 다시 자백하였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335)]

---

333)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14, 463면.
334)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490면.
335)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490면.

[해 설]

Ⅰ. 사안의 쟁점은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장시간의 신문이나 철야신문을 통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문이란 사람의 정신 또는 신체에 대하여 비인도적·비정상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336)]

Ⅱ.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자백한 경위, 그 구체적 내용 및 자백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 없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337)]

Ⅲ. 사안의 해결

사법경찰관이 甲을 30시간 동안 계속 신문하여 얻은 자백은 임의로 진

336)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14, 463～464면.
337) 대법원 1998.4.10. 선고 97도3234 판결 【뇌물수수】

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甲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진행관계에서 나타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167조 (피심자심문의 개별화)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7조는 피심자심문의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6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67조에서 '피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를 '피심자를 심문한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Ⅱ. 피심자심문의 개별화

피심자심문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한 사건에 여러 피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있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하지 말아야 한다.[338)]

33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4면.

제168조 (피심자의 권리통고)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7조는 피심자의 권리통고를 규정하고 있다.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준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68조는 피심자의 권리통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67조에서 ‘알려주어야 한다.’를 ‘알려준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권리로서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 또는 공판절차에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陳述拒否權,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를 말한다. 이를 묵비권(默秘權, right of silence)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자기부죄강요금지의 특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선언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과 제289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는 더욱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II. 피심자의 권리통고

1. 피심자신분확인

피심자신분확인과 그의 권리통고는 첫 피심자심문에서 한다. 피심자의 신분확인은 이름, 생년월일, 직장직위, 경력, 거주지, 가족관계 같은 것에 대하여 한다.[339)]

33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5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241조(피의자신문)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피심자의 권리통고

예심원은 형사소송법 제168조에 규정된 피심자의 권리를 그에게 알려주고 그 정형을 해당 조서에 밝혀야 한다.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그의 권리를 알려주면서 배제사유가 있거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24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제259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에 따라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340)]

34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5면.

제169조 (피심자의 권리)

예심에서 가지는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 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서에 직접 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

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20조(사건 정황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객관적인 분석)

법원, 검사, 수사원, 예심원은 법에 근거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 정황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하고 객관적인 분석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입증하거나 석방하고 피고인의 혐의를 경감 혹은 가중시키기 위하여 정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법원, 검사, 수사원, 예심원은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무력, 협박 혹은 기타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1조(범법 사유 및 조건 공개)

수사, 예심,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 수사를 행할 시에 조사, 수사, 법원 등의 기관은 범죄를 조장하는 조건 및 사유를 공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22조(법원, 검사, 수사원, 예심원의 행위 및 판단에 불복할 권리)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절차에 따라 법원, 검사, 수사원, 예심원의 행위 및 판단에 대해 관련 시민, 기관, 기업, 기구 등은 불복할 수 있다.

제23조(판사, 검사, 기타 참석자의 기피) 재판관, 시민 배심원, 검사, 수사원, 예심원, 사법회의 사무원, 감정인 혹은 통역인은 만약 개인적으로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을 시 형사사건 진행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조 소송행위 및 소송결정에 대한 불복제기권(이의신청권)

1. 법원/검사/예심관/수사기관/수사관의 처분(부작위)과 결정은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
2. 모든 수형인(형의 선고를 받은 자)은 본법 제43-45절, 제48절, 제49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급법원에서 판결을 재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피심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에서 가지는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 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서에 직접 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피심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에서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서에 직접 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조문 내용은 그대로 하고, 제169조로 조문번호만 개정하였다.

Ⅱ. 피심자의 권리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심자의 권리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범죄에 대한 의견제기권, 둘째 범죄에 직접 반증 및 조사 해명 요구권, 셋째 소송관계자에 대한 교체 제기권, 넷째 자필 심문조서의 작성권과 예심원 심문조서의 내용의 수정, 삭제, 보충 요구권, 다섯째 자기 권리 침해시 검사에 대한 의견제기권이다.

예심원은 예심원 자신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 줄데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341] 북한 형사소송법 제16조~제18조에 규정된 배제사유[342]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34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5면.

342) **북한 형사소송법 제16조 (리해관계에 따라 형사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자신이나 가족, 친척관계에 있는 자가 피해자, 범죄자이거나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할 수 없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7조 (형사소송임무를 겸할 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 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는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담당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의 다른 소송관계자로

피심자가 자기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되어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259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343] 해석에 따라 처리한다.[344]

Ⅲ. 비교법 연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09조, 제90조)

(2)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3)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4) 구속의 취소청구권(형사소송법 제209조, 제93조)

(5) 변호인 등과의 접견교통권·수진권(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9조, 제91조)

(6)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2항)

(7) 압수·수색·검증에의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등이다.

될 수 없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8조 (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 수 없는 사유) 이 법 제 166조의 요구를 어긴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을 담당할 수 없다.

343) **북한 형사소송법 제259조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예심원, 검사는 이 법 제258조 1항의 의견을 제기 받았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 또는 검찰소장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찰소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 또는 감시를 계속한다.

34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6면.

변호인선임권(헌법 제12조 제4항),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6항),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등은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제도(형사소송법 제198조2)를 둔 것도 피의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

제170조 (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형사책임추궁인정여부와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필요한 질문을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유사규정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

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

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형사책임추궁인정여부와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필요한 질문을 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66조에서 ‘범죄에 대하여’를 ‘형사책임추궁인정여부와 범죄에 대하여’로, 또 ‘질문하여야 한다.’를 ‘질문한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피심자의 선진술, 예심원의 후질문의 순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질문, 후진술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II. 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1. 피심자의 진술

피심자심문에서는 그가 자기의 형사책임추궁인정여부와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여야 한다.

2. 예심원의 질문

피심자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질문은 피심자의 진술에서 의문되는 점, 보충하여야 할 문제, 확인할 문제에 대하여 한다.[345)]

34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6면.

제171조 (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참가)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2명의 립회인을 세울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입회인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2명의 입회인을 세울 수 있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72조는 피심자심문의 립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2명의 입회인을 세울 수 있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71조에서 제목을 변경하였고,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를 추가하여 법문을 개정하였다.

Ⅱ. 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입회인참가

1. 피심자심문에 기록수 참가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

2. 입회인 참가

'필요에 따라'란 피심자의 진술내용이 범죄사건해결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거나 조서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거물, 증거문서를 감추어 놓았다고 진술한 경우 그 장소에 피심자와 같이 가는 것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346)]

입회인을 세우는 경우 북한 형사소송법 제39조(증거물수집과 립회)[347)]를 참조한다.

34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6면.

347) **북한 형사소송법 제39조 (증거물수집과 립회)** 증거물을 찾아내고 고착시킬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172조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심문)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을, 벙어리, 귀머거리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를 붙인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7조(사법 재판 진행 언어)

사법 재판은 러시아어로 진행하지만, 자치공화국, 자치구역, 민족지방의 경우 각각의 언어 혹은 지역 인구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진행된다.

사법재판 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진술, 증언, 재판에서의 발언, 청원 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권리와 현행 형사소

송법상 절차에 의해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현재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국어 혹은 기타 언어로 수사 및 사법관련 문서의 번역본을 전달받는다.

제57조(통역인)

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수사 및 예심기관, 검사, 법원에 승인을 받았거나 통역이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통역인이 된다.

통역인은 소환명령을 받았을 때 참석하고 그에게 주어진 통역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통역인이 고의로 부정확한 통역을 한 경우 러시아 공화국(RSFSR) 형법 제181조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 통역사로 임명된 자는 출석을 피하거나 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10루블에 해당하는 벌금징수 또는 사회적 압력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벌금징수는 본법 제323조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의해 부과된다.

이 조항은 청각장애인의 수화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도록 임명된 사람에게도 준용된다.

제134조(통역인 참여)

본법 제17조, 57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예심원은 심문 및 기타 예심활동에 통역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통역인이 참여하는 예심활동 개시 전, 예심원은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 경고하며, 이는 당해 예심활동기록에 기록되며 통역인의 서명으로 인증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조 형사절차의 언어(言語)

1. 형사사법절차는 러시아어로 또는 러시아연방에 소속된 공화국의 국어로 진행된다. 러시아연방 대법원과 군사법원에서의 형사사건 처리는 러시아어로 진행된다.

2. 형사사건 처리에 사용되는 언어에 능통하지 않거나 충분히 능통하지 못한형사절차 참여자에게는 모국어 또는 그들이 능통한 기타 언어로 신청하고, 해명하고, 진술하고, 청원하고, 상소하고,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법정에 발언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무료로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3. 만약 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처분 서류 및 법원서류가 혐의자, 피의자 및 기타 형사절차 참여자에게 반드시 교부되어야 한다면, 그 서류들은 해당 참여자의 모국어 도는 그 참여자가 능통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59조 통·번역인

1. 통번역인 – 통번역에 필요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자로서, 본법에 규정된 경우에 형사절차에 참여한 자.

2. 통번역인의 임명에 대해서, 수사관/예심관/검사/판사는 결정을, 법원은 결의를 내린다. 통번역인의 소환과 형사절차의 참여 절차는 본법 제169조 및 제263조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 통번역인은 다음의 권한이 있다.

   1) 통역의 정확성을 위해서 형사절차의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2) 자신이 참여한 수사처분 및 공판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조서에 기록되는 번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사관/예심관/검사/법원의 처분(부작위) 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통번역인은,

   1) 악의적인 허위의 통번역을 할 수 없다.

   2) 통번역인 자격으로 형사사건의 진행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득한 예비조사 사항을, 본법 제16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이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면, 이를 누설할 수 없다.

   3) 수사관/예심관/검사/법원의 소환에 따른 출석을 기피할 수 없다.

5. 고의적인 부정확한 번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조사 사항의 누설에 대해서, 번역인은 러시아연방 형법전 제307조 및 제310에 따른 책임을 진다.
6. 본조의 규정은 농아번역을 위해서 형사절차에 참여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69조 통번역인에 대한 기피

1. 기소전 절차에서 통번역인에 대한 기피 결정은 수사관/예심관/검사 또는 본법 제16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내린다. 법원심리 과정에서 통번역인에 대한 기피 결정은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또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법원의 재판장이 행한다.
2. 본법 제6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통번역인에 대한 기피는 원고 및 피고측 당사자들에 의해서 신청될 수 있고, 통번역인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증인/감정인/전문가에 의해서도 그 통번역인에 대한 기피가 신청될 수 있다.

제169조 통역인의 참여

1. 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심관은 본법 제164조 제5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통역인을 수사처분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통역인이 참여하는 수사처분에 착수하기 전에 예심관은 그의 전문성 권한/자격이 있는지 여부)을 확인하고, 본법 제59조에 규정된 권리 및 책임을 통역인에게 설명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2절 사법방해죄

제305조 형사소송 중에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인이 사건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증명, 감정, 기록, 통역을 하고, 타인을 모해하거나 죄증을 은닉하려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72조는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심문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을,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를 붙인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73조는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심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을, 벙어리, 귀머거리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72조에서 '알려주여야 한다.'는 '알려준다.'로, '밝혀야 한다.'는 '밝힌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한편 북한 형사소송법 제7조는 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의 사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조선말로 하도록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자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348)]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180조(통역)에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에서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34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8면.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번역)에서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심문

1.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에는 국가적 자격을 가진 통역인을, 벙어리, 귀머거리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해석인을 붙여야 한다. ① 국가적 자격을 가진 통역인, 번역인이란 해당한 외국어전문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② 전문지식을 가진 해석인이란 사회적으로 공인된 해석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349]

통역인, 해석인에게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통역, 해석할 경우에는 형법 제224조(거짓신고, 진술죄)[350]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351]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통해 피심자에게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352] 이 경우 북한 형사소송법 제24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353] 해석을 참조한다.

---

34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7면.

350) **북한 형법 제224조 (거짓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35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7면.

35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7면.

353) **북한 형사소송법 제24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 예심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에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피심자가 통역 또는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심원은 그에 대하여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검사는 3일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354]

통역인, 해석인이 심문에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히고 조서내용이 옳게 되어있는가를 묻고 그들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자도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통하여 같이 확인하고 지장을 찍어야 한다.[355]

2.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심문

벙어리, 귀머거리가 글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자필로 쓸 수 있다. 이 경우 해석인을 붙이지 않는다. 다른 나라 글을 번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번역인을 붙인다. 번역을 맡기는 절차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173조(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심문)의 해석에 따른다.[356]

사건기록에는 다른 나라 글로 된 원문과 번역문을 붙인다.

번역문 밑에는 예심원으로부터 거짓번역을 하면 형법 제224조(거짓신고, 진술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통고받은 정형과 날짜, 번역인의 직장, 이름을 쓰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357]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는 형사소송을 담당한 자와 소속을 같이하는 일군도 될 수 있다.[358]

35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7면.
35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7면.
35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8면.
35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8면.
35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8면.

3. 북한 형사소송법 제7조 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의 사용원칙

북한 형사소송법 제7조(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의 사용원칙)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조선말로 한다.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조선말로 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취급시작으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피심자, 피소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자들에 대한 심문과 답변은 조선말로 하며 모든 소송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한다는 것을 말한다.[359)]

조선사람이 알 수 있는 말과 글로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것은 사실의 인식과 의사의 전달, 이해 및 증거의 고착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하며 일군들이 그 사건을 판단하고 처리하는데서 잘못이 없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360)]

조선말을 모르는 자에게는 통역을 붙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익숙한 자기 나라 글로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건을 써낼 수 있다. 이점은 그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361)]

35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8면.
36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8면.
36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8면.

제173조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피심자를 심문한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는다.

필요에 따라 피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유사규정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95조 신문조서는 범죄피의자에게 교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읽을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낭독하여 주어야 한다. 기재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는 보충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에 잘못이 없음을 인정한 후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사인원도 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인원도 범죄피의자에게 자필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인원이 범죄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범죄피의자의 범죄행위의 유무를 신문하고, 범죄피의자로 하여금 유죄의 내용과 정상 또는 무죄에 대한 변명과 해명을 진술하게한 후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는 수사인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수사인원이 범죄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범죄피의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정상참작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2013. 1. 1. 본조 개정)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73조는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 피심자를 심문한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는다. 필요에 따라 피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74조는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피심자를 심문한 예심원은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피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73조에서 '피심자를 심문한 예심원은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피심자를 심문한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로 개정하였다. 또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는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는다.'로 개정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따르면 "피의자심문조서는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한다. 첫머리는 심문의 장소, 날짜, 심문한 예심원, 피심자, 피심자를 심문하는 법적 근거로 되는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을 쓴다. 다음부분에서는 피심자의 경력 기타 그의 개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을 쓴다. 그 다음 조서의 본문에서는 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및 그에 대한 피심자의 답변을 쓴다. 조서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조서에 수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조서를 피심자에게 알려주었고 피심자가 자기의 진술이 옳게 씌여졌다고 인정한 사실을 쓴다. 조서에는 피심자와 예심원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통역을 붙였거나 검사가 참가한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심문이 끝나면 예심원은 심문을 통

하여 요해한 피심자의 개성과 사전의 성격 등을 타산하여 그에 알맞은 보전처분을 한다"고 한다.[36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핵심은 피의자진술의 기재, 수사과정의 기록, 작성자의 서명날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다만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기억환기를 위한 자료로 제출되거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363]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1.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방법

피심자심문조서는 심문하였을 때마다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예심원의 질문에 피심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심문조서에 밝혀야 한다.[364]

2.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내용

피심자심문조서에는 심문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심문장소, 소송법

362)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55～156면.
363)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171면.
36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8면.

의 조항,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피심자의 진술내용, 예심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밝혀야 한다.[365]

3. 피심자진술조서의 작성방법과 '필요에 따라'의 의미

피심자심문조서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피심자에게 진술한 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란 피심자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 그의 필적으로 고착시켜놓을 필요가 있을 경우와 본인이 자필로 쓸 것을 원하는 경우이다.[366]

4. 맞대여놓고 심문하는 절차

맞대여놓고 심문한다는 말은 대한민국 형사절차에서는 대질신문(對質訊問)이라고 말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 "같은 사건의 피의자심문은 따로따로 그에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피심자와 피심자, 피심자와 증인을 서로 맞대여놓고 심문할 수 있다. 맞대여놓고 심문하는 것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말하는 피심자와 피심자와 증인 사이에(증인과 증인사이에도 같다)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맞대여놓고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심문할 두 사람을 서로 맞대여놓고 차례로 문제된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말하게 한다. 이때 두 사람에게 어떤 말이 맞지 않는가를 미리 알려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먼저 말하게 할 것인가는 예심원이

36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8면.
36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8면.

결정하며 증인에게는 그의 임무와 책임을 미리 알려준다.

② 두 사람의 말이 끝나면 모순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두 사람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한다. 질문은 맞지 않는 까닭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한다.

③ 두 사람에게 서로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한다.

맞대여놓고 심문을 하면 의식적인 거짓말이 밝혀질 수 있고 말이 맞지 않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 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낼 수 있다. 맞대여놓고 심문한 경우의 조서에는 두 사람의 말이 대조적으로 기록되도록 한다. 다시 말하여 두 사람의 대답을 대조적으로 기록하여 두 사람에게는 각각 자기가 한 말이 옳게 기록되였는가를 확인하게 하고 도장을 찍게 한다. 그밖에 심문 및 조서를 만드는 방법은 피심자심문 및 증인심문에서와 같다.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아직 피심자로 볼만한 조건은 없으나 명백하게 사건과 관련이 있고 그의 말이 사건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다.[367]

36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56면.

제174조 (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예심원은 피심자심문을 끝내면 피심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본다.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힌다.

심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지장을 받는다.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174조는 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피심자심문을 끝내면 피심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본다.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힌다. 심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지장을 받는다.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75조는 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피심자의 심문을 끝내면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사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혀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지장을 받아야 한다.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74조에서 '물어보아야 한다.'는 '물어본다.'로, '밝혀야 한다.'는 '밝힌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

다. <개정 2007.6.1.>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확인절차나, 수정절차가 있다는 것은 유사하나, 피심자의 서명날인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지장을 받는다.

II. 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1. 피심자심문조서의 내용확인절차

예심원은 피심자의 심문이 끝나면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피심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 말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368]

2. 피심자심문조서의 내용수정절차

조서내용을 고쳐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고쳐주어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76조(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369]의 해석을 참조한다.

조서를 고쳐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부당한 경우에는 거부하고 그 이유를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조서에 피심자의 신청내용과 거부이유를 밝

36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9면.

369) **북한 형사소송법 제76조 (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형사소송문건에는 작성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소송행위의 법적 근거와 진행과정, 결과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히고 관계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수정, 보충, 삭제한 곳에는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혀놓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거부하는 다른 수속(거부결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370]

3. 피심자심문조서의 지장절차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심문조서에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71조(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참가)[371] 해석을 참조한다.[372]

37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9면.

371) **북한 형사소송법 제171조 (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참가)**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2명의 립회인을 세울 수 있다.

37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39면.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개 관

체포와 구속처분

제4절은 체포와 구속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체포와 구속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다. 이에 비해 재산담보처분은 재산몰수형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넓게 보면 수색과 압수도 강제처분의 일종이다.

북한에서 강제처분은 모두 검사의 권한 아래 행해진다. 특히 체포와 구속도 검사의 승인만으로 집행되고 법원에 의한 통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영장주의를 배제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구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심단계에서의 구금기간은 최장 5개월까지 가능한데, 그 기간 동안 법관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과 같은 제도가 없다.[373]

북한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계급투쟁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형사소송상의 강제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374] 소송상 강제수단들은 피심자가 예심이나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필요하며, 증거를 발견, 수집 및 고착하기 위하여 필요할

373) 북한은 보석제도란 일종의 재산적 보증의 보전처분을 말하는데 부르조아를 비롯한 착취계급을 위한 제도로서 반인민적인 제도라고 비난한다.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69면.

374)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57면.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으며, 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강제수단들은 다만 피심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것이 범죄자와의 성과적 투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375)]

북한은 2004년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예심의 장(章) 안에 제4절로 체포와 구속처분이라는 제목으로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들을 모아 규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규정태도는 2012년 형사소송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구속처분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면서 체포에 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검사가 발급하는 체포영장 제도 자체가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새로 규정되었다.

체포와 구속처분은 예심단계에서 예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5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체포·구속처분을 한다(제177조).

체포·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범죄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178조).

체포를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제180조).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원도 검사의 승인없이 피심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142조). 현행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수사원이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10일 내에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제143조).

구속처분에는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의 3가지가 있고, 예심원은 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

375) 위와 같은 곳.

183조 ~ 제185조).

구금기간은 수사 단계에서 10일, 예심 단계에서 최장 5개월, 검찰 단계에서 최장 15일, 제1심 재판단계에서 25일, 제2심 재판단계에서 25일이다(제143조, 제186조, 제187조, 제262조, 제281조, 제365조 참조). 이에 비해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장 20일, 제1심 재판단계에서 최장 6개월, 제2심 및 제3심 각 최장 6개월이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92조). 우리의 경우 구속기간이 대부분 법원의 재판 심리에 필요한 기간이고, 보석이나 적부심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차이가 있다.

제175조 (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법)**

제89조(구속조치 적용) 피고인이 수사, 예심 혹은 법원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거나 형사사건에서 진실 성립을 방해하거나, 범죄 활동에 가담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사유가 있고, 판결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원 및 예심원, 검사, 혹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속조치를 피고인에게 적용할 권한이 있다.

보석, 사회단체 보석, 보호구금을 하지 않겠다는 가결된 약속.

검사 제재조치 혹은 법원 결정과 함께 구속조치로 보석이 적용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구속 조치로 그가 속한 군부대의 지휘에 따라 구속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구속조치 적용에 필요한 사유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소환 시 출석할 의무와 주소가 변경될 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주어진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법)**

제91조(혐의자 체포의 근거)

1. 수사기관/수사관/예심관/검사는 다음의 근거중 하나의 해당할 경우, 자유형에 처할 수 있는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발각된 때
   2)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죄를 범한 자로 가리킬 때
   3) 얼굴이나 옷 또는 수중이나 거주지에서 현저한 범죄의 증적이 발견된 때
2.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는 기타 자료가 있을 때에는, 혐의자가 숨으려고 시도하거나(도주우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주거부정), 신원이 명확하지 않거나(신원불명), 혐의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사의 동의를 얻은 예심관/수사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에 (역자註 -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64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원어: 拘傳), 취보후심(取保候審) 또는 주거감시를 할 수 있다.

Ⅰ. 개관

제175조는 체포와 구속처분의 목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체포와 구속은 피심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장하는 목적 아래 행해진다.

본조의 규정내용은 1992년 형소법 이래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조문 내용은 예심원이 피심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원이나 검사가 피심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Ⅱ. 체포와 구속처분의 목적

체포와 구속처분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다.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한다는 것은 피심자가 도주하려 하거나 자살하려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심자가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란 피심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증인들을 위협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그 외 체포, 구속처분은 피심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적용한다.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체포, 구속처분이 필요한 것이다.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지 않거나 사건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구속처분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즉 불구속으로 예심 및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북한 참고서도 도주, 자살기도가 없고 사건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구태여 체포, 구속처분의 강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376)]

그렇지만 현실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수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수사 및 예심을 받아본 사람 중 신병이 구속된 경우가 무려 98%에 이른다고 한다.[377]

체포나 구속처분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사건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근거가 없이 체포 또는 구속처분한 경우 비법체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378]

37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40면.

377)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2014, 155면.

378) **북한 형법 제241조 (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6조 (비법적인 체포, 구속처분의 금지)

법에 규정되여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 구속할수 없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여 있는 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를 놓아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Ⅰ. 개관

본조는 법에 위반한 체포, 구속처분의 금지와 이를 발견한 검사의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조문이다. 2004년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제도를 밝히고 강압에 의한 진술 외 유도에 의한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항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본조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위법한 체포와 구속은 당연히 금지되고, 이를 제어하는 장치로 구속적부심 제도를 두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인신구속의 통제는 규정하지 않고 검사의 감시권한에 기초하여 위법한 체포·구속을 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Ⅱ. 비법적인 체포, 구속처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체포·구속이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체

포·구속은 위법한 것이 된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제14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수사원은 현행범 등 제142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긴급체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제178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체포나 구속은 유기 로동교화형 이상을 줄 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체포, 구속하면 위법한 것이 된다.

(3) 제17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그 전에도 수사원이나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속처분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체포, 구속한 경우를 말한다.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란 제143조의 구금결정서 작성, 제180조의 체포영장 발급, 제181조의 영장제시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Ⅲ. 검사의 조치

검사는 수사, 예심 및 재판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다(제14조). 이러한 감시과정에서 위법하게 체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검사는 즉시 그 사람을 석방해야 한다.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된 대상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 이 법 제142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이 법 제143조(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전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이 법 제178조(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이 법 제180조(체포령장 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제185조(구속처분결정의 승인)에 규정한 절차를 어기고 구속한 경우

○ 이 법 제143조(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후단, 제177조 제2항(체포, 구속처분의 시기)의 후단, 제187조(구류기간의 연장), 제262조(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제281조(제1심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에 어긋나게 피심자, 피소자를 구금, 구류시킨 경우

○ 형사사건기각결정, 판결, 사회적교양처분 결정, 판결,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구속되어 있을 경우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어있는 자를 내놓으려 할 경우 비법구속하고 있는 기관에 그 자를 내놓을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석방지시서에는 날짜, 검사의 직장, 이름, 소송법조항, 체포구속하고 있는 기관, 지시내용과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하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제177조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90조(피의자에 대한 구속조치 적용) 예외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구속조치가 기소 전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소는 구속 조치 적용으로부터 10일 내로 이루어진다. 이 기간 동안 기소가 되지 않으면 구속 조치는 취소된다.

Ⅰ. 개관

제177조는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원칙적으로 체포와 구속처분은 예심원이 피심자에 대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 및 예심 과정을 통해 피심자가 해당 범죄를 범한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 다음에 비로소 체포, 구속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2항은 예외적으로 수사원, 예심원이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체

포, 구속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규정된 부분이다.

우리 법의 경우 체포, 구속 시기에 관한 제한이 없다. 경찰, 검찰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체포와 구속을 할 수 있다. 러시아 및 중국 형사소송법에도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매우 이례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II.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심원이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제177조 제1항). 이 경우 제180조 ~ 제185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형사책임추궁결정은 수사원의 수사 및 예심원의 예심 과정을 통해 예심원이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에 한다(제157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뒤에 비로소 본격적인 피심자심문이 가능하고, 피심자에게 변호인 선정권리도 통보하게 된다. 피심자의 변호인선정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게 된다(제62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체포,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제177조 제2항).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아직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의 근거로 되는 자료는 수집하지 못하였으나 범죄자로 지목되는 자가 예심과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다.[379]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가 자살 또

는 도망치려 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형사책임추궁결정 전에 체포, 구속하려는 경우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혐의자, 범죄자를 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한다.

예심원이 제2항에 따라 형사책임추궁결정 전에 체포, 구속한 뒤 신속하게 예심을 진행하여 10일 안에 형사책임추궁결정하는 경우는 쉽게 상정되나, 수사원이 체포, 구속한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예심원이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서 본조와 제143조의 모순 충돌 문제가 제기된다. 즉, 제143조는 수사원이 제142조에 의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구금하였을 경우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안에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심에 넘기면 되는 것이다. 형사책임추궁결정은 예심시작 결정 후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피심자를 확정하였을 때 비로소 하는 것(제157조)이므로, 단순히 "체포일로부터 10일 안에 예심에 넘기는 것(제143조)"과 "체포일로부터 10일 안에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는 것(제177조 제2항)"은 확실히 다른 것이다.

본조 제2항의 구류구속처분의 해제는 구류구속처분취소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구류구속처분취소결정서는 제143조의 구금취소결정서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만든다.[380)]

37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67면.
38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42면.

제178조 (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체포,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91조(구속조치 선별 시 고려되는 정황) 구속조치 필요여부 및 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 시 조사,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 검사 혹은 법원은 본법 제89조에 명시된 정황뿐만 아니라 기소의 경중,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성격 및 직업 활동, 연령, 건강상태, 가족상황,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97조(강제처분 채택의 근거)

1. 수사관/예심관/검사/법원은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본법에 규정된 강제처분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수사, 예심 또는 법원을 피해 숨으려고 할 때(도주우려)

   2)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을 때

   3) 증인 기타 형사절차의 참여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형사사건의 처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강제조치는 판결의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도 채택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79조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고, 유기징역 이상의 판결이 가능한 범죄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취보후심의 채택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체포하여야 한다.

(1) 새로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경우

(2) 국가안전·공공안전·사회질서를 위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증거를 인멸·위조하여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통모하여 거짓진술을 할 수 있는 경우

(4) 피해자·고발인·고소인에게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5) 자살 또는 도주할 수 있는 경우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고 10년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거나, 또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고 징역 이상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범죄를 범한 적이 있거나 신분이 불명한 경우에는 체포하여야 한다. 취보후심·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취보후심·주거감시 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황이 엄중한 때에는 체포할 수 있다.

제80조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범죄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정황이 있으면 우선 구류할 수 있다.

(1) 현재 범죄를 예비·실행 중에 있거나 또는 범죄 직후 발각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현장 목격자가 그 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

(3) 신변 또는 주거에서 범죄증거가 발견된 경우

(4) 범죄 후 자살, 도주를 기도하거나 도주 중인 경우

(5)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통모하여 거짓 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진실한 성명이나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7) 떠돌아다니면서 죄를 범하거나, 수차에 걸쳐 죄를 범하거나, 무리를 지어 죄를 범한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Ⅰ. 개관

제178조는 체포, 구속의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75조의 체포, 구속처분의 목적과 유사한 규정이다.

구속처분 중 구류구속처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자택구속처분이나 지역구속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택구속처분이나 지역구속처분도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 또는 구속의 사유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서 많은 입법례에서 유사한 규정들을 볼 수 있다.

II. 체포, 구속의 사유

체포와 구속은 원칙적으로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범죄혐의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할 수 있다(제1항).

유기로동교화형이나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자인 경우 유죄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도 신병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런 중죄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도 50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한다는 것은 피심자가 도주하거나 자살하려고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건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은 증거를 없애거나 련루자들과 짜고들거나 증인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피심자가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경우도 체포, 구류의 사유로 된다.

로동단련형 범죄의 경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속할 수 있다(제2항).

여기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가 도주, 자살하려 하거나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381] 결국 제1항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

38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43면.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제3항). 임신한 여성에 대한 특별 배려규정으로서 종전부터 있어 온 내용이다. 체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임신한 여성도 체포의 대상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79조 (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 (1972년 개정)**

제122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구류)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할 때만 자유를 박탈하는 형식의 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구류할 권리를 가진다.

(1) 그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거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직후

(2) 피해자를 포함한 목격자가 직접 그를 범죄를 저지른 자로 지목할 경우

(3) 피의자 및 그의 의복 또는 거주지 등에서 명백한 범죄 흔적 적발 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보여주는 기타 자료가 있다면, 그가 도주를 시도하려 할 때, 영구적인 거주지 부재 시, 신원이 확실치 않을 시 구류된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구류할 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의무를 가지며 24시간 내에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검사는 구류에 대한 공지를 받은 지 48시간 내에 보호 감금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구류된 자를 석방할 의무를 가진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79조 및 제80조 (제178조 주석 부분 참조)

제82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즉시 붙잡아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현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범죄 후 즉시 발각된 경우

(2) 지명수배 중인 경우

(3) 탈옥하여 도주한 경우

(4) 현재 추적을 받고 있는 경우

Ⅰ. 개관

제179조는 체포의 담당자를 규정하고 있다. 수사원과 예심원이 체포를 담당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체포영장 등 체포 제도가 정비되면서 새로 신설된 규정이다.

Ⅱ. 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또는 예심원이 한다(제1항).

제175조의 체포, 구속처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예심원이 체포하는 것은 당연하나, 수사원도 체포의 담당자로 규정된 점은 다소 의문이다. 수사원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수 없고,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제133조).

수사원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제142조의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긴급체포에 해당)에 국한된다고 본다. 수사원은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예심에 넘겨야 한다(제143조).

체포영장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제2항).

2004년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급하고, 이 체포영장이 없이는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2012년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법기관 일군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이 없이는 함부로 피심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제180조 (체포령장 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 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 (1972년 개정)**

제92조(구속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명령 및 판결) 수사원 및 예심원, 검사는 구속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구속조치를 선택한 이유, 대상자가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범죄를 명시한 명령이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명령 혹은 판결은 그 조치가 적용되는 사람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92조(혐의자 체포의 절차)

1. 혐의자를 수사기관/예심관/검사에게 유치한 이후 3시간 이내에 체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조서에는 본법 제46조에 규정된 권리를 혐의자에게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조서에는 조서의 작성 일자와 시간, 혐의자를 체포한 날짜·시간·장소·근거 및 이유, 혐의자의 신체를 수색 결과 그리고 체포의 상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조서는 작성자 및 혐의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3. 혐의자 체포에 대해서 수사기관/수사관/예심관은 체포한 순간부터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본법 제46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 규정에 의거 혐의자를 신문(訊問)하여야 한다. 신문 개시전 혐의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변호인과의 접견이 보장된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단독으로(제3자의 입회없이) 비밀이 보장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혐의자가 참여하는 소송행위를 수행할 필요가 경우에는 2시간을 초과하는 접견은 수사관, 예심관, 검사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혐의자와 변호인에게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없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80조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범죄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정황

이 있으면 우선 구류할 수 있다.

(1) 현재 범죄를 예비·실행 중에 있거나 또는 범죄 직후 발각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현장 목격자가 그 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

(3) 신변 또는 주거에서 범죄증거가 발견된 경우

(4) 범죄 후 자살, 도주를 기도하거나 도주 중인 경우

(5)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통모하여 거짓 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진실한 성명이나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7) 떠돌아다니면서 죄를 범하거나, 수차에 걸쳐 죄를 범하거나, 무리를 지어 죄를 범한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Ⅰ. 개관

제180조는 체포영장의 발급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으로 체포영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심원이 신청하고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처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의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수사기관, 예심원은 체포한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피의자를 구류할 수 있고, 24시간 내에 신문한 후 계속

구금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 체포비준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중국 형사소송법 제80조, 제84조, 제85조).

Ⅱ. 체포영장의 발급신청

피심자를 체포하려는 예심원은 검사에게 체포영장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체포의 원칙적인 주체는 예심원이고, 그 시기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이다(제177조). 따라서 수사원은 체포영장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오로지 제142조에 규정된 긴급체포만 가능하다.

체포영장 발급신청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형법조항, 체포 이유, 형사소송법의 조항, 신청내용, 단위책임자(중앙기관의 경우 부서책임자)의 비준을 밝히고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382)]

Ⅲ. 체포영장의 발급

예심원의 체포영장 발급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보고 근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승인한다(제2항).

체포영장에는 피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장직위, 사는 곳, 날짜를 밝히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383)]

---

38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44면.
38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44면.

만일 체포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검사는 체포영장 발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체포사유(제177조 2항, 제178조)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포령장발급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순히 발급신청서에 기각 사유를 적고 서명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취소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384)]

체포령장발급취소결정은 체포령장발급취소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체포령장발급취소결정서에는 결정날짜, 검사의 직장과 이름, 범죄사건과 범죄자,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형법조항, 체포령장 발급을 신청한 일군의 직장, 이름, 신청사유와 취소결정내용, 소송법조항을 밝히고 검찰소의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체포령장발급신청서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같이 접수한 검사가 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령장발급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체포하려하는 경우(이 법 제142조의 사유에 의한 체포는 제외)에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승인은 체포령장발급신청서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를 접수한 검사가 받는다.

384) 취소라는 것은 본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뒤 이것을 사후적으로 무효화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인데, 예심원의 체포영장발급신청이 있을 뿐 아직 체포영장이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미 발급된 체포영장을 취소하는 것처럼 체포영장발급취소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다.

제181조 (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구금된 범죄자를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며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95조(혐의자를 구속하는 절차)

1. 혐의자를 구속하는 절차와 조건은 연방법률로서 정한다.
2. 공작수사 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수사관/예심관/검사 또는 법원의 서면허가로 공작수사활동을 수행하는 요원의 혐의자와의 접견이 허용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91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하는 때에는 반드시 체포영장(원어: 逮捕證)을 제시하여야 한다. 체포 후, 즉시 체포한 자를 간수소에 보내어 구금하여야 한다.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피체포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각자 결정하여 체포한 자에 대하여, 그리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체포한 자에 대하여 모두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신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체포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3조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석방 또는 강제조치변경을 건의하여야 한다.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Ⅰ. 개관

제181조는 체포와 구류 구속처분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아직 구금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는 절차를, 제2항은 이미 구금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는 절차를 각 규정하고 있다.

체포제도 자체가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이므로 1992년 형사소송법에는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중국의 경우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신문을 하여 체포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중국 형사소송법 제92조).

II. 구금되지 않은 피심자의 구속 절차

구금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 할 경우 예심원은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제1항).

수사와 예심을 거쳐 피심자를 확정하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경우 범죄자와 범죄의 내용이 밝혀진 상황이다. 이에 체포 및 구류구속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심원은 검사에게 체포영장 발급을 신청하고 검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피심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에 이어 계속하여 구금하려고 하는 경우 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4조, 제185조).

피심자를 체포할 때 예심원은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에 의한 정당한 체포라는 것을 피심자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으나 당연한 절차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탈북자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예심원이 피심자를 체포할 당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체포영장을 제시하였다는 응답이 16.2%, 제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3.8%에 이르러[385] 실제 체포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한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 등본을 넘겨주어야 한다.

체포령장과 구류구속처분결정서는 사건기록에 붙인다.

385)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2014, 161면.

피심자를 체포, 구류한 경우 체포령장과 구류구속처분결정서에는 체포, 구류 이유를 밝히고 피심자의 지장을 찍어야 한다.

Ⅲ. 구금된 피심자의 구속절차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를 통해 이미 구금되어 있는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넘겨주어야 한다(제2항).

구류구속처분결정서는 2통 작성하여 1통은 사건기록에 붙인다.

피심자를 구류한 경우 구류구속처분결정서에는 피심자를 구류한 날짜를 밝히고 피심자의 지장을 찍어야 한다.

※ 대기실에 억류되었던 피혐의자, 범죄자를 구류시키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금되지 않은 피심자에 대한 체포, 구류구속처분 절차에 따른다.

제182조 (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96조(혐의자 체포의 통지)

1. 수사관/예심관/검사는 혐의자를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혐의자의 근친에게, 근친이 없을 때는 기타 친척에게 통지한다. 또는 혐의자 본인에게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체포된 혐의자가 군인인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지휘부에 통보한다.
3. 혐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통보한다.
4. 예비조사의 목적상 체포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의 승인을 얻어서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91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하는 때에는 반드시 체포영장(원어: 逮捕證)을 제시하여야 한다. 체포 후, 즉시 체포한 자를 간수소에 보내어 구금하여야 한다.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피체포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Ⅰ. 개관

제182조는 체포, 구속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다.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범죄혐의자를 체포한 후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 러시아의 경우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2시간 이내에(러시아 형사소송법 제96조 제1항), 중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중국 형사소송법 제91조) 피체포자의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통지시한 48시간은 다른 입법례에 비해 다소 긴 시간이고, 게다가 피체포자의 가족이 아닌 소속단체에 통지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문이다.

II. 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나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고, 48시간 내에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게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알려준다.

구속처분결정이므로 반드시 구류구속처분만이 아니라 자택구속처분이나 지역구속처분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알려주는 방법에 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 통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본다.

소속단체란 체포된 자가 속해있는 정치조직이나 행정조직을 의미한다. 가족 외 이러한 소속단체에까지 체포, 구속 사유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다소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북한과 같은 단체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재판단계에서도 피소자의 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발언하도록 하기도 한다(제323조, 제324조).

체포, 구속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란 체포, 구속된 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범죄사건의 특성으로 보아 일정한 기간 알려주면 안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은 수사원, 예심원의 주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제기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인정을 의미한다.[386)]

38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46면.

제183조 (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류구속처분

2. 자택구속처분

3. 지역구속처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97조(강제처분 채택의 근거)

1. 수사관/예심관/검사/법원은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본법에 규정된 강제처분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수사, 예심 또는 법원을 피해 숨으려고 할 때(도주우려)

   2)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을 때

   3) 증인 기타 형사절차의 참여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형사사건의 처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강제조치는 판결의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도 채택될 수 있다.

제98조(강제처분의 종류)

강제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외출금지 서약서

2) 사인 보증

3) 군부대 지휘부의 감독

4) 미성년 피의자의 보호감독 5) 보증금 6) 가택구금 7) 구속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64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원어: 拘傳), 취보후심(取保候審) 또는 주거감시를 할 수 있다.

Ⅰ. 개관

제183조는 구속처분의 종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이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하는 구속처분의 종류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위 3가지 구속처분 외 보증인을 세우는 보전처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1976년 형사소송법 제81조).[387] 그러다가 199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자택구속처분의 요건으로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388]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나, 그 전부터 자택구속처분과 지역구속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주의적 규정을 신설한 것에 불과하다.

38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59면.
388)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1993, 226면.

우리 법에는 없는 제도로서 북한에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제12절의 혐의자 체포 외 제13절에서 모두 7가지 유형의 강제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강제처분에는 (1)외출금지 서약서, (2)사인 보증, (3)군부대 지휘부의 감독, (4)미성년 피의자의 보호감독, (5)보증금, (6)가택구금, (7)구속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북한의 구속처분 규정들은 이런 러시아 규정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구속 외 취보후심, 주거감시가 강제처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Ⅱ. 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에는 모두 3가지의 종류가 있다. 피심자를 구류장에 가두어두는 구류구속처분, 피심자를 자기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택구속처분, 피심자를 정한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역구속처분이 그것이다.

지역구속처분의 경우 제한을 가하는 지역은 리(읍, 구, 동)를 넘을 수 없으며, 사는 곳은 피심자가 살고 있는 인민반(농촌지역은 작업반)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심자인 경우 정한 지역은 병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389)]

38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14, 147면.

제184조 (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든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01조(강제처분 채택의 결정 및 결의)

1. 수사관/예심관/검사 또는 판사는 강제조치의 채택에 관한 결정을, 법원은 결의를 내린다. 이러한 결정 및 결의에는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와 그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채택한 근거를 명시한다.
2. 결정 및 결의의 사본은 피의자(혐의자)에게 교부된다.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는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교부된다.
3. 동시에 강제처분이 적용된 자에게 본법 제123-127조에 규정된 강제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85조 공안기관이 범죄피의자의 체포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포비준제청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에 송부하고, 비준심사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공안기관의 중대사건에 관한 토론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Ⅰ. 개관

제184조는 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도 있던 내용인데,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그 주체가 예심원으로 구체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공안기관이 피의자를 구류한 뒤 정식 체포하고자 하는 경우 체포비준제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원에 송부하여 검찰로부터 비준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중국 형사소송법 제85조).

Ⅱ. 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구속처분결정서는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이 작성한다. 즉, 검사가 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심원이 작성하고 검사는

이를 승인할 뿐이다.

한편, 구속처분은 원래 예심원이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후 구속의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제177조, 제175조)이므로, 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주체도 예심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원도 제142조에 의한 긴급체포 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금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제143조), 그 한도에서 수사원도 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구속처분결정서에는 구속처분결정의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형법조항, 구속처분의 이유, 형사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중앙기관에서는 부서책임자)의 비준정형을 밝혀야 하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390)]

39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14, 148면.

제185조 (구속처분결정의 승인)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게 하거나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고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08조(구속)

1. 강제처분으로서의 구속은, 형법상 법정형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다 경미한 다른 강제처분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이 강제처분은 법정형 2년 미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택될 수 있다.

   1) 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러시아연방 영토내에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혐의자 또는 피의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신원불상)

   3) 이전에 채택된 강제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4) 예비조사 기관이나 법원을 피해 숨은 때(도주)

2. 미성년 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중죄 또는 매우 중한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강제처분으로서 구속을 적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 강제처분은 약간 중한 죄를 범한 미성년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채택될 수 있다.

3. 강제처분으로서 구속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사는, 그리고 검사를 동의를 얻어 예심관/수사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를 제기하는 결정서에는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고 또한 다른 강제처분을 채택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가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서에는 그 청구가 근거있음(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만약 청구가 본법 제91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포된 혐의자에 대해서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결정서과 그 첨부 자료를 늦어도 체포기간 만료 8시간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강제처분으로서 구속의 채택을 청구하기로 제기하는 결정은(역자 註 - 구속영장 청구결정은), 예비조사를 수행한 지역 또는 혐의자를 체포한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군사법원의 단독판사가 혐의

자 또는 피의자, 검사, 그리고 형사사건에 참여한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 등의 참여하에, 사건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심리한다. 본법 제91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포된 혐의자는 공판정으로 출정시킨다. 이 공판정에는 미성년 혐의자/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예심관/수사관도 참여할 수 있다. 사전에 통지된 공판개정 시간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청구의 심사가 방해받지 아니한다. 단, 피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역자 주 - 피의자의 출석은 필수조건).

5.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의 구속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가 국제적으로 공개 수배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6. 심리에 앞서 판사는 어떠한 청구가 심리될 것인지를 고지하고, 재정한 참여인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한다. 이어서 (구속영장의) 청구를 제기한 검사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청구의 근거를 설명하고, 그 이후에 재정한 다른 참여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7. 청구를 심리한 후 판사는 다음의 결정 중 하나를 선고한다.

   1)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처분으로 구속을 채택하는 결정

   2)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체포기간을 연장하는 결정. 체포기간의 연장은 법원에 의해서 그 체포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하에서 허용되는데, 강제처분으로 구속을 채택하는 것이 정당한지 또는 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증거를 제출할 목적으로 제기된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다. 체포기간 연장에 관한 결정서에는 체포가 연장되는 날짜와 시간이 명기된다.

8. 판사의 결정은 청구를 제기한 자, 검사,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게 송부되고 지체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9.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이 있은 후에 동일한 피의자(혐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형사사건으로 재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구속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0. 피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구속의 채택여부에 관한 문제가 법원에서 발생된 경우에, 이에 대한 결심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자체적인 발의로 법원에서 행하고, 이에 대해서는 결의 또는 결정을 선고한다.
11. 강제처분으로 구속을 채택 또는 기각하는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소심 절차에 따라 상급법원에 불복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심 법원은 불복항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3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12. 당해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혐의자/피의자의 근친, 근친이 없으면 그외 친족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군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군부대의 지휘부에 구속 장소 또는 구속 장소의 변경에 대해서 지체없이 통지한다.
13. 본조에 규정된 권한을 동일한 판사에게(특정한 판사에게만) 상시적으로 (변함없이)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이 (구속영장 심사의) 권한은 형사사건의 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판사들 간에 (적정히) 분담되어야 한다.
14. 구속 수용중인 피의자에게도 본법 제9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88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체포비준을 제청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 후에 상황에 따라 체포비준 또는 체포불비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포비준 결정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즉시 집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집행상황을 인민검찰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불비준에 대하여는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보충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공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사비준 할 때에는 범죄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1) 체포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범죄피의자가 검찰인원에게 면전에서 진술하기를 요구한 경우

(3) 수사활동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사비준할 경우, 증인 등 소송참여인을 신문할 수 있고, 변호사인 변호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변호사인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변호사인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Ⅰ. 개관

제185조는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검사는 그 과정에서 예심원에게 구속관련 지시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은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고치는 것에 관해서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2012년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하는 경우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고(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검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하는 경우 간단하게 영장청구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데, 통상으로는 모두 서면으로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경우 예심관/수사관은 검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러시아 형사소송법 제108조 제3항). 그 과정에서 검사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공안기관이 검찰에 체포비준승인신청을 하면 검찰원에서

심사하여 체포비준 또는 체포불비준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검찰은 범죄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반드시 신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중국 형사소송법 제88조, 제86조).

II. 구속처분결정의 승인

1. 승인의 주체

예심원의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본조 제1항). 검사의 승인만 있으면 되고 판사의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2. 승인 및 거부의 방법

검사는 예심원으로부터 구속처분결정서를 넘겨받은 뒤 이를 검토하여 그 근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검사의 승인은 구속처분결정서에 검찰소의 공인, 명판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만일 검사의 검토 결과 제177조, 제178조, 제188조, 제189조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 검사가 구속처분결정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취소결정을 해야 하는데, 구속처분취소결정은 구속처분취소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391)]

구속처분취소결정서에는 결정날짜, 검사의 직장과 이름,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형법조항, 구속처분결정을 한 일군의 직장, 이름, 구속처분결정의 사유와 취소결정내용, 형사소송법 조항을 밝히고 검찰소의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39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14, 148면.

3. 검사의 지시

검사는 예심원이 체포령장발급신청 또는 구속처분결정을 하게 하거나 이미 처리한 구속처분을 취소하거나 고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본조 제2항).

검사는 감시과정에 예심원이 구속처분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대상에 대하여 구속처분을 한 것을 알았을 경우와 구속처분의 종류를 바꾸어야 할 사정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구속처분을 하게 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함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구속처분, 구속처분취소, 구속처분변경지시서에는 날짜, 검사의 직장이름,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의 이름, 형법 조항, 지시근거와 내용, 형사소송법 조항을 밝혀야 하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392)]

39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14, 149면.

제186조 (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검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0일,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09조(구속기간)

1. 범죄조사에 있어서 구속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2개월 안에 예심을 종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강제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본법 제108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군사법원의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이 기간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 이상 기간의 연장은 중죄 또는 매우 중한 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하여서만 가능한데, 형사사건이 아주 복잡하고 이 강제처분(구속)를 채택할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러시아

연방주체의 검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군검찰의 동의를 받은 예심관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12개월을 초과한 구속기간은, 매우 중한 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러시아연방 검찰총장 또는 차장의 동의를 받은 예심관의 청구에 의하여 본법 제3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각 연방주체의 최고법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군사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그 이상의 구속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속 수감중인 피의자는 본조 제8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5. 형사사건의 예비조사가 종결된 기록은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구속수감중인 피의자 및 그 변호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6. 만약 예심이 종결된 이후 형사사건의 기록이 최대 구속기간의 만료 전 30일을 지나서야 구속수감중인 피의자 및 그 변호인에게 (열람토록) 제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는 (즉, 구속기간 만료전 30일이 경과되는) 즉시 피의자는 석방된다. 이 경우에도 (즉, 석방된 이후에도) 피의자 및 그의 변호인은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을 보유한다.

7. 예심이 종결된 이후 피의자 및 그의 변호인에게 본조 제5항에 규정된 열람을 위한 사건기록 제시 기간은 준수되었으나, 사건기록을 전부 열람하는데 30일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심관은 러시아 연방주체 소속 검사의 동의를 얻어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7일 이전에 본법 제3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군사법원에 이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형사절차에 여러 명의 구속수감된 피의자가 참여하고 있고 그중 1인이라도 사건기록을 열람하는데 30일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피의자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지 않았고 또한 구속 이외의 다른 강제조치를 채택할 근거가 없다면, 예심관은 해당하는 피의자 1인 또는 수인(數人)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8.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는 늦어도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법원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5일이 경과되기 전에 본법 제108조 제4항, 제8항, 제1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중 하나를 결정한다.

   1) 피의자 및 그의 변호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종료한 후, 검사가 사건을 법원으로 송부할 때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정. 단, 본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심관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

9. 예심(수사) 과정의 구속기간은 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검사가 사건을 법원으로 송부하기까지의 기간을 합산한다.

10. 구속기간에는 다음의 시간도 산입한다.

   1) 혐의자로서 체포된 시간

   2) 가택구금된 시간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유치된 시간

   4) 본법 제460조에 의거한 국제형사공조 또는 범죄인을 러시아로 인도요청에 따라 외국에서 구속 수감된 기간

11. 본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예비조사가 더 필요할 때에 법원은 본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동일한 형사사건으로 또는 기존 사건에 합쳐진 사건이나 기존 사건에서 분리된 사건으로 혐의자 또는 피의자를 재차 구속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이전에 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구속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3.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청구에 대한 법원 심사는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의 정신심리 상태를 법의학적으로 감정 중에 있거나 기타 피의자의 출석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이러한 사정은 상응하는 문서로서 증명되어야 함)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의 변호인이 법원심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14. 본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의 출석이 불가능한 이유를 적시하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심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96조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된 사건에 대하여 본 법에 규정된 수사구금·기소심사·1심·2심의 기간 내에 종결할 수 없는 때에는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계속하여 증거조사,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취보후심 또는 주거감시를 할 수 있다.

Ⅰ. 개관

본조는 예심원의 구속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경우와 로동단련형 사건을 구분하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또 검사나 재판소가 반송한 사건의 구류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간의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각국의 입법례가 공통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각 10일이고(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러시아의 경우 2개월이 원칙이다(러시아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매우 단기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 형사소송법은 매우 장기의 구속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 원칙적인 구류 기간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본조 제1항).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본조 제2항).

III. 반송된 사건의 구류 기간

일정한 경우 검사나 재판소는 사건을 예심원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이를 반송이라고 한다.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제267조). 재판소의 경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재판심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긴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하고(제292조), 재판심리 결과 판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에서 범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경우 재판소의 판정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제350조).

이렇게 검사 또는 재판소에서 사건을 반송한 경우 그것이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이라면 20일,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이라면 7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피심자를 구류하면서 예심을 진행할 수 있다(본조 제3항).

반송받은 경우의 구류기일은 예심원이 검사로부터 범죄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계산한다.

재판소로부터 반송된 범죄사건을 맡은 검사는 항의조건이 없는 한 48시간 안으로 예심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87조 (구류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0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최고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여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최고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2개월 늘일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5일간 늘일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09조(구속기간) (제186조 주석부분 참조)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96조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된 사건에 대하여 본 법에 규정된 수사구

금·기소심사·1심·2심의 기간 내에 종결할 수 없는 때에는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계속하여 증거조사,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취보후심 또는 주거감시를 할 수 있다.

Ⅰ. 개관

제187조는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당초 1992년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상급 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최고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 더 늘일 수 있도록 하여 최장 5개월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1992년 형사소송법 제108조).

그러다가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 연장하는 경우 1개월씩 2번 합계 4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2004년 형사소송법 제188조).

이번 2012년 형사소송법은 다시 1992년 형사소송법과 같은 체제로 돌아가 예심원이 최장 5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즉, 경찰의 구속기간은 연장이 허용되지 않고, 검찰의 구속기간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5조).

러시아의 경우 범죄조사를 위한 구속기간은 단계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엄격한 요건 하에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러시아 형사소송법 제109조).

중국의 경우 법정 구속기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지만 계속하여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보후심 또는 주거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중국 형사소송법 제96조).

II. 구류기간의 연장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2개월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구류기간을 늘일 수 있다.

시(구역), 군급기관 예심원과 도(직할시)급기관 예심원은 도(직할시)급 검찰소장의 승인을, 중앙기관 예심원은 최고검찰소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

특별히 복잡한 사건이어서 구류기간을 다시 더 늘이려 할 경우에는 시(구역), 군급, 도(직할시)급, 중앙기관 예심원은 최고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2개월 늘일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10일안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검찰소 검사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5일간[393]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늘이는 경우에는 구류기간연장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류기간연장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형법조항, 구류기간 연장 이유, 형사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의 비준정형을 밝히고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393) 2004년 형사소송법은 로동단련형 사건의 경우 구류기간을 1개월 더 늘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2004년 형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이번에 5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연장기간이 대폭 축소되었다.

검사의 승인은 검찰소의 공인, 명판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심자를 구류한 날부터 계산한다.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 범죄자를 구금한 기간은 형기계산에만 포함시켜야 한다.

예심시작결정을 한 현행범에 대하여 당안전위원회에서 취급결정하는 기간은 구류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394)]

39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14, 151면.

제188조 (자택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같은 사정으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는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2명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는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7.31>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07조(가택구금)

1. 가택구속은 혐의자 또는 피의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금지하는 데에 있다.
   1) 일정한 자와 교제를 금하는 것
   2) 서신의 수령과 발송을 금하는 것
   3) 일체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교신을 금하는 것
2. 강제처분으로서 가택구금은 본법 제108조에 규정된 근거 와 절차에 의거하여 혐의자 및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적용한다.
3. 강제처분으로서 가택구금을 채택하는 법원의 결정 또는 결의에는 혐의

자 또는 피의자에게 적용될 구체적인 제한내용과 이러한 제한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기관이나 공무원를 명기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7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체포요건에 부합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주거감시를 할 수 있다.

(1) 중대한 질병이 있거나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2) 임신 또는 현재 자신의 영아에게 수유중인 부녀

(3)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유일한 부양자인 경우

(4) 사건의 특수상황 또는 사건 처리의 필요로 인하여 주거감시조치가 더 적절한 경우

(5) 구금 기간이 끝나도록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감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보후심 요건에 부합하지만 범죄피의자·피고인이 보증인을 세울 수 없고 보증금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감시를 할 수 있다.

주거감시는 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

제73조 주거감시는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는 지정된 거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국가안전위해죄·테러범죄·중대뇌물죄의 혐의자에 대해서 주거에서 집행하 것이 수사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위급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비준을 얻어서 지정한 거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구치장소나 사건처리 전용 장소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소를 지정하여 주거감시를 하는 경우,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감시 집행 후 24시간 이내에 주거감시를 받는 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에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민검찰원은 거소를 지정한 주거감시의 결정과 집행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한다.

제74조 거소를 지정하여 주거감시를 하는 기간은 형기에 환산하여야 한다. 관

제에 처해진 경우, 주거감시 1일은 형기 1일로 환산한다. 구역·유기징역에 처해진 경우, 주거감시 2일은 형기 1일로 환산한다.

제75조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 피고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주거감시 받는 장소로부터 이탈 금지

(2)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타인과의 접견·통신 금지

(3) 신문을 위하여 소환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두

(4) 어떠한 형식으로도 증인의 증언 방해 금지

(5)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통모하여 진술을 날조하는 것 금지

(6) 여권 등 출입경증서나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보존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전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 체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의자·피고인을 우선 구류할 수 있다.

제76조 집행기관은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감시통제(원어: 電子監控), 부정기적 검사 등의 감시방법으로 주거감시규정 준수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수사기간 중에는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의 통신에 대하여 감시통제할 수 있다.

Ⅰ. 개관

본조는 자택구속처분의 요건 및 절차,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 이래 그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택구속처분으로 볼 만한 강제처분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미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 주거를 제한할 수 있고(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보석허가결정을 할 경우, 보석의 조건 중 하나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데(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8조 제3호), 이러한 경우 자택구속처분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가택구금을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러시아 형사소송법 제107조), 중국의 경우 주거감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중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5조). 중국에서 거소를 지정하여 주거감시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형기에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중국 형사소송법 제74조).

II. 자택구속처분의 요건 및 절차, 내용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구류장에 가두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자택구속처분도 구속처분의 일종이므로 예심원이 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예심원이나 재판소가 요구하면 제때에 법기관에 와야하고 그의 승인없이 집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그를 어길 때에는 자택구속처분을 구류구속처분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 정형과 자택구속처분한 날짜를 해당한 결정서에 밝히고 피심자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예심원은 피심자를 자택구속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각각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보증서에는 예심원의 승인없이(기소단계에서는 검사,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 피심자가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며,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언제든지 보내겠다는 내용을 쓰고, 보증인의 주소, 이름을 밝힌 다음 보증인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자택구속처분기간은 예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기간만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택구속처분기간을 따로 정해주지 않는다.

※ 자택 또는 지역구속처분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89조 (지역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를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는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02조(외출금지 서약서 및 그에 상응한 행동)

외출금지 서약서 및 그에 상응한 행동은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혐의자 또는 피의자의 서면 약정이다.

1) 수사관/예심관/검사 또는 법원의 허락 없이 상시적 또는 일시적인 주거지를 떠나지 않는다.

2) 수사관/예심관/검사의 출석요구에 따라 또는 법원으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한다.

3) 그외의 방법으로 형사사건의 처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103조(사인 보증)(私人 保證)

1. 사인보증은 본법 제102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약속을 혐의자/피의자가 이행하도록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뢰할 만한 자의 서면 약정이다.

2. 강제처분으로서 사인보증의 적용은 피보증인의 동의하에 1인 또는 수명의 보증인의 서면청구에 의하여 허용된다.

3. 보증인에게는 혐의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사인보증과 관련된 보증인의 의무 및 책임을 설명한다.
4. 보증인이 자신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본법 제11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최저노임의 최고 100배에 이르는 징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65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취보후심을 할 수 있다.

(1) 관제, 구역 또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부가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취보후심 조치를 취해도 사회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중대한 질병이 있거나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자, 임신부나 현재 자기의 영아에게 수유중인 부녀이고, 취보후심 조치를 취해도 사회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4) 구금기간이 끝나도록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취보후심 채택이 필요한 경우

취보후심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66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취보후심을 결정할 경우에는 범죄피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 보증인은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해당사건과 관련이 없을 것

(2) 보증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을 것

(3) 정치권리를 향유하고 있고, 인신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일정한 주거와 수입이 있을 것

제68조 보증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이 본법 제69조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

(2) 피보증인이 본법 제69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기관에 보고

피보증인이 본법 제69조 규정위반의 행위를 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과태료에 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9조 취보후심의 조치를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거주하는 시, 현을 떠날 수 없음

(2) 주소, 업무단위 및 연락방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 집행기관에 보고

(3) 신문을 위하여 소환하는 경우에 즉시 출두

(4)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는 것 금지

(5)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통모하여 진술을 날조하는 것 금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사건정황에 따라 취보후심된 범죄피의자, 피고인에게 다음의 하나 또는 여러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의 진입금지

(2) 특정인과의 접견 및 통신 금지

(3) 특정활동 종사 금지

(4) 여권 등 출입경증서나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보존

취보후심된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전 2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미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면 일부 또는 전부의 보증금을 몰수하고, 나아가 정황에 따라, 범죄피의자·피고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여 잘못을 뉘우치게 하거나, 다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명하거나 또는 주거를 감시하거나 체포한다. 취보후심 규정을 위반하고 체포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의자·피고인을 먼저 구류할 수 있다.

Ⅰ. 개관

제189조는 지역구속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은 “피심자를 정해준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피심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992년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간단한 조항만 두고 있었는데,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현행 규정처럼 다소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구속처분과 유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러시아의 외출금지서약서 및 사인보증제도(러시아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03조)나 중국의 취보후심제도(중국 형사소송법 제65조, 제69조)와 유사하다.

Ⅱ. 지역구속처분의 요건 및 절차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에 대하여 예심원이나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피심자를 지역구속처분 하고자 할 때 예심원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하고, 그의 승인없이 정해준 지역이나 사는 곳을 떠나지 말며, 그를 어길 경우에는 구속처분의 종류를 변경시킨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자택구속처분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을 세울 필

요는 없고, 피심자의 서약서만 받으면 된다.

지역구속처분결정서에는 지역구속처분한 일자를 쓰고 피심자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지역구속처분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심, 재판에 필요한 기간만큼 하여야 한다.

제190조 (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10조(강제처분의 취소 및 변경)

1. 강제처분은 그 필요성이 소멸할 때 취소되고, 본법 제97조 및 제99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처분을 채택하는 근거가 변경되었을 때 보다 엄격한 또는 보다 경미한 강제처분으로 변경된다.
2. 강제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은 수사관/예심관/검사 또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검사에 의해서 또는 검사의 서면지시에 따라 예심관/수사관에 의해서 채택된 강제조치는, 검사의 동의하에서만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4. (본항 삭제, 연방법률 제92호, 2003.07.04)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94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취한 강제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이 체포된 자를 석방하거나 체포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비준을 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 범죄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근친족·변호인은 강제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간은 신청 접수 후 3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또한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Ⅰ. 개관

제190조는 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부터 있던 조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고, 러시아 및 중국에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

Ⅱ. 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일단 피심자에 대해 구속처분결정을 한 뒤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구속처분 자체가 예심원이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집행하므로, 구속처분의 해제 및 변경도 마찬가지로 예심원이 해제 또는 변경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

구속처분결정의 해제는 이미 적용한 구속처분이 필요 없게 될 경우에 한다. 진범이 잡혔다거나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구속처분결정의 해제는 구속처분해제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구속처분해제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형법조항, 그에게 이미 적용한 구속처분, 해제 이유, 형사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중앙기관에서는 부서책임자)의 비준정형을 밝혀야 하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검사의 승인은 검찰소의 공인, 명판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구속처분결정의 변경은 이미 적용한 구속처분을 다른 종류의 구속처분으로 바꾸어야 할 사유가 제기될 경우에 한다.

예를 들면, 구류의 구속처분을 받은 자에게 전염병 같은 것이 발생하였거나, 자택구속 또는 정해준 지역 구속처분을 받은 피심자가 도주하려는 것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구속처분결정은 예심원의 결심으로 검사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구속처분의 종류를 변경시키는 결정은 구속처분변경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구속처분변경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형법조항, 그에게 이미 적용한 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을 변경시켜야 할 사유, 형사소송법 조항,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중앙기관에서는 부서책임자)의 비준정형을 밝혀야 하며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검사의 승인은 검찰소의 공인, 명판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제5절 검증과 심리실험

개 관

검증과 심리실험

제5절은 검증과 심리실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검증이란 시각, 청각, 취각, 미각, 촉각 등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물건, 인체 또는 장소의 존재, 형태, 성질, 형상 등을 실험, 관찰하여 인식하는 증거수집 활동을 말한다.

북한 참고서는 검증이 과학적 예심방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검증은 범죄와 관련을 가지는 장소, 물건 또는 문서의 상태와 특징을 확인, 고착하며, 범죄의 흔적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증거들을 발견하며, 또 그를 통하여 범행 당시의 정형, 범행의 동기 및 기타 사건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것을 찾아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심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395]

심리실험이란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나 물체의 상태와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수행 당시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실험의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예심행위를 말한다.[396] 실험의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내는 특수한 형태의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실험은 원래 1992년 형사소송법까지 없던 제도였는데,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시 새로 도입되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이나 중국 형사소송법도 과학수사실험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영향을 미쳐 북한

39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4면.
396)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9, 39면.

형사소송법에 심리실험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검증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대물적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판사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5조). 북한은 체포·구속에서 영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증도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음이 없이 예심원의 판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승인도 필요없다.

검증에는 현장검증, 증거물검증, 시체검증, 신체검증의 4가지가 있다고 한다(제192조). 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제191조). 대체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검증과 유사한 내용들이다. 다만, 북한 형사소송법은 검증 및 검진에 반드시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8조). 그 외 검증의 구체적 수행 절차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우리 형사소송법과 큰 차이가 없다.

제191조 (검증, 검진의 목적)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범죄사건과 관련된 흔적,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78조(검증 실행사유) 예심원은 사고 장소, 인근, 사내, 물건, 문서에 대해 범죄 및 기타 물증을 발견하거나 사건의 정황 파악 및 사건의 의의와 관련 한 기타 전황을 밝혀내기 위해 검증을 수행한다.

지연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사고 장소 검증은 형사사건 개시 전에 행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존재 시 형사소송은 사건 장소 검증 뒤 즉시 개시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76조(검증의 집행 근거)

1. 사건현장, 지형, 주거, 기타 방실, 물건, 서류의 검증은 범죄의 증적을 발견할 목적으로, 기타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기타 사항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2.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건현장의 검증은 형사사건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행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26조 수사인원은 범죄와 관련 있는 장소, 물품, 신체 및 사체에 대하여 현장검증 또는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파견하거나 또는 초빙하여 수사인원의 주재 하에 현장검증 또는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Ⅰ. 개관

제191조는 “검증, 검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검증 및 검진을 하는 목적과 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50년 제정 형사소송법에는 이러한 검증, 검진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1992년 형사소송법부터 검증, 검진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Ⅱ. 검증, 검진의 목적

검증의 목적은 사건해결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찾아내어 고착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범죄수행 당시의 정형, 범행의 동기 등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정들을 알아내려는 데 있다.[397)]

검증이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장소, 물건 또는 문서의 상태와 특징을 찾아내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검증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장소, 물건, 문서의 상태와 특징을 조사확인하고 고착하여 범죄의 흔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거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정황과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정들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행한다.

검진이란 사람의 몸에서 범죄사건과 관련된 흔적과 특징을 찾아내는 소송행위이다.

검진은 몸의 발육상태와 손상정도, 신체의 각 부위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흔적과 특징을 찾아내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397)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31면.

본조는 검증과 검진을 예심원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원이나 검사, 재판소도 필요에 따라 검증이나 검진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제137조, 제320조 등 참조).

제192조 (검증의 종류)

검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검증

2. 증거물검증

3.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4. 산 사람에 대한 검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77조(검증을 집행하는 절차)

1. 검증은 참고인의 참여하에 집행된다. 단, 본법 제17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범죄의 증적 및 기타 발견된 자료에 대한 검증은 수사처분을 집행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단, 본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증을 집행하는데 장시간이 요구되거나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 자료를 추출(抽出,꺼냄,빼냄,뽑아냄,제거함), 밀봉, 봉인하여 검증 현장에서 예심관 및 참고인의 서명으로 이를 확인한다. 형사사건에 관련 있는 자료들만 추출된다. 이때 가능한 한 검증조서에는 추출된 자료의 개별적인 특징과 특성을 적시한다.
4. 검증시 발견 및 추출된 모든 자료는 참고인 및 다른 참여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5. 주거에 대한 검증은 그곳에 거주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서만 집행된다. 주거에 거주하는 자가 검증에 반대하는 경우에 예심관은 본법 제165조에 의거 검증의 집행에 대한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다.
6. 조직체의 방실(사무실)에 대한 검증은 해당 조직의 행정부서 대표자의 입회하에. 검증에 그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한다.

Ⅰ. 개관

제192조는 검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우리의 경우 제140조에서 법원이 하는 검증의 구체적인 처분 종류에 관해 규정하고, 제219조에서 수사기관의 검증에 이것을 준용하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 형사소송법의 경우 특별히 검증의 종류에 관해 규정한 것은 없고, 바로 각 세부적인 검증절차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II. 검증의 종류

검증에는 모두 4가지가 있다. 현장검증, 증거물검증,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산 사람에 대한 검증이 그것이다. 예심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그 사건의 증거수집에 필요한 검증행위를 선택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장검증은 범죄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찾는 활동을 말한다.

증거물이 놓여있던 장소의 특징, 상태, 흔적이 범죄사건 해결에 의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인행위를 저지른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숨겨놓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발견한 경우 그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검증장소의 범위는 범죄의 성격과 나타난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을 담당한 일군이 정한다.

증거물 검증이란, 증거물 자체의 성상(性狀)을 오관의 작용을 통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물 검증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이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였거나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며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말한다.[398)]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데 쓰인 물건으로는 범죄자가 살인수단으로 이용한 망치, 칼 등이,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으로는 범죄자의 피묻은 의복이나 파괴된 열쇠 등이,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으로는 금고에서 훔쳐낸 현금이나 설계도면, 위조한 신분증 등이 범죄사건을 밝히는 데 귀중한 도움을 주는 증거물로 된다. 그 외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며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들도 증거물로 된다. 예컨대 피해자를 협박

398)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31면.

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증거물들의 특징, 상태, 흔적을 고착시킬 필요가 있을 때 증거물 검증을 하고 그 조서를 통해 고착시키게 된다(제38조 제2항).

검증은 경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신체를 뒤져 물건 등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체에 대한 수색이 될 것이지만, 신체적인 특징, 형상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라고 보아야 한다.[399]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증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산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증을 검진이라고도 한다.

시체의 검증은 죽음의 원인, 시기, 죽을 당시의 정형 등을 알기 위해서 시체의 상태를 확인 고착하거나, 시체에 있는 상처, 시체 현상 등을 확인 고착하기 위해 한다.[400]

시체검증은 예심원의 참가하에 법의학감정인이 한다. 이때 검증조서는 검증을 한 감정인이 만들고 예심원과 함께 도장을 찍는다.

검진은 사람의 몸에서 사건 의의를 가지는 여러가지 흔적을 발견하거나 그 사람의 육체적 특징, 기타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심행위이다. 검진은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을 뿐 본질에 있어서는 검증에 해당한다.[401]

---

39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1), 2008, 343면.
400)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6면.
40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6면.

제193조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검증)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193조는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검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50년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규정한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을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러시아, 중국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II.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검증

범죄현장에서 증거물을 발견하였거나 수색, 압수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하여야 한다(제1항).

옮기는 과정에서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통상 범죄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바로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 수 있다(제2항).

이 조문에 지적된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어두운 조건 등으로 현장에서 정확하게 검증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한다.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하려 할 경우에는 증거물이 손상되지 않게 잘 포장하고 입회인들과 함께 봉인하고 옮긴 다음에도 입회인들과 함께 개봉하여 검증하여야 한다.[402)]

입증의 과학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거물을 옮기기 전의 원상태를 사진 등의 형태로 고착시킬 수 있다.

증거물에 대한 감정은 반드시 검증을 한 다음에 맡겨야 한다.

40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57면.

제194조 (검증의 동의)

검증에 필요할 경우에는 임자의 동의를 얻어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할 수 있다.

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78조(사체검증. 사체발굴)

1. 예심관은 참고인,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하에 사체를 검증한다. 법의학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케 한다. 사체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체는 반드시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를 해야 한다. 신원불상의 사체를 화장하는 것은(火葬)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매장된 장소로부터 사체를 발굴해야 할 경우, 예심관은 사체발굴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亡者의 근친 및 친족에게 알린다. 이 결정은 해당 매장지의 관리부서에 구속력(강제력)이 있다. 亡者의 근친 또는 친족이 사체발굴에 반대하는 경우에 그 해결은(사체발굴의 허용 여부는) 법원에서 내려진다.
4. 사체발굴 및 사체의 검증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者의 참여하에 집행된다.
5. 사체발굴 및 그 이후의 사체 매장과 관련된 지출은 본법 제13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亡者의 친족에게 보상한다.

Ⅰ. 개관

제194조는 검증의 동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우리 나라나 러시아,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대응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래 검증은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를 받아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북한 형사소송법 제194조는 매우 이례적인 규정이다.

다만, 제2항에서는 동의가 없어도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동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굳이 본조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Ⅱ. 검증의 동의

검증에 필요한 경우 임자의 동의를 받아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할 수 있다(제1항).

임자란 그 검증대상물의 소유자 등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묘의 경우 그 후손들이 임자가 될 것이다. 다만, 모든 후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후손 중 대표나 기타 묘의 발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후손의 동의만 받으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임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심원은 동의가 없어도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제2항). 즉, 검증대

상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검증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검증이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내용이다.

여기서 "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란 임자가 물건의 파괴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가족들의 행처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403)]

검증을 부당한 이유로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직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거나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라 억류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의 방법으로 제압하고 검증을 하여야 한다. 강제의 방법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포승, 수갑 같은 수단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04)]

40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58면. 다만, 이 부분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만 제2항이 적용되고 정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즉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증거수집에 필요한 검증이라면 그 검증대상물의 소유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검증행위를 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하여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검증의 성질에 반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40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58면.

제195조 (검진결정서 및 검진맡김결정서의 작성)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든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검진을 맡길 때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작성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79조(신체검사)

1. 사람의 신체에서 특징적인 人相, 범죄의 증적, 상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취상태 또는 기타 형사사건에 의미를 가지는 특성 및 징표를 밝히기 위해서 – 이를 위해서 사법감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 혐의자, 피의자,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집행할 수 있다. 증인은 그의 동의를 받아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단,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데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체검사의 집행에 관하여 예심관은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신체검사의 대상자에게 구속력(강제력)이 있다.
3. 신체검사는 예심관이 집행한다. 필요시 예심관은 심체검사의 집행에 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를 참여케 한다.
4. 다른 性에 해당하는 자를 신체검사할 때, 신체검증이 대상자의 신체적 노출(露出)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예심관은 입회할 수 없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의사에 의해서 수행된다.
5. 본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진촬영, 비디오촬영, 영상촬영은 신체검사 대상자의 동의하에 실행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증을 검진이라고 한다. 제195조는 검진의 경우 검진결정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검진을 맡기는 경우 검진맡김결정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2012년에 다시 개정된 조문이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진결정서의 작성과 그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는데,[405] 2012년 형사소송법은 그 중 2항을 개정하여 검진결정서의 기재 내용 대신 검진맡김결정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본조도 대한민국이나 러시아,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유사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 검증의 일종인 검진에 대해 특히 검진결정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입법으로 보인다.

Ⅱ. 검진

검진은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증을 말한다.

405) **2004년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진결정서의 작성)**
사람을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든다.
검진결정서에는 검진대상자와 검진리유 같은 것을 밝힌다.

검진은 특히 인신침해사건에서 각종 손상과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몸의 발육상태가 어떠하며 기능장애는 없는가를 확인하며, 신체의 각 부위에서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각종 흔적과 특징을 찾아내거나 확인하는 등의 경우에 필요하다.[406]

검진은 피심자나 피해자 또는 그밖의 증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검진은 산 사람의 몸을 다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신중성과 예절이 지켜져야 한다.

Ⅲ. 검진결정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에 대해 검진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작성한다(제1항).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진은 그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검진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서는 검진결정서는 검진을 하는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의 몸과 무릎 윗부분을 검진하려 할 경우에만 검진결정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07] 무릎 아랫부분에 대한 검진은 상대적으로 침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진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 이름, 검진대상자의 이름, 검진을 하는 이유, 형사소송법 조항, 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구류되지 않은 피심자나 증인을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제163조,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소환 및 구인할 수 있다.

※ 구금, 구류된 자를 검진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들지 않는다.

406)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6면.
40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58면.

Ⅳ. 검진맡김결정서의 작성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검진을 맡길 경우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작성한다(제2항).

검진은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증이므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상 사람의 몸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법의학 감정의사에게 검진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그 경우 검진맡김결정서를 작성한다. 이때 검진과 함께 감정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라면 감정맡김결정서도 같이 작성한다(제208조).

검진맡김결정서에는 날짜, 맡기는 일군의 직장, 이름, 검진대상자의 이름, 검진사유, 소송법조항, 결정내용(검진을 맡아 할 사람의 직장과 이름)을 밝혀야 한다.[408)]

40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60면.

제196조 (검증, 검진의 시간)

검증, 검진은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검증, 검진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3조(시각의 제한)

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Ⅰ. 개관

제196조는 검증, 검진의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러시아나 중국에는 대응하는 조문이 없다.

II. 검증, 검진의 시간

검증과 검진은 낮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항). 검증과 검진은 증거의 수집을 위해 하는 예심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가급적 주간에 검증, 검진을 하도록 하여 그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야간에 검증, 검진을 할 수도 있다(제2항). 시간을 지체하면 증거의 수집이 어려워지거나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야간에만 일정한 특징이 드러나 주간에는 검증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제197조 (검진결정서의 제시)

검진을 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진결정서 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검진을 받을 자에게 제시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28조 수사인원이 현장검증,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Ⅰ. 개관

제197조는 검진하는 경우 검진결정서를 검진대상자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우리 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조문이 없고, 중국 형사소송법의 경우 검증하는 수사인원은 반드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검진결정서의 제시

검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을 받을 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진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 사람에 대한 검진이 아니라 증거물 검증이나 현장검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진결정서를 만들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구두로 검진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무릎 아랫 부분을 검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니면서 검진을 담당하는 사람은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맡김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8조 (검증, 검진의 립회)

검증, 검진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녀성에 대한 검진의 립회는 녀성을 시킨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5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79조(검증실행절차) 검증은 예심활동의 증인 참석 하에 실행된다.

예심원은 피고인, 피의자, 피해자 혹은 증인을 불러 참여하도록 할 권한을 갖는다.

필요시 검증 중 예심원은 측정, 사진촬영, 동영상 제작, 계획 및 도표 도출, 금형 제작 및 흔적 각인 등을 할 수 있다.

사고장소, 인근, 사내 등의 압수, 수색 및 검증은 예심원에 의해 특정 예심활동 수행장소에서 실행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검증의 결과는 예심활동과 함께 기록된다. 필요시 제거된 물건은 포장되고 봉인된다.

체신 및 전신 검증은 본법 제174조에 의거하여 실행된다.

제181조(검사) 만약 법의학 감정인의 검사가 요청되지 않을 시, 예심원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범죄의 흔적을 찾거나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를 실행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사 실행 명령은 대상인 사람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검사는 예심활동의 증인 참석 하에 실행되거나 필요시 의사 참석 하에 이루어진다.

검사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같은 성별의 증인 참석 하에 실행되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탈의(脫衣)한 채로 실행된다.

예심원은 반대 성별의 사람이 탈의한 채로 검사를 받을 시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검사는 예심활동의 증인 참석 하에 의사가 실행한다.

검사받는 사람의 건강에 해를 입히거나 존엄성을 낮추는 행위는 검사시 허가되지 않는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29조 사인불명의 사체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부검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아울러 사망자의 가족에게 현장에 입회할 것을 통지한다.

제130조 피해자나 범죄피의자의 어떠한 특징·상해상황·생리상태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고, 지문정보를 채취하거나 혈액·소변 등 생물 견본을 채집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검사를 거절하였으나 수사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제검사를 할 수 있다. 부녀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여성근무자 또는 의사가 하여야 한다.

Ⅰ. 개관

본조는 검증, 검진의 입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검증, 검진시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하고, 특히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검진의 경우 반드시 여성 입회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었고, 우리나라나 러시아, 중국형사소송법에도 유사한 규정들이 있다.

Ⅱ. 검증, 검진의 입회

검증과 검진을 할 경우에는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제1항).

원래 증거물을 찾아내고 고착시킬 경우에는 해당한 소송행위의 진행과정, 그리고 증거물의 출처와 고착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목적 밑에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제39조).

검증과 검진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 입회인은 법기관 성원이 아닌 자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409]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검진을 하는 경우 입회인은 여성이 되어야 한다(제2항). 여성의 수치심 등을 고려한 인권보장 측면에서의 규정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은 여성을 검진할 경우 검진결정서를 작성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검진을 여성 수사원, 여성 예심원이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410] 단순히 입회인만 여성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검진 자체를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30조는 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40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4면.
41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60면.

제199조 (검증에 감정인의 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199조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키는 내용의 규정이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도 있던 내용이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대한민국이나 러시아, 중국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인다.

Ⅱ. 검증에 감정인의 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다. 감정인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검증과 감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살인사건, 기계설비 파괴손상사건 같이 범죄사건의 성질에 따라 감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와 검진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를 의미한다.

제200조 (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붙일 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든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82조(검증과 검사 기록)

검증 및 검사 실행 시 예심원은 본법 제141, 142조의 요건에 의거하여 기

록한다.

기록은 예심원의 모든 활동은 물론 검증이 행해진 순서에 따라 검증과 검사에서 발견된 모든 사항과 검사 및 관칠 시 밝혀진 모든 사실 및 상황에 대해 기록한다. 기록은 검증 및 검사에서 제거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 및 나열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0조(검증조서 및 신체검사조서)

1. 검증 및 신체검사의 조서는 본조 및 본법 제166조, 제167조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 조서에는 예심관의 모든 활동을 기술하고, 검증 그리고(또는) 신체검사시 발견된 모든 것을 검증 및 신체검사가 집행된 일련의 순서 그대로 그리고 검증 및 신체검사시 관찰된 형상 그대로 기술한다. 조서에는 검증 그리고(또는) 신체검사시 입수한 모든 자료를 열거하고 기술한다.
3. 조서에는 또한 어떤 시간, 어떤 날씨, 어떤 조명하에서 검증 또는 신체검사가 집행되었는지, 어떠한 기술적 수단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어떠한 자료가 추출되고 봉인되었으며 어떤 인장으로 봉인되었는지, 검증한 이후에 사체 또는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물건을 어디로 보냈는지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1조 현장검증 또는 검사의 상황은 조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현장검증 또는 검사에 참가한 자 및 현장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Ⅰ. 개관

제200조는 검증, 검진조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다. 1950년 제정 형사소송법도 검증조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

Ⅱ. 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1. 조서작성의 원칙

제1항은 조서 작성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검증과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항). 증거조사의 결과를 조서작성을 통해 고착시키는 것이다.

2. 조서작성의 방법

제2항은 검증조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 결과를 써야 하며, 약도와 사진을 붙일 수 있다(제2항).

조서에는 검증, 검진을 한 날짜, 검증, 검진을 한 일군의 직장직위, 이름, 검증, 검진을 진행한 장소,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쓰고, 검증, 검진 당시의 상태와 특징 같은 결과를 써야 하며, 사진을 찍었거나, 약도, 모형 등을 만든 정형과 검증, 검진 당시의 환경과 조건, 시간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411] 조명관계, 날씨, 검증하기 전의 현장보존상태 같은 것도 밝혀야 하

고,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밝혀야 한다.

3. 현장검증조서

현장검증조서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와 증거물이 놓여있던 장소를 검증하고 찾아낸 증거물을 등록, 고착하는 조서이다.

현장검증을 하였다면 증거물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에도 현장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증거물조서

증거물검증조서는 증거물을 검증하고 그의 특징, 상태와 흔적을 고착하는 조서를 말한다.

증거물검증조서는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에 등록된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을 구체적으로 고착할 목적 밑에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증조서에 등록된 증거물에 대하여 따로 증거물검증을 하고 증거물검증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란 현장검증조서에는 찾아낸 증거물의 위치, 상태 같은 것을 등록하고, 그의 구체적인 특징 같은 것은 따로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5. 제3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든다(제3항).

41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61면.

일정한 경우 검진을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법의감정의사, 법기관의 여성일군, 의사가 검진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때에는 그들이 검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의감정의사가 감정과 검진을 함께 한 경우에도 검진조서를 따로 작성한다.

검증, 검진조서는 검증, 검진을 한 현장에서 써야 한다.

Ⅲ. 증거물검증조서의 예[412)]

다음 면 참조.

412)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9, 12면.

증거물검증조서

1986년 6월 25일 평안북도 ㅅ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옵 40반에서 사는 주옥순과 장정애를 립회시키고 형사소송법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절차를 지키면서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인 망치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것을 확인하였다.

— 망치는 길이 11cm, 직경 4cm, 손잡이길이는 30cm인 가정에서 보통 쓰는것이다.

망치의 앞부분은 평면으로 절단한 원형이고 뒤부분은 카락치형의 을 가지고있으며 앞뒤부분의 직경은 같다.

망치의 중심에 3cm×2.5cm×1.5cm의 크기를 가진 직사각형의 구멍하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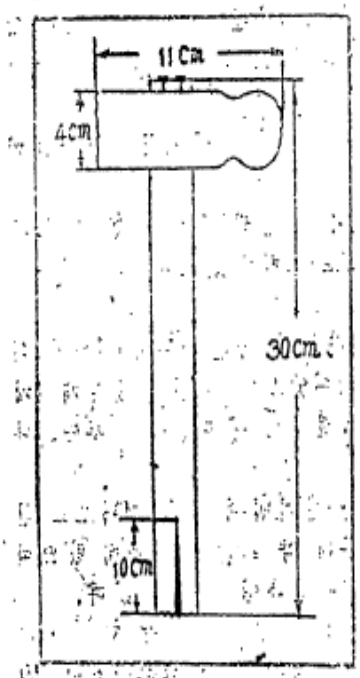

— 망치의 앞부분은 세군데나 지츠러진 흠집이 있으며 뒤부분은 여러곳에 크고작은 흠집들이 있다.

— 망치는 여러 부분에 많은 녹이 쓸었으며 특히 자루를 맞춘 틈의 주변에 녹과 함께 흙이 끼여있다.

— 망치자루의 앞부분에는 50mm짜리의 못이 2개 박혀있고 자루의 뒤부분에는 10cm정도의 길이로 쪼개져 있으며 끝부분에는 여러개의 나무조각이 일어났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검증은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하였다.

립회인 주옥순

립회인 장정애

예심원 최광선

제201조 (심리실험의 사유)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의 가능성여부와 그러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를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83조(과학수사실험) 사건의 중대성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입증할 목적으로 예심원은 범죄 행위, 배경 또는 기타 특정한 사건의 정황을 재구성하거나 실험적 활동을 통해 과학수사실험을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예심원은 필요시 실험 측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계획 수립 및 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과학수사실험은 실험에 참석한 사람이나 그 관계자의 존엄성이나 명예,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예심활동의 증인은 과학수사실험에 참석한다. 필요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증인은 과학수사실험에 참여할 수 있다. 예심원은 과학수사실험에 감정인을 참여시킬 권리를 가진다.

본법 제141조, 142조에 의거하여 과학수사실험이 기록된다. 기록에는 실험과 관련 된 조건, 과정, 결과 등이 포함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1조(수사상 실험)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사항을 검사하고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심관은 행위 또는 일정한 사건의 조건이나 기타 정황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수사실험을 행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사실의 인식 가

능성, 일정한 행위의 실행 가능성, 어떠한 현상의 발현 가능성을 검사하고, 또한 사건 발생의 논리적인 연속성과 범죄 흔적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밝힌다. 수사실험은 실험에 참여하는 자의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허용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3조 사건의 상황을 조사하여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얻어 수사실험을 할 수 있다. 수사실험의 상황은 모두 기록하여야 하며 실험에 참가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수사실험을 함에 있어서 위험을 조성하거나, 인격모독, 또는 풍속에 해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Ⅰ. 개관

제201조는 심리실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고, 2004년에 현행 규정의 내용과 같이 개정된 뒤 2012년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으나, 러시아나 중국에는 유사한 취지의 규정들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이 심리실험도 검증의 한 형태이므로 당연히 검증의 형식으로 이러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심리실험

심리실험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나 물체의 상태, 특징을 그 장소나 물체와 관련하여 과거에 있은 행위나 현상을 실험의 방법으로 되풀이함으로써 확인하는 예심행위를 말한다. 특수한 형태의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실험은 피심자 등의 진술이 과연 타당한지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증해 보기 위해 할 수 있다. 예컨대 피심자가 말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가 말하는 환경과 조건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실험하거나, 피심자가 진술하는 보따리를 그 창문으로 들어내 갈 수 있는지 등을 실험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나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실험대상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험하는 사람보다도 실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실이나 현상이 있었다는 그 당시와 똑같은 시간과 장소, 환경과 조건에서 실험을 함으로써 실험결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심리실험은 장소나 물체의 상태와 특징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실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이 없이 범행의 구체적 정형 또는 그와 관련한 피심자나 증인의 말을 생동하고 정확하게 알아듣기 위하여 범행 당시의 그들의 행동이나 동작을 그대로 해보게 하는 것은 심리실험이 아니다. 후자의 행위를 범행재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증거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413)]

북한 참고서는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 심리실험과 재연을 구별하고 있다.[414)]

---

413)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8면.

414)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9, 39면.

구분			차이점
1	사람	심리실험	해당 사건의 범죄자가 꼭 심리실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재연	해당 사건의 범죄자가 반드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를 때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해야 함
2	수단	심리실험	범행 당시에 사용한 물건을 반드시 이용하지 않아도 됨
		재연	범행 당시에 사용한 물건 또는 모조품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
3	장소	심리실험	사정에 따라서 범행장소와 유사한 다른 장소를 선택할 수 있음
		재연	범죄가 수행된 그 장소에서 하여야 함
4	방법	심리실험	실험과 동작을 통하여 동작과 말을 검토하고 확인함
		재연	수행된 범죄행위를 그대로 다시 반복동작 하도록 하여 확인함

Ⅲ. 심리실험의 사유

심리실험은 범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유를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
-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 그러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제202조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검토확인 하여야 할 행위나 현상이 있은 당시와 같은 장소, 시간, 환경,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2.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여러번 하여야 한다. 3. 심리실험참가자에게 예심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202조는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Ⅱ.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은 문제된 행위나 현상이 과연 있었는지의 여부를 과학적 실험

의 방법으로 재현해 보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토 확인하여야 할 행위, 현상이 있었던 당시와 같은 장소, 시간, 환경,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제1호). 조건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과 조건이란 날씨, 조명, 소음, 수단과 방법 같은 것을 의미한다.

또 2명의 입회인을 세우고 여러 번 하여야 한다(제2호). 이를 통해 심리실험의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다.

예심원이 먼저 심리실험 참가자에게 예심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제3호). 그렇게 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203조 (심리실험의 금지사유)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이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실험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1조(수사상 실험)**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사항을 검사하고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심관은 행위 또는 일정한 사건의 조건이나 기타 정황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수사실험을 행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사실의 인식 가능성, 일정한 행위의 실행 가능성, 어떠한 현상의 발현 가능성을 검사하고, 또한 사건 발생의 논리적인 연속성과 범죄 흔적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밝힌다. 수사실험은 실험에 참여하는 자의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허용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203조는 심리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181조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II. 심리실험의 금지사유

심리실험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심리실험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민의 인격 및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및 사회단체, 공민의 재산에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415)]

415)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9, 40면.

제204조 (심리실험조서의 작성) **심리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위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힌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204조는 심리실험조서의 작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도 심리실험 조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116조에 두고 있었다.

Ⅱ. 심리실험조서의 작성

심리실험은 검증의 일종으로서 증거를 수집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진행경과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리실험조서에는 날짜, 심리실험을 진행한 일군의 직장, 이름, 심리실험을 진행한 장소, 형사소송법의 조항, 심리실험의 목적을 쓴 다음 심리실험을 하게 된 이유와 심리실험의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결과를 밝혀야 한다.[416)]

41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63면.

Ⅲ. 심리실험조서의 예[417)]

심리실험조서

1986년 11월 18일 평안북도 人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피심자 백남건의 형법 제70조 1항, 제145조, 제174조 1항, 제180조 사건과 관련하여 人군 일용품수매상점 공급지도원 신영호와 창고장 최구영을 립회시키고 형사소송법 제96조, 제99조의 요구를 지키면서 범죄현장인 수매상점 2호창고에서 심리실험을 하였다.

피심자 백남건은 1986년 4월 25일 수매창고에 보관한 양털 5kg과 (250원분) 여우가죽 2장을 도적맞혔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그날저녁 경비를 서다가 아침 5시경에 순회를 하느라고 2호창고에 나가보니 널판자로 된 창고벽의 널판자 한장이 떨어져있었으며 창고안에 보관되였던 배낭(누런색, 중고품) 1개와 양털 5kg, 여우가죽 2장이 없어졌는데 누가 그 배낭에다 양털과 여우가죽을 넣어가지고 떨어진 널판자짬으로 빠져나간것이 틀림없다는것이다.

피심자는 저녁경비를 인계받으면서 둘아볼 때에는 창고벽체가 정상이였으며 물품이 잃어진것과 벽체판자가 떨어진것은 아침에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피심자의 진술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심원은 먼저 피심자 백남건에게 분실된 배낭의 크기와 꼭같은 배낭 1개를 주고 거기에 양털 5kg과 여우가죽 2장을 넣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배낭안에 그것은 3분의 2의 량밖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또한 예심원은 그에게 양털을 가득넣은 배낭을 가지고 떨어졌던 널판자사이로 나가라고 하였다.

피심자 백남건은 사람은 물론 배낭도 내보내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심리실험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人군 일용품수매상점 2호창고에서 하였다.

이 조서를 읽어본 결과 정확히 씌여졌다.

피심자 백남건
립회인 신영호
립회인 최구영
예심원 최광선

417)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9, 40면.

제6절 감정

개 관

감 정

Ⅰ. 감정의 의의

감정이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재판상 또는 수사상 필요한 실험칙 등에 관한 전문지식·경험 등의 부족을 보충할 목적으로 그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실험칙 또는 이를 적용하여 얻은 구체적 사실판단 등을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18] 감정 자체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임의수사에 속한다.

이와 같이 감정은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내며 그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예심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감정인이 부탁받은 문제의 해명을 위하여 진행하는 조사, 실험, 분석, 기타 활동을 말한다.[419]

감정은 범죄사건을 조사해명하는 과정에 과학기술적 힘에 의해서만 풀 수 있는 경우들에 부닥칠 때 해당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일군들에게 맡겨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그것을 해명해냄으로써 보통 사람의 눈으로써는 갈라내지도, 알아볼 수도 없는 문제를 밝혀내는 증명수단의 하나이다.[420]

북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감정은 과학적인 예심방법에서 중요한 자

41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1), 2008, 368면.
419)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9, 43면.
420)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30면.

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감정은 과학적 증명의 중요수단으로서 사건에 따라서는 범죄사건 처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하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한다.[421]

감정은 해당 권한있는 사법기관들의 결정에 의하여서와 범죄자를 포함한 소송참가자들의 신청에 따라 한다.[422] 따라서 예심단계에서 감정이 제기된다면 예심원이나 검사가, 재판단계에서 감정이 제기된다면 판사가 해당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일군들에게 감정을 맡겨야 한다. 그들 자신이 전문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직접 감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423]

예심에서 감정인은 자기의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중요한 문제를 밝히고 확정하는 데 귀중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현장검증 등 중요한 예심행위에 참가하며, 앞으로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사실 또는 현상들을 수집,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정은 과학적 증명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고,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으며, 충분한 자질을 갖춘 전문감정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예컨대, 그 사건의 피심자가 일하던 직장의 전문가들, 형사사건제기의 사유로 된 자료를 준 기관의 전문가들은 그 사건의 감정인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424]

감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들은 예심원이 정한다. 해당 전문지식이 부족한 예심원은 감정할 사항에 관해 감정인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예심원은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정들을 알려주어야 하며, 감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주어야 한다.

---

42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2면.
422)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9, 44면.
423)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30면.
424)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3면.

예심원은 감정을 하는 장소에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감정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사정이 있을 때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감정을 마친 감정인은 감정서를 만들어 예심원에게 보낸다. 감정인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넘겨받은 예심원은 감정을 보충하게 하거나 감정을 다시 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II. 감정과 검증의 차이점

감정과 검증은 모두 수사기관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이지만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아래는 그 차이점을 정리한 표이다.[425)]

구분			차이점
1	수단	감정	사람의 눈으로는 찾아내거나 구분하기 힘들므로 언제나 과학기술수단을 요구한다
		검증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찾아내거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과학기술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장소	감정	일정한 기계,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검증	임의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3	자격	감정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부문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
		검증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감정인 등이 할 수 있다
4	결과	감정	감정서에 감정인의 견해와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검증	검증조서에 검증한 일군의 견해와 의견을 첨부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고착시킬 의무만이 있다

425)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9, 44면. 동일한 내용이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31면에도 있다.

제205조 (감정의 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긴다.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의무적으로 감정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84조(감정인 심리 준비절차) 감정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예심원은 그러한 취지의 명령장을 작성하는데, 그 명령장에는 감정인 심리를 명령하는 사유, 감정인 심리가 실행되는 기관명 또는 감정인 성, 감정인에게 할 질문, 감정인에게 제공될 자료를 밝혀야 한다.

감정인 선임 전 예심원은 감정인의 전문분야와 역량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예심원은 감정인 실험 명령을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본법 제185조에 명시된 피고인의 권리를 설명할 의무를 진다. 이는 기록으로 남으며 예심원과 피고인의 서명을 받는다.

법의학수사감정인에 의한 심리를 의뢰하는 명령장과 감정인의견에 관한 명령은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을 경우 그에게 통지되지 않는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5조(司法鑑定을 지정하는 절차)

1. 司法鑑定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심관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본법 제2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다. 그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시한다.

   1) 사법감정을 지정하는 근거

   2) 사법감정을 실행하는 감정인의 성, 명 및 부칭 또는 감정기관의 명칭

   3) 감정인에게 부여하는 의문사항

   4) 감정인이 이용토록 제공되는 자료

2. 司法鑑定은 국가사법감정인 또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 중의 전문가에 의해서 실행된다.

3. 예심관은 司法鑑定의 지정에 관한 결정서를 혐의자, 피의자, 그의 변호인에게 열람케 하고, 그들에게 본법 제198조에 규정된 권리를 설명한다.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예심관 및 결정서를 열람한 자들이 서명한 조서를 작성한다.

4. 본법 제196조 제2,4,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被害者에 대한 사법감정, 그리고 證人에 대한 사법감정은 그들의 동의를 얻어 또는 그들의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이러한 동의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196조(필요적 司法鑑定의 지정)

다음 사항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감정을 지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1) 사망의 원인

2) 상해의 성질 및 그 정도

3) 혐의자, 피의자의 심신상실 여부 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와 법익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그 혐의자 또는 피의자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상태

4)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사항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진술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의스러울 때, 그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상태

5) 형사사건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혐의자, 피의자, 피해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그의 연령을 증명하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문서가 의심스러울 때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44조 사건 상황을 조사해 밝히기 위해서 사건 중의 어떤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파견하거나 초빙하여 감정을 하여야 한다.

Ⅰ. 개관

제205조는 감정을 할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50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피심자의 정신상태 감정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2년 형사소송법은 “수사일군, 예심원은 사건조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을 맡겨야 한다. 검사와 재판소도 감정을 맡길 수 있다”고 규정(1992년 형사소송법 제117조)하여 예심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모든 경우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현행 형사소송법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형사사건의 해결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감정이라는 형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대한민국이나 러시아, 중국 형사소송법에도 모두 유사한 취지의 규정들이 있다.

이러한 감정은 임의수사의 일종으로서, 사건의 과학적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II. 감정의 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긴다(제1항).

형사사건을 조사하여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전문적인 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이 때 비전문가인 예심원으로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205조는 이러한 경우 예심원은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감정을 맡길 것인지 말 것인지, 감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모두 예심원이 결정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 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의무적으로 감정을 맡겨야 한다(제2항).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제206조 (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범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 같은것이 속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206조는 감정의 종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대한민국이나 러시아, 중국 형사소송법에서는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Ⅱ. 감정의 종류

제206조는 감정의 종류로 법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타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감정의 대표적인 종류에 해당할 것이나 반드시 여기에 국

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감정이란 결국 외부의 전문가에게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무엇이든 감정의 대상이 된다. 즉, 본조에서 규정한 감정의 종류는 모두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법의학감정이란 주검의 원인, 상해 정도 등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법정신병학감정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범죄자나 증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법화학감정은 물질의 화학성분에 대한 감정이다.

흔적감정은 범죄와 관련된 손 흔적, 발 흔적, 파괴흔적 같은 여러 가지 흔적을 조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감정이다

필적감정은 범죄와 관련된 필적, 도장의 동일성 여부를 밝히는 감정이다

탄도학감정은 총기의 발사여부와 발사시간, 사격거리와 방향, 사격장소, 발사한 총기의 종류 등을 밝히는 감정이다.

기술감정은 기계, 설비, 건설분야에서 일어난 사실사고의 원인과 피해정도를 밝히는 감정이다.

회계감정은 회계계산, 결산의 정확성정도, 부족액 같은 것의 해명을 위한 감정이다.

인물감정은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조사, 확정하는 감정이다

감정에는 이외에도 음성감정, 문서감정, 문학예술잠품에 대한 감정 등 여러 가지가 있다.[426)]

42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65면.

제207조 (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207조는 감정기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부터 규정되어 온 것이다.

II. 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해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27]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 정도 같은 인신침해사건과 관련된 감정은 국가법의감정기관이 한다.

국가법의감정기관에는 중앙과 도(직할시)법의감정기관, 시(구역), 군에 주재하는 도(직할시)법의감정의사, 인민보안부와 안전보위부 및 인민무력부, 철도성에 조직되어 있는 법의감정기관(법의감정의사)이 속한다.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이나 범죄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은 전문 정신병감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필적, 탄도 및 흔적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과 인물감정은 인민보안부와 안전보위부의 감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제2항).

국가자격을 가진 자란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로부터 해당 부분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전문지식을 가진 자란 국가자격은 없지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업하여 사회적으로 공인된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42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66면.

회계 및 기술감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자격을 가진 자에게 맡겨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맡길 수 있다

회계 및 기술감정은 국가자격을 가진 자와 실전능력과 경험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있다.

제208조 (감정의 의뢰)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감정맡김결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감정맡김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밝힌다.

감정을 맡길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넘겨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87조(전문기관을 통한 감정인 조사 진행) 적절한 전문기관의 감정인에게 조사 진행을 맡길 경우, 예심원은 그러한 기관에 그의 명령을 공지하고 감정인 조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전달한다.

예심원의 명령을 수신하면 전문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하나 혹은 다수의 관계자에게 감정인 조사를 의뢰한다. 예심원의 조사에 따라 전문기관장은 감정인 조사를 수행하는 자에게 본법 제82조의 권리 및 의무, 러시아 공화국(RSFSR) 형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에 명시된 의견 언급 회피 및 거부, 거짓 의견 제시에 따른 책임에 대해 공지하고, 감정인 의견과 함께 예심원에게 전달될 그들에게서 받은 수령장(reciept)이 수령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9조(사법감정의 실시를 위해 형사사건의 기록을 송부하는 절차)

1. 감정기관에서 사법감정을 실시할 때, 예심관은 해당 감정기관의 장에게 사법감정의 지정에 관한 결정서와 감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송부한다.
2. 위 결정서를 접수한 감정기관의 장은 특정한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인 중에서 특정인 또는 수인의 감정인에게 사법감정의 실시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서 예심관에게 통지한다. 이때 국가사법감정기관 이외의 감정기관의 장은 감정인에게 본법 제57조에 규정된 그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한다. 3. 감정기관의 장은/ 당해 감정기관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 감정인이 없거나 감정조사를 실행할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위 결정서를 집행함이 없이/ 사법감정의 지정에 관한 결정서 및 감정을 실시토록 제공된 자료를 그 반환의 이유를 적시하여 반환한다. 4. 사법감정이 감정기관 밖에서(감정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실시될 경우, 예심관은 결정서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감정인에게 교부하고, 본법 제57조에 규정된 그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한다. 5. 감정인은 제공된 자료가 사법감정을 실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감정하는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집행함이 없이 반환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208조는 감정의뢰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서부터 유사한 취지의 규정들이 있었고, 이들 규정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대응하는 규정이 없고, 러시아 형사소송법의 경우 감정을 맡길 때 예심원이 감정기관에 그의 명령을 공지하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유사하다.

II. 감정의 의뢰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감정을 맡기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정을 맡기는 결정은 감정맡김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감정맡김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 이름, 감정을 맡기는 이유, 형사소송법의 조항, 감정내용을 밝히고, 감정내용에는 감정의 종류, 감정을 맡아야 할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 감정에서 해명하여야 할 문제, 감정인에게 줄 자료, 허위감정을 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과 이 법 제209조, 제210조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감정맡김결정서는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에게 보내고, 1통은 사건기록에 붙어야 한다.

감정맡김결정서는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에게 직접 줄 수도 있고 문건으로 보낼 수도 있다.

감정맡김결정서를 보낼 경우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보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문의 동일성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지문과 대조용으로 수집한 지문을 감정맡김결정서와 함께 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그 지문이 어떤 물체의 어느 위치에 있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현출하여 고착 시켰는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감정자료는 봉인하여 감정을 의뢰한 일군과 입회인의 도장을 찍어보내야 한다.

제209조 (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209조는 감정의뢰를 받은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고, 이것이 2004년 일부 개정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없고, 러시아나 중국 형사소송법에도 유사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Ⅱ. 감정인의 의무적 이행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을 하여야 한다. 즉,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이 맡겨진 감정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428)]

자기에게 감정을 할 자질이 없거나 시약, 설비, 조건불비 등의 이유로 감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써내야 한다.

또,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감정사항이라든지 감정방법, 감정서 제출기한 등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1992년 형사소송법은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이 부를 때에는 제때에 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992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122조).

42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67면.

제210조 (감정서의 작성과 회보)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곧 보낸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91조(감정인 의견 내용) 필요한 분석을 진행한 뒤 감정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성, 이름, 부칭, 학력, 전공, 학력, 직급, 직장 등)에 의한 것이었는지, 무엇을 바탕으로 감정인 조사가 실행되었는지, 감정인 조사의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자료를 감정인이 사용하였는지, 감정인의 타당한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한다. 감정인 조사 진행 시 감정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한 정황을 성립하고 그의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갖는다. 의견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감정인의 서명을 받는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204조(감정결론서)

1. 감정의 결론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시한다.
   1) 사법감정을 실행한 일자, 시간 및 장소
   2) 사법감정을 실시하는 근거
   3) 사법감정을 지정한 공무원
   4) 감정기관에 관한 사항, 또한 감정인의 성, 명, 부칭과 그의 학력, 전문분야, 근무경력, 학위 그리고(또는) 교수 계급, 직책
   5) 고의적으로 허위의 결론을 제시하는 데 대한 형사책임을 감정인에게 경고한 사항
   6) 감정인에게 부여한 의문사항(문제)
   7) 조사의 대상 및 사법감정을 실행토록 제공한 자료
   8) 사법감정의 실행에 참여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9) 조사에 적용한 방법을 기재한, 조사의 내용 및 결과
   10) 감정인에게 부여된 문제에 대한 결론 및 (그 결론을 입증하는) 근거
2. 사법감증을 실행시에 감정인이, 그에게 부여되지 아니한 문제이지만,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신의 결론서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적시할 수 있다.
3. 감정의 결론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사진, 도면, 도표 등) 형사사건에 첨부되고, 그 결론서를 구성하는 일부분이 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45조 감정인은 감정을 한 후 감정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감정을 하면 반드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Ⅰ. 개관

제210조는 감정을 마친 감정인의 감정서 작성과 회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고, 다른 나라의 형사소송법에도 모두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감정서의 작성과 회보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곧 보내야 한다(제1항).

감정결과는 감정인의 감정서로 표현된다. 감정인은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감정을 하고 감정서를 만들어 그것을 의뢰한 기관에 그날로 보내야 한다.[429] 만일 감정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것을 의뢰한 일군과 합의하여 감정서 제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제2항).

감정서에는 밝혀진 사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 즉, 감정의 기초로 된 자료, 감정을 진행한 방법과 감정에 이용한 설비, 시약, 감정결과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제3항).

같은 문제를 해명하는 데 여러 감정인이 참가하여 감정할 수도 있다. 그

42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68면.

들 복수의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따로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감정의 결과에 대하여 각 감정인은 개별적으로 책임진다. 그것은 감정의 결과가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과학적 결론이기 때문이다. 예심원은 각 감정인의 감정결론을 다 받고 과학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430)]

430)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4면.

제211조 (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 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211조는 감정인의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74조와 유사한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대응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II. 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감정할 수 없을 경우 감정을 맡긴 기관에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인은 피심자, 피소자, 증인 등 사건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담화할 수 없으며, 사건내용과 관련한 자료들을 주거나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431)]

감정인은 감정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해당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일군 선정은 감정을 의뢰한 일군이 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이 법 제258조[432)]에 따라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 선정된 전문일군에 대해서는 피심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

43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69면.

432) **제258조(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제212조 (감정인의 통고)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93조(피고인에 대한 감정인 의견 개진) 감정인 의견 및 의견개진 불가능에 대한 공지, 감정인 심문 기록은 스스로 설명을 할 권리를 가지거나 추가 질문을 감정인에게 요청하거나 보충 및 반복적인 감정인 조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공지된다. 위에 언급된 행위들의 실행은 피고인 심문기록에 언급된다.

본조는 피고인으로 기소하기 전 실행되는 감정인 조사 시 적용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 (2012년 개정)

제198조(司法鑑定의 지정 및 실시에 있어서 혐의자, 피의자, 피해자, 증인의 권리)

1. 司法鑑定을 지정 및 실시할 때 혐의자, 피의자 및 그의 변호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사법감정의 지정에 관한 결정서를 열람한다.

2) 감정인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거나, 다른 감정기관에서 사법감정을 실시할 것을 청원한다.

3) 자신들이 지정한 자를 감정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또는 특정한 감정기관에서 사법감정을 실시할 것을 청원한다.

4) 사법감정의 지정에 관한 결정서에 보충 질문을 기입할 것을 청원한다.

5) 사법감정의 실행에 예심관의 허락을 얻어 참여하고, 감정인에게 설명을 한다.

6) 鑑定結論書 또는 결론 도출 불가능에 관한 통보서를 열람하고, 감정인에 대한 신문조서도 열람한다.

2. 證人 및 被害者는, 그들에 대하여 司法鑑定이 실시되었을 경우, 그 감정결론서를 열람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46조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할 감정의견을 범죄피의자,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감정 또는 재감정을 할 수 있다.

Ⅰ. 개관

본조는 감정을 맡기는 사실에 관해 피심자, 피소자에게 통고해 주는 내용의 규정이다.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서부터 있어 온 규정이고, 우리 나라나 러시아, 중국 형사소송법에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다.

II. 감정인 선정의 피심자 통고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이 피심자, 피소자에게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말로 한다.

피심자, 피소자는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 법 제24조[433]에 따라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3일안으로 그 신청을 해결하여야 한다.

433) **제24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16조 ~ 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 예심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에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13조 (감정인심문)

감정을 맡긴 예심원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앞항의 경우 이 법 제232조, 제233조에 따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7조(준용규정)

전장(증인신문)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92조(감정인 심문) 예심원은 감정인 의견을 명확히 하거나 첨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인을 심문할 권리를 갖는다. 감정인 심문의 기록은 본법 제141조, 제142조에 언급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205조(감정인에 대한 신문)

1. 예심관은 자신의 발의로 또는 본법 제206조 제1항에 명시된 자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의 결론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하여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감정의 결론이 제출되기 이전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사법감정의 실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 당해 사법감정의 대상과 관계 없는 내용이라면/ 그 사항에 대하여 감정인은 신문받지 아니한다.
3. 감정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본법 제166조 및 제167조에 따라 작성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213조는 감정인심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규정된 내용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감정인심문제도는 우리나라나 러시아 형사소송법에도 유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Ⅱ. 감정인심문

감정인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넘겨받은 예심원은 감정결과가 명백하지 못하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제1항).

이와 같이 예심원이 감정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직접 불러 심문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정인심문이라 한다.

예심원이 감정인을 심문할 때에는 먼저 감정인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사항을 물어본 다음 필요한 질문을 한다.

특히 한 사건의 감정에 여러 감정인이 참가한 경우, 그들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들이 모두 자기의 의견을 말하게 한 다음 개별적으로

심문하거나 서로 맞대어놓고 심문(대질심문) 할 수 있다.[434)]

감정인을 심문하는 경우에는 증인심문에 대하여 규정한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제2항). 감정인을 심문하였을 경우 감정인심문조서를 만든다.

434)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4면.

제214조 (재감정)

감정에서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였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94조(보충 및 반복적인 감정인 조사 실행 및 준비 절차) 보충 및 반복적인 감정인 조사는 본법 제81조에 의거하여 준비되며, 제184조-제193조의 조건에 의거하여 실행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 (2012년 개정)**

제207조(보충감정 및 再鑑定)

1. 감정인의 결론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때, 그리고 旣 조사한 형사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새로운 의문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補充的 사법감정을 지정할 수 있다. 補充鑑定은 (1차 감정과) 동일한 또는 다른 감정인에게 의뢰한다.
2. 감정인의 결론을 입증하는 근거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정인이나 감정인들의 결론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 (1차 감정과)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再감정을 지정할 수 있다. 再鑑定은 다른 감정인에게 의뢰한다.
3. 보충감정 및 재감정은 본법 제195-205조에 의거 지정되고 실시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제214조는 재감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감정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재감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 형사소송법에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볼 수 있다.

Ⅱ. 재감정

감정결과를 검토한 예심원은 감정에서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감정결과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검토확인 되어야 사건해결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예심원이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과학성이 담보되지 못하였거나 의문이 생긴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경우 재감정 하는 이유를 감정맡김결정서에 밝혀야 한다.[435)]

43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0면.

제7절 수색, 압수

개 관

수색, 압수

북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이하에서는 예심절차에서의 수색 및 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심절차상 수색 및 압수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제216조). 수색 및 압수에서 절차상 요건으로 수색·압수결정서의 제시(제217조), 수색장소의 경비조치(제218조), 주간 수색·압수의 원칙과 긴급한 경우 야간 수색·압수의 허용(제219조), 수색·압수에서 2명의 입회인의 입회(제220조), 외국 대표부의 수색·압수시 외교적 절차의 준수(제221조)를 규정하고 있다. 압수의 대상은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으로 한정된다(제222조). 압수를 한 경우 압수품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붙이고 압수당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22조). 수색·압수가 완료된 때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그 대상의 위치와 상태, 특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23조).

제215조 (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7조(압수의 근거) 사건해결에 의의를 갖는 물건이나 서류에 대한 점유확보의 필요가 있고, 그 위치와 소지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 예심원은 압수를 실행하여야 한다.

국가기밀 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압수는 검사의 승인과 해당기관장의 동의 절차를 거쳐 실행한다.

압수는 예심원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168조(수색의 근거) 사건해결에 의의를 갖는 범행 도구, 범행에 의해 취득된 물건이나 귀중품 기타 물건이나 서류가 일정한 부지 또는 장소에 있거나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예심

원은 그 발견과 점유의 확보를 위하여 수색을 한다.

수색은 찾고 있는 사람과 사체의 발견을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수색은 검사의 승인 하에 예심원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 실행한다. 지체해서는 안될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없이 수색할 수 있으나 수색 후 1일 내에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70조(압수·수색의 절차) ··· 예심원을 압수를 실행할 때 압수결정서를 제시한 후 압수대상 물건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강제적으로 압수를 실행한다.

예심원은 수색을 실행할 때 압수결정서를 제시한 후 사건에 의의를 갖는 범행 도구, 범행에 의해 취득된 물건이나 귀중품 기타 물건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상물이 임의로 제출되었고 수색의 대상인 물건이나 서류가 은닉되었다고 우려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예심원은 더 이상 수색을 하지 않고 제출된 물건에 한정하여 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2조 수색을 집행하는 근거 및 절차

1. 수색 집행의 근거는 어떤 장소에 또는 어떤 자에게 범죄의 도구,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물건, 서류, 고가물이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자료의 존재이다.

5. 수색을 개시하기 전에 예심관은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색출해야 되는 물건, 서류 및 고가물을 자발적으로 건네줄 것을 제의한다. 만약 수색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자발적으로 제출되었고 그 물건들이 감추어져 있다고 우려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예심관은 수색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3조 압수를 집행하는 근거 및 절차

2. 압수는 본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본법 제18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79조 수사원은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범인 또는 범죄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신체, 물품, 주거지와 그 밖의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하여 수색을 할 수 있다.

제80조 모든 단체 및 개인은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1996년 형사소송법

제109조 수사원은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피의자 및 범죄자 또는 범죄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신체, 물품, 주거지와 그 밖의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하여 수색을 할 수 있다.

제110조 모든 단체 및 개인은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범죄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증거서류, 시청각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검증, 수색 중에 발견된 범죄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 및 문건은 압수하여야 한다. 사건과 관계없는 물품, 문건은 압수할 수 없다.

압수한 물품, 문건은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사용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예심절차에서 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수색, 압수의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항). 수색의 사유는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를 제시하고, 압수의 사유는 사건해결에 의의 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 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제2항).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예심을 구분하고 수색과 압수는 예심 절차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색과 압수의 목적 규정은 없이 수색·압수의 사유로서 예심원은 사건에 의의를 가진 물건 또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색 또는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제139조).[436] 아울러 예심원의 문서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제140조).[437]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원과 예심원 모두에게 수색, 압수의 권한을 부여하였다(제129조).[438] 제정형사소송법에 없는 수색과 압수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수색의 사유로서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30조).[439]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수색과 압수의 목적은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수색과 압수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였다(제216조).[440]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과 동일한 규정을

436) **제139조** 예심원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건에 의의를 가진 물건 또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리유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 강제처분으로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437) **제140조** 기관공무원, 개인 및 단체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에 관한 예심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438) **제129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자를 찾아내며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내고 고착시키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439) **제130조**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440) **제216조(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수 있다.

두고 있다(제215조).

예심절차상의 수색과 압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예심제도에서도 인정되고 있다.[441][442]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구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443] 수색, 압수의 목적이나 사유와 관련하여 사건해결에 의의를 갖는 물건이나 서류를 수색, 압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색, 압수 대상물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며, 수색이나 압수에 앞서서 임의제출의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적인 수색이나 압수를 한다는 규정 등은 러시아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

441) 북한의 예심제도는 구 소련과 중국의 예심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소련 즉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의 경우 기소전 조사절차(preliminary inquisition)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예심원에 의한 예심조사절차'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초기에는 구 소련의 영향과 손중산의 광주군 정부가 반포한 '형사소송률'에 따라 반혁명사건의 예심은 국가정치보위국이 담당하고 일반 형사사건의 예심은 검찰원이 담당하였으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전국적으로 공안기관이 설치되면서, 1958년 중국 공안부는 '예심 업무수칙'에 예심이 공안기관의 업무임을 명시하였고, 1979년 형사소송법은 법률적 차원에서 공안기관이 예심을 담당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손영조, 북한 예심제도의 변화와 의미, 현대북한연구, 2012, 80면 이하). 즉 형사소송법 제90조에서는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심하여야 하고, 수집하고 조사하여 취득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예심제도는 공안기관의 내부적인 업무분장으로 운용하고 있다. 즉 공안기관은 '정찰부문'과 '예심부문'을 구분하여 정찰부문은 외근업무 중심으로 초동수사를 진행하며, 예심부분은 내근업무 중심으로 정찰부문이 초동수사를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 학계는 공안기관의 예심제도(업무분장)가 공안기관 수사의 효율, 신속·기동성, 예심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고, 양 부문간 상호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법무부 통일법무과, 북한의 형사소송, 2면). 북한의 예심제도는 초기에 구소련의 예심제도를 받아 들여 검찰소가 일반 범죄에 대한 예심을 담당하였으나 1970년대 이르러 사회안전기관에도 예심부서를 두어 검찰소와 함께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손영조, 앞의 논문, 81면 이하).

442) 북한의 수사·예심제도는 러시아나 중국과 기본 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은 외근업무 중심으로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예심원은 내근업무 중심으로 정찰부문의 초동수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률적 검토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한다.

443) 강구진, 북한법연구, 152면.

중국 형사소송법의 경우 수색, 압수 대상물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제110조) 북한 형사소송법과 유사하다. 북한의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제출의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140조), 2012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수색, 압수의 의의 및 목적

수색이란 건물과 장소 또는 사람의 몸에서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과 문서를 찾아내거나 체포한 자를 찾아내는 소송상 강제행위이다. 압수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 또는 문서를 가지고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군인이 그것을 내놓으라는 법기관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시로 법기관의 관리하에 넣는 강제행위이다.[444)]

수색의 목적은 체포할 범죄자를 찾아내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고, 압수의 목적은 수색을 하며 찾아낸 물건, 문서를 고착하여 증거로 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수색과 압수는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수색은 그 대상이 있는 곳을 확고하게 알지 못하고 하지만 압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45)]

44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1면.
445)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57면.

Ⅲ. 수색, 압수의 사유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란 수색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확정되거나 상당한 정도로 의심이 가는 경우이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간다는 것은 체포할 범죄자가 어디에 숨어있다거나 증거물, 증거문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나타난 증거자료들을 연관시켜 볼 때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나 확정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재산착취범죄, 살인, 강간과 같이 범죄사건의 성격상 증거물, 증거문서가 있을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사건에서는 범죄자가 적발되면 그 자체가 수색의 충분한 근거로 된다. 또한 체포할 범죄자나 증거물, 증거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제출에 대한 법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수색의 충분한 근거에 속한다.[446)]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압수의 사유로 되는 예심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란 범죄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이 그것을 내놓거나 보여달라는 법인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44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1～172면.

제216조 (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

수색, 압수하려는 예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8조(수색의 근거) 사건에 의의를 갖는 범행 도구, 범행에 의해 취득된 물건이나 귀중품 기타 물건이나 서류가 일정한 부지 또는 장소에 있거나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예심원은 그 발견과 점유의 확보를 위하여 수색을 한다.

수색은 찾고 있는 사람과 사체의 발견을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수색은 검사의 승인 하에 예심원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 실행한다. 지체해서는 안될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없이 수색할 수 있으나 수색 후 1일 내에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2조 수색을 집행하는 근거 및 절차

1. 수색 집행의 근거는 어떤 장소에 또는 어떤 자에게 범죄의 도구,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물건, 서류, 고가물이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자료의 존재이다.
2. 수색은 예심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3. 주거에 대한 수색은 본법 제16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제183조 압수를 집행하는 근거 및 절차

1. 형사사건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특정한 물건 또는 서류를 압수할 필요가 있고, 그 장소 및 보관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압수할 수 있다.
2. 압수는 본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본법 제18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3. 국가기밀이나 기타 연방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밀을 내용으로 하는 물건 및 서류의 압수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 예심원이 집행한다.
4.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예금 및 계좌에 관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서류의 압수는 본법 제16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5. 압수를 개시하기 전에 예심원은 압수할 물건 및 서류를 넘겨줄 것을 제의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압수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수색, 압수에서 검사의 승인을 받을 것(제1항)과 수색이나 압수에서 수색·압수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50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승인 없이 예심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 수색·압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9조).[447] 그러나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수사일군이나 예심원이 수

447)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이 수사절차에서의 수색과 압수에는 검사의 승인을 요구하고 예심원의 수색과 압수에는 검사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색과 압수는 국가의 강권을 발동하여 진행하는 소송활동이다. 그러므로 수색과 압수를 정확히 하며 인권유린을 막기 위하여서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검사는 수사일군의 소송활동이나 예심원의 소송활동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예심원의 수색과 압수도 검사의 승인 밑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수색과 압수는 고유한 의미에서 예심의 한 형식이다. 이로부터 예심원의 수색과 압수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예심원은 수색과 압수를 하려고 할 때에 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일없다. 또한 수사일군이 수색과 압수를 하려면 반드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수사의 고유한 내용과 관련된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심문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면서 범죄자를 적발체포하며 증거를 수집고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과 사실을 놓고 그대로 고착시키는 소송활동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수사일군이 하는 수색과 압수는 벌써 국가강권을 리용하여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므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수사활동을 이렇게 리해하지 않고 수사일군들도 예심원과 똑같이 사람들을 심문하며 이러저러한 소송상강제

색, 압수를 할 때 모두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131조).[448]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수색과 압수에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제217조), 이는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압수는 예심원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 하고 있다. 수색의 경우 예심원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 하되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없이 실행하되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169조). 중국의 경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각자 독자적으로 수색 및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안기관의 예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수색·압수에는 인민검찰원이나 법원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449]

II. 검사의 승인에 의한 수색, 압수

예심절차에서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하여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따라서 수색, 압수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권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가 승인한 수색, 압수결정서가 없이는 수색, 압수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수색, 압수에 검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민의 헌법적 권리

수단을 다 발동하여 범죄자를 적발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수사에서 예심의 임무를 다 수행하여 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부르죠아형사소송에서의 수사와 다를 것이 없다. 때문에 공화국형사소송법에는 수사에서 수색과 압수를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설명한다(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3, 53면 - 54면).

448)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승인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는(동법 제65조), 역시 검사의 승인 없이 선체나 주거를 수색·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31조 제3항). 이처럼 검사의 승인 없는 수색·압수의 허용하는 것은 2004년이난 2012년의 개정형사소송법에는 없는 특색있는 규정이다.

449) 중국의 경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독립, 대등의 관계에서 수사책임을 분담하고 상호협조·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양자의 수사권한의 한계가 불문명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박종근, 중국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향후 과제, 법학연구 제37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36면).

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군이라 하여 저마다 자유롭게 수색, 압수를 하게 되면 공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수색 및 압수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영장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영장주의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활동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는 수사상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장주의의 핵심은 수사기관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원에 의한 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나 예심기관으로서 검사가 같은 수사나 예심기관에 대하여 적정한 통제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영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시절 항해조례에 따라 세무관리들이 일반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대한 반발로 법관에 의한 개별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수정헌법에 규정하였다. 우리 경우도 일제 식민지 시절 구속 등 강제처분을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조선형사령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영장주의가 도입되었고 이를 헌법에 규정하여 강제처분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통제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450] 영장주의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강제처분에 개입함으로써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451] 한국법상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강제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수단에 그치는 것은 영장주의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5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227면.
451) 김일수,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 193면 참조.

Ⅲ. 수색·압수결정서의 작성

예심원은 수색, 압수할 경우 수색, 압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수색·압수결정서 예 참조). 수색, 압수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 이름, 수색, 압수의 근거, 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결정내용에는 수색, 압수의 목적과 수색, 압수하여야 할 건물 또는 장소, 대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수색, 압수결정서에는 검사의 승인이 요구된다. 검사는 예심원이 제출한 수색, 압수결정서를 검토하고 그것을 승인할 수 있다. 수색, 압수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소송행위이므로 수색, 압수결정의 근거가 정당하면 검사는 즉시 승인해주어야 한다. 검사의 승인은 검찰소의 공인, 명관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검사는 수색, 압수결정서를 검토하고 그것을 취소할 수도 있다. 수색, 압수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규정된 사유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수색, 압수취소결정은 수색, 압수취소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수색, 압수취소결정서에는 날짜, 검사의 정당한 이유, 수색, 압수하려는 대상, 사건명, 취소결정내용과 이유, 소송법 조항을 밝히고 검찰소의 공인이나 명관을 찍어야 한다.[452)]

45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3면.

〈수색결정서, 압수결정서 예〉[453]

수색결정서(7)

1986년 7월 5일 평안북도 ㅅ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법 제174조 1항, 제180조에 해당한 범죄를 범한 범죄혐의자 백남건이가 도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7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름 백남건, 남자
생년월일 1935년 7월 3일(51살)
정당별 없음
난곳 함경남도 ㅈ군 잠지리
사는곳 평안북도 ㅅ군 읍 35반
직장직위 ㅅ군일용품수매상점 수매원
지식정도 중졸
가족관계
처 김금산 49살
정당별 없음
사는곳 ㅅ군 읍 35반
직장직위 부양
그밖에 미성년자 3명
친척관계
형 백남창 54살
정당별 없음
사는곳 함경남도 ㅈ군 잠지리
직장직위 ㅈ군 잠지협동농장 농장원
동생 백남호 49살
정당별 없음
사는곳 함경남도 ㅈ군 잠지리
직장직위 ㅈ군 잠지협동농장 농장원
삼촌 백영만 69살
정당별 로동당
사는곳 함경남도 ㅈ군 읍
직장직위 ㅈ군 식료공장 경비원
친우관계
친우 정남식 53살
정당별 로동당
사는곳 평안북도 ㄱ군 읍 5반
직장직위 ㄱ군 제약공장 로동자
친우 김명호 56살
정당별 로동당

453) 서류출처: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3면, 38 이하.

체격 및 인상의 특징

키는 1.74m, 몸은 약한편이며 얼굴은 긴형으로서 살색은 비교적 희고 코는 약간 들창코이며 이마는 좁은편이다.

의복은 아래우에 검은색 작업복을 입었으며 신은 의혁구두 41문, 걸음새는 뛸 때에 오른쪽다리를 약간 절름거린다.

말은 함경남도 사투리를 비교적 많이 쓴다.

① 이자를 수색체포하여 人군안전부에 구인한다.

②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결정서등본을 人군안전부장에게 보낸다.

예심원 최광선

이것을 승인한다.

人군검찰소 소장 정호남

※ 만약 피심자가 예심도중에 도주하였다면 수색결정서작성은 이 양식에 따른다. 그러나 범죄협의자가 숨어있는곳을 알고있을 때에는 수색결정서를 다음과 같이 만든다.

수색결정서(L)

1986년 7월 7일 평안북도 人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법 제174조 1항, 제180조에 해당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한 범죄협의자가 人읍 11반 정사준의 집에 숨어있다는것이 이 반 인민반장 정영숙의 신고에 의하여 확증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0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人읍 11반 정사준의 집을 수색한다.

②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결정서등본과 함께 구류의 보전처분 결정서를 人군안전부장에게 보낸다.

예심원 최광선

이것을 승인한다.

人군검찰소 소장 정호남

수색결정서(증거물)

1986년 7월 7일 평안북도 人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범죄협의자 백남건이가 읍 40반 김연하의 집에 침입하여 훔친 물건을 읍 5반 리충하의 집에 감추어두었다는것이 이 반 인민반장 연혜성의 신고에 의하여 알게 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평안북도 人군 읍 5반 리충하의 집을 수색한다.

예심원 최광선

이것을 승인한다.

人군검찰소 소장 정호남

압수결정서

1986년 11월 10일 평안북도 ㅅ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읍 35반 차성실의 신고에 의하여 형법 제70조 1항, 제145조, 제174조 1항, 제180조 사건의 피심자 백남건이가 수매자금을 횡령한데 대하여 적어둔 수첩 1개를 자기의 처 김금산에게 주었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김금산에게서 피심자 백남건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첩 1개를 압수한다.

예심원 최광선

Ⅳ. 검사의 승인 없는 수색, 압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심절차상 수색이나 압수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의 경우 검사의 승인에 의한 수색·압수를 원칙으로 하면서(북한 형사소송법 제137조), 예외적으로 검사의 승인 없이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수사원은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의 체포,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의 주거부정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42조).[454] 이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승인을 받을

454) **제142조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였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즉 수색·압수의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이다.[455] 이밖에 공민의 헌법상권리보장과 관련이 없는 장소에 대한 수색의 경우 검사의 승인이 필요 없다.[456]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45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9면.

45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2～173면.

제217조 (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 자에게 제시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308조(신분 증명)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지니고 그 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면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 제80조와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70조(압수·수색의 절차) 압수나 수색을 실행할 경우 예심원은 그 내용을 기재한 압수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예심원은 압수나 수색에 참여할 해당 전문가를 소환할 권리를 갖는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2조 수색을 집행하는 근거 및 절차

2. 수색은 예심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3. 주거에 대한 수색은 본법 제16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4. 수색을 개시하기 전에 예심관은 그 집행에 관한 결정서를, 본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서를 제시한다.

제183조 압수를 집행하는 근거 및 절차

2. 압수는 본조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본법 제18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81조 : 1996년 형사소송법 제111조와 동일

◇ **1996년 형사소송법**

제111조 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수색인에 대하여 수색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속 또는 체포를 집행하는 때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 따로 수색증 없이도 수색을 할 수 있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17조에서는 예심원이 수색, 압수를 함에 있어서 신분 증명서와 압수결정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색이나 압수 전에 수색압수의 대상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도록 이 조문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이 조문은 수색, 압수의 실행에서 사전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수색·압수에서 있어서 수색·압수 결정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고(제143조), 1992년 형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하였다(제132조).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색·압수 결정서 외에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의 제시가 추가되었고,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제217조).

러시아의 경우 수색이나 압수에 앞서서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70조). 중국의 경우 수색을 함에 있어서 피수색인에게 수색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중국 형사소송법 제111조). 수색증은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 등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발부한다.[457]

II. 신분증명서와 수색·압수결정서의 제시

예심원이 수색·압수를 실행할 때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수색, 압수를 당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세법(제308조), 출입국관리법(제82조) 등 특별사법경찰 분야에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예심원이 수색이나 압수를 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수색·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현행범체포 등 검사의 승인이 필요 없는 수색이나 압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면의 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458] 한국의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제시의 원칙은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헌법상 원칙으로서 요구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헌법 제12조 제3항). 이는 영장의 제시라는 일정한 형식을 거침으로써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시민에게 가시적으로 납득시킴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남용을 심리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459] 북한에서 압수수색결정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457) 현송학, 중국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제도, 법학논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78면.
45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174면.
45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230면.

Ⅲ. 수색, 압수 대상의 제출요구

수색을 실시할 경우 수색에 앞서 수색, 압수당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물건, 문서 또는 숨어있는 범죄자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경우는 대상물을 그대로 압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색에 의한 압수를 하게 된다.[460] 한국의 경우 임의제출과 수색, 압수 등 강제처분은 별개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수색, 압수에 앞서 임의제출 요구를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범죄사건의 성격, 수색을 받는 대상에 따라 물건 또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곧바로 수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한다.[461]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든 경우에는 수색, 압수당하는 자가 증거물, 증거문서 또는 숨은 범죄자를 자발적으로 내놓은 경우에도 수색,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색, 압수를 부당한 이유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북한형법 제210조).

460) 교활한 범죄자들과 연루자들은 전반적인 수색을 피하거나 보다 중요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관, 예심원의 요구에 스스로 응하는 양식을 취할수 있기 때문에, 수색, 압수당하는 사람이 증거물, 문서 또는 범죄자를 내놓는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수색을 그만두는 경향을 없애야 한다고 한다(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4면).

46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4면.

제218조 (수색장소의 경비조직)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9조(집행중의 출입금지)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 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70조(압수·수색의 절차) ··· 예심원은 수색이 행하여지는 부지나 장소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부지나 장소에 외부에서 도착한 사람에게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그 곳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들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의사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2조 수색을 집행하는 근거 및 절차

8. 예심관은 수색이 집행중인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떠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그들 서로간에 또는 (외부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83조 압수를 집행하는 근거 및 절차

2. 압수는 본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본법 제18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북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수색장소의 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수색 장소에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 이래 줄곧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에서는 내무원 기타 경비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제143조 제2항),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사회안전원 그 밖의 경비원을 세울 수 있게 하였으나(제133조),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경비인력을 예시하지 않고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 수 있게 규정하였고(제219조), 이는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에도 유지되고 있다(제218조). 러시아나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수색 장소에 경비가 필요한 경우란 수색당하는 자 또는 숨어있는 범죄자가 도주, 자살하거나 반항하여 증거물, 증거문서를 몰래 빼돌릴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비를 담당하는 필요한 성원은 인민보안원 그밖의 적절한 성원이면 되고 특별한 제한은 없다.[462)]

46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4면.

제219조 (수색, 압수의 시간)

수색, 압수는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내에 한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70조(압수 및 수색의 절차)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의 압수 및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64조(예심처분의 일반원칙)** 3. 야간에 예심처분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주간집행의 원칙 내지 야간집행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야간집행의 제한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 이래 줄곧 규정되어 있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제141조 제1항)과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제134조)에는 수색, 압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간에 행한다고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되었으나,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20조)에서 제1항에 주간집행의 원칙을, 제2항에 긴급한 경우 야간집행의 허용을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2012년 현행 형사소송법도 동일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제219조). 이러한 수색, 압수의 야간집행 제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인 러시아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1960년 러시아 형사소송법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의 압수 및 수색을 금지하였고(제170조), 2001년 러시아형사소송법은 긴급한 경우를 제

외하고 야간의 예심처분을 금지하여 압수 및 수색도 야간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제164조). 반면 중국 형사소송법은 야간집행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II. 수색, 압수의 야간집행 제한과 예외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219조 제1항에서 수색, 압수는 낮에 하는 것으로 하여 주간집행의 원칙을 규정하여 야간의 수색, 압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긴급한 경우란 때를 놓치면 숨어있는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463] 야간집행의 제한과 예외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야간집행의 제한과 예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야간의 범위를 일몰전, 일몰후로 규정하고 있고, 압수, 수색의 대상인 타인의 주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제125조), 야간집행의 예외로서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장소 및 공중출입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제126조).

46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5면.

제220조 (수색, 압수의 립회)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녀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9조(압수 및 수색의 입회인) 압수 및 수색의 집행 중에 예심처분에 대한 증인의 입회는 필수적이다.

수색 또는 압수의 집행 중에 수색 또는 압수가 행해지는 주거의 거주인 또는 그의 성인가족이 입회하여야 한다. 이들의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소 대표자, 지역집행위원회 대표자, 소비에트 노동자 거주지의 대표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 또는 단체의 거주 구역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은 당해 기관, 기업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입회하에 실행되어야 한다.

수색 또는 압수가 행해지는 주거의 거주인, 예심처분에 대한 증인, 대표자에게는 모든 예심처분에 입회할 수 있고 예심처분의 조서에 그의 진술을 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2조(신체수색) 신체수색은 수색대상자와 동일한 성별에 의해 시행되고, 수색자와 동일한 성별의 예심처분에 대한 증인의 입회 하에 시행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2조(수색의 사유 및 절차)

11. 수색의 집행시 수색이 집행되는 방실의 거주자 또는 그의 가족 중 성인이 참여한다. 수색의 집행시 수색이 집행되는 방실 거주자의 변호인과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다.

제184조(신체수색)

3. 신체수색은 피수색자와 같은 성별의 자에 의하여, 당해 예심처분에 참여한 같은 성별의 참고인 및 전문가의 입회하에서만 실시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82조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7조와 동일

◇ **1996년 형사소송법**

제112조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7조와 동일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7조 수색을 할 때에는 피수색인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그 밖의 현장증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부녀의 신체에 대한 수색은 여성담당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수색, 압수에서 입회 및 입회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색, 압수에서의 입회는 1950년 제정형법 이래 줄곧 규정되어 있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은 수색, 압수시 건물관리인 또는 인근인이 입회하고(제141조 제2항), 기관에 대한 압수시 그 대표자가 입회한다고 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하였다(제141조 제3항).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수색, 압수에서 2명의 입회,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압수시 그 대표자의 입회, 체신기관의 압수시 그 대표자의 입회, 여성에 대한 수색시 여성의 입회를 규정하였다(제135조).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은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였다(제221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체신기관에 대한 압수시의 입회를 삭제하면서 나머지는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제220조).

수색, 압수시의 입회는 러시아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1960년 러시아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입회, 주거의 거주인 또는 성인가족의 입회, 거주인의 입회 불능시 공동주택관리소 등의 대표자 입회, 기관, 기업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입회와 함께 입회인의 권리 등 비교적 상세하게 입회제도를 규정하는 외에(제169조), 동일한 성별에 의한 신체수색을 규정하였다(제172조). 2001년 러시아형사소송법은 수색시 거주, 성인가족, 변호인의 입회(제182조)와 수색대상자와 같은 성별의 자에 의한 실시와 입회를 규정하고 있다(제184조). 북한 형사소송법이 기관, 기업소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입회를 규정한 것은 1960년 러시아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형사소송법에도 입회제도는 규정되어 있다. 즉 1979년 형사소송법은 수색시 피수색인, 가족, 이웃 또는 현장증인의 입회와(제82조 제1항), 부녀에 대한 수색은 여성이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82조 제2항). 1996년 중국형사소송법(제112조)과 2012년 중국형사소송법(제137조)은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었다.

II. 수색, 압수시 입회 및 입회인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 압수할 경우에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제220조 제1항). 입회제도는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나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입회인을 2명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다른 특색이 있다. 증거물을 등록, 고착[464] 시킬 경우에도 해당 소송행위의 진행과정, 그리고 증거물의 출처와 고착한

464) 증거물의 등록이란 증거물의 출처를 밝혀놓는 것을 의미하며,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증거물을 찾았는가를 밝혀놓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물의 고착이란 증거물의 특징, 상태와 거기에 남아있는 흔적을 그대로 밝혀놓는 것을 의미한다(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1면).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목적 밑에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하는데(북한 형사소송법 제100조), 수색, 압수시 입회인은 이처럼 증거물의 등록, 고착시 입회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465]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입회시켜야 한다(제220조 제2항). 이처럼 대표자를 입회시키는 경우 입회인 2명중 1명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여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기관 사람이어야 한다.[466] 한편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제135조),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제147조),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21조)은 체신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편지, 전보 등을 수색, 압수하려 할 경우에 해당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입회시키도록 규정하였으나,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체신기관의 수색, 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에 동일한 규정을 두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여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여성을 입회시켜야 한다(제220조 제2항). 이처럼 북한 형사소송법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수색시 단순히 여성의 입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수색은 여성수사관, 여성예심원이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67] 그리고 여성수사관, 여성예심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기관의 여성일군 또는 믿을 수 있는 여성을 선발하여 수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색할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여성 입회인을 세울 경우 성인여성이어야 한다.[468]

---

465) 증거물 고착시 입회인은 법기관성원이 아닌 자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할수 있는자를 세워야 한다. 입회인을 세우지 않았거나 1명만 세웠을 경우에는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3면).

46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5면.

467) 중국 형사소송법은 여성 신체에 대한 수색시 여성의 입회가 아닌 여성에 의한 수색의 실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37조).

Ⅲ. 수색, 압수시 필요한 처분과 방법

북한 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수색, 압수시 입회에 대한 규정인데, 북한 교과서에서는 수색, 압수시 필요한 처분과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 조문에서 하고 있다. 즉 사람의 몸과 주택 같은 곳을 수색하는 경우 찾아내려는 물건이나 문서, 범죄자가 숨겨져 있을만한 곳을 만져보거나 열어볼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색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물건의 파괴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수색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을 서로 보이는 장소에서 나체상태로 수색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일이 없이 한다.[469]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수색에 있어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때에는 예심원은 잠근 문 및 기타를 필요 없이 파손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제144조),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고 현행 형사소송법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6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6면.

469) 2001년 러시아형사소송법은 예심처분시 폭력, 협박 기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예심처분에 참여하는 자의 생명, 건강에 대한 위험 야기를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64조 제4항).

제221조 (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하며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립회시킨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한국은 1970년 국회비준)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범죄수사규칙>

제234조(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2.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자

②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그 밖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자인지 그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5조(대·공사관 등에의 출입) 경찰관은 대·공사관과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당해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자가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공사관원이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6조(외국군함에의 출입) ①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당해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당해 군함의 함장에게 범죄자의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73조(외교공관에 대한 수색 및 압수) 외교대표부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만 외교공관의 구내 또는 외교사절 또는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구내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이 행해질 수 있다. 외교대표부의 동의는 외교부를 통하여 얻는다.

위의 구내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는 외교부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외국 대표부의 공관 및 주거에 대한 수색, 압수에 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외교공관 등의 수색, 압수에 대한 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 이래 줄곧 규정되어 있었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은 외교공관 등에 대한 수색, 압수시 외교대표자의 승인을 요구하고, 검사와 지방외무기관 대표자가 입회하도록 하였다(제142조). 반면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제136조)과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22조)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유사하게 수색, 압수는 외교적 절차에 따른다는 것과 검사, 대외사업일군 및 해당 대표부 대표자의 입회를 규정하였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의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외교공관의 수색, 압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1960년 러시아형사소송법에는 외교공관의 수색, 압수에는 외교대표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고, 외교부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입회를 규정하였다(제173조). 북한 형사소송법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II. 외교적 절차에 따른 수색, 압수 및 입회

북한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거나 물건 또는 문서 등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단순히 외교적 절차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외교대표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외교공관 등에 대한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검사가 참가하여야 하고,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이밖에 외교공관에 대하여 수색, 압수를 하려면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70]

47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6면.

제222조 (압수대상과 방법)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 이 경우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며 압수당한 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06조(압수) ①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 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71조(압수 및 수색시 물건 또는 서류의 취거) 압수 및 수색시 예심원은 사건에 관련된 물건 및 서류만을 취거하여야 한다. 유통이 금지된 물건 및 서류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취거의 대상이 된다.

취거된 모든 물건 및 서류는 예심처분에 참가한 증인 및 입회인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의 현장에서 봉인되어야 한다.

제177조(조서등본의 교부의무) 물품의 압수, 수색 또는 영치가 이루어지는 주거의 거주자 또는 그 성인가족, 그들의 부재시에는 지역집행위원회 대표자, 소비에트 노동자 거주지의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대표자에게 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물품의 압수, 수색, 영치가 기관, 기업 또는 단체의 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서의 등본을 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3조(압수의 사유 및 절차)

1. 형사사건에 의미있는 특정한 물건 또는 서류를 압수할 필요가 있고, 그 장소 및 보관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압수할 수 있다.
2. 압수는 본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본법 제18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제182조(수색의 사유 및 절차)

15. 조서의 사본을 수색이 집행된 방실의 거주자 또는 그의 가족 중 성인에게 교부한다. 수색이 단체의 방실에서 집행된 경우 조서의 사본은 당해 단체의 관리 대표자에게 서명을 받고 교부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84조 1996년 형사소송법과 동일(다만'피의자'가 '피고인'으로 규정됨)

제85조 1996년 형사소송법과 동일

◇ **1996년 형사소송법**

제114조 ① 검증 또는 수색 중에 발견된 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 및 문건은 압수하여야 한다. 사건과 관계없는 물품, 문건은 압수할 수 없다.

② 압수한 물품, 문건은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사용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115조 압수한 물품과 문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현장증인과 피압수 물품의 소지자와 공동으로 명확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2부 작성하여 수사원, 현장증인과 소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1부를 소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참조를 위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9조 수사활동 중에 발견된 범죄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각종 재물, 문건은 봉인, 압수하여야 한다. 사건과 관계없는 재물, 문건은 봉인, 압수할 수 없다.

봉인, 압수한 재물, 문건은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140조 봉인, 압수한 재물과 문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현장증인과 피봉인, 피압수 재물, 문건의 소지자와 공동으로 명확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2부 작성하여 수사원, 현장증인과 소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1부를 소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참조를 위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압수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수색과 별도로 압수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과 다르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에 관한여만 규정하고 압수의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또한 금제품 몰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제145조).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제138조),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23조)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압수의 대상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압수의 방법으로 압수품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형사소송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001년 러시아형사소송법은 압수대상의 사건관련성(제182조 제1항), 압수조서 사본의 교부(제183조 제2항, 제182조 제15항)를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중국 형사소송법은 압수대상의 사건관련성(제139조)과 압수목록의 교부(제140조)를 규정하고 있다.

II. 압수대상의 사건 관련성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압수의 요건으로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과 동일하다(제215조, 제1항, 제2항).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독약을 비롯하여 금지물을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관이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압몰수규정에 따라 몰수하여 정확히 등록하고 해당 취급기관에 넘겨주어 근거문건을 따로 보전하여야 한다.[471)]

북한 형사소송법이 압수의 요건으로 사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교과서에서는 별건압수도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수색과정에서 조사하는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으나 위법현상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이 명백히 확정되는 증거품, 증거문서가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다고 한다.[472)]

III. 압수품목록의 교부

물건과 문서를 압수하였을 경우에는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고 압수당한 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교부한다.[473)]

압수품목록에는 품명, 수량, 형태, 특징과 압수당한 자, 입회인, 압수한 자의 직장, 이름을 밝히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474)]

---

47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7면.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금제품의 압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는 사건과 관련없는 물건이라도 금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이것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145조).

47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7면.

473) 북한교과서에서는 압수물목록 2통을 만들어 1통은 압수당한 자에게 주고 1통은 사건기록에 붙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7면).

47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7면.

제223조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119조(압수조서 등) ①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0조(수색조서) ①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94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21조(증명서 교부) 경찰관은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95호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압수조서의 작성등) 제1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압수·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의한 증명서에 의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76조(물품의 압수, 수색, 영치에 대한 조서) 본법 제141조와 제142조에 따라 물품의 압수, 수색, 영치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조서 외에 특별보관을 위해 취거 또는 이전된 물건과 서류에 대한 특별목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물품의 압수, 수색, 영치에 대한 조서에는 본법 제169조상의 권리가 입회인에게 고지되었다는 것과 입회인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

취거된 물건 및 서류와 관련하여, 그것이 자발적으로 교부된 것인지, 강제로 빼앗긴 것인지, 그것이 발견된 장소와 상황이 조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취거된 모든 물건과 서류 및 기타 물품은 조서 및 첨부된 목록에 열거되어야 하고, 그것들의 수량, 크기, 무게, 특징 및 가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물품의 압수, 목록작성, 취거시 수색대상자나 기타의 자가 물건과 서류의 훼손 또는 은닉을 시도하거나 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조서에 그 사실과 그에 대한 조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2조(수색의 사유 및 절차)

12. 수색시 본법 제166조 및 제167조에 따른 조서를 작성한다.
13. 조서에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에서 물건, 서류 또는 재물이 발견되었는지,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또는 강제적으로 압수된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된 모든 물건, 서류 및 재물은 그 수량, 무게, 특징 그리고 가능하면 가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14. 수색의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 서류 또는 재물을 훼손 하거나 은닉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과 그에 대한 조치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3조(압수의 사유 및 절차)

2. 압수는 본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본법 제18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제166조(예심처분의 조서)

1. 처분의 調書는 예심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 또는 예심처분을 종료한 즉시 작성한다.
2. 조서는 수기로 또는 기술적인 수단으로 작성될 수 있다 . 예심처분 집행시에 速記, 사진촬영, 영화촬영, 오디오 및 비디오녹취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속기원고 및 속기록, 사진원판 및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녹취자료 등은 형사사건과 함께 보관된다.
3. 조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예심처분을 집행한 일자와 장소, 그 개시 및 종료시간을 분단위까지 정확하게,
   2) 조서작성자의 직책, 姓과 이니셜
   3) 예심처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姓, 이름 및 부칭(父稱), 필요시에는 그들의 주소와 기타 인적사항
4. 조서에는 그 소송행위를 집행한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예심처분집행시 밝혀진 당해 형사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과 예심처분에 참여한 자의 요구사항도 기재한다.
5. 조서에는 예심처분 집행시 적용된 기술적 수단, 이 를 사용한 조건 및 순서, 이러한 수단이 적용된 대상 및 얻어진 결과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조서에는 예심처분에 참여한 자들이 사전에 기술적인 수단의 사용에 대하여 예고 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조서는 그 수사처 분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열람토록 제시된다. 이때 열람자들에게 조서의 보완 및 정확성에 대한 소견을 조서에 기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다. 조서의 보완 및 정확성에 관하여 그 조서에 기재된 모든 의견은 그 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서명으로 증명되어

야 한다.

7. 조서에는 예심원 및 그 예심처분에 참여한 자들이 서명한다.

8. 조서에는 예심처분집행시 만들어진, 사진 원판 및 사진, 영화 필름, 透明陽畵, 訊問녹취록, 비디오 녹취카세트, 컴퓨터 정보매체 설계도, 평면도, 도식(설명도), 증적의 押型 및 印刻 등이 첨부된다.

9. 피해자, 그의 대리인, 증인과 그들의 근친, 친족 및 그들 과 가까운 자들 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때, 예심원은 피해자, 그의 대리인, 증인이 참여하는 예심처분의 조서에 그들의 인적 사항을 나타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심원은 검사의 동의를 얻어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서에는 이 들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심 한 이유를 기술하고, 예심처분 참여자의 가명(필명)을 적시하며, 서명의 견본을 나타낸다. 이 서명은 그의 참여하에 집행되는 수사 처분의 조서에 사용된다. 결정서는 봉투에 넣어서 봉인한 후 형사기록에 첨부한다.

10. 조서에는 예심처분 참여자들에게 본법에 의거한 그들의 권리, 의무, 책임 및 예심처분 집행의 절차를 설명한 것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예심처분 참여자들의 서명으로 증명된다.

제167조(예심처분조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이 불가능한 사실의 증명)

1. 혐의자,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예심처분에 참여한 자가 예심처분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 예심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고서를 작성 한다. 그 보고서는 예심원의 서명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 또는 수사처분에 참여한 참고인의 서명으로 증명된다.

2.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자에게는 그 거부의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해당조서에 기재한다.

3. 혐의자 , 피의자, 피해자 또는 증인이 신체적 결함 또는 건강상태로 인하여 조서에 서명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의 조서기록의 열람은 변호인, 법 정대리인, 대리인 또는 참고인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이들 입회인들의 서명으로 조서의 내용 및 서명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83조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8조와 동일

◇ **1996년 형사소송법**

제113조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8조와 동일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8조 수색의 상황은 조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수사원과 피수색인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그밖의 현장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피수색인 또는 그의 가족이 도주 중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조서에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색, 압수조서에 관한 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부터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은 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수색조서 작성과 수색의 순서에 따른 결과의 기재, 압수조서에 압수물건의 첨부 및 예심원과 입회인의 서명날인, 압수, 수색조서에 압수, 수색시 제기된 청구의 기재 등 산만한 형태의 규정을 두었다(제146조).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수색, 압수시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간단하게 규정하였다(제139조).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과 기재사항을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제224조), 2012년 개정형사송법은 동일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제223조).

수색, 압수조서에 대한 규정은 러시아와 중국형사소송법에도 존재한다. 1960년 러시아형사소송법(제176조)과 2001년 러시아형사소송법(제182조, 제183조)은 수색, 압수시 조서의 작성, 압수 장소나 상황, 압수물의 수량 등 조서의 기재사항, 수색, 압수의 방해와 그에 대한 조치의 기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9년 중국형사소송법(제83조), 1996년 중국형사소송법(제113조), 2012년 중국형사소송법(제138조)도 수색조서의 작성, 피수색인이나 그 가족, 이웃, 현장증인의 서명날인, 서명날인의 거절시 그 사실의 기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의무

수색, 압수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23조). 조서는 수색, 압수한 일군이 현장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수색이나 압수와 관련된 조서를 수색, 압수조서, 수색조서, 압수조서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수색, 압수조서는 수색과정에서 찾아낸 증거물을 압수하여 등록하는 조서이다. 수색, 압수조서는 수색, 압수결정서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증거물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한다. 수색을 하고도 해당 물건, 문서가 없다고 하여 조서를 만들지 않으면 그 물건, 문서를 찾아내기 위한 소송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475]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여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수색, 압수조서를 작성한다.[476]

다음으로 수색조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체포된 범죄혐의

47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8면.
47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2면.

자 또는 범죄자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였으나 증거물을 찾지 못하거나 공민의 헌법상 권리와 관계없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여 찾아낸 증거물을 등록하는 조서이다. 공민의 헌법상 권리와 관계없는 장소에 대한 수색은 해당 수사부서 책임자(도, 중앙기관)나 단체책임자의 비준이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수사원이 자의로 진행한 수색과정에 찾아낸 증거물은 수색조서가 아닌 증거물발견조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색조서는 공민의 헌법상 권리와 관계없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여 증거물을 찾지 못하였거나 범죄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한 경우에도 작성한다. 수색과정에 증거물을 찾아낸 경우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수색조서 대신에 현장검증조서를 만들 수도 있다. 이 때 현장검증조서의 서두에 증거물을 찾아낸 경위와 위치 등을 밝혀야 한다. 한편 압수조서는 수색은 하지 않고 압수한 증거물을 등록하는 조서이다.[477]

Ⅲ. 수색,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수색, 압수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서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즉 수색, 압수조서에는 수색, 압수의 과정과 절차에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북한 형사소송법에 열거된 사항 외에도 수색, 압수의 날짜, 수색, 압수한 일군의 직장, 이름, 수색, 압수를 한 장소, 소송법의 조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478]

---

477) 압수조서의 예로 수사원이 위탁수매상점에 있는 테레비존수상기가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증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내놓을데 대하여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압수결정에 따라 압수한 경우의 조서를 들 수 있다(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2면).

〈수색, 압수조서 예〉[479]

수색조서

1986년 7월 8일 평안북도 ㅅ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106~108조, 제112~113조의 절차를 지키면서 ㅅ군 읍 5반 김연옥과 차선애를 립회시키고 1986년 7월 7일 증거물수색결정서에 따라 리충하의 집을 수색하였다.

수색에는 집주인인 리충하가 참가하였다.

수색에서는 따로 붙인 목록과 같은 물건들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을 증거물로 첨부하기 위하여 압수하였다.

수색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수색은 9시에 시작하여 10시 30분에 끝났다.

이 조서를 읽어본바 옳게 기록되였다.

수색당한 사람 리충하
립회인 김연옥
립회인 차선애
예심원 최광선

압수조서

1986년 11월 10일 평안북도 ㅅ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ㅅ읍 40반 리연옥과 장금선을 립회시키고 형사소송법 제105~108조, 제111~113조의 절차에 따라 김금산에게 피심자 백남건이가 준 수첩을 내놓을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의견없이 수첩 1개를 내놓았다. 김금산이가 내놓은 수첩 1개는 증거물로 첨부하기 위하여 압수하였으며 그것을 예심원이 보관한다.

압수품목록 1통은 김금산에게 주었다.

증거물을 낸 사람 김금산
립회인 리연옥
립회인 장금선
예심원 최광선

47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8면.

479) 서류출처: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5면, 38면.

제8절 증인심문

개 관

증인심문

북한 형사소송법 제224조 이하에서는 예심절차에서의 증인심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증인'신문'이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북한의 경우 증인'심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증인의 자격 및 적격은 범죄 관련사항에 대한 경험자이다(제224조). 증인은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고, 조서에 기재, 수정, 삭제, 보충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제225조). 증인은 출석의무와 진실의 진술의무를 부담한다(제226조). 증인심문의 장소는 현지심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환심문을 할 수 있는데 소환은 소환장에 의한다(제22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증인을 구인할 수 있으며, 구인은 예심원이 결정하여 집행한다(제228조 제4항 내지 제5항). 조선말을 모르는 자에게는 통역인을, 벙어리나 귀머거리에게는 해석인을 붙인다(제229조, 제172조). 증인심문의 방법으로 개별적 심문과 상호연계금지(제230조), 14살 미만자의 경우 보호자 입회(제231조)를 규정하고 있다. 증인심문에서는 신분확인, 권리의무의 설명, 위증에 대한 제재의 고지가 이루어지고, 증인이 먼저 진술한 후 예심원이 질문한다(제232조). 증인심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33조).

제224조 (증인으로 될수 있는 사유)

증인으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들었거나 보았거나 느낀 것이 있는자가 될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480)]

제146조(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72조(증인으로 소환된 자) 당해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는 증언을 위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아래의 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정이 있을 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 때문에 사건의 의미와 관련된 사정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거나 그 사정을 올바르게 진술할 수 없는 자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사건의 참여는 그를 증인으로서 신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56조(증인)

1. 증인은 형사사건의 조사 및 결정에 의미있는 정황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소환된 자이다.
2.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신문은 본법 제187～19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증인으로 신문받지 아니한다.
   1) 판사, 배심원 – 당해 형사사건의 진행에 참여함으로써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2) 혐의자, 피의자의 변호사나 변호인 – 법률적 조력을 문의하거나 그 조력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3) 변호사 – 법률적 조력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4) 성직자 – 고해성사를 통하여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5) 연방의회 회원, 국가두마 의원 – 자신들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동 회원 및 의원의 동의 없이 신문당하지 않는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480)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증인심문(제310조 이하)이 이루어지는데, 예심절차의 증인심문 규정이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증거수집에서의 비중도 예심절차에 더 두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지고, 공판절차 전에는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증인은 예심절차 즉 공판절차 전의 단계에 관여하는 자이므로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참고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심절차나 재판절차 모두 증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증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에는 없었고,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여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정신병, 신체적 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나 변호인 등을 증인결격자로 규정하였다(제140조). 이는 1960년 러시아형사소송법규정(제72조)과 유사하여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은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제225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도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였다(제224조).

다른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의 경우 증인자격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60년 러시아형사소송법은 당해 사건에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를 증인적격자로 규정하고, 변호인과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이해능력이나 진술능력이 없는 자를 증인결격자로 규정하였다(제72조). 2001년 러시아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조사 및 결정에 의미있는 정황을 알고 있는 자를 증인적격자로 하고, 판사, 변호인, 성직자, 연방평의회 회원 등을 증인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제56조). 한편 중국형사소송법에는 증인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제184조 이하)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제221조의2 이하)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절차상 증인심문에 관한 규정은 5개에 불과하고(제310조 ~ 제314조) 예심절차에서의 증인심문에 관여하는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예심절차상 증인심문에 관한 법규정에 대응하는 조문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상의 증인심문에 법규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남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서로 비교해 본다는 측면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비교조문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II. 증인의 자격과 결격

증인이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알고있는 것을 법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인은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다. 해당 범죄사건의 조사처리에 이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자를 포함하여, 미성인, 외국인은 물론 범죄자의 가족, 친척도 증인으로 될수 있다.[481] 이처럼 증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북한교과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에서 범죄와의 투쟁은 사법검찰일군들만이 아니라 전체 인민대중이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해야 할 사업이고, 이러한 범죄와의 투쟁에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의 자격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482]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자격과 함께 증인결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해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은 자기가 맡은 사건에서 증인으로 될 수 없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2조 전단, 제17조). 이들은 사건을 맡아 취급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그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범죄사실을 가공하여 말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증인의 의무와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그들이 사건제기 전부터 범죄사실과 범죄자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하여 증인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그 사건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이밖에 해당 사건의 피심자는 동시에 증인으로 될 수 없다. 피심자심문이건 증인심문이건 다 같이 해당 사건의 증거를 찾아내는 지위에 놓고 똑

48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8～179면.
482)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72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밝힐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결함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이해 할 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자는 증인으로 될 수 없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2조 후단). 귀머거리는 들은 사실을 전달해야 할 사건에서 증인으로 될 수 없으며 소경은 보고 느낀 사실을 전달해야 할 사건에서 증인으로 될 수 없다.[483)]

483)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72면.

제225조 (증인의 권리)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0조(증인심문기록) 제3항 증언이 완료되면 증언 기록은 증인이 읽거나 증인의 요청에 따라 예심원이 대신 읽어준다. 증인은 증언에 첨언이나 수정을 요구 할 권리를 가진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56조 증인

4. 증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

   1) 자기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및 본법 제5조 제4호에 정해진 근친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이 진술하기로 동의한 때에는 그의 진술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중에 부인하는 경우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 모국어 또는 자신이 능통한 언어로 진술할 수 있다.

   3) 무료로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자신의 신문에 참여한 통번역인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5)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수사관/예심원/검사 및 법원의 처분(부작위) 또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6) 본법 제89조 제5항에 의거 변호인과 함께 신문에 출석할 수 있다.

   7) 본법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신변안전조치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5. 증인은 강제적인 사법감정 및 신체검사를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법 제1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0조(신문조서)

6. 신문을 종료 후 조서를 피신문자에게 읽을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또는 그의 요청에 따라 예심원이 낭독하고, 이러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한다 . 조서의 보충이나 정정에 대한 피신문자의 요구는 반드시 들어 주어야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제38조 변호인인 변호사와 그 밖의 변호인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증거를 은닉, 훼손, 위조하거나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되고, 증인을 위협, 유인하여 증언을 바꾸게 하거나 위증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 밖의 사법기관의 소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전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99조 본법 제95조의 규정은 증인신문에도 적용한다.

제95조 신문조서는 범죄피의자에게 교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읽을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낭독하여 주어야 한다. 기재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는 보충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에 잘못이 없음을 인정한 후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사원도 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원도 범죄피의자에게 자필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42조 변호인 또는 그 밖의 누구라도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증거를 은닉, 훼손, 위조하거나 공모하여 허위진술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되고, 증인을 위협, 유인하여 위증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 밖의 사법기관의 소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전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에 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취급하는 수사기관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처리한다. 변호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그의 변호사 사무소 또는 소속된 변호사 협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 본법 제120조의 규정은 증인신문에도 적용한다.

제120조 1996년 형사소송법 제95조와 동일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증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진술강요금지와 조서에 대한 각종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증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었다.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이후(제144조),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29조)과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25조)은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었다. 다만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증인'심문'이 아닌 증인'신문'이란 용어를 썼으나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이 심문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또는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조서에 대한 권리로서 진술의 수정 또는 첨가의 요구를 규정하였으나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과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수정, 삭제, 보충의 요구로 표현을 바꾸었다.

사회주의국가인 러시아의 경우 증인의 권리로서 모국어로 진술할 권리, 청원권 등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진술강요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기, 배우자 또는 근친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2001년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56조 제4항 제1호). 또한 조서의 보충과 정정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2001년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항). 중국에서도 위협, 유인에 의한 위증금지와 조서에 대한 보충 및 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2012년 중국 형사소송법 제42조, 제124조).

II. 증인에 대한 진술강요금지, 조서에 대한 권리

증인에 대하여는 진술의 강요가 금지되어,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된다. 증인심문에서의 기본은 증인을 설득하여 자기 스스로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의 강요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술강요금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형법은 증인협박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거짓진술을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북한형법 제225).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편 증인은 조서작성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즉 증인은 자기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수정, 삭제,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증인은 자기진술의 정확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술을 직접 조서에 쓸 수 있다. 또한 증인은 예심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견이 있을 경우 조서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심원은 증인의 요구가 정당할 경우 조서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해주어야 한다.[484)]

48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1면.

제226조 (증인의 의무)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예심원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73조(증인의 의무) 증인은 수사원, 예심원, 검사 또는 법원의 소환하는 경우 출석하고 진실하게 진술하며, 그가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수사원, 예심원, 검사 또는 법원은 강제출석하도록 할 권리를 갖는다.

증언의 거부 또는 회피시, 증인은 소베에트연방(RSFSR) 형법 제182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고, 고의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소베에트연방 형법 제181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진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56조 증인

6. 증인은,

1) 수사관 /예심원 /검사 및 법원의 소환에 따른 출석을 기피할 수 없다.

2)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수 없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없다.

3) 형사사건의 진행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득한 예비조사 사항을, 본법 제16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이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면, 이를 누설할 수 없다.

7.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기피한 경우에 증인은 강제소환을 당할 수 있다.

8. 악의적인 허위진술 및 진술거부에 대해서, 증인은 러시아연방 형법전 제307조 및 제308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9. 예비조사 사항의 누설에 대해서, 증인은 러시아 연방형법전 제310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68조 2012년 형사소송법 제123조와 동일

◇ **1996년 형사소송법**

제98조 ① 2012년 형사소송법 제123조와 동일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23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증인에게 사실대로 증거제공 및 증언을 해야 하고,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은닉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26조 출석의무, 진술의무 등 증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출석의무(제142조)와 진실증언의무(제143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도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었다(제227조, 제228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도 위의 두가지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다(제226조).

러시아의 경우 1960년 형사소송법에서 출석의무와 진실의 증언의무와 함께 증언거부와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제73조), 2001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출석의무와 진실의 증언의무 외에 예비조사 사항의 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하였고(제56조 6항), 출석거부에 대하여는 강제소환, 진술거부 및 허위 증언, 예비조사 사항의 누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규정하였다(제56조 제7~9항). 중국의 경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사실대로 증언할 의무와 위증에 대한 처벌을 고지하도록 하여(제123조), 증인의 진실증언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6년 형사소송법과 1979년 형사소송법도 동일한 규정을 두었다.

Ⅱ. 증인의 출석의무, 진실증언 의무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인정된다. 즉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또한 증인은 진실의 증언의무를 갖게 된다. 즉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하고, 예심원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우선 증인에게 진술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

인적 사정 등을 구실로 범죄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증인은 진실하게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부정확한 증언으로 인하여 범죄사건 해결에 혼란을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증인심문은 예심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증인의 답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인은 예심원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26조).[485] 이처럼 공판전 단계에서 일종의 참고인에게 진실하게 증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예심기관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거짓진술죄로 처벌된다. 즉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북한형법 제224조).

485) 조선 형사소송법, 2004, 180면.

제227조 (증인심문장소)

증인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57조(증인심문장소) 증인 심문은 수사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예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증인이 있는 곳에서 심문을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7조(訊問의 장소 및 시간)

1. 신문은 예비조사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실시된다. 예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문자의 소재지에서 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67조 1996년 형사소송법 제97조와 동일

◇ **1996년 형사소송법**

제97조 수사원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소속 단위 또는 거주지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에게 통지하여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22조 수사원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의 소속 단위,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서 이을 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에게 통지하여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현장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집행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증인의 소속단위,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서 증인을 신문할 경우에는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27는 증인심문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증인심문의 장소에 관한 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에는 없었고,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제141조)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이후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1960년 형사소송법(제157조)과 2001년 형사소송법(제187조)에서 증인심문의 장소로서 수사가

진행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의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79년 형사소송법(제67조)과 1996년 형사소송법(제97조)에서는 북한과 동일하게 증인의 소재지(증인의 소속 단위 또는 거주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소환하여 심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2년 형사소송법(제122조)에서는 현장 또는 증인의 소재지(증인의 소속 단위 또는 거주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환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50조의2, 제221조의2 제5항), 예외적으로 법정외 소환 또는 현재지 신문(제165조), 지정된 장소에의 동행명령(제166조)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제221조 제1항), 현재지 등에서의 조사는 예외로 하고 있다.[486]

Ⅱ. 증인의 소재지 심문과 소환 심문

북한에서 증인의 심문은 증인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27조 제1항). 이처럼 소재지 심문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생생한 증거들을 제 때에 모조리 찾아낼 수 있다거나,[487] 증인이 있는 장소에서 심문하여야 증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증인들을 만나 증거를 제때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488] 따라서

48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5, 278면.

487)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73면 ;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38면. 이처럼 현재지에서의 증인심문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방법을 형사사건 취급처리활동 분야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한다(저자 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34면).

48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9면.

예심원들은 증인이 살고 있는 현지에서 증인심문을 할 때 그들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489] 한편 이러한 소재지심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한 경우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48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79면

제228조 (증인의 소환 및 구인)

증인을 해당 장소에서 심문하려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5조(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

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55조(증인소환절차) 증인은 소환장의 전달 및 수령을 통해 예심원에게 소환되며, 그가 일시 부재중일 때에는 그의 가족 또는 주거지 관리인, 직장 담당부서, 소비에트 농촌 및 거주지 노동자 집행위원회 등 성인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수령된다. 소환장은 반드시 출석 전 또는 불출석 시 증인으로 소환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소환장에는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 소환 기관, 출석 일시, 불출석 시 불이익이 명시되어야 한다. 증인은 전신 또는 서신(written telephone message)을 통해 소환될 수도 있다.

제156조(16세 미만의 증인소환절차) 16세 미만의 증인소환은 그의 부모 혹은 기타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건의 정황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8조(訊問에 소환하는 절차)

1. 증인, 피해자는 출석요구서(소환장)로 訊問에 소환된다. 출석요구서에는 누구를, 어떤 자격으로 소환하는지, 누구한테, 어떤 주소로 소환되는지, 신문의 일자와 시간,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등을 명시한다.
2. 소환장은 신문에 소환되는 자에게 그 수령증을 받고 교부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달된다. 訊問에 소환되는 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 소환장은 그 가족의 성인에게 교부되거나, 그가 근무하는 직장의 행정부서에, 또는 예심원의 의뢰에 따라 소환되는 자에게 소환장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者나 기관에 전달된다.
3. 訊問에 소환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불출석시에는 그 이유를 사전에 예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訊問에 소환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소환을 당하거나, 기타 본법 제111조에 규정된 소송상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4. 16세 미만의 자는 그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근무지나 교육기관의 행정부서를 통해서 訊問에 소환된다. 그 밖의 다른 소환 절차는 형사사건의 정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5. 군인은 군부대의 지휘부를 통해서 신문에 소환된다.

제111조 기타 소송상 강제조치를 적용하는 근거

2. 본법에서 규정된 경우에 수사관/예심원/검사 또는 법원은 피해자/증인/민사상원고/민사상피고/감정인/전문가/통번역인/참고인에게 다음의 소송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출석서약서
   2) 강제소환
   3) 징벌금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28조는 증인심문을 위한 증인의 소환 및 구인에 대한 규정이다. 이러한 증인의 소환 및 구인에 대한 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 이래 줄곧 규정되었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은 구류기관의 책임자를 통한 소환과 구류장소에서의 신문을 규정하였다(제127조, 제102조). 1992년 형사소송법은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 때에 와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인소환은 규정하였으나 소환장에 의한 소환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구인을 규정하였으나 그 집행은 사회안전기관 또는 국가보위기관이 하도록 하였다(제142조). 2004년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소환은 규정하였으나 소환장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구인과 함께 구인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구인의 집행은 예심원이 하도록 하였다(제227조). 러시아의 경우 1960년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에 의한 송달은 규정하였으나 불출석시 구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제155조). 2001년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에 의한 송달(제188조 제1항)과 불출석시 구인 외에 출석서약서, 강제소환, 징벌금의 강제조치를 규정하였다(제188조, 제111조). 또한 16세 미만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을 통한 소환 등을 규정한 것이 특이하다(제118조 제4항). 중국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의 소환 및 구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증인소환을 위해 소환장, 전화, 전자우편 그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하도록 하고 있다(제150조의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으며(제152조), 구인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55조, 제81조). 수사상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다.

Ⅱ. 증인의 소환 및 구인

증인을 그 소재지에서 심문하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심문하려 할 때에는 증인을 그 곳에 소환한다. 소환의 방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법 제228조 제1항) 말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다.[490] 예심원이 증인을 소환하면 지정한 장소, 시간에 출석하는 것이 증인의 의무이다. 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법 제228조 제2항). 즉 예심원은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인결정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165조에 규정된 피심자구인결정서 작성방법에 따라 만든다. 증인의 출석의무를 면하게 하는 정당한 이유는 당 및 국가적 행사, 병, 기타 사고로 오지 못한 경우 등에 인정된다.[491]

49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0면.
49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0면.

구인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집행한다(법 제228조 제3항). 증인을 구인할 경우에는 증인에게 구인결정서를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증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의 구인은 북한 형사소송법 제164조에 규정된 피심자구인방법에 따른다.[492] 증인을 구인한 경우에는 증인심문조서내용에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의 구인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제227조),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

49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0면.

제229조 (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벙어리, 귀머거리증인심문)

조선말을 모르는자, 벙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이 법 제172조에 따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34조(통역인 참여) 본법 제17조, 57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예심원은 심문 및 기타 예심활동에 통역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통역인이 참여하는 예심활동 개시 전, 예심원은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 경고하며, 이는 당해 예심활동기록에 기록되며 통역인의 서명으로 인증한다.

제17조(재판 진행 언어)

재판 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진술, 증언, 재판에서의 발언, 청원 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권리와 현행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의해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9조 신문을 행하는 일반적인 규칙

1. 신문을 개시하기 전에 예심원은 본법 제164조 제5항에 규정된 요구사항

을 이행한다. 피신문자가 형사사건이 수행되는 언어에 능통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예심원은 피신문자가 어떤 언어로 진술하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한다.

제169조 통역인의 참여

1. 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심원은 본법 제164조 제5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통역인을 수사처분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통역인이 참여하는 수사처분에 착수하기 전에 예심원은 그의 전문성(권한/자격이 있는지 여부)을 확인하고, 본법 제59조에 규정된 권리 및 책임을 통역인에게 설명한다.

제18조 형사절차의 언어

2. 형사사건 처리에 사용되는 언어에 능통하지 않거나 충분히 능통하지 못한 형사절차 참여자에게는 모국어 또는 그들이 능통한 기타 언어로 신청하고, 해명하고, 진술하고, 청원하고, 상소하고,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법정에 발언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무료로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조선말을 모르거나 농아자인 증인에 대한 심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을 심문할 때 통역인을 붙이고, 농아자를 심문할 때 해석인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은 1950년 제정 형사소송법 이래 북한 형사소송법에 줄곧 존재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1960년 형사소송법은 재판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의 심문에 통역인을 참여시키도록 하였고(제134조), 2001년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처리에 사용되는 언어에 능통하지 않은 자에 대한 수사처분에 통역인을 참여시킬 수 있게 하였다(제169조). 이처럼 러시아 형사소송법은 통역인의 참여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농아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편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통역인이나 해석인의 참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Ⅱ. 증인심문과 통역인, 해석인의 참여

조선말을 모르는 자, 벙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피심자심문에 관한 규정(제172조)에 따른다(법 제229조). 즉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증인을 심문할 경우에는 통역인을, 벙어리, 귀머거리인 증인을 심문할 경우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인을 붙인다(법 제229조, 법 제172조).

통역인과 해석인이 증인심문에 참여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경고는 조선말을 모르는 자나 농아자 그리고 통역인과 해석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즉 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벙어리, 귀머거리증인에게 거짓진술을 하

면 거짓진술죄(북한형법 제236조)로 처벌된다는 것을 통역인과 해석인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통역인과 해석인에게도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493]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49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2면.

제230조 (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58조(증인심문절차) 동일한 사건에 소환된 증인들은 다른 증인들이 없을 때 개별적으로 심문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예심원은 동일한 사건에서 증인간 상호 연락을 막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89조 신문을 행하는 일반적인 규칙

2. 유도신문은 금지된다. 다른 점에서는 예심원이 자유롭게 신문기법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97조 ① 생략

② 증인심문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1996년 형사소송법**

제97조 ··· 증인신문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22조 ··· 증인신문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증인신문의 개별화와 증인상호간 연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 이래 줄곧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었다.[494] 러시아의 경우 1960년 형사소송법은 개별적 증인심문과 증인상호간의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여(제158조) 북한 형사소송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2001년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은 없다. 중국의 경우 1979년 형사소송법 개별적 증인심문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제97조), 이후 1998년 개정형사소송법(제97조)과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122조)에도 동일한 규정을 두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증인 각자에 대한 심문(제162조 제1항)과 다른 증인의 퇴정에 대한 규정(제162조 제2항)이 있다.

Ⅱ. 증인에 대한 개별심문과 상호연계의 금지

증인의 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230조 제1항). 이는 같은 사건의 증인들이 서로 다른 증인들이 말한 것

494)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 제128조, 1992년 개정형사소소법 제146조, 2004년 개정형사송법 제231조.

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보고 느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495] 또한 예심원은 증인의 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연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여러 증인들을 심문하려 할 경우 그들이 서로 연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30조 제2항). 이는 증인들이 서로 짜거나 다른 증인의 말에 영향을 받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인을 부를 때부터 서로 연계를 가질 수 없게 하여야 하고 대기시켜 놓을 때에도 따로따로 대기하게 하여야 한다.[496]

49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38면.
49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2면.

제231조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심문)

14살에 이르지 못한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59조(미성년증인의 심문) 14세 이하의 증인과 예심원의 재량으로 14세에서 16세까지의 증인 심문할 때에는 그의 담임교사를 소환한다.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도 또한 소환된다.

심문 개시 전 그러한 사람의 권리 및 의무를 그들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는 심문 기록에 남는다.

명시된 사람들은 심문에 출석해야 하고, 예심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예심원은 질문을 배제시킬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배제된 질문의 경우 기록으로 남는다. 심문완료에 따라 참석한 사람들은 증언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 서명을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1조(미성년의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의 특수성)

1. 만 14세 미만의 피해자 및 증인의 신문, 그리고 예심원의 재량으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피해자 및 증인의 신문은, 아동교육전문가의 참여하에 이루어진다. 미성년(만 18세 미만)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문시에는 그의 법적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다.
2.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 및 증인에게는 진술 거부 및 악의적인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경고하지 아니한다. 위 피해자 및 증인에게 본법 제42조 및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들의 소송상 권리를 설명할 때, 진실을 말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의시켜야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제98조 ① 생략

② 만 18세 미만의 증인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입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14살 미만자에 대한 증인심문시 교원 등 보호자의 입회에 대한 규정이다. 나이 어린 자에 대한 증인심문시 보호자의 입회에 대한 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 이래 줄곧 존재하였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은 유년 또는 소년인 증인의 심문에 교육기관의 대표자를 입회하도록 하였다(제131조).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의 심문시 교원,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입회하도곡 하였고,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2조)과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1조)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었다. 러시아의 경우 1960년 형사소송법은 14세 미만인 증인의 심문시에는 필요적으로 14세 이상 16세 이하인 증인의 심문에서는 예심원의 재량으로 담임교사를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근친도 참여시킬 수 있게 하였다(제159조). 2001년 형사소송법에서는 14세 미만의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심문에서는 필요적으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심문에서는 예심원의 재량으로 아동교육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아울러 법정대리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제191조). 중국의 경우 1979년 형사소송법에는 보호자의 참여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1998년 형사소송법에 18세 미만의 증인에 대한 신문에 법정대리인의 참여를 규정하였으나(제98조), 2012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증임신문에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자가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제163조의2 제2항).

II. 14살 미만 증인의 심문과 보호자의 입회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연령에 따른 증인적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4살 미만자도 증인이 될 수 있다.[497] 예심원은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를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에는 그가 거짓말을 하면 나쁘다는 것을 입회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심문조서에 밝혀야 한다. 북한형법에서 형사책임연령은 14살이기 때문에 14살 미만자의 증인심문에서는 위증에 대한 형사책임을 고지하지는 않는다.[498]

14살 미만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법 제231조). 이는 이들이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심문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499] 입회인은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들 가운데서 사건해결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을 1명만 세워도 된다.[500]

미성년자에 대한 심문은 가능하면 그들의 학교, 유치원 또는 가정에서 실시하며 묻는 말이나 태도도 될수록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501] 증인심문을 마친 후 조서내용에 대한 확인은 입회인이 하고 입회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502]

---

497)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으로 될 수 있는 나이 즉 연령에 의한 증인적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발육정도, 사물현상을 분석평가하고 전할수 있는 능력, 증언을 통하여 밝히고 확정하려는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0～141면.).

498) 저자 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34면.

499)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1면.

50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3면.

50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1면.

50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3면.

제232조 (증인심문절차)

증인을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선서의 방식)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58조(증인심문절차)

심문 전 예심원은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의 의무를 설명하고 심문 거부 및 증언 회피, 거짓 증언에 대한 책임을 경고한다. 그러한 결과는 기록으로 남고 증인의 서명으로 인증 받는다.

예심원은 16세 미만의 증인에게 자신이 사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지만, 증언을 거부하거나 회피 혹은 거짓 증언에 대한 책임을 경고하지 않는다.

심문개시 시, 예심원은 증인의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심문받는 자의 성격에 대한 기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성질에 대한 심문은 증인에게 심문소환과 관련된 모든 정황에 대해 그에게 알려진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개시한다. 증인의 설명 후 예심원은 그에게 질문한다. 유도심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64조 수사처분을 집행하는 일반 원칙

5. 예심원은 본법 제6-8절에 규정된 형사사법절차의 참여자를 수사처분에 참여시킬 때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 및 해당 수사처분의 집행절차를 설명한다. 수사처분 집행시에 피해자/증인/전문가/감정인/통번역인이 참가한 경우에 그들에게 러시아연방 형법전 제307조(허위진술), 제308조(증인,피해자의 진술거부)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에 대해서 경고되어야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68조 1996년 형사소송법 제98조와 동일

◇ **1996년 형사소송법**

제98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증인에게 사실대로 증거제공 및 증언을 해야 하고,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은닉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23조 1996년 형사소송법 제98조와 동일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증인의 동일성 확인 등 증인심문의 준비절차와 증인심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이러한 증인심문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 이래 계속 존재하였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은 증인의 동일성 및 소송당자와의 관계 확인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책임의 경고 등의 증인심문 준비절차(제129조)와 증인의 진술 후 예심원의 질문과 같은 증인심문의 순서를 규정하였다(제130조, 제110조).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제148조, 제149조, 제98조, 제99조),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3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2조)에도 표현과 조문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내용은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1960년 형사소송법에 증인의 신분확인과 허위진술에 대한 경고, 증인의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보 확인, 증인의 진술 후 예심원의 질문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제158조), 20011년 형사소송법에서도 증인의 인적 사항 확인, 권리와 의무 및 절차의 고지, 허위진술과 진술거부에 대한 형사책임의 경고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제164조). 중국의 경우 1996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위증 및 진술거부의 형사책임에 대한 경고를 규정하였으나 1979년 형사소송법과 2012년 형사소송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우리의 경우 증인의 동일성 확인(형사소송규칙 제71조), 위증벌의 경고(형사소송법 제158조), 증언거부권의 고지(형사소송법 제160조)를 규정하고, 증인의 증언 후 재판장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Ⅱ. 증인심문의 준비절차

예심원은 증인을 심문할 경우 먼저 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232조). 이 때 증인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증인심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503] 그리고 증인에게 심문하는 이유와 증인의 의무와 권리를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아울러 증인에게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236조에 따라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법 제232조).

Ⅲ. 증인심문의 순서 및 방법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 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232조 제2항). 증인심문의 순서는 증인이 먼저 증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심원은 보충적인 질문을 하

50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4면.

도록 하고 있다. 예심원의 보충질문은 증인이 말하지 않았거나 빼놓은 것을 보충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회상시키는 것 같은 질문을 하여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진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504]

한편 증인심문에서는 진술의 강요나 유도, 위협하거나 얼리우는 방법으로 진술하게 해서는 안된다. 증인은 범죄자가 아니며 범죄사건을 적발하고 조사확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방법이 없어야 증인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505]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선서에 의한 위증처벌의 경고는 강압과 위협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제도의 부패성과 포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북한학자도 있으나,[506] 북한 형사소송법과 형법[507]에도 위증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증죄의 고지와 서약을 한다는 점에서[508]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50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4면.

505)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73면 ; 저자 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34면.

506) 리창세, 위의 책, 73면.

507) **북한형법 제224조(거짓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508)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0면.

제233조 (증인심문조서의 작성)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3조, 제17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0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0조(증인심문조서) 본법 제141조, 제142조, 제159조에 의거하여 증인심문과 관련한 조서를 남긴다.

증인의 증언은 1인칭 시점으로 서면으로 작성되며 가능한 한 진술 그대로 기록된다. 증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서면으로 기록된다.

증언이 완료되면 조서는 증인이 읽거나 증인의 요청에 따라 예심원이 대신 읽어준다. 증인은 조서에 첨가나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조서에 첨가나 수정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조서의 낭독에 따라 증인은 증언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증인이 서명하기 전 그러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된다. 증인이 개별적으로 조서를 읽었는지 혹은 예심원이 대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증인이 서명하기 전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조서가 여러 면으로 작성되었을 시 증인은 각 면마다 서명한다.

증인은 증언 후 그의 요청에 따라 그의 증언을 직접 기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심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증언에 대하여는 증인 및 예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통역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이 이루어졌을 경우, 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심문조서가 작성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0조 신문조서

1. 訊問의 진행과 결과는 본법 제166조 및 제167조에 의거하여 조서에 나타낸다.
2. 피신문자의 진술은 1인칭으로(나는~) 그리고 가급적 진술하는 그대로 기록한다. 질문과 답변은 訊問 진행과정에 일어났던 그대로 순차적으로 기록한다. 調書에는 모든 질문이 기록되고, 예심원에 의해서 배척된 질문 또는 피신문자가 답변을 거부한 질문도 기록되며, 이때에는 그 배척 또는 거부의 이유를 적시한다.
3. 訊問 과정에서 피신문자에게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시하였거나, 다른 수사처분의 조서를 공개하였거나, 수사처분의 오디오 그리고(또는) 비디오 녹취자료, 영상촬영 자료를 재현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문조서에 기록한다. 이때 피신문자가 대답한 진술 또한 조서에 나타내어야 한다.

4. 만약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진촬영, 오디오 그리고(또는) 비디오 녹취, 영상촬영이 실행되었다면, 다음 사항이 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진촬영, 오디오 그리고(또는) 비디오 녹취, 영상촬영의 실행하는 데 대한 기록
   2) 기술적 수단에 대한, 사진촬영, 오디오 그리고(또는) 비디오 녹취, 영상촬영 실행의 조건에 대한, 오디오 그리고(또는) 비디오 녹취, 영상촬영을 일시 중단한 사실과 그 중단의 원인 및 중단된 시간의 길이에 대한 사항
   3) 사진촬영, 오디오 그리고(또는) 비디오 녹취, 영상촬영의 실행과 관련된 피신문자의 의견
   4) 조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피신문자 및 예심원의 서명
5. 피신문자는 신문의 진행과정에서 도식(설명도), 도면(설계도), 도화(그림), 도표(도식)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도면 등은 조서에 편철하고, 이러한 사실을 그 조서에 기록한다.
6. 신문을 종료후 조서를 피신문자에게 읽을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또는 그의 요청에 따라 예심원이 낭독하고, 이러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한다. 조서의 보충이나 정정에 대한 피신문자의 요구는 반드시 들어주어야 한다.
7. 조서에는 신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적시한다. 참여자는 각각 조서에 서명하고, 보충 및 정정된 모든 곳에도 서명한다.
8. 피신문자는 진술을 열람한 사실 및 그 기록의 정확성을 조서의 말미에 자신의 서명으로 확인한다. 피신문자는 조서의 각 페이지에도 서명한다.
9. 신문에 참여한 者가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또는 서명이 불가능한 사실은 본법 제16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증명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제69조 제66조의 규정은 증인심문에도 적용한다.

제66조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외에는 1996년 형사소송법 제95조와 동일

◇ **1996년 형사소송법**

제99조 본법 제95조의 규정은 증인신문에도 적용한다.

제95조 신문조서는 범죄피의자에게 교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읽을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낭독하여 주어야 한다. 기재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는 보충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에 잘못이 없음을 인정한 후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사원도 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원도 범죄피의자에게 자필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23조 본법 제120조의 규정은 증인신문에도 적용한다.

제120조 1996년 형사소송법 제95조와 동일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증인심문조서의 작성방법과 내용의 확인·수정에 대한 규정이다. 이러한 증인심문조서의 작성과 확인에 대한 규정은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모두 규정하였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의 경우 증인의 진술을 1인칭으로 기재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제129조 제2항, 제130조, 제110조 제2항), 이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삭제되었다. 또한 1950년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심문조서에 피심자와 예심원이 서명날인하도록 하였으나(제133조, 제111조 제4항), 1992

년 형사소송법에는 서명날인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4조, 제175조)과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3조, 제174조 제3항)은 증인이 지장을 찍도록 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1960년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의 증인심문조서의 작성과 증인의 직접 기록, 증인심문조서의 낭독에 의한 확인과 서명, 첨가나 수정 요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1인칭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 제정형사송법과 동일하다(제160조). 2001년 형사소송법에도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고(제160조), 특히 증인심문에서 사진촬영, 오디오나 비디오 녹취, 영상촬영이 행해진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다(제190조 제3항, 제4항). 중국의 경우도 1979년 형사소송법(제69조), 1996년 형사소송법(제99조), 2012년 형사소송법(제123조)에서 예심원의 조서작성, 증인의 자술서 작성, 낭독에 의한 내용확인과 보충·변경 요구, 예심원과 증인의 서명날인을 규정하고 있다.

II. 증인심문조서의 작성과 내용확인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증인심문조서의 작성시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33조). 먼저 예심원은 증인심문조서에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는다(법 제233조, 제173조 제2항). 조서작성시 증인의 말을 그대로 써야 하며 예심원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종합하여 쓰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공식문건에 증언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을 달리하거나 종합적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증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의 동작과 표정까지도 기재할 수 있다.[509)]

509)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39～140면.

조서작성시 필요에 따라서는 피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법 제233조, 제173조 제3항).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진술은 1인칭으로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 이후에는 이러한 규정을 더 이상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인심문조서의 실제 작성례를 보면 제1인칭으로 작성하고 있다(증인심문조서 작성례 참조).

Ⅲ. 증인심문조서내용의 확인과 수정

증인심문을 마치면 증인은 증인심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예심원은 증인심문을 끝내면 증인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본다(법 제233조, 제174조 제1항). 이 때 증인은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예심원은 그 신청이 정당하면 고쳐주고 부당하면 거부하면서 이를 조서에 밝힌다(법 제233조, 제174조 제2항). 증인심문조서에는 증인의 지장을 받는다. 증인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법 제233조, 제174조 제3항).

〈증인심문조서 예〉[510]

증인심문조서

1986년 10월 30일 평안북도 人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16조, 제118조의 절차를 지키면서 형법 제174조 1항, 제180조 사건의 증인으로 김금산을 심문하였다.

이름 김금산, 녀자

생년월일 1938년 2월 1일(48살)

사는곳 평안북도 人군 읍 35반

직장 및 직위 부양

지식정도 중졸

정당별 없음

피심자와의 관계 처

나는 예심원으로부터 거짓말을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말을 들었다.

문; 증인은 백남건을 언제부터 알게 되였습니까?

답; 나는 1966년 11월 2일에 저의 4촌오빠 김명수의 소개로 그와 결혼한후부터 알게 되였습니다.

문; 증인은 백남건과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는대로 말하시오.

답; 저는 결혼후 몇년동안은 남편에 대하여 이렇다할만한 의심스러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생활하여왔습니다. 그런데 1976~1977년경부터 그는 자주 아프다고 하면서 일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후부터 그의 생활에서는 점차 좋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① 1980년 6월중순경(날자 모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남편은 남포에 출장간다고 하면서 아침에 나갔는데 3일후 낮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트링크(신품, 중형) 하나를 들고왔는데 그안에는 남자용 비닐구두 1켤레(호수 모름), 녀자의혁구두(어른용) 1켤레, 과자, 사탕 각각 2kg정도 기타 화장품이 들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났는가고 묻지도 않고 아마 도시에 갔다 왔으니 거기에서 사가지고 왔으리라고만 생각하고 집에서 다 소비하였습니다. 그후 남편의 말에 의하면 남포역전에서 얻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510) 서류출처: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34면 이하.

② 1986년 6월 어느날(날자 모름) 밤입니다.

여느때없이 늦게 돌아온 남편은(밤 10시가 좀 넘어서입니다.) 염소를 한마리 끌고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전부터 몸이 허약하기에 염소를 한마리 사서 기르자고 한말이 있었기때문에 사가지고 온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농민시장에서 150원을 주고 샀는데 암컷이 아니기때문에 차라리 잡아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저와 둘이서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5~6일이 지나서 염소를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와서 염소를 내놓으라고 하여 그후 남편이 현금으로(액수는 잘 기억나지 않음) 주었다고 합니다.

③ 1986년 6월 24일경에 남편은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직장에 나가지 않고 오전에 집에서 쉬였습니다. 그는 점심식사를 하고 어디에 좀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경에 물건이 들어있는 자그마한 마대를 하나 옆에 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것이 무엇인가고 물으니 그는 방안에 들어와 마대안에서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면서 오늘 《신수》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손버릇이 나쁘다는것을 좀 알고있었기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났는가를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하기를 봉걸동무네 집에 놀러갔다 오다가 길숲속에서 얻었는데 아마도 누가 훔쳐서 감추어놓은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대안에는 녀자모쎄타 1점, 남자모직양복(검은색) 1벌, 남자데트론양복(제껀형, 신품) 1벌, 나이론와이샤쯔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가운데서 모쎄타는 제가 입었고 모직양복은 집에 보관하고있으며 나머지는 남편이 팔았는지 그 처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④ 1985년 11월(날자 모름)경 함경남도 ㅈ군에 있는 시동생(백남호)으로부터 시계하나를 사달라고 돈 500원을 송금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다니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며칠후에 시계를 하나(손목시계, 이름 모름) 사가지고왔기때문에 돈이 어디에서 났는가고 물으니 수매자금을 좀 돌려썼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⑤ 1986년 4월하순경(날자 모름) 어느날 아침에 남편은 직장으로 나가면서 나를 보고 저녁 9시경에 수매상점창고로 좀 오라고 하는것을 다른 일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양털을 좀 가져왔다고 하면서(수량 모름) 군자동차사업소 운전수(이름 모름)와 꿀과 바꾸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그는 꿀 4kg정도, 술 5병을 받고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꿀과 술은 집에서 남편이 다 소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남편은 1980년 6월경부터 체포되기 직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개인재산과 국가재산에 적지 않은 손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

답; …

문; 당신의 가정에서 최근에 사들인 물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답; 올해에 저의 집에서는 이불장 1개(40원), 손목시계(뽈료트, 21석, 320원) 1개, 외투천 한감(모직 300원정도) 기타 많은 보약 등을 샀습니다.

문; 더 말할것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이 조서를 읽어본바 내가 한 말이 옳게 씌여졌습니다.

증인 김금산

예심원 최광선

※ 증인심문조서작성에서는 증인의 말을 정확히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증인의 말은 최대한 그가 말한 그대로 써야 하며 예심원이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쓰거나 말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기식의 체계와 표현으로 써서는 안된다.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개 관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북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대질심문에 대하여, 제239조 이하에서는 식별심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질심문은 여러 진술의 본질적인 차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제234조). 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해명하려는 문제를 미리 알려주지 말 것과, 공모 및 위협이나 거짓진술에 의한 영향력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제235조). 대질심문에서는 대면자의 진술이 끝난 후 예심원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대면자는 예심원의 승인을 받아 상대방에 질문할 수 있다(제237조). 대질심문을 실시한 경우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38조). 식별심문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나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실시한다(제239조). 식별심문은 여러 대상을 동시에 보이는 방법으로 하며(제239조 제2항), 식별대상특징의 사전 및 사후 확인이 이루어진다(제240조). 식별심문에서는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하고(제241조), 식별심문이 완료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42조).

제234조 (대질심문의 사유)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2조(대질심문) 예심원은 이전 심문에서의 증언에 중대한 모순이 있는 양측 증인간의 대질심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2조(대질심문)

1. 전에 심문을 받은 者들의 진술에 본질적인 모순이 있는 경우에 예심원은 대질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 대질심문은 본법 제164조에 의거 실시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대질심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제128조)과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제146조)에서는 필요할 때에는 대질심문을 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규정하였으나,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대질심문의 사유, 절차 등을 여러 조문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였고(제235조 이하),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제234조 이하).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5조)과 2012년 개정형사송법(제234조)은 대질심문 사유로서 여러 증인진술의 본질적인 차이를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1960년 형사소송법(제162조)과 2001년 형사소송법(제192조) 모두 증인의 증언에 중대한 모순이 있는 경우 대질심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대질심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필요한 때에는 대질심문을 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Ⅱ. 대질심문의 사유·목적

대질심문은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들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는 해명할 수 없을 경우에 실시한다(법 제235조). 즉 대질심문은 증인 중 일방의 진술에서 타방이 거짓 또는 착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범죄사건의 진실을 확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511)]

51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5면.

제235조 (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대질심문을 하려는 예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며 그들이 공모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아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기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3조(대질심문 절차)

대질심문 참석자들에 의한 이전 심문의 기록을 담은 증언의 공개 혹은 그러한 증언의 녹취는 그들의 대질심문에서의 증언 후에 허가되며 서면으로 기록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2조(대질심문)

4. 이전의 심문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피심문자의 진술을 공개, 그리고 그러한 진술을 오디오 그리고(또는) 비디오 녹취, 영상촬영한 자료를 재현하는 것은 대질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이후 또는 그들이 진술을 거부한 이후에만 허용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대질심문에서 지켜져야 할 요구 및 금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제236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5조)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1996년 형사소송법(제163조)과 2001년 형사소송법(제192조)에서 대질증인의 이전 심문에서의 진술은 대질심문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질심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Ⅱ. 대질심문시 요구 및 금지사항

대질심문이 소정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구 및 금지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먼저 대질심문에서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진술자들이 서로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느 진술자가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에 영향을 받아 본의 아닌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35조). 그밖에 어느 한 편 진술자의 말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예심원은 이러한 요구 및 금지사항을 지키면서 대면시킨 자 들이 문제로 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진술할 자는 예심원이 정하여야 한다.[512)]

51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5면.

제236조 (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3조(대질심문 절차)

대질 심문 시 예심원은 양측이 서로 알고 있는지, 서로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 이후 피심문자들에게 대질심문을 통해서 해명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대로 증언하도록 한다. 증언 뒤 예심원은 심문을 받는 사람 각자에게 질문한다. 대질이 이루어지는 양측은 예심원의 허가하에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이러한 취지는 조서에 기록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2조(대질심문)

2. 예심원은 대질심문에 당하는 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한다. 피심문자들에게 대질심문을 통해서 밝혀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대로 진술하도록 한다. 그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예심원은 그들에게 각각 질문을 할 수 있다. 대질심문에 당하는 자들은 예심원의 허락을 받아서 상호간에 질문을 한다.
3. 대질심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예심원은 물적증거 및 증거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6. 증인이,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대질심

문에 출석한 경우, 변호사는 대질심문에 참여하여 본법 제53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대질심문에서 진술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예심원의 질문과 대면증인의 답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제237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6조)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1996년 형사소송법(제163조)과 2001년 형사소송법(제192조)에서 피심문자들에게 대질심문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대로 진술하도록 하고 예심원도 그들의 진술 후에 질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질심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

II. 대질심문과 예심원의 질문

예심원은 문제로 된 사실에 대한 대면자의 진술이 끝난 후 상호 진술의 차이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대면자에게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대면자의 답변은 예심원이 정해준 순서대로 한다.[513)]

51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6면.

제237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에게 상대방의 말에서 밝힐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한다. 이 경우 예심원의 승인을 받게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3조(대질심문 절차)

대질 심문 시 예심원은 양측이 서로 알고 있는지, 서로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 이후 피심문자들에게 대질심문을 통해서 해명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대로 증언하도록 한다. 증언 뒤 예심원은 심문을 받는 사람 각자에게 질문한다. 대질심문이 이루어지는 양측은 예심원의 허가 하에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이러한 취지는 조서에 기록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2조(대질심문)

2. 예심원은 대질심문에 당하는 者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한다. 피심문자들에게 대질심문을 통해서 밝혀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대로 진술하도록 한다. 그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예심원은 그들에게 각각 질문을 할 수 있다. 대질심문에 당하는 자들은 예심원의 허락을 받아서 상호간에 질문을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대질심문에서 각 증인의 상대방에 대한 해명과 질문에 대한 규정이다.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제237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6조)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1996년 형사소송법(제163조)과 2001년 형사소송법(제192조)에서 대질심문에 참가한 양측은 예심원의 허락을 받아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질심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Ⅱ. 대면증인의 해명과 질문

대질심문에서 예심원은 대면시킨 자에게 상대방의 말에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질심문에서 각 대면증인은 상대방에 대한 해명과 질문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대면증인이 해명과 질문을 하려면 예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37조).

제238조 (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3조, 제17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3조(대질심문 절차)

심문받는 자의 증언은 순서대로 대질심문조서에 기록된다. 대질의 각 참석자들은 자신의 증언과 모든 면에 각 서명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2조(대질심문)

5. 대질심문 조서에는 피심문자들의 진술을 그들이 진술한 순서대로 기재한다. 각 피심문자는 자신의 진술에, 조서의 각 페이지에, 그리고 전체로서 조서에 서명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대질심문에서 조서의 작성 및 그 내용확인에 대한 규정이다.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제239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38조)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1996년 형사소송법(제163조)과 2001년 형사소송법(제192조)에서 대질심문을 받는 증인의 진술은 진술한 순서대로 대질심문조서에 기록되고, 조서에 대질심문증인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질심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Ⅱ. 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및 내용확인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법 제173조, 제174조)에 따라 대질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대질심문조서에 대질증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하고(법 제238조, 제173조 제2항), 필요에 따라 대질증인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법 제238조, 제173조 제3항). 대질심문조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심문장소, 소송법의 조항, 대면시킨 자들의 이름, 대면시킨 자가 증인감정인인 경우에는 거짓진술에 대한 형사책임의 고지, 문제로 제기된 사실에 대한 진술, 예심원의 질문과 차례로 답변한 내용, 상대방에게 서로 물어본 내용과 답변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514)]

예심원은 대질심문을 끝내면 대질증인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 보아야 한다

51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6면.

(법 제238조, 제174조 제1항). 대면증인이 조서의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고 부당하면 거부하면서 조서에 기재한다(법 제238조, 제174조 제2항). 대질심문조서에는 대질증인의 지장을 받고, 대질증인이 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법 제238조, 제174조 제3항).

제239조 (식별심문의 목적과 요구)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식별심문을 한다.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4조(식별을 위한 제시) 필요시 예심원은 증인, 피해자,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식별을 위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5조(식별을 위한 제시의 절차) 식별대상자는 그와 가능한 한 닮은 사람과 함께 식별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식별을 위해 제시되는 사람의 총 인원은 3명을 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시신의 식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식별을 위한 제시를 하기 전에 피식별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임의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이러한 사실은 식별조서에 기록한다.

사람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적어도 3사람의 사진과 함께 피식별자의 사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식별을 실행할 수 있다.

물건은 비슷한 물건들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3조(식별을 위한 제시)

1. 예심원은 식별토록(알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증인, 피해자,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게 특정인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3. 동일한 식별자에 의해서 동일한 징표에 따라 특정인 또는 물건에 대해 재차 식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사람은 가급적 외모가 그와 유사한 다른 사람과 함께 식별토록 제시된다. 식별토록 제시되는 사람의 총 숫자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칙은 사체의 식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식별은 개시하기 전에 피식별자에게 그들 가운데 임의의 자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식별조서에 기록한다.

5. 특정인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피식별자의 외모와 유사한 다른 사람의 사진과 함께 피식별자의 사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식별을 실행할 수 있다. 이때 제시되는 사진은 3장 이상이어야 한다.

6. 물건은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3개 이상 식별토록 제시된다. 물건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식별은 본조 제5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8. 식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식별 제시는/ 예심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식별자가 식별자를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참고인은 식별자가 관찰하는 곳에 위치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식별심문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식별심문제도는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에는 없었고,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1992년 형사소송법에서는 한 개의 조문에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었다(제150조).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 여러 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1962년 형사소송법에 식별심문제도를 규정하였고, 2001년 형사소송법에는 식별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과 달리 식별절차에서 최소 3인 또는 3개 이상의 식별대상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형사소송법에는 식별심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Ⅱ. 식별심문의 목적과 방법

식별심문은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즉 식별심문은 증인심문의 특수한 형태로서 증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골라내게 하거나 확인하게 함으로써 사건에 의의를 갖는 사람이나 물건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식별심문은 문제의 판단과 처리에 있어서 주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한다.[515)]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 식별심문의 실시에 있어서는 우선 식별대

51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1면.

상과 비슷한 자 또는 물건을 보여주어야 하며, 식별대상과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자 또는 물건을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유사한 대상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야 범인이나 물건을 정확히 구별해 내고자 하는 식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별심문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 또는 물건을 증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처벌대상인 사람 또는 물건만을 보여주면 일종의 유도심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럿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516] 여기서 여럿은 5명 또는 5개 이상을 의미한다. 식별심문의 실시에 있어서는 대상인 사람이나 물건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은 한 장소에 식별대상을 모아놓거나 직접으로 보여주거나 연이어 또는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517]

516)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2면.
51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8면.

제240조 (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와 식별정형확인)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힌다.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갈라냈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4조(식별을 위한 제시)

식별을 하는 자는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을 목격했던 정황 또는 식별을 할 수 있는 흔적이나 특징에 관하여 사전에 심문을 받는다.

제165조(식별을 위한 제시의 절차)

식별자가 그에게 제시된 사람이나 물건들 가운데 하나를 지적한 경우 그 사람이나 물건을 식별하게 한 흔적이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3조(식별을 위한 제시)

2. 식별자는 그에게 식별토록 제시된 사람 또는 물건을 관찰한 정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알아 볼 수 있는 인상착의 및 특징에 대해서 사전에 심문을 받는다.

7. 만약 식별자가 제시된 자 중 1인 또는 제시된 물건 중 1종을 지적하였다면, 어떤 인상으로 또는 어떤 특징으로 그 사람을 또는 그 물건을 식별하였는지를 식별자에게 설명토록 한다. 이때 유도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40조는 식별심문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과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 '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라는 제목하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제241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다만 제목을 '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와 식별정형확인'으로 변경하였다(제240조). 러시아의 경우 1960년 형사소송법(제164조, 제165조)과 2001년 형사소송법(제193조 제2호, 제7호)에 사전질문과 사후확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1년 형사소송법의 경우 사후확인 절차에서 유도심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형사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II. 식별심문에서 식별특징의 사전질문 및 사후확인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증인에게 그가 알고 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혀야 한다. 식별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얼굴의 모습, 머리칼의 색, 키, 걸음걸이, 말투 등 그 사람에게 특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고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이는 증인이 식별대상을 보고나서 짐작으로 식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518]

식별증인이 식별한 후에는 식별자가 식별과정에서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냈는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나 물건을 보기 전에 식별대상의 특징에 대하여 말한 것과 대조하면서 식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519] 한편 예심원은 식별과정에서 식별증인에게 자기의 의사를 암시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520]

518)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1면.
519)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2면.
52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8면.

제241조 (식별심문의 립회) 식별심문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식별심문에서 입회에 관한 규정이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에는 식별심문제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2명의 입회인을 세우

도록 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제150조 제2문),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42조)과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41조)은 독립된 조문에 규정을 두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과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식별심문의 입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

Ⅱ. 식별심문과 입회인

식별심문에는 2명의 입회인을 세운다. 식별자가 식별대상을 직접 보고 식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진 등 문건에 의한 식별에도 입회인을 2명 세워야 한다. 이는 식별절차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521] 입회인의 입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식별심문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북한 교과서에서는 증거물의 수집과 고착에서 2명의 입회인을 요구하는 북한 형사소송법규정(2004년 형사송법 제100조, 현행 형사소송법 제39조)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522] 이에 의하면 입회인을 세우지 않았거나 1명만 세웠을 경우에는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입회인은 법기관 성원이 아닌 자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 입회인을 세울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세우지 않을 수 있다.[523]

52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2면.
52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8면.
52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3～74면.

제242조 (식별심문조서의 작성)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힌다.

필요에 따라 식별자에게 식별한 것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66조(식별을 위한 제시의 조서) 본법 제141조, 제142조의 요건에 따라 식별을 위한 제시에 관한 조서가 작성된다. 조서에는 식별하는 자의 신분 및 식별대상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식별하는 자의 증언은 가능한 증언 그대로 기록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93조(식별을 위한 제시)

9. 식별을 종료함에 따라 본법 제166조 및 제167조에 의거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을 실행한 조건과 그 결과를 적시하고, 식별자의 설명을 가급적 진술 그대로 기술한다. 특정인의 식별 제시가/ 피식별자에 의한 식별자의 가시적 관찰을 배제하는 조건하에서/ 실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조서에 기재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1996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식별심문을 실시한 후 식별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다. 조서의 작성에 대하여는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나, 매우 간략한 형태를 취하였다(제150조 제2문 후단).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조서의 기재내용 절차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였고(제243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제242조). 러시아의 경우 1962년 형사소송법(제166조)과 2001년 형사소송법(제193조 제9호)에 조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01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상호대면이 아닌 식별자의 편면적 관찰에 의한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93조 제9호 제2문). 중국 형사소송법에서는 식별심문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서에 관한 규정도 없다.

Ⅱ. 식별심문조서의 작성과 그 방법

식별심문이 끝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1항). 식별심문조서에는 식별심문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항). 구체적으로 심문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식별장소, 소송법의 조항, 식별자의 신분(이름, 성별, 사는 곳, 직장·직위),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린 내용, 식별자에게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대상의 특징이나 정보를 물어본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해야 할 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물건을 함께 보인 내용, 식별자가 말한 특징과 정보에 근거하여 식별한 내용, 입회인의 이름과 주소, 식별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식별대상 물건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524] 식별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보이기 전에 식별대상의 특징을 묻고 쓰는 조서는 따로 만든다.[525]

사람의 말투나 목소리, 물건이 내는 소리 등이 식별의 표징이 되는 경우에는 심리실험과 식별심문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심리실험조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식별심문조서에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수사원이 식별시킨 경우에도 식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식별에 물건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물건식별조서를 작성한다.[526] 식별심문조서는 예심원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식별자에게 식별한 것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3항).

52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9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2면.
52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42면.
52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89면.

〈식별심문조서 예〉[527]

식별심문조서(7)

1986년 7월 6일 평안북도 ㅅ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ㅅ읍 40반에서 사는 주옥순과 장정애를 립회시키고 리소실에게 ㅅ군 일용품수매상점 수매원들의 집체사진 2매를 각각 제시하고 김연하의 집앞에서 본 사람을 찾아내게 하였다.

리소실은 예심원으로부터 거짓말을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86년 6월 24일 오후 3시경 김연하의 집앞에서 본 사람은 키가 크고 몸은 약하며 얼굴형은 비교적 긴편이다.

의복은 아래우에 검은색작업복을 입었으며 신발은 검은색의 비닐구두를 신었다.

예심원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리소실에게 집체사진 1매를 제시하였다.

사진의 크기 12cm×18cm

사진의 특징 ㅅ우산 선호봉을 바라보는 8명의 집체사진이다.

인물식별을 시킨데 의하면 리소실은 뒤줄 4명중 우측으로부터 3번째사람이 키가 크고 몸은 약하며 얼굴형이 길기때문에 김연하의 집앞에서 본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하였다.

그다음 그에게 정면으로 찍은 집체사진을 한장 제시하였다.

사진의 크기 7cm×13cm

사진의 특징 ㅅ군문화회관을 배경으로 하여 명절옷차림을 하고 찍은 10명의 집체사진이다.

인물식별을 시킨데 의하면 그는 뒤줄에 서있는 사람 6명중 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 흰남방샤쯔를 입고 왼쪽옆사람의 어깨우에 손을 올려놓은 사람이 김연하의 집앞에서 본 사람과 같다고 말하였다

이 조서를 읽어본 결과 옳게 씌여졌다.

식별자 리소실
립회인 주옥순
립회인 장정애
예심원 최광선

※ 만약 리소실이가 범죄사건현장인 김연하의 집앞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면 직접 실물식별을 시켜야 한다.

527) 서류출처: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7면 이하.

식별심문조서(L)

1986년 7월 6일 평안북도 人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人읍 40반 주옥순과 장정애를 립회시키고 리소실에게 김연하의 집앞에서 보았다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식별심문을 진행하였다.

리소실은 예심원으로부터 거짓말을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86년 6월 24일 오후 3시경 김연하의 집앞에서 본 사람은 키가 크고 몸은 약하며 얼굴은 긴편이고 얼굴색은 비교적 희며 이마는 좁고 코는 약간 들창코이다. 의복은 아래우에 검은색 작업복을 입었으며 신발은 검은색의 비닐구두를 신었다.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오병호, 황영남, 백남건, 박봉주를 심문장소에 나오게 하였다.

리소실은 그들가운데서 백남건이가 우에서 말한것과 같은 표징을 가지고있으므로 바로 김연하의 집앞에서 본 사람이 백남건이가 틀림없다고 말하였다.

이 조서를 읽어본 결과 옳게 씌여졌다.

식별자 리소실
립회인 주옥순
립회인 장정애
예심원 최광선

식별심문조서(증거물식별)

1986년 7월 9일 평안북도 人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人읍 40반 주옥순과 장정애를 립회시키고 리소실에게 범죄자가 김연하의 집에서 메고나간 마대를 찾아내기 위한 식별심문을 진행하였다.

리소실은 예심원으로부터 거짓말을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86년 6월 24일 오후 3시경 김연하의 집에서 메고나간 마대는 크기 1m×0.5m 정도의 작은 마대이다. 마대의 색은 누렇고 마대의 한쪽면은 중간부분에 아이들의 주먹만한 크기의 구멍이 하나 있었다.

실물을 갈라내기 위하여 그에게 1m×0.5m 규격의 마대 3개와 1.5m×0.7m규격의 마대 2개를 제시하였다.

리소실은 이가운데서 왼쪽으로부터 세번째에 놓여있는 마대가 우에서 말한것과 같은 표징을 갖추고있다고 말하였다.

이 조서를 읽어본 결과 옳게 씌여졌다.

식별자 리소실
립회인 주옥순
립회인 장정애
예심원 최광선

제10절 재산담보처분

개 관

재산담보처분

북한 형사소송법 제243조 이하에서는 재산담보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산담보처분은 재산몰수형의 집행과 재산상 손해보상을 보전하기 위한 소송상 강제처분으로서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형사소송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특징적인 제도이다. 재산담보처분의 대상은 재산몰수형 대상자의 재산과 손해보상책임자의 재산이고(제244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는 형사책임추궁결정과 손해보상자의 확정 후 재판심리 전이며(제245조), 재산담보처분의 범위는 손해보상청구 및 몰수의 양으로 제한된다(제246조). 재산담보처분은 예심원이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며(제247조), 재산담보처분집행절차에서는 예심원이 신분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제248조). 재산담보처분을 실시한 경우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49조).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이 필요 없게 되거나 잘못된 경우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해야 하며(제250조), 재산이 없어 재산담보처분을 못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해야 하고(제251조), 썩거나 못쓰게 될 담보처분재산은 해당기관에 넘겨주고 결정서와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제252조).

제243조 (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은 형벌집행을 위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범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의 재산상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해서도 할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43조 이하에서는 재산담보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제243조는 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즉 재산담보처분은 어떠한 경우에 실시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1950년 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재산담보처분제도가 인정되지 않았고,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 재산담보처분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제151조 이하).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44조 이하)은 재산담보처분의 대상이나 시기 등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었고,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43조 이하)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재산담보처분의 목적은 재산몰수형의 집행과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위한 재산의 확보인데, 이는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 이래 현

행 형사소송법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재산담보처분제도는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로서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Ⅱ. 재산담보처분의 의의·목적

재산담보처분은 재산몰수형의 집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범죄행위로 입은 국가기관, 기업,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하여 보상책임이 있는 자의 재산을 그가 마음대로 처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적 강제처분행위를 말한다. 즉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의 임자로부터 그 재산의 이용처분권을 박탈하는 소송상 강제행위이다. 이러한 재산담보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음흉하고 교활한 범죄자나 그의 가족 등 재산에 관련이 있는 자들이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거나 숨기고 남에게 임시로 넘겨주는 등의 잔꾀를 다 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528] 즉 재산담보처분은 공민들에게 국가,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재산을 단 한푼이라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철저히 가지도록 자극을 주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한다.[529]

재산담보처분은 재산몰수형의 집행을 보장하려는 목적과 범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먼저 재산담보처분은 재산몰수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그 재산몰수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북한형법상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

528)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에서 재산담보처분에 대한 리해, 법학연구15, 김일성종합대학, 2006, 71면.

52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31면.

을 받은 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북한형법 제34조). 벌금형과 함께 재산형의 일종이며, 부가형벌의 하나이다(북한형법 제28조). 재산몰수형은 범죄수단이나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와 구별된다.[530] 북한에서 재산몰수형은 범죄감행의 경제적 기초, 물질적 조건을 박탈하며 범죄의 길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한 경고를 주자는 목적으로 설정한 형벌이다.[531] 이러한 재산몰수형은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부과된다. 즉 반국가범죄 중 반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5조) 그리고 반민족범죄 중 민족반역죄(제67조)를 범한 자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 예외적인 형벌이다. 우리 형법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형벌이 없다.

재산담보처분의 두 번째 목적은 범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형사사건절차에서는 손해보상청구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범죄로 재산상손해를 입은 자들이 이러한 손해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범죄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하여야 한다.[532]

530) 북한형법상 범행수단 등 범죄관련 물건의 몰수는 형벌로서 인정되지 않고, 단지 형사소송법에 증거물 몰수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다(제103조, 제105조 참조).

531) 김근식, 형법학 1, 166면.

53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0면.

제244조 (재산담보처분의 대상)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자의 재산 2. 손해보상청구에 책임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자와 그 련루자의 재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산담보처분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독립된 조문으로 처음 규정한 것은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이다.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하나의 조문(제151조)에서 재산담보처분의 목적과 대상을 규정하였고, 그 내용도 '몰수하여야 할 재산',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재산'으로 간략하게 규정하였다.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담보처분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II. 재산담보처분의 대상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첫째로는, 재산몰수형을 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이고(북한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호), 다음으로는 손해보상청구에 책임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자와 그 연루자의 재산이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2호). 여기서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자란 17살에 이르지 않은 피심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후견인이거나 성인 피심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서 범죄로 이루어진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같이 소비한 가정성원을 의미한다.[533)]

그리고 범죄의 연루자는 범죄의 추긴자와 방조자 등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지를 수행할 결심을 가지도록 하고 범죄의 길에 나서도록 추동하는 자와 범죄행위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조건 등을 마련해 주거나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을 감추어 주거나 팔아주는 등 범죄실행을 도와준 자들은 다 연루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연루자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범죄자의 재산만으로는 손해보상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사건연루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재산담보처분을 하여야 한다.[534)]

53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1면.

534)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에서 재산담보처분에 대한 리해, 법학연구15, 김일성종합대학, 2006, 74면.

제245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재산담보처분의 시기에 대한 규정이다. 재산담보처분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는 없었으나,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도록 하였으나(제246조), 2012년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지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였다(제245조). 자구의 변화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 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전까지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항). 이처럼 피심자와 손해보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재산담보처분을 하였다가 상대방이 손해보상자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공민들의 헌법적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한다.[535)]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이나 손해보상자의 확정없이도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2항). 여기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손해보상에 필요한 재산을 피심자로 확정되기 전에 숨기거나 소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536)]

535)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31면.
53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1면.

제246조 (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가치가 있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량 또는 몰수할 재산량만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재산담보처분의 범위내라는 표제하에, 재산담보처분에서 담보재산의 적격 및 담보처분의 양적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재산상 가치있는 것만을 담보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담보재산의 적격에 대하여만 규정하였다(제153조 제2항). 2004년 개정형사송법에서는 이에 더하여 담보처분의 양적 한계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하였고(제247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이와 동일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제246조).

II. 담보재산의 적격·담보처분의 양적 제한

재산담보처분에서 담보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재산상 가치있는 것이라도 예외가 인정된다. 즉 노동자, 사무원인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족의 한달분 식량과 생활비, 농장원인 경우에는 다음 분배받을 때까지 식량과 생활비, 소농기구와 집짐승(소, 말을 제외)은 담보처분할 수 없다. 또한 사업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 의복, 부엌세간, 위생문화용품, 학용품, 어린이 용품과 장학금, 사회보험금, 현금에 대해서는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집짐승이 가족재산의 중요한 몫을 차지할 정도로 많을 경우에는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리를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별적 공민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짐승의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확인서에는 날짜, 집짐승의 종류와 마리수, 임시로 관리한다는 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537]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본래의 취지에 따라 양적 제한을 받는다. 즉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담보처분에서는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양만큼만 할 수 있고, 재산몰수형의 집행을 위한 재산담보처분에서는 몰수할 양큼 재산담보처분을 하여야 한다.[538]

53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1면.
53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2면.

제247조 (재산담보처분결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한다. 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재산담보처분의 형식으로서 결정과 그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재산담보처분의 형식으로서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여기에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Ⅱ. 재산담보처분의 결정 및 그 방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재산담보처분은 예심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밝히는 외에 누구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하는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재산담보처분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러한 재산담보처분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형법조항, 재산담보처분을 해야 할 사유, 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539)]

53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3면.

제248조 (재산담보처분의 결정서제시와 립회)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자에게 제시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48조는 재산담보처분의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로서, 신분증과 결정서의 제시 및 입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 재산담보처분제도를 도입하면서 결정서의 제시와 입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제153조 제2항).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49조)과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48조)은 여기에 예심원의 신분증 제시를 추가하였다. 또한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은 제153조 제2항에 담보재산의 적격에 관한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의 경우 제249조의 표제가 '재산담보처분의 방법'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 제248조는 그 표제를 '재산담보처분의 결정서제시와 립회'로 하고 있다. 양자는 표제에서 차이는 있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II. 재산담보처분의 집행에서 결정서의 제시와 입회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경우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을 당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담보처분을 할 경우에는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 입회인의 입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산담보처분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북한 교과서에서는 증거물의 수집과 고착에서 2명의 입회인을 요구하는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2004년 형사소송법 제100조, 현행 형사소송법 제39조)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540] 이에 의하면 입회인을 세우지 않았거나 1명만 세웠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담보처분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입회인은 법기관성원이 아닌 자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541]

〈재산담보처분결정서 예〉[542]

재산담보처분결정서

1986년 10월 26일 평안북도 ㅅ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90조, 제93조에 의하여 형법 제174조 1항, 제180조 사건의 피심자 백남건의 소유재산을 담보처분한다.

예심원 최광선

54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3면.
54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73～74면.
542) 서류출처: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31면.

제249조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준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재산담보처분시 예심원이 취해야 할 조치로서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과 재산목록의 교부, 담보재산의 처분시 형사책임에 대한 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및 재산목록의 교부와 담보재산처분시 형사책임의 고지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였다(제153조 제3항, 제4항). 그러나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였고,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도 동일하다.

II. 재산담보처분시 서류의 작성과 형사책임의 고지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또한 2통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조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장소, 소송법의 조항, 재산담보처분집행결정, 조서의 작업내용, 재산담보처분을 당한자의 주소와 이름을 밝혀야 한다. 또한 예심원은 재산목록을 2통 만들어 그 가운데 1통은 사건기록에 붙이고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재산목록에는 품명, 수량, 형태와 특징, 규격, 소유관계 같은 것을 밝히고 담보처분당한 자와 입회인의 주소와 이름을 밝혀야 한다.[543]

예심원은 재산보관자에게 담보처분한 재산을 정확히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재산보관자가 담보처분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법상 봉인손상죄로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544]

54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3면.
54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4면.

〈재산담보처분조서 예〉[545]

재산담보처분조서

1986년 10월 26일 평안북도 ㅅ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27조 6항, 제91조에 따라 ㅅ읍 35반에서 리옥련과 김명희를 립회시키고 피심자 백남건의 소유재산을 담보처분하였다.

담보처분한 재산목록

번호	품명	형태 및 특징	수량	평가액	담보처분한자의 수표	예심원수표
1	면직	흰색, 신품	10m	50～		
2	모내의	흰색, 중품	대 5 / 소 4	300～		
3	모직양복	검은색, 신품	1벌	160～		
4	…					

① 담보처분한 재산은 김금산에게 보관시킨다.

② 재산을 정확히 보관할데 대한 책임을 그에게 알려주었으며 담보처분재산목록 1통을 주었다.

보관자 ㅅ읍 35반 김금산
립회인 ㅅ읍 35반 리옥련
립회인 ㅅ읍 35반 김명희
예심원 최광선

※ 만약 담보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담보처분불가능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545) 서류출처: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32면.

제250조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없게 되였거나 잘못되였다는 것을 확증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50조에서는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는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이후(제153조 제5항), 약간의 자구가 변경되어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51조)과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50조)이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담보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필요 없게 된 경우란 범죄사건이 기각되

었거나 손해보상청구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당한 자나 그의 친척들이 재산피해를 전부 보상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산담보처분 후 재산담보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에는 담보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재산담보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란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처분이 필요 이상 많이 되었거나 피심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재산담보처분의 취소는 담보처분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재산담보처분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재산담보처분해제 또는 취소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인정된 사유, 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결정에 의하여 재산담보처분하였던 재산을 임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돌려받은 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546)]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과정에 증거물이 나타나면 압수절차에 따라 압수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물품이 나타나면 몰수하여 정확히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주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54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4면.

〈재산담보처분해제결정서, 재산담보처분취소결정서 예〉[547]

재산담보처분해제결정서

1986년 11월 29일 평안북도 ㅅ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법 제70조 1항, 제145조, 제174조 1항, 제180조에 해당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던 피심자 백남건의 사건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986년 10월 26일에 피심자 백남건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예심과정에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볼 때 피심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사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93조 5항, 제126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피심자 백남건의 소유재산에 대한 담보처분은 해제한다.

② 이 결정을 재산보관자인 김금산에게 알려준다.

예심원 최광선

이것을 승인한다.

ㅅ군검찰소 소장 정호남

1986년 11월 29일에 이 결정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재산보관자 김금산

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한것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그것을 취소한다.

례하면 피심자가 피해전액을 보상한 경우와 소유권이 다른 재산을 담보처분한 경우 등이다.

재산담보처분취소결정서

1986년 11월 29일 평안북도 ㅅ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법 제70조 1항, 제145조, 제174조 1항, 제180조에 해당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고있는 피심자 백남건의 사건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986년 10월 26일에 피심자 백남건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하였다. 그러나 이해 11월 23일 ㅅ읍 30반에 사는 리광호로부터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외투(남자용 검은색, 신품) 1벌은 자기의 처 리진화가 피심자의 처 김금산에게 뜯어서 고쳐달라고 맡겼던것이므로 돌려달라는 신청이 제기되였다.

이 신청을 조사심의한 결과 외투는 리광호의 재산이 틀림없다는것이 확인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93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외투(남자용 검은색, 신품) 1벌은 임자인 리광호에게 돌려준다.

② 이 결정내용을 재산보관자인 김금산에게 알려준다.

예심원 최광선

이것을 승인한다.

ㅅ군검찰소 소장 정호남

1986년 11월 30일 이 결정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재산보관자 김금산

※ 물건을 임자에게 돌려줄 때에는 반드시 인수증을 받아 기록에 붙여야 한다.

547) 서류출처: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32면.

제251조 (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재산담보처분의 불능시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제154조)에 규정된 이래, 약간의 자구를 변경하여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제252조)과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51조)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Ⅱ. 재산담보처분 불능시 처리방법

재산몰수형의 집행이나 손해보상의 확보를 위해 재산담보처분결정에 근거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하고자 해도 재산이 없으면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에는 재산담보처분조서를 작성하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548]

54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5면.

〈재산담보처분불가능조서 예〉[549]

재산담보처분불가능조서

1986년 10월 26일 평안북도 사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이해 10월 25일 형법 제174조 1항, 제180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당하고있는 피심자 백남건의 소유재산에 대한 담보처분결정에 근거하여 읍 35반 백남건의 집에 가서 리옥련과 김명희를 립회시키고 재산담보처분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심자 백남건에게 담보처분할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4조에 의하여 피심자 백남건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처분을 하지 못하였다.

립회인 사읍 35반 리옥련
립회인 사읍 35반 김명희
예심원 최광선

549) 서류출처: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32면.

제252조 (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물건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대응규정 없음
중국 형사소송법 ◇ **1979년 형사소송법, 1996년 형사소송법, 2012년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담보처분재산 가운데 썩거나 못쓰게 될 물건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992년 개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이후(제155조), 그 표현을 약간 변경하여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이 규정하였고(제253조), 2012년 개정형사소송법(제251조)은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부패 또는 무용한 담보처분재산의 처리방법

담보처분한 재산 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넘겨주는 결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담보처분한 재산을 넘기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인정된 사유, 소송법의 조항, 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결정내용에는 무엇을 얼마나 어디에 남기는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담보처분한 재산을 넘겨받은 기관은 그에 대한 대금을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입금증을 받아야 한다. 예심원은 담보처분한 재산을 넘겨받은 기관으로부터 확인서와 입금증을 받아 처분한 재산을 넘기는 결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550)]

55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5면.

제11절 예심의 종결

개 관

예심의 종결

북한 형사소송법 제11절 예심의 종결에서는 일곱 개의 조문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예심의 종결사유), 제254조(예심의 종결절차), 제255조(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제256조(예심종결조서의 작성), 제257조(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제258조(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제259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등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종결이란 "예심원이 예심을 끝내는 소송활동을 말한다. 예심종결은 첫째, 예심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을 때에 한다. 다시 말하면 사건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검토 확인한데 기초하여 사건을 원만히 밝혀냈을 때에 종결한다. 둘째, 예심종결은 사건을 기각할 사정이 있을 때에 한다. 사건을 기각하여야 할 법률적 및 사실적 조건이 있을 때에는 예심을 종결한다. 이때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형식으로 예심을 끝낸다."[551]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종결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소송상제도의 하나이다. 그것은 예심을 종결할 때에 비로소 피심자는 예심사건기록전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대한 새로운 의견과 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552]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따르면 "피심자에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기할 의견이 없는가를 물어보고 그 의견의 정당성여부에

551)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73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2면.
552)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73면.

따라 예심원이 공정하게 처리해 주도록 규정한 것은 사건을 이유 없이 재판에 넘기는 일이 없게 하며 앞으로 있게 될 재판의 심리의 완벽과 판결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므로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할 때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553]

① 피심자에게 예심을 끝낸다는 것과 사건을 재판소에 넘기면서 기록을 함께 보낸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심자에게 예심기록을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이나 신청을 할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피심자에게 예심기록을 보여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예심원은 그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 피심자가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접수하고 그 의견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용인 또는 거부하는 결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피심자로부터 정당한 의견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예심종결을 하지 못한다. 피심자의 새로운 신청에 따라 예심원이 다시 사건을 조사하였다면 사건기록 전체를 피심자에게 다시 보이거나 읽어주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수속절차를 지키면서 예심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심자가 인입되어 있을 때에는 매개 피심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의 기록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심기록 전체를 열람시키거나 읽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예심사건에는 한 개 또는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범죄를 함께 수행한 여러 범죄자를 병합하여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심기록에는 본질적으로 호상 연관된 범죄내용을 밝히게 된다. 따라서 매개 피심자는 직접 자기와 관련되는 범죄내용 뿐 아니라 다른 피심자와 관계되는 범죄내용 전체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554]

553)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74면.
554)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74면.

제253조 (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 유사규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17장 예심의 중지 및 완결

제195조(예심 중지 사유 및 시한) 예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중지된다.

(1) 피고인이 예심 및 재판을 회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그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2) 피고인의 정신 및 기타 질병이 발발하여 의료기관의 의사가 그를 인증한 경우

(3) 누가 피고인으로 기소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상기 사항들 중 하나에 해당될 시 예심원은 이유를 붙인 예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 사건에 2명 혹은 그 이상 다수의 인물들을 기소하지만 중지 사유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심원은 피고인 개별로 분리하여 사건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절차를 중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본조 제1, 3호에 언급된 상황에서 예심은 진행되는 기간의 도과에 의해서만 중단되며 본조 제2호에 언급된 상황의 경우 예심 기간 종료 전까지도 중지될 수 있다.

예심 중지 전, 예심원은 피고인이 부재중에도 실행되는 모든 수사행위를 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원을 알아낼 권리가 있다.

중지된 절차는 형법상 시효 도과로 종료될 수 있다.

제196조(피고인 수색)

피고인의 행방을 모를 경우 예심원은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예심원은 수사기관을 통해 그러한 수색을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조사실행은 예심중지명령에 명시되거나 혹은 별도의 명령이 내려진다.

수색은 예심 또는 예심의 중지와 동시에 공지된다.

본법 제89조에 명시된 사유의 경우 예심원은 수색대상과 관련한 제재조치를 선택한다. 본법 제96조에 의거한 상황에서 예심원은 검사의 제재와 함께 보호 구금형태의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제197조(피고인으로 기소된 자를 확인하는 조치)

본법 제195조 3호에 명시된 상황에서 예심 중지 후 예심원은 직접적인 조치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인으로 기소된 자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제198조(예심 재개)

중지된 예심은 중지 사유가 소멸했거나 추가적인 예심활동이 필요해졌을 때 예심원의 이유를 붙인 명령으로 재개될 수 있다.

제199조(예심 완료)

예심은 기소결정을 내리거나 강제적으로 의학적 조치를 심리하려 법원으로 회부하려는 명령이 있을 때 혹은 사건을 종결시키는 명령이 있을 시 완료된다.

제406조(예심 완료)

예심이 끝나면, 예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명령을 내린다.

(1) 본법 제208조에 규정된 사례 혹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의 성격 및 인물의 정신 상태로 인해, 그 행위를 저지른 자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사건 절차를 종결시킨다.

(2)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의학적 성격의 강제조치를 적용해야 할 근거가 성립된 경우, 당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한다.

사건의 재판 회부 명령에는 예심에서 밝혀진 모든 사건 정황과 법원이 의학적 성격의 강제조치를 적용해야 할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명령문은 사건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치되는데, 만약 검사가 명령에 동의할 경우, 사건을 법원에 전달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보충예심을 위해 사건을 환송한다. 의학적 성격의 강제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면, 검사는 사건을 종결시킨다.

사건 종결 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저질렀던 자가 그 행위의 성격이나 그의 정신상태로 인해 사회에 위험을 가하지 않으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예심원이나 검사는 지역 공중보건기관에 그 사람에 대해 알리도록 한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58조 예비조사의 종결

1. 예비조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종결된다.
   1) 예비심리가 필수적인 형사사건은 본법 제29-31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 그이외의 형사사건은 본법 제32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종결된다.
2. 기소전 형사절차에서 범죄를 조장하는 상황을 확인한 수사관/예심관은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상황 및 기타 위법사항의 제거조치를 취할 것을내용으로 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요청서는 심사되어야 하고, 제출된 날로부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절 형사사건의 종결

제212조 형사사건의 종결 및 형사소추를 중단하는 근거

1. 형사사건의 종결 및 형사소추의 중단은 본법 제24-28조에 해당하는 근거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2. 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거에 따라 형사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예심관 또는 검사는 본법 제18절에 규정된 복권조치를 취한다.

제213조 형사사건 및 형사소추를 종결하는 결정

1. 형사사건은 예심관의 결정으로 종결되고, 그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2. 결정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결정을 내린 일자 및 장소
   2) 결정을 내린 자의 직책, 성, 이름과 부칭의 머리글자

3) 형사사건을 제기한 동기와 근거가 되었던 사항

4) 형사사건이 제기된 범죄를 규정한 러시아연방 형법전의 條, 項, 號

5)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 인적사항을 적시한, 예비심리의 결과

6) 적용된 강제조치

7) 형사사건 그리고(또는) 형사소추를 종결하는 근거가 되는 본법의 條, 項, 號

8) 강제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서신에 대한압류, 일시적인 보직해임(직위해제), 교신의 통제 및 녹취 등에 관한 취소 결정

9) 물적증거에 관한 결정

10) 본 결정에 대한 볼복절차

3.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종결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서만 허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동의의 존재를 결정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예심관은 형사사건의 종결에 관한 결정서의 사본을 형사소추가 종결되는 대상자, 피해자, 민사상원고 및 민사상피고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한다. 이때 형사사건이 본법 제24조 제1항 제2-6호,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6호에 해당하는 근거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 피해자 및 민사상원고에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訴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한다.

5. 형사소추를 중단하는 근거가 모든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게 관계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심관은 본법 제27조에 의거 특정인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때 (나머지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는 계속된다.

제214조 형사사건의 종결 및 형사소추의 중단 결정의 취소

1. 형사사건의 종결 또는 형사소추의 중단에 관한 예심관의 결정이 不適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그 결정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의 처리를 재개한다.

2. 만약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형사소추의 종결에 관한 예심관의 결정이 不適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본법 제1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토록 결정서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3. 본법 제413조 및 제414조에 의거한 旣 종결된 형사사건에 대한 재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4. 형사사건의 재개에 관한 결정은 본법 제211조 제3항에 명시된 자들에게 통보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 1996년 형사소송법

제9절 수사종결

제124조

범죄피의자에 대한 구속 후의 구금수사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기간만료 전에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직근 상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25조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비교적 장시간이 지나도 재판에 회부하기 어려운 특별히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심리연기의 비준을 신청한다.

제126조

다음 열거된 사건은 본법 제124조 규정의 기간만료 전에 수사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거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변방지구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중대한 집단범죄사건

(3) 떠돌아다니면서 죄를 범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범죄의 관련 부분이 광범위하고 증거취득이 곤란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제127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본법 제126조에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수사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거쳐 다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8조

수사기간에 범죄피의자의 또 다른 중요범행을 발견할 경우에는 발견한 날로부터 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수사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범죄피의자가 진실한 성명, 주소를 말하지 아니하여 그 신분이 불명한 경우에 수사구금기간은 그 신분이 조사, 밝혀진 때로부터 계산하고, 다만 그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정지하여서는 안 된다.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스스로 밝힌 성명에 의하여 인민검찰원에 기소심사송치할 수 있다.

제129조

공안기관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해야 하며 또 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에 송치하여 심사,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30조

수사과정 중에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사건을 철회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구속을 비준한 원래의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절 인민검찰원의 직접 수리 사건에 대한 수사

제131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2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사건 중 본법 제60조, 제61조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부합되어 범죄피의자를 구속, 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133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수리한 사건 중 체포된 자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내에 신문하여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된 때에는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구속할 필요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자에 대하여 보증부 불구속 또는 주거감시를 할 수 있다.

제134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수리한 사건 중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구속결정의 시간을 1일 내지 4일 연장할 수 있다. 구속이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하여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고, 또는 보증부 불구속, 주거감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증부 불구속 또는 주거감시를 한다.

제135조

인민검찰원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공소제기, 불기소 또는 사건의 철회결정을 하여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예심의 종결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예심의 종결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253조에서 ‘예심을 종결하여야 한다’는 ‘예심을 종결한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Ⅱ. 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종결이란 예심을 끝마치는 소송행위이다. 예심은 필요한 조사가 다 끝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겨 정확하게 판단, 처리하는데 필요한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되었으며 사건의 전모와 여죄, 연루 관계가 밝혀졌다고 인정할 때 끝낸다. 이렇게 예심을 끝낼 때 밟는 절차가 예심종결의 절차이다. 예심은 또한 소송수속을 더 진행할 수 없거나 그 필요가 없게 된 때에도 끝낸다. 이것이 사건기각이다.[555)]

55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2면;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6면.

예심은 범죄사건의 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종결한다.[556]

Ⅲ. 비교법 연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종결은 다음과 같다.

1. 수사종결권자

수사종결(搜査終結)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밝혀진 경우에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이다.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의 형태로 나타난다.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55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수사종결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경우에는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58]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종결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하게 된다.

55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6면.
557)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2020 판결.
558)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5, 507~508면

2. 수사종결의 방법

수사를 전개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그 사건을 처리한다. 검사의 수사종결의 방법은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기소)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불기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그 이외에도 다른 검찰청이나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방법 또는 기소중지와 같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건처리를 중지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559)]

559)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263면.

제254조 (예심의 종결절차)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본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기록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200조(피해자, 민사소송의 원고, 민사소송의 피고에 대한 공지)

예심원이 예심이 완료되었고 기소결정을 내리기에 수집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시, 예심원은 피해자, 민사소송의 원고, 민사소송의 피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에 대한 공지를 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건에 대해 공지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위에 언급된 인물들 중 하나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시, 예심원은 피해자, 민사소송의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건에 대해 공지하며 민사소송의 피고와 그 대리인에게 가능한 소송신청에 대해 공지한다. 예심 진행 시 영상 및 음성녹취를 했다면 이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재생된다.

본법 제141조, 제142조에 명시된 피해자, 민사소송의 원고, 민사소송의 피고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사건 자료 열람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진다. 기록에는 피해자, 민사소송의 원고, 민사소송의 피고 또는 그의 대리인이 어떤 자료를 접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가 신청되었는지가 기재된다. 서면으로 작성한 이의제기는 사건 기록에 첨부된다.

만약 예심원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의제기를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해 타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은 이의제기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공지된다.

제201조(피고인의 사건 관련 모든 자료 열람)

만약 예심원이 본법 제200조에 의거한 요건에 따라 기소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심원은 피고인에게 그의 사건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모든 자료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예심을 보충하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의제기로써 변호인을 소환하여 사건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와 기소시점부터 변호인이 사건에 참여했던 경우, 예심원은 사건의 모든 자료를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사건 자료 공개는 변호인이 출두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하지만, 그 기간이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선정한 변호인이 상기 언급된 기간 내에 출두하지 못할 경우 예심원은 다른 변호인을 소환하는 조치를 취한다.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공개된다. 예심진행시 동영상 또는 녹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재생된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예심원은 그들이 개별적으로 사건의 모든 자료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만약 다수의 사람이 사건에 기소된 경우 사건의 모든 자료는 각각에게 제시된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해 알게 되면 예심원은 그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추가조사를 신청할지에 대해 물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사건 자료를 열람 중 필요한 정보를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202조(사건의 모든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알 권리)

피고인의 변호인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피고인을 단독으로 접견

(2) 모든 사건 자료를 열람하고 그 중 필요한 정보를 복사

(3) 이의제기 신청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과 논의

(4) 조사행위 실행과 관련하여 신청을 하고 증거 획득, 사건 기록에 증거 첨부,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된 기타 질문

(5) 예심원, 검사, 감정인, 전문인, 통역인 기피 신청

(6) 변호인,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 및 저해하는 예심원의 행위에 대해 검사에게 이의제기

(7)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제기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행위에 예심원의 허가를 받아 참석

제203조(예심종결 공지 및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사건 열람 기록)

예심원은 본법 제141조, 제142조에 의거하여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조사를 위해 사건 자료열람 기록을 남긴다. 기록에는 피고인에게 예심종결공지가 되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조사에 어떠한 증거가 공개되었는지, 사건 열람 진행 장소와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제기가 무엇인지, 그들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사건열람을 스스로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야 하며, 거부사유는 피고인이 그에 대해 언급한다면 역시 기재되어야 한다.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예심의 종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본다. 피심자의 신청

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기록을 보여준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예심의 종결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기록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254조에서 '물어보아야 한다.'는 '물어본다.'로, '거부하여야 한다.'는 '거부한다.'로 그리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보여준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따르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신중성을 요구하는 책임적인 문제이다. 반드시 법적 수속을 거쳐 과학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일군들의 주관주의와 독단이 없어야 한다."[560]

Ⅱ. 예심의 종결절차

1. 예심종결에 대한 고지절차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알리는 방법은 말로 한다.[561]

560)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2면.
56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6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2면.

2. 범죄기록에 대한 확인절차

피심자에게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심자료를 피심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필요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어도 범죄사건의 조사처리에 장애를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범죄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조건과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피심자가 사건기록의 자료를 제대로 읽어볼 수 없다면 예심원이 읽어볼 수 있다. 만약 피심자가 의식적으로 기록을 보는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자의 능력과 보아야 할 자료의 양을 타산하여 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간을 제한한 결정이유는 예심증인조서에 밝혀야 한다. 그러나 예심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비롯하여 공개하면 안 될 자료인 경우에는 해당한 사건기록을 피심자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562)]

3. 추가신청에 대한 안내절차

피심자에게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심을 끝내며 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고 예심을 끝낸다.[563)]

4. 추가신청에 대한 해결절차

(1) 정당한 신청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심을 더하는 결정은 따로 하지 않고 필요한 예심행위만 하면 된다.[564)]

56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7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2면.
56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7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2면.

(2) 부당한 신청

피심자의 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결정한 내용을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거부결정수속은 따로 하지 않고 예심종결조서에 피심자의 신청내용을 거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565]

(3) 종결절차

피심자의 신청에 따라 예심을 더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기록을 보여주고 더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예심종결조서에 밝혀야 한다.[566]

56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7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2면.
565)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7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2면.
566)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7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2면.

제255조 (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검사의 예심종결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256조 검사의 예심종결참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의 종결수속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255조에서 ‘예심의 종결수속’을 ‘예심의 종결’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Ⅱ. 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예심종결은 반드시 검사의 참가밑에 하여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이것은 검사가 예심단계를 총화짓는 예심종결에 참가하여 예심의 전면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예심종결과 관련한 피심자의 신청에 대하여서도 검토함으로써 예심감시를 더욱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예심종결의 이와 같은 절차는 바로 예심에 대한 검사

의 감시를 철저히 보장하며 사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심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통하여 예심의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부족점을 철저히 바로잡고 보충하여 예심을 모든 측면에서 더욱 완성시키며 사건처리에서 주관주의와 독단을 범하지 않도록 튼튼히 담보한다."고 설명한다.[567]

56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8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2～163면.

제256조 (예심종결조서의 작성)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자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힌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56조는 예심종결조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짜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힌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257조 예심종결조서의 작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짜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256조에서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한다.’로, ‘밝혀야 한다.’를 ‘밝힌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예심은 그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을 때에 종결한다. 즉 필요한 조사를 다한 경우와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 검토, 확인된 경우이다.

II. 예심종결조서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그 자리에서 예심종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소송법의 조항, 피심자의 이름, 형법조항, 피심자에게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알린 정형, 사건기록을 보여준 정형(페이지수와 시간), 피심자에게 신청을 제기한 것이 없는가를 물어본 정형, 예심종결을 한 시간, 검사의 참가정형을 밝혀야 한다. 피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예심종결을 따로따로 하여 예심종결조서로 피심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568]

예심종결조서[569]

1983년 12월 2일 함경북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현용환은 형사소송법 제123조(현행 북한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예심의 종결절차)의 절차에 따라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 강치성에게 알려주고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제기할 의견이 없는가를 물어보았다.

피심자 강치성은 10시부터 11시까지 사건기록을 보고 예심에 대하여 제기할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피심자 강치성

예심원 현용환

소 장 리원칠

56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8면.

예심종결조서

1987년 1월 17일 평안북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123조(현행 북한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예심의 종결절차)의 절차에 따라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 백남건에게 알려주고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제기할 의견이 없는가를 물어보았다.

피심자 백남건은 사건기록을 보고 기록 ××～××페지에 반영된 양털 3Kg(150원분)은 자기가 횡령하여 집에다 감추어둔 것이 아니라 물에 젖은 양털을 말리워오라는 창고장 최구영의 지시에 따라 집에 가져다둔 것이므로 이 사실을 창고장 최구영을 통하여 밝혀준데 대하여 신청하였다.

피심자 백남건

예심원 최광선

예심을 더 하여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을 거부함에 대한 결정서

1987년 1월 18일 평안북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피심자 백남건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145조, 제174조 제1항 사건예심을 종결할 때에 제기한 그의 신청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피심자 백남건은 형사사건기록 ××～××페지에 반영된 양털 3Kg(150원분)은 자기가 횡령하여 집에다 감추어둔 것이 아니라 군일용품수매상점 최구영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말리우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그것을 창고장 최구영을 통하여 밝혀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56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1985, 74면.

그러나 이미 창고장 최구영의 증인심문을 통하여 그는 피심자 백남건에게 개별적으로 양털을 말리우라는 지시를 준일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페지)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현행 북한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예심의 종결절차)에 따라 최구영을 증인으로 심문하여 달라는 피심자 백남건의 신청은 기각한다. (들어주지 않는다.)

예심원 최광선

※ 만약 피심자의 신청이 근거가 있다면 《군일용품수매상점 창고장 최구영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것은 이 사건해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현행 북한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예심의 종결절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피심자 백남건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구영을 증인으로 심문한다.》라고 하여야 한다.

예심종결조서

1987년 1월 20일 평안북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123조(현행 북한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예심의 종결절차)의 절차에 따라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 백남건에게 알려주고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제기할 의견이 없는가를 물어보았다.

피심자 백남건은 9시부터 11시까지 사건기록을 보고 예심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피심자 백남건
예심원 최광선
소 장 정호남

제257조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57조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258조 사건기록과 증거물의 이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날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257조의 제목이 ‘사건기록과 증거물의 이송’에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날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가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첨부한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Ⅱ.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재판에 넘겨주는 증거물은 증거물첨부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증거물첨부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소송법의 조항, 피심자의 이름, 형법조항, 증거물의 품명, 수량, 형태와 특징, 보관정형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570)]

Ⅲ. 증거물 처리

1. 증거물을 돌려줌에 관한 결정서

증거물을 돌려줌에 관한 결정서

1986년 12월 6일 평안북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피심자 백남건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145조, 제174조 제1항, 제180조 사건에 첨부된 증거물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증거물인 양털 3kg, 여우가죽 2장은 도적맞힌 재산이므로 돌려달라는 군일용품수상매점 지배인 한명철의 신청을 받았다.

증거물은 증거로써 충분히 검토확인되였으며 앞으로 사건의 조사심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물 목록 제2, 3호에 등록되여있는 양털 3kg, 여우가죽 2장을 ㅅ군 일용품수상매점에 돌려준다.

예심원 최광선

※ 증거물을 돌려주었을 때에는 령수증 또는 인수증을 받아서 기록에 붙여야 한다.

57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8면.

2. 증거물을 넘겨줌에 관한 결정서

증거물을 넘겨줌에 관한 결정서

1986년 12월 6일 평안북도 ㅅ군 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피심자 백남건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145조, 제174조 제1항, 제180조 사건에 첨부된 증거물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이 사건에 첨부된 증거물인 페니실린(50만단위) 10대, 고려인삼탕 6병은 피심자 백남건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물건이므로 임자에게 돌려줄 수 없을뿐 아니라 그 사용기간이 12월말까지이므로 빨리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증거물인 페니실린(50만단위) 10대, 고려인삼탕 6병은 ㅅ군 인민병원에 넘겨주고 인수증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예심원 최광선

제258조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검사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 피해자,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258조의 제목이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검사의 처리’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로 바뀌었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알려준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예심의 자료를 피심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예심이 끝나고 필요한 조사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여도 사건의 조사처리에 별로 장애를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심종결의 절차에 구현된 당의 정책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예심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피심자가 자기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 범위와 시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② 만일 피심자가 기록의 자료를 제대로 읽을 줄 모른다면 예심원이 그것을 읽어주고 내용을 설명해 준다. ③ 피심자가 의식적으로 기록을 보는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결정으로써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도 보아야 할 자료를 양과 피심자의 능력을 타산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571)]

2012년 개정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123조와 제124조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258조와 유사한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II.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1.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 피해자,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은 검사의 행위에 대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권리침해가 검사의 결정, 지시 그 밖의 검사의 행위로 이루어졌거나 검사가 하여야 할 행

57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8면;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3면.

위를 하지 않은 결과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해당 검찰소 소장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결정을 통보 받은 날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7일안으로 하여야 한다.[572]

2. 의견제기에 대한 검사의 처리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을 제기 받은 검사 또는 검찰소장은 3일만으로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기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기된 의견처리와 관련한 검사의 결정에 대한 집행은 의무적이다.[573]

57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9면.
573)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99면.

제259조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예심원, 검사는 이 법 제258조 1항의 의견을 제기 받았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 또는 검찰소장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찰소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 또는 감시를 계속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응규정 없음

Ⅰ. 개관

북한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 검사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의견을 제기 받았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 또는 검찰소장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찰소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 또는 감시를 계속한다.

2004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예심원은 이 법 제259조 제1항의 의견을 제기 받았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259조에서 ‘보내야 한다’를 ‘보낸다’로, ‘계속하여야 한다’는 ‘계속한다’로 법문을 개정하였다.

II.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예심원, 검사는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이 자기에게 제기되었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 또는 검찰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찰소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 및 감시는 계속하여야 한다.[574)]

574)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200면.

제5장 기 소

제5장 기 소

개 관

기 소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검토·처리한다.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사항이고, 검사는 범죄사건기록을 검토하여 혐의가 충분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하게 된다(기소독점주의).[575] 그리고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나 형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형사소송법 제115조)에는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다(제116조). 이러한 점에서 기소편의주의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576]

기소는 검사가 재판소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기소에 의하여 예심은 종결되고 사건은 재판소의 공판절차로 넘어간다. 기소할 때에는 기소장을 작성하며, 이를 제출할 때에는 증거물 등과 같은 사건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소장은 예심을 총화하는

575) 북한의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만 소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나 사업체의 장들도 경우에 따라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정 형사소송법 제8조, 제9조). 그러나 이러한 사인소추는 1992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만이 소추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576) 동일한 취지로 이백규, 북한 형사소송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2009, 137면.

문건이며 예심을 완전히 결속하는 문건이다.[577] 또한 기소장은 재판소에서의 심리의 기초로 되며 재판심리의 범위를 규정해 준다.

범죄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검찰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며,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2조(기소의 담당자)에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검사에게 맡겨두고 있다. 검사는 당의 정책과 국가의 법령이 전국적 범위에서 정확히 지켜지고 집행되도록 감시할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국가의 눈'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578] 따라서 국가의 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재판소에 기소하여 책임을 묻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할 책임 역시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특히 기소와 같은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를 검사에게 담당하게 함으로서 기소가 당정책에 맞게 그리고 법의 요구대로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579]

57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3면.
578)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22면.
579)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3~164면;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22면.

제260조 (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다.

구 형사소송법

제261조(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피심자를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다.

기소란 형사사건을 재판소에 보내어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소는 예심을 끝낸 형사사건을 재판소가 맡아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검사의 소송법상 행위를 말한다.[580] 기소에서는 먼저 예심에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전면적으로 조사·확증하였는가 하는 것을 예심이 종결된 사건기록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범죄자와 범죄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확정되고 그 중 증명하는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피심자를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581]

580)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22면.
58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201면.

제261조 (기소의 기간)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10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그러나 10일 안에 검토처리할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5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기소의 기간)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10일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3일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214조(기소결정서와 함께 송치된 사건에 관한 검사의 결정)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5일 이내에 심사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한다.

(1) 검사가 당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기소결정서를 확인한다.

(2) 보충수사 혹은 예심을 하도록 서면지시서와 함께 당해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에게 돌려 보낸다.

(3) 사건을 종결하고 본법 제209조에 따라 이러한 취지로 명령을 내린다.

(4) 기소결정서가 본법 제205조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소결정서를 작성하도록 검사 자신의 서면지시서와 함께 당해 사건을 예심원이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낸다.

(5) 새로운 기소결정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기소결정서는 사건에서 제외시

킨 다음, 발견된 오류를 기재한 새 기소결정서를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에게 되돌려 보낸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69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半) 개월 연장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심사한 사건의 관할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후의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기소심사기간을 계산한다.

검사의 사건검토 후 기소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10일간이며,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규정된 10일간의 기간은 예심이 종결된 다음 검사가 사건기록을 접수한 때부터 10일간이며, 사건검토결정을 한 때부터 10일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중대사건의 경우 5일간의 기간을 연장토록 한 규정은 신설된 내용으로 사건의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로동단련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사건인 경우에는 5일 안에 검토·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에서 규정하였던 3일 안으로 처리토록 한 내용을 5일 안으로 개정한 것이다.

제262조 (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5일이다.

구 형사소송법

제263조 (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까지이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3일까지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앞의 규정인 제261조에서 인정되는 검사의 사건검토기간에 상응하게, 본조는 검사가 기소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을 10일간으로 제한하며,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5일간 연장하여 구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는 5일간 구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582)]

582) 구 형사소송법 제263조는 3일간으로 구류를 제한하고 있었다.

제263조 (사건기록검토내용)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수사,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구 형사소송법

제264조 (사건기록검토내용)

범죄의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213조(기소결정서와 함께 송치된 사건에 있어 검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검사는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으로부터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행동이 실제 일어났는지 여부와 그 행위에 범죄 성립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사건 종결을 야기시키는 정황이 해당 사건에 존재하는지 여부

(3) 수사나 예심이 철저하고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4) 혐의가 사건에 존재하는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5) 수사 또는 예심에서 규명된 피고인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가 제시되었는지 여부

(6)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모든 사람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었는지 여부

(7) 범죄의 유형 분류가 적절한지 여부

(8) 제재조치 선정이 적절한지 여부

(9) 민사소송과 잠재적 재산몰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10) 범죄를 조장한 정황이 명확히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황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11) 기소결정서가 본법에 합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본법의 모든 기타 요건이 수사 및 예심 과정에서 지켜졌는지 여부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68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범죄사실 및 정황이 명백한지 여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지 여부, 범죄의 성질과 죄명의 인정이 정확한지 여부

(2) 범행 및 그 밖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자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3)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속하는지 여부

(4) 부대민사송의 유무

(5) 수사가 합법적이었는지 여부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문제에 중심을 두어 검토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수사,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제264조 (범죄사건기소)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였을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낸다.

구 형사소송법

제265조 (피심자의 기소) 검사는 예심을 충분하고 옳게 진행하였을 경우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내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217조(검사에 의한 사건의 공판회부) 검사는 기소결정서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기소결정서를 작성하면,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에 회부하고 피고인에게 당해 사건이 회부된 법원이 어디인지 통지한다.

사건 회부와 동시에 검사는 법원에 공소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알린다.

사건의 재판회부 뒤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신청(petition)과 이의(complaint)는 법원에 직접 전달된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72조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이미 분명하게 조사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 관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또한 문건자료와 증거를 인민법원에 송치한다.

Ⅰ. 의의

예심이 끝난 범죄사건을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법령집행을 감독하며 범죄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검찰기관의 헌법적 임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검사는 범죄사건을 기소하며 재판에서 범죄자와 그의 죄를 밝히고 증명할 책임을 지닌 일군이며, 수사와 예심의 과정은 결국 검사의 기소를 준비하는 과정이다.[583] 이에 따라 검사는 예심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었을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그리고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냄으로서 검사의 법적 책임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소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두나 전보 등에 의한 기소는 인정되지 않는다.[584]

Ⅱ. 기소의 효과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재판소에서의 심리의 기초가 마련되고 재판심리

583)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7~168면.
584)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 1993, 683면.

의 범위가 확정된다. 재판의 심리범위는 기소장을 통하여 검사가 요구한 바에 따라 기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와 범죄자에 국한하여 심리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재판에서 심리할 범위의 특정은 검사와 재판소, 기타 소송관계자들이 모두에게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일 대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조사와 증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심리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재판소는 근거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585]

Ⅲ. 사건기록의 동봉

검사가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경우 기소장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송부한다.[586] 이와 같이 기소장 제출과 함께 사건기록 등을 송부토록 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의 측면에서는 긍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여 제출하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이를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하며, 수사기관의 심증형성이 법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판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공격방어를 토대로 법원이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587]

58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4면.
586)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246면,
587)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 2015, 홍문사, 252~253면;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2009, 화산미디어, 329면.

제265조 (기소장의 작성)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한다.

기소장에는 작성날자,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한 형법조항과 형사소송법조항, 기소할 재판소를 밝힌다.

구 형사소송법

제266조 (기소장의 작성)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소장에는 작성날자,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한 형법조항과 기소할 재판소를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1960년 형사소송법(1972년 개정)**

제214조(기소결정서와 함께 송치된 사건에 관한 검사의 결정)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5일 이내에 심사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한다.

(1) 검사가 당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기소결정서를 확인한다(confirm).

(2) 보충수사 혹은 예심을 하도록 서면지시서와 함께 당해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에게 돌려 보낸다.

(3) 사건을 종결하고 본법 제209조에 따라 이러한 취지로 명령을 내린다.

(4) 기소결정서가 본법 제205조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소결정서를 작성하도록 검사 자신의 서면지시서와 함께 당해 사건을 예심원이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낸다.

(5) 새로운 기소결정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기소결정서는 사건에서 제외시킨 다음, 발견된 오류를 기재한 새 기소결정서를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에게 되돌려 보낸다.

제215조(검사의 기소결정서 확인 시 기소 변경) 검사는 자신의 명령으로 기소결정서에서 혐의 중 특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더 경미한 범죄에 관한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필요한 경우 새로운 기소결정서를 작성한다.

만약 더 무거운 혐의로 변경하거나 원래 혐의와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른 혐의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사는 새로운 혐의를 제시하도록 당해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220조 기소결정서(공소장)

1. 예심관은 기소결정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들의 성, 명, 부칭
   2) 각 피의자의 인적사항
   3)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의 일시 및 장소, 범죄의 방법, 동기, 목적, 결과 및 기타 당해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사항
   4) 당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한 러시아연방 형법전의 조, 항, 호를 적시한, 제시된 범죄사실의 공식화(숫자나 부호를 사용하여 사상, 개념, 주장, 결정 등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한 식)
   5)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목록
   6) 피고측이 인용한 증거의 목록
   7) 형벌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정황)
   8) 피해자에 관한 사항, 범죄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9) 민사상 원고 및 민사상 피고에 관한 사항
2. 기소결정서에는 형사사건의 몇 권에 있는 어떤 증서에서 인용하였는지 그 출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소결정서는 그 작성 일자 및 장소를 명시하여 예심관이 서명한다.

4. 기소결정서에는 원고측 및 피고측으로부터 법원공판에 소환될 자들의 주거지 그리고(또는) 소재지를 명시한, 소환대상자의 목록이 첨부된다.
5. 기소결정서에는 예비심리의 기간에 대한 증명서, 구속 및 가택구속의 기간을 명시한 강제처분의 채택에 관한 증명서, 물적증거에 대한 증명서, 민사소송에 대한 증명서, 민사소송의 보장 및 예상되는 재산의 몰수 조치에 관한 증명서, 소송비용에 대한 증명서, 그리고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한다. 이러한 증명서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기록의 페이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6. 예심관이 서명한 기소결정서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된다. 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심관은 기소결정서의 번역본을 확보한다.

Ⅰ. 의의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소장이란 예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기소문건을 말한다.[588] 기소장은 예심이 종결하여 검찰소에 넘어온 범죄사건 가운데서 범죄자와 범죄사실이 다 밝혀지고 이 법의 요구와 절차, 방법대로 예심을 진행하였을 경우에 작성한다.

북한의 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장의 작성을 예심원의 업무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1992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지속되었다. 즉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때 범죄사실 및 책임에 관하여 불리 및 유리한 사유와 그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의 요약, 범인의 신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기

588)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75면.

소장을 작성한다(제정 형사소송법 제157조). 그리고 예심원은 기소장을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도록 규정하였었다(제정 형사소송법 제157조).[589)]

그러나 현행의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짜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힌 예심종결조서를 작성한다(제256조).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제257조).

Ⅱ. 기소장의 작성내용

기소장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기소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빠짐없이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기소장에는 피심자와 예심과정에 확증된 사실 즉, 범죄시일, 장소, 동기, 목적, 수단, 방법, 행위결과 같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되는 구체적 조건들을 명확하게 밝히어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벌을 정하는데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정치적 환경과 경력, 기타 개성상 특성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책임을 물은 범죄사실에 대한 피심자의 인정 또는 변명, 피심자의 변명이 정당화될 수 없는 증거들을 지적하여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표징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기소장에는 검찰기관의 증인, 명관을 찍어야 한다.

589) 기소장은 비록 예심원이 작성하였지만 그것은 오직 검사의 승인에 의해서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소장은 여전히 검사의 기소문건인 것이다(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8면;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75면).

Ⅲ. 기소장 작성시 지켜야 할 사항

기소장은 검사의 기소문건인 동시에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문건인 만큼 기소장의 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키면서 작성되어야 한다.[590]

(1) 범죄사실의 간명화

기소장은 범죄로 되는 사실들을 완전히 그리고 간단하고 명백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기소장에는 소추의 대상으로 되는 범죄사실들만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실을 써서는 안된다. 그리고 범죄사실을 증명해주는 증거 역시 간단하고 명백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증명가능사실의 작성

기소장은 예심자료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는 사실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징표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즉 기소장은 기록에 있는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을 작성하여야 한다. 선입견이나 편견, 주관주의적 독단에 기초한 추측이나 억측으로 되는 사실을 기소장에 기입하여서도 안되며,[591] 예컨대 "피심자는 틀림없이 금고를 노리고 상점에 침입하였을 것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592] 그리고 형법에 규정된 징표들 가운데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감경시켜 주어야 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593]

590)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76면.
591)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76면.
592)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76면.
593)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77면.

(3) 교양적 가치가 있는 표현의 사용

기소장에는 비속한 말이나 옳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교양적 가치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비록 피심자나 증인의 말 또는 사건기록에 있는 표현이나 말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장은 군중들 앞에서 읽어야 하는 문건인 만큼 기소문건으로서의 엄숙성에 지장을 주거나 군중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말들을 그대로 기소장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비속한 표현이나 말을 한 자체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면 기소장에는 그러한 말이나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쓰고 실제는 어떤 말(표현)을 하였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근거자료의 면수를 지적하면 될 것이다.[594]

(4)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기소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건의 본질이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까다롭고 복잡하게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를 왜 기소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인정과 평가가 분명한 것이 되어야 한다.[595]

(5) 피심자별·사건별 작성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고인별로 책임한계를 명백히 나누어 기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범죄건별로, 범죄를 범한 순서로 작성하되 같은 종류의 범죄들은 종류별로 묶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596]

---

594)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7면.
59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67면.
596) 리세창,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77면.

제266조 (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구금)한 날자와 구속되여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인다.

구 형사소송법

제267조(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한 날자와 구속되여있는 곳, 증거물, 손해 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 2001년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220조 기소결정서(공소장)

1. 예심관은 기소결정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들의 성, 명, 부칭

2) 각 피의자의 인적사항

3)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의 일시 및 장소, 범죄의 방법, 동기, 목적, 결과 및 기타 당해 형사사건에 의미 있는 사항

4) 당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한 러시아연방 형법전의 조, 항, 호를 적시한, 제시된 범죄사실의 공식화(숫자나 부호를 사용하여 사상, 개념, 주장, 결정 등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한 식)

5)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목록

6) 피고측이 인용한 증거의 목록

7) 형벌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정황)

8) 피해자에 관한 사항, 범죄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9) 민사상 원고 및 민사상 피고에 관한 사항

2. 기소결정서에는 형사사건의 몇 권에 있는 어떤 증서에서 인용하였는지 그 출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소결정서는 그 작성 일자 및 장소를 명시하여 예심관이 서명한다.

4. 기소결정서에는 원고측 및 피고측으로부터 법원공판에 소환될 자들의 주거지 그리고(또는) 소재지를 명시한, 소환대상자의 목록이 첨부된다.

5. 기소결정서에는 예비심리의 기간에 대한 증명서, 구속 및 가택구속의 기간을 명시한 강제처분의 채택에 관한 증명서, 물적증거에 대한 증명서, 민사소송에 대한 증명서, 민사소송의 보장 및 예상되는 재산의 몰수 조치에 관한 증명서, 소송비용에 대한 증명서, 그리고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한다. 이러한 증명서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기록의 페이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6. 예심관이 서명한 기소결정서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된다. 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심관은 기소결정서의 번역본을 확보한다.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자들의 명단, 피심자를 구류한 날짜와 구속되어 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 사건의 분리, 기각, 중지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597]

597)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205면.

제267조 (범죄사건을 예심에 돌려보내는 결정)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구 형사소송법

제268조(예심의 반송)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여 기소할 수 없을 경우 그것을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 **2012년 형사소송법**

제173조 범죄피의자가 범죄사실이 없거나 또는 본법 제15조 소정의 1에 해당하면, 인민검찰원은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범죄의 정황이 경미하여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벌에 처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형벌을 면제할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와 동시에 수사 중 봉인, 압수, 동결한 재물에 대하여 봉인, 압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불기소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벌, 행정처분이 필요하거나 위법소득을 몰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주관기관은 처리결과를 신속히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4조 불기소결정은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고, 또한 불기소결정서를 불기소된 자와 그의 소속 단위에 송달하여야 한다. 불기소된 자가 구금 중인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175조 공안기관이 기소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 불기소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바로 위급의 인민검찰원에 재심사를 제청할 수 있다.

제176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 인민검찰원은 불기소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바로 위급의 인민검찰원에 신소하여 공소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재심사결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하여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신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에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77조 인민검찰원이 본법 제173조 제2관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불기소된 자가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신소를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재심사결정을 하고, 불기소된 자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공안기관에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여기서 예심이 불충분하게 진행되었을 경우란 본법 제253조[598]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재판소에 기소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반송결정을 하여야 한다.[599]

598) **형사소송법 제253조(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 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관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

599)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205면.

사건반송결정은 사건반송결정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사건반송결정서에는 날짜, 검사의 직장과 이름, 사건명, 소송법조항, 결정내용과 리유를 밝혀야 하며 검찰소의 공인, 명관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사건반송결정서에는 예심을 추가, 보충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600]

600) 이 규정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재판소가 검사에게 행하는 사건반송의 판정에 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50조(사건반송의 판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0조에 따르면 "재판소는 판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에서 범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의 원칙과 절차를 심하게 어겼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268조 (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수 없다는 리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

제269조(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수 없다는 리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 수 없도록 하여 소위 일사부재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재판소가 판결할 수 없는 정도의 증거물이나, 재판심리에서 보충할 수 없는 증거불충분으로 반송한 범죄사건을 재판소가 요구한 증거를 끝내 수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기소하게 되면 재판소가 다시 반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반송 받은 자가 소송단계에서 해당한 절차를 거쳐 범죄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주체 81(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2호로 채택
주체 93(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36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3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형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 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계급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여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3조 (군중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적극 의거하며 군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도록 한다.

제4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5조 (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인권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의 사용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우리 말로 하도록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자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8조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의 준수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

제9조 (형사소송관계자)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형사소송관여자가 속한다.

형사소송담당자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이다.

형사소송관여자로는 변호인,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보증인, 피소자 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자가 된다.

제10조 (수사의 담당자)

수사는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수사권한을 가진 일군도 수사를 할수 있다.

제11조 (예심의 담당자)

예심은 해당 법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12조 (기소의 담당자)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한다.

제13조 (재판의 담당자)

재판은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14조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의 담당자)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제15조 (비밀엄수 및 형사사건조사방해금지)

형사소송관계자는 형사사건취급처리와 관련된 비밀을 지키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리해관계에 따라 형사소송에 참가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자신이나 가족, 친척관계에 있는자가 피해자, 범죄자이거나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 (형사소송임무를 겸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는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담당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의 다른 소송관계자로 될수 없다.

제18조 (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 166조의 요구를 어긴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을 담당할수 없다.

제19조 (같은 사건을 다시 감시, 기소할수 없는 사유)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감시와 기소를 다시 담당할수 없다.

제20조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 비상상소심 또는 재심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예심이 충분하지 못하여 재판소가 반송하였던 형사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에는 참가할수 있다.

제21조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22조 (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자와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결함으로 형사사건

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 할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23조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6조, 제17조의 사유가 있거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다.

제24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 예심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에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수 있다.

제25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하는 시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한다.

그러나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청을 할수 있다.

제26조 (수사, 예심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검사는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3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한다.

제27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심리에 참가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

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바꾼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심리할 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정지하고 재판소를 다시 구성한다.

제28조 (형사소송관계자들의 포기)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자신에게 있을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제2절 증 거

제29조 (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되여야 사건해결의 기초로 쓸수 있다.

제30조 (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가 된다.

제31조 (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되여야 한다.

제32조 (증거의 수집, 리용)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리용할수 있다.

해당 법기관은 군인, 종업원들이 사회에 나와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하기 위한 인민보안, 검찰기관의 수사, 예심과 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증거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34조 (증거의 고착)

찾아낸 증거는 진술서, 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사진을 찍거나 략도를 그리거나 록음, 록화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진술서, 조서에 밝힌다.

제35조 (증거의 검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자체를 분석하거나 확인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하는것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제36조 (증거의 평가)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확인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련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7조 (피심자, 피소자진술의 평가)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수 없다.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수, 자백한 자료도 그와 관련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범죄가 증명된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 (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에 등록한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을 따로 고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한다.

제39조 (증거물수집과 립회)

증거물을 찾아내고 고착시킬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40조 (증거물의 보관)

증거물의 보관은 사건기록과 함께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한다.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은 봉인하여 해당 기관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수집한 귀금속은 은행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으며 현금은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림시입금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제41조 (증거물의 이관)

형사사건을 다른 기관의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에 보낼 경우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준다.

임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미 돌려주었거나 넘겨준 증거물과 이관이 적합하지 못한 증거물은 근거문건을 검증조서와 함께 넘겨준다.

제42조 (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수 있다.

몰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가운데서 소유자, 점유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지장이 없다면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임자에게 돌려줄수 있다. 이 경우 돌려받은 증거물을 형사사건종결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형시키지 말데 대하여 알려준다.

제43조 (증거물의 처리방법)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려는 수사원, 예심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으며 판사는 판정서를 작성한다.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에는 임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처리한 증거물은 특징, 상태, 흔적을 검증조서, 사진같은 것으로 고착하여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44조 (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종결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증거물은 몰수하거나 폐기하며 그밖의 증거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사실을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서, 판정서, 판결서에 밝힌다. 이 경우 증거물을 돌려받았거나 넘겨받은 피해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3절 관 할

제45조 (관할설정기준)

관할은 사건이 어느 한 법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취급처리될수 있도록 법기관의 사명과 임무, 범죄발생지, 사건의 경증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제46조 (수사관할)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제47조 (특별수사기관의 관할)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사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수부문 법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의 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밖의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제48조 (예심관할)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할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들의 법준수집행정형 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하며 그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49조 (특별예심기관의 관할)

군사상범죄사건과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군사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군수부문 법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하며 그밖의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50조 (인민재판소관할)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을 규제하고있는 법조항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제52조 (특별재판소관할)

군사재판소는 군사상범죄사건과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최고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제54조 (지역관할)

재판소는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재판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도 재판할수 있다.

제55조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관할에 속한 사건의 재판관할)

여러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의 재판은 그 사건심리를 먼저 시작한 재판소가 한다.

제56조 (관할이 다른 사건의 재판관할)

관할이 다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소자 또는 관할이 다른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재판소에서,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다.

제57조 (관할분쟁의 금지)

다른 재판소에서 넘겨받은 범죄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겨줄수

없다.

넘겨받은 범죄사건이 다른 급 또는 다른 종류의 재판소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그 사건을 넘겨준다.

제4절 변 호

제58조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보장)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59조 (변호인의 임무)

변호인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다.

제60조 (변호인의 선정권)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대표자도 변호인을 선정할수 있다.

제61조 (변호인선정권의 포기)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수 있다.

제62조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인선정시기)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제63조 (판사의 변호인선임의뢰시기)

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가 기소되였을 경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전까지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선임을 의뢰한다.

제64조 (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으로는 각급 변호사회의 변호사가 될수 있다.

변호사자격을 갖춘자도 변호인으로 될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판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65조 (변호인선정신청 및 선임의뢰)

피심자, 피소자, 그의 가족, 친척 또는 소속단체대표자는 예심원, 판사에게 변호인선정신청을 한다.

변호인선정신청을 접수한 예심원, 판사는 선정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가진자에게 3일 안으로 신청내용을 알려준다.

이 법 제63조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려는 판사는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선임의뢰를 한다.

제66조 (변호인선정 및 선임통지)

변호인의 선정신청이나 선임의뢰를 받은자 또는 변호사회는 3일 안으로 그 동의여부를 해당 예심원, 판사에게 알려준다.

변호인의 선정동의에 대하여 통지받은 예심원, 판사는 곧 변호인의 선정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제67조 (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

변호사, 변호사자격을 갖춘자가 변호인의 선정신청, 선임의뢰를 거부하거나 검사 또는 판사가 변호인의 선정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다시 선정 또는 선임한다.

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은 이 법 제65조에 따른다.

제68조 (사선변호인의 우선권)

공선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였을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으로 된다.

제69조 (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담화)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

제70조 (변호인의 사건기록열람)

변호인은 범죄사건이 기소된 다음에는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열람할수 있다.

제71조 (변호인의 증거수집과 검토확인)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72조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에 대한 변호)

변호인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수 있다.

제73조 (변호인의 의견제기)

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판사,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 또는 판사, 재판소는 제기받은 의견을 3일 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 준다.

제5절 형사소송문건

제74조 (형사소송문건작성의 목적)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

과를 고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문건을 작성한다.
형사소송행위와 결과는 문건에 고착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75조 (형사소송문건의 종류)

형사소송문건에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준비, 재판심리단계에서 작성하는 결정서, 진술서, 조서, 기소장, 판정서, 판결서 같은것이 속한다.

제76조 (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형사소송문건에는 작성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소송행위의 법적근거와 진행과정, 결과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고 관계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수정, 보충, 삭제한 곳에는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제77조 (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형사소송문건은 법에 따라 보게 되여있는자를 제외하고는 열람할수 없다.

제6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 송달, 소송비용

제78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은 시간, 날, 달, 해로 한다. 이 경우 계산사유가 생긴 다음 날 또는 다음시간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 24시로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마지막 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경우는 그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

기간이 끝난다.

끝나는 날이 국가적휴식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제79조 (형사소송문건의 발송기간에 따르는 효력인정)

상소장, 항의서, 결정서 같은 형사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문건을 보내야 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문건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80조 (형사소송문건의 송달)

형사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것으로 인정한다.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형사소송문건을 접수할수 있다.

제81조 (형사소송비용의 부담)

인민참심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이 형사사건조사처리에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나 려비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자의 경우 로력보수와 려비는 그를 부른 기관이 부담한다.

제7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82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과 담당자)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시작된다.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예심원, 검사의 결정, 예심에 넘기는 검사의 결정, 검사에게 넘기는 재판소의 판정이 있은 때부터 형사사건의 취급이 시작된다.

제83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기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범죄에 대한 신고에 기초하여 한다.

해당 법기관이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에 기초하여서도 형사사건의 취급을 시작한다.

제84조 (증거보존 및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르고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현장,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가 못쓰게 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곧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기관에 신고한다.

제85조 (범죄의 신고형식)

범죄에 대한 신고는 말이나 글로 할수 있다.

제86조 (범죄의 신고접수방법)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는 신고서를 받거나 신고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신고접수자는 신고자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조서에는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거짓신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 정형 같은 것을 밝힌다.

제87조 (범죄신고의 의무적접수와 이송)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한 신고자료는 곧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제88조 (범죄에 대한 신고처리결과의 통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처리정형을 1개월안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신고처리를 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수 있다.

제89조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의 고착)

인민보안, 검찰, 재판, 안전보위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를 해당 법규에 따라 고착한다.

제8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90조 (형사사건의 병합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제1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거나 혼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으로서 각기 제기된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한다.

제91조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은 주모자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주모자를 모를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먼저 취급하기 시작한 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에서 일부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

하는 경우에는 상급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사민이 군인, 군사기관 종업원과 함께 군사비밀보장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사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일반시민이나 철도운수부문 종업원이 군수기관 종업원과 함께 군수비밀보장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수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철도운수부문 종업원과 일반시민이 함께 철도운수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92조 (혼자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혼자서 자기가 사는 곳 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 사건을 병합하여야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를 취급하고있는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일부 범죄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거나 군사법기관, 군수부문 법기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 안전보위기관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상급법기관 또는 군사법기관, 군수법기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 안전보위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93조 (형사사건의 병합절차)

형사사건을 병합할 경우에는 사건병합결정, 판정을 하고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94조 (형사사건분리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제1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도주하였거나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으로 앓고있어 병이 나을 때까지

다른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에 대한 취급처리를 뒤로 미룰수 없거나 관할이 서로 달라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그 사건을 분리할수 있다.

제95조 (형사사건분리절차)

형사사건을 분리하려 할 경우에는 사건분리결정, 판정을 하고 해당한 사건기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분리한 형사사건을 관할법기관에 넘기는 절차는 이 법 제152조에 따른다.

제9절 형사소송의 중지 및 형사사건의 기각

제96조 (형사소송의 중지사유)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97조 (형사소송의 중지절차)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9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2. 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3. 판사, 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98조 (의료처분의 절차)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 법 제99조 2호, 3호에 따라 의료처분을 적용할데 대한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곧 알린다.

제99조 (의료처분의 종류)

의료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복할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2.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3. 중병에 걸린자에 대한 의료처분

제100조 (의료처분받은자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결정서, 판정서에 지적된 지역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2. 병치료에 전념하여야 한다.
3. 증거를 없애는것 같은 형사사건의 조사,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1조 (보증인의 선정)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의료처분을 하는 경우 2명의 보증인을 세운다. 이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다.

제102조 (보증인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역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3조 (의료처분결정의 통고)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의료처분결정, 판정을 한 경우 의료처분

을 받은자와 그의 보증인에게 결정, 판정내용과 지켜야 할 의무를 알려준다.

제104조 (의료처분받은자에 대한 감시)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감시는 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은 그의 병상태와 치료정형, 류동정형을 본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통보받으며 정상적으로 확인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의료처분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100조를 어긴 경우에 의료처분을 적용한 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5조 (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

형사소송중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100조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하고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106조 (형사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행위인 경우
2.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3.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특사로 형벌적용이 면제되였을 경우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은 행위일 경우
6. 이 법에 규정된 예심기일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 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7.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8.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있을 경우

제107조 (형사사건의 분리기각사유)

여럿이 함께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자에게 이 법 제106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기각한다.

제108조 (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0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사원은 수사취소결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린다.
2. 예심원은 형사사건기각결정을 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3. 검사는 형사사건기각결정을 한다.
4.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기각판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린다.

제109조 (형사사건의 기각통지)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신고자, 피해자,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준다.

제110조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 의료처분)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이 법 제99조 1호에 따라 의료처분결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수사원, 예심원을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111조 (기각한 형사사건에서 구속자, 증거물처리)

수사, 예심을 취소하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구금, 구류되여

있는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를 곧 놓아준다. 이 경우 증거물처리는 이 법 제44조에 따른다.

제112조 (기각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수사, 예심을 취소하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물건을 몰수하고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인다.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앞항의 경우 재산담보처분기간을 1개월 연장할수 있다. 그 내용은 수사, 예심취소결정서, 사건기각결정서, 판정서, 판결서에 밝힌다.

제113조 (형사사건의 기각취소)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의 기각이 잘못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신고자, 피해자에게는 형사사건의 기각취소에 대하여 알려준다.

제114조 (형사사건기각취소의 효력)

형사사건의 기각취소를 한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와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가지며 그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제10절 사회적교양처분

제115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4살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 형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개조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6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절차)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수 있다.

1.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을 할수 있다.
2. 판사,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판정, 판결을 할수 있다.

제117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처리)

구류되여있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 판정, 판결을 한 경우에는 곧 놓아준다.

제118조 (사회적교양처분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44조, 제112조, 제348조에 따른다.

제119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지위)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인정한다.

제120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의 담당자)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있는 리(읍, 구, 동)에서 책임진다.

미성인에 대하여서는 그의 부모도 책임진다.

제121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

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지운다. 이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도 함께 계산한다.

제122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절차)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21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예심원 또는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11절 손해보상

제123조 (손해보상의 청구자)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 또는 판사,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위하여 직접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124조 (손해보상청구의 통고)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125조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로는 범죄를 저질러 물질적손해를 준 피심자, 피소자, 범죄의 련루자 또는 범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재산적책임을 질자가 된다.

제126조 (손해보상청구의 대상)

손해보상청구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물질적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127조 (손해보상청구의 형식)

손해보상청구는 말로 하거나 글로 써낼수 있다.

말로 한 손해보상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서에 밝힌다.

제128조 (손해보상청구의 시기)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에서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129조 (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손해보상청구는 형사재판에서 함께 심리해결한다. 그러나 손해보상청구심리가 재판심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따로 심리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소가 한다.

제130조 (기각된 손해보상청구의 재청구금지)

손해보상청구를 형사재판심리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수 없다.

손해보상청구를 민사재판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할수 없다.

제131조 (손해보상청구수수료의 면제)

범죄로 입은 물질적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제132조 (손해보상금의 제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손해보상책임이 있는자에게 손해보상금을 해당 은행에 입금시키게 하고 림시입금증을 받은 다음 손해보상금제출조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3장 수 사

제133조 (수사의 임무)

수사의 임무는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이다.

제134조 (수사의 시작)

수사할 범죄자료를 얻은 수사원은 곧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제135조 (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결정서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수 있다.

제136조 (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137조 (수사의 방법)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수 있다.
앞항의 행위는 이 법 제4장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제138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밖에서도 수사를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할수 있다.

제139조 (수사의 의뢰)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한다.

제140조 (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수 없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수 없게 되는 것 같은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수 없을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제141조 (수사사건의 이송)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수사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알리고 해당 수사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구금되여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한다.
수사과정에 알게 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준다.

제142조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였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제143조 (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142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였을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는다.

구금된자에게 이 법 제96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구금을 중지하며 이 법 제10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금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144조 (구금하지 않을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 체포날자, 사유같은 것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제145조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곧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을 예심

에 넘긴다.

이 경우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범죄자는 체포하여 예심에 넘긴다.

제146조 (수사에 대한 감시)

수사감시를 맡은 검사는 감시결정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소송문건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장 예 심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제147조 (예심의 임무)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제148조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예심에서는 객관적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 논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힌다.

제149조 (반복조사금지)

예심에서는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가 검토확인된 경우 그대로 쓸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시작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 피심자심문, 예심종결과 같은 중요한 예심행위만을 진행하고 예심을 종결한다.

제150조 (예심의 기간)

예심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끝낸다.

검사, 판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안으로 끝낸다.

제151조 (예심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0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7조 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까지 할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제152조 (예심사건의 이송)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행위를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법기관의 예심원에게 보낸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여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한다.

제153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예심행위를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할 수 있다.

제154조 (예심의 의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곧 회보한다.

제155조 (예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156조 (예심의 시작)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한다.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제157조 (형사책임추궁)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58조 (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때로부터 48시간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준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조받을수 있다는것을 알려주고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힌다.

제159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48시간안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제160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조항을 추가하여 적용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제3절 피심자심문

제161조 (피심자심문시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심문한다.

제162조 (피심자심문시간)

피심자심문은 8~20시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규정된 시간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163조 (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예심장소에서 심문하려는 예심원은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164조 (피심자호송)

구류한 피심자심문은 예심장소에 호송하여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제165조 (피심자체포의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낸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한다.

제166조 (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수 없다.

제167조 (피심자심문의 개별화)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한다.

제168조 (피심자의 권리통고)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준다.

제169조 (피심자의 권리)

예심에서 가지는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2.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해명하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3.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제기할수 있다.
4.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서에 직접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5.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170조 (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형사책임추궁인정여부와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필요한 질문을 한다.

제171조 (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참가)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2명의 립회인을 세울수 있다.

제172조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심문)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을,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수 있는자를 붙인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173조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피심자를 심문한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는다.

필요에 따라 피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수 있다.

제174조 (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예심원은 피심자심문을 끝내면 피심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본다.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힌다.

심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지장을 받는다.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제175조 (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제176조 (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법에 규정되여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 구속할수 없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여있는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를 놓아준다.

제177조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10일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한다.

제178조 (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체포,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없다.

제179조 (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수 없다.

제180조 (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1조 (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구금된 범죄자를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며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제182조 (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준다.

제183조 (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류구속처분
2. 자택구속처분
3. 지역구속처분

제184조 (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든다.

제185조 (구속처분결정의 승인)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게 하거나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고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제186조 (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수 없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수 없다.

검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0일,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수 없다.

제187조 (구류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0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최고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여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최고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2개월 늘일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5일간 늘일수 있다.

제188조 (자택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같은 사정으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2명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는다.

제189조 (지역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를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는다.

제190조 (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수 있다.

제5절 검증과 심리실험

제191조 (검증, 검진의 목적)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범죄사건과 관련된 흔적,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제192조 (검증의 종류)

검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검증
2. 증거물검증
3.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4. 산 사람에 대한 검증

제193조 (범죄현장에서 증거물검증)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수 있다.

제194조 (검증의 동의)

검증에 필요할 경우에는 임자의 동의를 얻어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

할수 있다.

임자의 동의를 얻을수 없는 경우에도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다.

제195조 (검진결정서 및 검진맡김결정서의 작성)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든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검진을 맡길 때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96조 (검증, 검진의 시간)

검증, 검진은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검증, 검진을 할수 있다.

제197조 (검진결정서의 제시)

검진을 하는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진결정서 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검진을 받을자에게 제시한다.

제198조 (검증, 검진의 립회)

검증, 검진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녀성에 대한 검진의 립회는 녀성을 시킨다.

제199조 (검증에 감정인의 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수 있다.

제200조 (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붙일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든다.

제201조 (심리실험의 사유)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의 가능성여부와 그러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수 있었겠는가를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수 있다.

제202조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검토확인하여야 할 행위나 현상이 있은 당시와 같은 장소, 시간, 환경,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2.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여러번 하여야 한다.
3. 심리실험참가자에게 예심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제203조 (심리실험의 금지사유)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이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실험을 할수 없다.

제204조 (심리실험조서의 작성)

심리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위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힌다.

제6절 감 정

제205조 (감정의 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긴다.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의무적으로 감정한다.

제206조 (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범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 같은것이 속한다.

제207조 (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자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208조 (감정의 의뢰)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감정맡김결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감정맡김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밝힌다.

감정을 맡길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넘겨준다.

제209조 (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210조 (감정서의 작성과 회보)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곧 보낸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제211조 (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12조 (감정인의 통고)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준다.

제213조 (감정인심문)

감정을 맡긴 예심원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수 있다.

앞항의 경우 이 법 제232조, 제233조에 따른다.

제214조 (재감정)

감정에서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였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7절 수색과 압수

제215조 (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

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수 있다.

제216조 (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

수색, 압수하려는 예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217조 (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자에게 제시한다.

제218조 (수색장소의 경비조직)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수 있다.

제219조 (수색, 압수의 시간)

수색, 압수는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수 있다.

제220조 (수색, 압수의 립회)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녀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221조 (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 것을 압수

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하며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립회시킨다.

제222조 (압수대상과 방법)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 이 경우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며 압수당한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

제223조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제8절 증인심문

제224조 (증인으로 될수 있는 사유)

증인으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들었거나 보았거나 느낀 것이 있는자가 될수 있다.

제225조 (증인의 권리)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26조 (증인의 의무)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예심원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227조 (증인심문장소)

증인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제228조 (증인의 소환 및 구인)

증인을 해당 장소에서 심문하려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229조 (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벙어리, 귀머거리증인심문)

조선말을 모르는자, 벙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이 법 제172조에 따른다.

제230조 (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제231조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심문)

14살에 이르지 못한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제232조 (증인심문절차)

증인을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다.

제233조 (증인심문조서의 작성)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3조, 제17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제234조 (대질심문의 사유)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한다.

제235조 (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대질심문을 하려는 예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며 그들이 공모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아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기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한다.

제236조 (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한다.

제237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에게 상대방의 말에서 밝힐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한다. 이 경우 예심원의 승인을 받게 한다.

제238조 (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3조, 제17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239조 (식별심문의 목적과 요구)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식별심문을 한다.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

제240조 (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와 식별정형확인)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힌다.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갈라냈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한다.

제241조 (식별심문의 립회)

식별심문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242조 (식별심문조서의 작성)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힌다.

필요에 따라 식별자에게 식별한 것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수 있다.

제10절 재산담보처분

제243조 (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은 형벌집행을

위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범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해서도 할수 있다.

제244조 (재산담보처분의 대상)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자의 재산
2. 손해보상청구에 책임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자와 그 련루자의 재산

제245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

제246조 (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가치가 있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량 또는 몰수할 재산량만큼 한다.

제247조 (재산담보처분결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한다.

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8조 (재산담보처분의 결정서제시와 립회)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자에게 제시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249조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준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250조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없게 되였거나 잘못되였다는 것을 확증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한다.

제251조 (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252조 (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물건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11절 예심의 종결

제253조 (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

제254조 (예심의 종결절차)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

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물어본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기록을 보여준다.

제255조 (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256조 (예심종결조서의 작성)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자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힌다.

제257조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258조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제259조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예심원, 검사는 이 법 제258조 1항의 의견을 제기받았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 또는 검찰소장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찰소장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예심 또는 감시를 계속한다.

제5장 기 소

제260조 (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다.

제261조 (기소의 기간)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10일 안으로 검토처리한다. 그러나 10일 안에 검토처리할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5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제262조 (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5일이다.

제263조 (사건기록검토내용)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수사,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제264조 (범죄사건기소)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였을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낸다.

제265조 (기소장의 작성)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한다.

기소장에는 작성날자,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한 형법조항과 형사소송법조항, 기소할 재판소를 밝힌다.

제266조 (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구금)한 날자와 구속되여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인다.

제267조 (범죄사건을 예심에 돌려보내는 결정)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제268조 (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수 없다는 리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수 없다.

제6장 제1심재판

제1절 재판의 임무와 재판소구성

제269조 (제1심재판의 임무)

제1심재판의 임무는 재판심리를 통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제270조 (제1심재판의 공개)

제1심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271조 (재판의 독자성보장)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72조 (확정된 사실의 인정)

형사재판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확정한다.

제273조 (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심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274조 (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같은 범죄사건의 재판은 처음 구성하였던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도중에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275조 (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의 참가)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밑에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의 참가없이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276조 (재판심리에서 재판장)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277조 (재판심리에서 검사)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한다.

제278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79조 (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재판복의 착용)

법정 정면벽가운데 웃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걸며

그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드리운다.

재판소성원은 법정 주석단자리에, 검사와 변호인, 증인, 피소자는 주석단아래의 좌측과 우측에 서로 마주한 자리에, 재판서기는 주석단아래의 가운데자리에 앉는다.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정해진 재판복을 입는다.

제280조 (피소자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재판심리의 참가를 거부하는 피소자는 구인 또는 구속하여 재판한다.

제281조 (제1심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제1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5일이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제282조 (법정에서 피소자구속금지)

법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소자는 구속할수 있다.

제283조 (피소자의 의무)

재판심리에서 피소자는 물음에 답변하며 재판장의 승인없이 법정에서 떠날 수 없다.

제284조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상청구를 따로 할수 있다.

제285조 (현지공개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수 있다.

제286조 (제1심재판기간)

제1심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안으로 재판심리를 끝낸다. 그러나 제1심재판기간에 재판심리를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제287조 (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법적절차와 요구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판준비에서는 판사, 재판심리에서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절 재판준비

제288조 (재판준비의 담당자)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재판준비판정을 한다.

제289조 (사건기록의 검토내용)

재판준비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였는가
2. 기소에 근거가 있는가
3. 인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였는가
4. 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것은 없는가
5.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290조 (범죄현장과 증거자료의 확인)

판사는 재판심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

제291조 (범죄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

판사는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여 재판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기소한 형법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긴다.

제292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

재판심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기소장에 본질적의의를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293조 (범죄사건의 이송판정)

사건기록을 접수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은 사건이송판정을 한다.

제294조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의 내용)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에는 재판날자, 장소, 범죄사건명,

구성성원,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감정인과 재판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겠는가를 지적한다.

제295조 (재판준비에서 검사의 의견처리)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이 법 제97조, 제107조, 제108조, 제116조, 제291조 2항, 제292조, 제293조에 따라 판정하려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항의를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판정서등본은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보낸다.

제296조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360조에 따른다.

제297조 (기소장 및 판정서등본의 송달)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과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기소된 형법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제298조 (재판심리날자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인민참심원,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주며 증인, 감정인에게는 소환장을 보낸다.

재판심리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한다.

앞항의 경우 구인절차는 이 법 제228조에 따른다.

제299조 (신청, 의견의 처리)

피심자가 기소된 다음 재판준비단계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재판심리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3절 재판심리

제300조 (제1심재판의 절차)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말, 판결의 선고절차로 한다.

제301조 (제1심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등본접수정형과 구금, 구류날자를 묻고 피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302조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주고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303조 (오지 않은 증인, 감정인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소환한 증인, 감정인이 오지 못한 경우 그 리유를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304조 (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검사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검사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서기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제305조 (기소사실의 인정확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306조 (심리순서의 확정)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심리순서를 정한다.

정한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린다.

제307조 (피소자심문순서)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먼저 피소자에게 자기 범죄를 말하게 한 다음 재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한다.

제308조 (피소자에 대한 개별심문)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피소자를 한 사람씩 법정에 불러다 심문할수 있다.

제309조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에 대한 처분)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는 판정으로 법정에서 내보내고 사실심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310조 (증인심문의 시작)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1명씩 법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

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제311조 (증인심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 것을 요구한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앞항에 지적된자의 심문이 끝나면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제312조 (재심문 또는 대질심문)

필요에 따라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과 증인, 증인과 피소자를 대면시켜놓고 심문할수 있다.

제313조 (심문받은 증인의 처리)

심문받은 증인은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 법정을 떠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문받은 증인을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법정에서 내보낼수 있다.

제314조 (증인심문의 중지)

사실심리에서 범죄가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을 그만둘수 있다.

제315조 (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감정인을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시킬수 있다.

제316조 (감정의뢰와 감정인심문)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

길수 있다.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하는 절차는 이 법 제208조-제213조에 따른다.

제317조 (재판심리에서 재감정)

재판소는 감정결과에 부족점 또는 의문이 있거나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다시 시킬수 있다.

제318조 (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한다.

검사, 변호인도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할수 있다.

제319조 (수사, 예심조서의 검토방법)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실심리에서 수사,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할수 있다.

제320조 (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소는 범죄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앞항의 검증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하며 그것은 사실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321조 (새 증거의 수집)

증거를 더 수집하려는 재판소는 사실심리를 정지하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직접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322조 (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사실심리에서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다.
재판장은 손해보상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해보상청구내용을 말하게한 다음 피소자에게 답변하게 한다.

제323조 (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324조 (론고와 변론의 순서)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말을 하게 할수 있다.

제325조 (론고의 내용)

론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론증하며 기소된 형법조항의 형벌을 적용할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326조 (변론의 내용)

변론은 형사소송법의 요구에 맞게 재판이 진행된 정형과 피소자의 법적권리정형, 기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된 기소법조인정, 범죄의 원인과 찾아야 할 교훈, 피소자의 개준성정도를 근거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

제327조 (보충론고와 변론)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으로 론고와 변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할수 있다.

제328조 (론고와 변론의 기초)

론고와 변론은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한다.

제329조 (피소자의 마지막말)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은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마지막말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330조 (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채택을 위한 협의를 한다.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331조 (기소의 추가사유)

기소의 추가는 이미 기소된 범죄밖에 피소자에게 형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새로운 범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새로운 범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332조 (기소의 추가시기)

기소의 추가는 재판준비, 재판심리에서 할수 있다.

제333조 (기소의 추가절차)

재판소는 발견한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판정서에 지적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돌려보내며 범죄는 밝혀져있으나 형법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기소를 추가한 다음 재판심리를 계속한다.

제334조 (기소의 변경사유)

기소의 변경은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335조 (기소변경의 시기)

기소의 변경은 재판의 준비와 재판심리에서 한다.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에서도 기소의 변경을 할수 있다.

제336조 (기소의 변경절차)

재판소는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

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계속 심리하여 판결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심리를 10일까지 미룰수 있다.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337조 (새 범죄자 및 법위반자에 대한 처리)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가 아닌 다른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다른 법적제재를 주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내거나 다른 제재를 주는 판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구속처분 판정을 할수 있다.

제5절 판 결

제338조 (판결의 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339조 (판결채택의 참가성원)

판결의 채택에는 재판심리를 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참가한다.

제340조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소된 범죄가 있었는가
2. 범죄를 피소자가 저질렀는가
3. 범죄의 표징을 갖추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것인가
5.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6.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제341조 (판결, 판정의 채택)

판결과 재판심리에서 하는 판정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수 있다.

제342조 (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한다.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이다.

제343조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여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할수 있다.

제344조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재판소는 이 법 제1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제345조 (무죄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다.

제346조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347조 (피소자의 석방)

구류되여있는 피소자에게 무죄판결,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를 곧 놓아준다.

최고검찰소 소장과 최고재판소 소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제외한 앞항의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제348조 (증거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판결, 판정을 한 경우 범죄의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44조, 제250조에 따른다.

제349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가 없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

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수 있다.

제350조 (사건반송의 판정)

재판소는 판결을 할수 없을 정도로 예심에서 범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의 원칙과 절차를 심하게 어겼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351조 (사건반송의 금지)

다른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아도 이미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반송할수 없다.

제352조 (판결서의 작성)

판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국호와 재판날자,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를 밝힌다.

판결서의 다음부분에는 해당 판결이 의거하는 형사소송법조항, 그에게 적용하는 형법조항과 형벌 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데 대하여 지적하며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재산담보처분, 구속처분문제 같은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쓴다.

판결서에는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제353조 (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제354조 (재판조서의 작성기간과 열람)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5일안으로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검사, 변호인은 재판조서작성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수 있으며 수정, 보충, 삭제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재판서기에게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355조 (재판조서의 작성)

재판조서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피소자의 이름,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행위
7. 재판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신청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 말

제356조 (상소, 항의제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수 있다.

제357조 (검사의 항의관할)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도(직할시) 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 최고검찰소 검사는 각 도(직할시)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358조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최고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
2.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

제359조 (상소절차)

상소를 하려 하는자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받은자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곧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낸다.

상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소를 할수 없었던 특별한 리유가 있다는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360조 (항의절차)

항의하려는 검사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의 판결, 판정에 대한 항의서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재판소는 항의기간이 지나면 곧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항의한 검사의 상급검찰소에 보낸다.

항의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3일 그밖의 형벌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같은 급의 재판소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거나 항의를 취소할수 있다.

항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항의를 할수 없었던 특별한 리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361조 (판결, 판정의 집행중지)

상소, 항의가 제기된 판결, 판정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362조 (제1심판결, 판정의 확정)

제1심판결, 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기간이 지났을 경우
2.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지지하였을 경우
3.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

제7장 제2심재판

제363조 (제2심재판의 임무)

제2심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364조 (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365조 (제2심재판기간)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안으로 심리해결한다.

로동단련형사건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끝낸다.

제366조 (제2심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참가)

제2심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피소자,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변호인을 참가시킨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변호인이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367조 (사건기록의 발송과 검사의 검토기간)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는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2일 그밖의 사건기록은 10일간 검토할수 있다.

제368조 (제2심재판날자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날자를 재판하기 3일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린다.

제369조 (제2심재판심리의 범위)

제2심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심 또는 제1심재판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히 어겨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되지 않은 사실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한다.

제370조 (제2심재판심리의 절차)

재판장은 재판심리시작을 알리고 제1심재판소가 재판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판결, 판정, 그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리유를 보고하고 검사, 변호인, 재판소성원들에게 의견을 말하게 한다.

제371조 (제2심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2심재판심리를 끝낸다는 것을 알린 다음 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판소성원들과 합의실에서 협의한다.

제372조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소 또는 항의에 근거가 있는가
2. 인정한 사실과 그에 적용한 형법조항이 맞는가
3.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4. 수사,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373조 (판정의 채택)

합의실에서 협의하여 판정을 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 그것을 읽는다. 판정서를 읽을 때 검사와 변호인도 참가한다.

제374조 (제1심판결, 판정의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채택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375조 (범죄사건의 반송)

제2심재판소는 수사,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형법조항을 적용하

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376조 (범죄사건의 이송)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관할을 어기고 채택한 판결, 판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범죄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377조 (범죄사건의 기각)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기각하여야 할 범죄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기각한다.

제378조 (판결의 변경)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1심재판소가 형법조항을 형벌이 무겁게 규정된 조, 항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2. 제1심재판소가 형벌을 지나치게 무겁게 적용한 경우
3. 제1심재판소가 응당 적용하여야 할 부가형벌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4. 손해보상청구심리에서 사실인정은 옳바로 하였으나 판결을 잘못 내린 경우

제379조 (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제2심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을 접수한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80조 (불리익변경의 금지와 허용)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범죄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

소는 처음 판결을 한 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는 형벌이 무겁다고 상소하였고 검사가 형벌이 가볍다고 항의한 범죄사건으로서 처음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범죄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재판소가 해당한 형벌을 줄수 있다.

제381조 (부대판정)

제2심재판소는 예심 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판정으로 지적할수 있다.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82조 (재판결과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일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준다.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제1절 비상상소심

제383조 (비상상소심의 임무)

비상상소심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384조 (비상상소심재판소의 구성)

최고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385조 (비상상소심의 기간)

최고재판소는 비상상소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86조 (판사회의)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성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판사회의판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회의에 참석한 성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한다.

제387조 (검사의 비상상소심참가)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최고재판소 판사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388조 (비상상소의 제기자)

비상상소는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

제389조 (비상상소의 제기기간)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비상상소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390조 (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의 제기는 범죄사건의 처리에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것이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나타나있을 경우에 한다.

제391조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사건)

형벌집행이 끝난 범죄사건에 대하여 이미 집행한 형벌이 낮다는 리유로 비상상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난 범죄사건은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다.

제392조 (비상상소의 제기신청)

비상상소를 제기할 범죄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제393조 (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요구)

최고재판소 소장과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범죄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기록은 곧 돌려보낸다.

제394조 (판결, 판정집행의 정지)

최고재판소 소장과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수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이나 집행중에 있는 판결, 판정은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395조 (비상상소의 제기)

최고재판소 소장과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상소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최고재판소에 보낸다. 최고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비상상소사건은 비상상소심을 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최고검찰소에 보낸다.

제396조 (비상상소심날자의 통지)

최고재판소는 비상상소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전에 최고검찰소에 알린다.

제397조 (비상상소심의 범위)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사유에 근거하여 범죄와 그것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가,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 것은 없는가,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98조 (비상상소의 심리절차)

비상상소심은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최고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399조 (비상상소사건의 처리)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최고재판소는 이 법 제374조-제378조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한다.

제400조 (판정의 집행시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401조 (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제2절 재 심

제402조 (재심의 임무)

재심의 임무는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403조 (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404조 (재심의 기간)

최고재판소는 재심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리해결한다.

제405조 (검사의 재심참가)

재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406조 (재심의 제기자)

재심은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

제407조 (재심의 제기기간)

재심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제기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할수 있다.

제408조 (재심제기의 사유)

재심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

제409조 (재심제기의 신청)

재심신청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접수한 검사는 2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재심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조사자료를 최고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검사가 재심제기사유를 직접 얻었을 경우에도 앞항에 따른다.

제410조 (판결, 판정집행정지)

최고검찰소 소장은 필요에 따라 최고재판소 소장을 통하여 재심을 제기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제411조 (재심의 제기와 거부)

최고검찰소 소장은 재심의 제기신청이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최고재판소에 보낸다.

재심제기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돌려보낸다.

제412조 (재심날자의 통지)

최고재판소는 재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전에 최고검찰소에 알린다.

제413조 (재심의 범위)

재심에서는 재심제기의 사유로 되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심리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심리해결한다.

제414조 (재심사건의 심리)

재심은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415조 (재심사건의 처리)

최고재판소는 재심의 제기가 정당할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내거나 직접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제기를 거부하고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이 경우 재심을 신청한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48시간안으로 알려준다.

제416조 (재심판정의 집행시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417조 (재심결과의 통지)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재심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418조 (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사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제419조 (집행문건의 발송)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2일 안으로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낸다.

제420조 (판결, 판정집행에 대한 감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421조 (사형판결의 집행)

사형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사형집행지휘문건은 최고재판소가 발급한다.

제422조 (사형집행결과의 회보)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결과를 3일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알린다.

제423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해당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제424조 (형기의 계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한다.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여있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고있는자가 형벌집행기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형벌집행기간으로 계산한다.

제425조 (선거권박탈형 및 벌금형의 집행)

선거권박탈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 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벌금형의 집행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426조 (자격박탈형 및 자격정지형의 집행)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제427조 (재산몰수형의 집행)

재산몰수형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몰수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붙이고 몰수당한자에게는 몰수재산목록등본을 준다.

재산몰수형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28조 (손해보상재산의 집행)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손해보상재산목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재산임자에게 주고 손해보상청구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29조 (재산의 강제집행)

재산임자가 재산몰수형,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을 정당한 리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

제430조 (형벌집행의 중지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임신한 녀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제431조 (형벌집행의 기각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고칠수 없는 정신병에 걸렸거나 죽은 경우에는 형벌집행을 기각한다. 이 경우 법의 감정을 한다.

제432조 (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제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하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데 대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검찰소소장에게 한다.

검찰소소장은 제기받은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그것을 부결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433조 (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심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것은 해당 재판소가 검사의 참가밑에 10일안으로 심리해결한다.

제434조 (형벌집행중지를 받은자의 처리 및 관리)

형벌집행을 중지받은자에게는 의료처분을 적용하거나 자택구속처분을 적용한다.

형벌집행을 중지받은자에 대한 관리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제435조 (형벌집행중지의 해제)

해당 재판소는 형벌집행을 중지하였던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에게 형벌집행중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것을 해제하는 판정을 한다.

형벌집행중지기간은 형벌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36조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이 법 제82조에 따른다.

제437조 (판결, 판정집행과 관련한 신청의 심리날자 통지)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3일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제438조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색 인 어

(I)

in dubio pro reo 원칙 ····· 39

(ㄱ)

간접증거 ····· 17, 51, 52, 55
감정 ····· 24, 42
감정과 검증의 차이 ····· 559
감정기관 ····· 66, 561, 581, 849
감정서 ····· 46, 47, 574, 850
감정의 결과 ····· 58, 63, 577
감정의 사유 ····· 560, 563, 848
감정의 의뢰 ····· 569, 571, 849
감정의 의의 ····· 557
감정의 종류 ····· 245, 565, 571, 849
감정인 ····· 42, 101, 256, 866
감정인심문 ····· 583
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 268, 840
검사의 예심종결참가 ····· 742, 858
검증과 심리실험 ····· 6, 181, 846
검증의 결과 ····· 65, 68, 536
검증의 동의 ····· 524, 525, 846
검증의 종류 ····· 245, 846
검증조서 ····· 52, 58, 69, 632, 813
검진결정서 ····· 245, 527, 847
과학성의 원칙 ····· 29
과학적 증거 ····· 35, 70, 80, 384
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 ···· 306, 307
구류기간 ····· 244, 298, 301, 863
구속처분결정서 ····· 379, 4485, 844
구속처분의 종류474, 506, 511, 844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 ····· 742
권리침해의견 ····· 316, 774, 858
기소 ····· 24, 43, 805, 807
기소의 임무 ····· 779, 859
기소장 ····· 72, 233, 867

(ㄷ)

대면증인 ····· 697, 700, 703
대질심문 ····· 181, 694, 854
대질심문조서 ··· 701, 702, 703, 854

(ㅁ)

물적증거 ····· 46, 47, 748

(ㅂ)

반복조사금지 ····· 244, 837
범죄증명을 의제하는 원칙 116, 121
벙어리, 귀머거리 ····· 353, 413, 853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 248, 345
보조증거 ····· 53
본원적 증거 ····· 51, 55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 127
비진술증거 ····· 51, 52, 53

(ㅅ)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 742
서면증거 ····· 58, 60, 78
손해보상청구 ····· 256, 877
수사 ····· 24, 354, 367
수사감시 ····· 217, 219, 836
수사사건의 이송 ····· 191, 834
수사시작결정 ····· 163, 822, 834
수사의 방법 ····· 160, 180, 833
수사의 시작 ····· 164, 169, 833
수사의 의뢰 ····· 186, 834
수사의 임무 ····· 161, 163, 833
수색, 압수 ····· 89, 608, 610
수색, 압수결정서 ····· 127, 203, 851
수색, 압수의 시간 ····· 613, 851
수색, 압수조서 ····· 98, 1130, 852
수색, 압수취소 ····· 601
수색결정서 ····· 182
수색조서 ····· 74, 128, 636
식별심문 ····· 181, 245, 855
식별심문조서 ····· 713, 715, 855
식별증인 ····· 710
실질증거 ····· 53
심리실험 ····· 98, 180, 848
심리실험조서 ····· 125, 715, 848

(ㅇ)

압수대상 ····· 590, 630, 852
압수의 립회 ····· 616, 851
압수조서 ····· 74, 96, 631, 812, 852
압수품목록 ····· 588, 630, 852
야간집행 제한 ····· 614, 615
예심관할 ····· 243, 335, 814
예심기간의 연장 ····· 299, 301, 837
예심사건의 이송 ····· 298, 304, 837
예심에 대한 감시 ····· 307, 315, 838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 289
예심원의 질문 ····· 353, 702, 841
예심의 기간 ····· 244, 297, 837
예심의 담당자 ····· 262, 268, 807
예심의 시작 ····· 234, 332, 838

예심의 의뢰 ····· 308, 309, 838
예심의 임무 ····· 225, 742, 836
예심의 종결사유 ····· 742, 752, 857
예심의 종결절차 ····· 742, 755, 757
예심종결조서의 작성 ····· 742, 858
원본증거 ····· 52, 53, 54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 39, 40
인적증거 ····· 52
일사부재리원칙 ····· 802
입회인 ····· 74, 75
입회인참가 ····· 411

(ㅈ)

자백배제법칙 ····· 30, 118, 382
자백보강법칙 ····· 24, 30, 120, 121
자택구속처분 ····· 436, 453, 473
재감정 ····· 581, 586
재산담보처분 ····· 226, 435, 718
재산담보처분결정서 ····· 718, 729
재산담보처분조서 ····· 718, 732, 733
재산몰수형 ····· 435, 718, 719
전문증거 ····· 38, 39, 59
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 35, 79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 91, 559
증거물검증조서 ····· 77, 544, 812
증거물발견조서 ····· 74, 638, 812
증거물의 등록 ····· 125, 620, 812
증거물의 보관 ····· 31, 48, 136, 812
증거물의 이관 ····· 139, 812
증거물의 처리 ····· 31, 146, 813
증거물제출조서 ····· 124, 544, 812
증거서류 ····· 51, 52, 100, 591, 683
증거수집기관 ····· 87
증거의 개념 ····· 51
증거의 검토 ····· 31, 100, 104, 811
증거의 고착 ····· 95, 98, 420, 811
증거의 종류 ····· 31, 42, 51, 810
증거의 평가 ····· 106, 111, 811
증거재판주의 ····· 30, 37, 80, 106
증인 ····· 51, 53
증인심문 ····· 379, 429, 585, 640
증인심문장소 ····· 656, 853
증인의 구인 ····· 660, 665
증인의 소재지 심문 ····· 658
증인의 소환 ····· 651, 660, 663
증인의 자격 ····· 640, 641, 643
증인의 진술 ····· 24, 33, 687, 702
증인의 진실증언의무 ····· 654
증인의 출석의무 ····· 654, 664
증인적격 ····· 59, 61
지역구속처분 ····· 436, 453, 474
직접증거 ····· 51, 55, 56, 57
진술의 강요 ····· 650, 681

진술의 평가 ····· 114, 384, 812
진술증거 ····· 51, 52, 53

(ㅊ)

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 843
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 245
체포, 구속의 통지 ···· 471, 473, 844
체포, 구속처분 ····· 245, 317, 438
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 459, 842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 317, 447
체포령장 ····· 245, 372, 377
체포의 담당자 ····· 245, 459, 843

(ㅍ)

파생적 증거 ····· 53, 54, 55
피소자의 진술 ····· 58, 69, 385, 812
피심자 ····· 30, 69, 71
피심자심문시간 ····· 353, 366, 839
피심자심문시기 ····· 353, 363, 839
피심자심문의 개별화 ····· 391, 840
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 353,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 353, 421
피심자의 권리 ····· 244, 345, 353
피심자의 권리통고 ··· 244, 395, 840
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 353, 367
피심자의 진술 ····· 353, 409, 410
피심자체포의뢰 ····· 216, 353, 376
피심자호송 ····· 353, 374, 840

(ㅎ)

현장검증조서 ····· 74, 638, 812
형사소송관계자 ····· 256, 257, 806
형사책임추궁 ····· 88, 236, 298
형사책임추궁결정 ····· 35, 88, 238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 318
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 318, 839

위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법무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法務資料 第317輯>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

2015년 12월 일 印刷
2015년 12월 일 發行

發 行 法務部 法務室 統一法務課
果川市 官門路 47
政府果川廳舍
電話 (02) 2110-3223
FAX (02) 2110-0330

印 刷 동광문화사 (02)503-5165

發行登錄番號 11-1270000-000860-01
ISBN 979-11-86140-06-2

값 20,000원